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46호

2021.1.28.(목)



서울특별시



[]

제2021-160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1-175호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21-17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21-198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7
제2021-19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제2021-210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1-211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제2021-221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21-222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
제2021-224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4
제2021-225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

제2021-164호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20
제2021-29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21
제2021-44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22
제2021-4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49
제2021-47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50
제2021-48호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2
제2021-49호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3

2021 - 50	() ()	-	
1673 - 3	()	-	139
2021 - 153			150
2021 - 158			151
2021 - 163	(,)	..	155
2021 - 165			166
2021 - 170	2021 1		169
2021 - 172			172
2021 - 177	2021		175
2021 - 178			178
2021 - 186	2021 .		180
2021 - 190			183
2021 - 192			187
2021 - 201			196
2021 - 209			198
2021 - 213	[()()]		225
2021 - 1	2021		226
2021 - 9	()		230
2021 - 13	() () ()		232
2021 - 19	() 가 ()		234
2021 - 20	() 가 ()		241
2021 - 9	() 가 ()		248
2021 - 11	(:) 가 ()		253
2021 - 16	() 가 ()		254
2021 - 18	() 가 ()		255
2021 - 106	() ()		260
2021 - 114	() ()		
()			305

제2021-105호	노원구 월계동 259-1 월계역 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 출입 통지 공고(노원구)	375
제2021-164호	도시계획시설(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은평구)	376
제2021-165호	도시계획시설(진관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은평구)	388
제2021-177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411
제2021-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금천구)	431
제2021-118호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영등포구) ..	433
제2021-99호	영등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영등포구)	436
제2021-136호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서초구)	441
제2021-137호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서초구)	443
제2021-1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삼성봉은배수지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 (강남구) ..	452
제2021-11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송파구)	454
제2021-128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송파구) ..	457
제202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58
제202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58
제202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59
제2021-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60
제2021-2호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공고(노원소방서)	461
제2021-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강남소방서)	462
제2021-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463
제202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66
제2021-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67
제2021-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68



[]

2021 - 160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 20. 12. 22. 공포, ' 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민간위원 수: (현행) 7명 → (개정) 9명
-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 을 ‘판사·검사·변호사’ 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21. 6. 23. 시행)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161, 팩스: 02-2133-1309, 이메일: hongja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75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1.1.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규칙 제명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른 우리시 자체 서식을 삭제함(10종).

(1)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된 지출결의서 서식을 삭제함(별지 제12호 서식)

(2) 지출과 관련된 품의 서식이 일반 기안문으로 대체됨에 따라 불필요한 품의서 서식 9종을 삭제함(별지 제12호의2호 서식부터 별지12호의8호 서식까지,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제13호의2호 서식까지)

다. 제21조 제목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훈령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21조 제목).

라. 제명 개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18개 규칙의 용어를 부칙으로 정비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33-3216, FAX: 02-2133-1029, E-mail: lymin9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7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32조 제2항).

-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자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FAX: 02-2133-1031, E-mail: lily82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98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급금액·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시장에게 신청서 및 관련자 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 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가 사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관련자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라. 규칙의 시행일을 2021년 7월1일로 정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31, Fax: 02-2133-0777, E-mail: ekdud484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99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20. 4. 7. 공포, ' 20. 5. 27. 시행) 내용(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0. 5. 11. 공포 및 시행)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7조).

- (1)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 (2) 사전신고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 나. 「공무원 행동강령」 중 규칙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의2 신설).
-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6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각각 신설).

-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사항을 반영함.

- (1)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8조제1항).
- (2)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 라. 그 밖에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함.

- (1) (용어 정비) ‘단위기관’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규정하여 실·국·본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지양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
- (2) (중복기준 삭제)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서, 규칙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 별표를 삭제함(안 별표 삭제).
- (3)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조항 삭제) 규칙은 시의회의원을 제외한 단위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단위기관별로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안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085, Fax: 02-2133-1306, E-mail: guissai@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10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안 제12조).

다.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문구를 삭제함(안 제19조).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7, FAX : 2133-1033, E-mail : jwj303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11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중업원분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절 제목, 제2절 제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7, FAX : 2133-1033, E-mail : jwj303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2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사용료를 변경하는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나.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 다.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82, FAX: 02-2133-1064, E-mail :shg121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2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 공모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주민 3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청하도록 한 신청자격 요건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 다.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그 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제3항).
- 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제5항에 따르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조).
-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공동체담당관(전화: 02-2133-6334, FAX: 02-2133-0827, E-mail: kiciii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2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발급 받은 면허 사업계획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민간 협력을 통하여 운송플랫폼에 민간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및 제16조).
- 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교통정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과(전화: 02-2133-4963, FAX: 02-768-8902, E-mail: realg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팀장 최종선, 담당 김진구							
4. 근거법령명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규제수		4건(유사)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면허 신청 업체 등							
6. 규제존속기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범운행지구가 폐지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 규제 존속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내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조례안 제8조) ② 시장은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조례안 제9조) ③ 시장은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조례안 제10조) ④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조례안 제12조제3항)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904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함
- 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들의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운수면허 발급 절차 및 기준,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허의 연장, 안전운행능력 검증, 데이터 연계 등 의무 규정을 신설 제정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한 만큼 완전 상용화전까지 시민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연계하여 충분한 사전 점검과 검증이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안전운행과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안전운행관련 구체적인 내용 포함이 필요하여 면허신청시 안전운행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였고,
- 안전한 도로운행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안전운행능력을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또한, 상위 법률에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면허 기간과 관련해서는 5년 이내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면허 연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면허발급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기간 및 연장 등에 대한 규정 신설하고, 면허를 발급하는 유상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이외에도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감독 및 즉각적인 인명사고 등의 대처를 위해 데이터 연계 의무 규정을 마련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고발생시에는 자율주행 산업전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운행능력의 검증 등을 위한 면허 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또한, 면허기간 및 연장, 사업계획의 변경, 데이터 연계 등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본 조례 개정안 중 면허신청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조례안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조례안 제9조), 면허기간의 연장(조례안 제10조), 데이터 연계 의무(조례안 제12조제3항)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객·화물의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최소한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면허발급 시 주어지는 특례와 지원에 비해 안전운행계획서 등 일부 서류의 추가 제출, 데이터 연계, 면허기간의 연장 승인 등의 의무사항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반대 및 제약 요소가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안전운행계획서 등은 면허신청시 1회 제출하는 것으로 과중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의 사업계획변경 및 면허 연장 등은 유상운송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해당 규제가 유상운송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조례안 제12조제3항의 데이터 연계 의무 사항도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율주행차량에게 교통안전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재 기술 등을 구현되어 있음
-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기술적 제약이 없어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조례 제정안은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고, 타 법령 및 조례와의 중복 여부도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사항 없음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규제의 대상, 근거, 내용 및 방법, 협조사항 등의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명확함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시 자율주행자동차유상운송 관련 면허절차 및 기준 등 안전성 확보방안은 운영계획서에 기 포함된 사항이고, 위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만큼 규제의 법적근거에는 문제가 없음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904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시범운행지구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특례 부여(한정운수면허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조직·인력·예산에 불필요하여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되는 것으로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구비서류와 처리기한이 시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적정함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시장이 처리하도록 근거가 명확함으로 법률적으로 처리기관 지정은 적정함
- 또한, 안전운행검증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처리절차측면에서도 적정함

III.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1 - 22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명 등 인용 법령과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위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이동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전화: 02-2133-2979, FAX: 02-2133-1071, E-mail: alzza9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21 - 164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외부 공공기관(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에서 정보시스템 관리를 데이터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 나. 2005년 훈령의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은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자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춰 정비함(안 제명).
- 나. 위원회의 구성을 스마트도시정책관(전 정보화기획단)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데이터센터의 소장과 소속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
- 다. 그 밖에 조문의 띄어쓰기, 인용조문, 자구 등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 외부공공기관 → 외부 공공기관
 - ▶ 당해 기관 → 해당 기관 / 기타 → 그 밖의
 -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전화: 02-3470-1454, FAX: 02-3470-1544 E-mail: thispag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9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제3우이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부도로사업소	2020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안전등급 "B" 등급 판정	○ 안전등급 "B" 등급 유지	

2021 - 4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가. 2021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붙임

나. 현장출장 경비

1)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확인 : 1,602,710원

2)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 509,110원
559,300원(외부전문가합동점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513-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건	18,230	4	
	입 도	KS F 2302	건	234,40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44,350	4	
	밀도	KS F 2308	건	69,55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66,5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44,19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78,720	10	
	다 짐	KS F 2312	건	221,890	4	
터파기	평판재하(시내)	KS F 2444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시외)	KS F 2444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KS F 2312	건	201,65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52,080	4	1건 추가시 101,56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200,080	4	1건 추가시 101,560
	평판재하 (성토체)(시내)	KS F 2310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성토체) (시외)	KS F 2310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입 도	KS F 2302	건	234,400	6	
	함수비	KS F 2306	건	18,23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78,720	10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44,350	4	
	밀도	KS F 2308	건	69,30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66,5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44,190	4	
노체	다 짐	KS F 2312	건	184,87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함수비	KS F 2306	건	17,57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32,550	4	1건 추가시 82,03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80,540	4	1건 추가시 82,030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78,720	10	
	입 도	KS F 2302	건	234,40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44,350	4	
	밀도	KS F 2308	건	69,12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66,5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44,190	4	
노상	다 짐	KS F 2312	건	183,780	4	
	함수비	KS F 2306	건	17,41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31,640	4	1건 추가시 81,12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79,630	4	1건 추가시 81,120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78,720	10	
	입 도	KS F 2302	건	234,40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44,350	4	
	밀도	KS F 2308	건	69,55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66,5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44,190	4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건	22,550	4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건	43,5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마 모	KS F 2508	건	47,91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30,230	10	
	다 짐	KS F 2312	건	181,050	4	
	체가름	KS F 2502	건	193,070	4	
	함수비	KS F 2306	건	17,41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31,640	4	1건 추가시 81,12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79,630	4	1건 추가시 81,120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입도조정기층	밀도(흙)	KS F 2308	건	42,260	4	
	밀도 및 함수율	KS F 2503	건	44,000	4	
	마 모	KS F 2508	건	46,81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30,230	10	
	다 짐	KS F 2312	건	181,050	4	
	체가름	KS F 2502	건	196,520	4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건	22,550	4	
	함수비	KS F 2306	건	17,410	4	
	안정성	KS F 2507	건	137,150	1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31,640	4	1건 추가시 81,12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79,630	4	1건 추가시 81,120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241,050	4	1건 추가시 190,720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88,680	4	1건 추가시 190,72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중간층용)	다짐횟수 (마샬)	KS F 2337	건	44,170	4	
	안정도	KS F 2337	건	86,160	4	
	흐름값	KS F 2337	건	85,59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공극률	KS F 2364	건	95,720	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건	93,750	7	
	아스팔트 함유량	KS F 2354	건	184,160	7	
	체가름	KS F 2502	건	196,420	7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건	45,870	5	
	변형강도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29,000	4	
	다짐횟수(선회)	KS F 2377	건	49,330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다짐횟수(마샬)	KS F 2337	건	45,090	4	
	안정도	KS F 2337	건	86,160	4	
	흐름값	KS F 2337	건	85,590	4	
	공극률	KS F 2364	건	95,720	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건	93,750	7	
	등적안정도	KS F 2374	건	307,750	10	
	아스팔트 함유량	KS F 2354	건	184,160	7	
	체가름	KS F 2502	건	196,420	7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건	45,540	5	
	변형강도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29,000	4	
	인장강도비(TSR)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215,840	25	
	다짐횟수(선회)	KS F 2377	건	50,250	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다짐횟수(마샬)	KS F 2337	건	45,090	4	
	안정도	KS F 2337	건	84,430	4	
	흐름값	KS F 2337	건	83,860	4	
	공극률	KS F 2364	건	92,870	4	
	등적안정도	KS F 2374	건	307,750	10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투수계수	KS F 2494	건	143,530	6	
	칸타브로손실률	KS F 2492	건	46,060	6	
	아스팔트 함유량	KS F 2354	건	184,160	7	
	체가름	KS F 2502	건	196,420	7	
도로보수용 상온아스팔트 혼합물	다짐횟수	KS F 2337	건	41,970	4	
	안정도	KS F 2337	건	86,160	4	
	흐름값	KS F 2337	건	85,590	4	
	공극률	KS F 2364	건	95,720	4	
	수침잔류안정도	KS F 2369	건	89,710	6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다짐횟수	KS F 2337	건	41,970	4	
	안정도	KS F 2337	건	86,160	4	
	흐름값	KS F 2337	건	85,590	4	
	공극률	KS F 2337	건	95,720	4	
	수침잔류안정도	KS F 2369	건	89,710	6	
	동적안정도	KS F 2374	건	303,280	10	
아스팔트포설	코아채취 (시내)	KS F 2350	건	196,220	4	1건 추가시 146,470
	코아채취 (시외)	KS F 2350	건	243,700	4	1건 추가시 146,470
	밀 도(코아)	KS F 2353	건	32,550	4	
	두께(코아)	KS F 2367	건	9,730	4	
준 설 토	함수비 (준설토)	KS F 2306	건	56,050	4	
투수기층	체가름	KS F 2502	건	196,520	5	
	균등계수	서울시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건	10,850	5	
	곡률계수	서울시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건	10,850	5	
	공극률	서울시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건	13,33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축강도	KS F 2405	조	15,150	실 소요일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치수	KS F 4006	조	10,930	4	
	흡수율	KS F 4006	조	48,380	7	
호안용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치수	시방서	조	16,310	4	
	휨강도	시방서	조	20,930	5	
	압축강도	시방서	조	28,600	5	
	흡수율	시방서	조	37,920	7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치수	KS F 4001	조	16,310	4	
	유색충두께	KS F 4001	조	11,720	4	
	휨강도	KS F 4001	조	20,010	5	
	흡수율	KS F 4001	조	38,82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오나멘트 타일	치수	시방서	조	10,620	4	
	꺾임강도	시방서	조	22,550	5	
	흡수율	시방서	조	42,340	7	
점토벽돌	치수	KS L 4201	조	10,300	4	
	압축강도	KS L 4201	조	48,900	5	
	흡수율	KS L 4201	조	75,790	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치수	KS F 4419	조	10,930	4	
	유색충두께	KS F 4419	조	8,510	4	
	휨강도	KS F 4419	조	35,520	5	
	흡수율	KS F 4419	조	52,24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치수	KS F 4419	조	10,9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인터록킹 블록 (투수성)	유색충두께	KS F 4419	조	8,510	4	
	휨강도	KS F 4419	조	35,570	5	
	투수계수	KS F 4419	조	81,21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투수지속성 시험	시방서	조	124,520	1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치수	KS F 4002	조	10,940	4	
	압축강도	KS F 4002	조	25,700	5	
	흡수율	KS F 4002	조	75,180	7	
콘크리트 벽돌	치수	KS F 4004	조	10,300	4	
	압축강도	KS F 4004	조	30,180	5	
	흡수율	KS F 4004	조	85,710	7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외압강도	KS F 4403	개	18,220	4	폐기물(시험잔재)처리 및 지게차 동원은 의뢰자가 별도부담
테라조 타일	치수	KS F 4035	조	10,640	4	
	꺾임강도	KS F 4035	조	22,550	5	
암석	압축강도	KS F 2519	조	67,440	5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조	67,060	7	
	탄성과 속도	시방서	조	44,630	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조	67,440	5	
	비중 및 흡수율	KS F 2530	조	67,06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콘크리트 교아	압축강도	KS F 2422	조	27,130	5	
상·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정하중	SPS-KFCA-M201-16 39	조	72,680	4	
콘크리트용 골재	입도	KS F 2502	건	48,17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8,00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3,25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7,23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9,37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7,970	7	
	안정성	KS F 2507	건	137,150	14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건	28,870	4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37,040	4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입도	KS F 2502	건	48,160	4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7,20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3,25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7,23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9,37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7,970	7	
	안정성	KS F 2507	건	137,150	14	
아스팔트용 골재	입도	KS F 2502	건	48,170	4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8,00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3,25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7,23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9,37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7,970	7	
	안정성	KS F 2507	건	137,150	14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건	28,870	4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37,040	4	
아스팔트용 부순골재	입도	KS F 2502	건	48,16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7,20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3,25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7,23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9,370	4	
	안정성	KS F 2507	건	137,150	1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7,970	7	
	동적수침후파괴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III-4	건	595,000	10	
	편장석률	KS F 2575	건	32,810	5	
	파쇄면 비율	KSF2357 부속서A	건	28,610	7	
	잔골재 공극율	KS F 2384	건	42,600	7	
도자기질 타 일	치수	KS L 1001	조	10,630	4	
	치수의불규칙도	KS L 1001	조	8,670	4	
	뒤틀림	KS L 1001	조	8,710	4	
	꺾임강도	KS L 1001	조	22,550	5	
	흡수율	KS L 1001	조	42,340	7	
	내균열성	KS L 1001	조	22,450	7	
	내마모성	KS L 1001	조	20,950	7	
	동결융해	KS L 1001	조	260,200	10	
	내약품성	KS L 1001	건	51,100	7	
보처도 포장용 판 석	치수	KS F 2530-1	조	10,9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휨강도	KS F 2530-1	조	36,830	5	
	흡수율	KS F 2530-1	조	49,89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점토비막 점토	치수	SPS-KCBIC 0002-1569 : 2009	조	10,300	4	
	휨강도	SPS-KCBIC 0002-1569 : 2009	조	35,520	5	
	흡수율	SPS-KCBIC 0002-1569 : 2009	조	75,79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치수	KS F 4561	조	10,930	4	
	유색층두께	KS F 4561	조	8,510	4	
	휨강도	KS F 4561	조	35,520	5	
	흡수율	KS F 4561	조	52,24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7,870	4	
강관말뚝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52,09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니오브 Nb)	KS D 1652	건	31,580	7	
	화학적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31,580	7	
	탄소당량	KS D 1652	건	40,010	7	
H형강 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6,2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구리 Cu)	KS D 1652	건	30,060	7	
	탄소당량	KS D 1652	건	38,500	7	
열간압연강 닐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6,23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30,060	7	
	화학성분 (구리 Cu)	KS D 1652	건	30,060	7	
	탄소당량	KS D 1652	건	38,500	7	
용접용열간 압연강닐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6,230	4	
	이음인장강도 (직선형강닐말뚝)	KS B 0802	개	52,090	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락볼트)	항복강도	KS B 0802	개	36,830	4	락볼트 시험종목 동일
	인장강도	KS B 0802	개	36,550	4	
	연신율	KS B 0802	개	36,830	4	
	굽힘성	KS B 0804	개	21,770	4	
	겉모양	KS D 3504	개	5,590	6	
	무게	KS D 3504	개	5,790	6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치수(마디높이)	KS D 3504	개	5,600	6	
	치수(마디평균간격)	KS D 3504	개	6,350	6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화학적분 (질소 N)	KS D 1652	건	25,240	7	길이 10cm
	탄소당량	KS D 1652	건	38,520	7	길이 10cm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36,83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36,550	4	
	연신율	KS B 0802	개	36,830	4	
	굽힘성	KS B 0804	개	21,770	4	
	결모양	KS D 3527	개	5,590	6	
	무게	KS D 3527	개	5,790	6	
	치수(마디높이)	KS D 3527	개	5,600	6	
	치수(마디평균간격)	KS D 3527	개	6,350	6	
재생 강재	인장강도	KS B 0802	개	36,55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36,830	4	
	연신율	KS B 0802	개	36,830	4	
	굽힘성	KS B 0804	개	21,770	4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36,44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인장강도	KS B 0802	개	36,330	4	
	연신율	KS B 0802	개	36,440	4	
	굽힘성	KS B 0804	개	21,050	4	
PC강봉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47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4,210	4	
	연신율	KS B 0802	개	24,470	4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6,120	7	길이 10cm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6,120	7	길이 10cm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26,120	7	길이 10cm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94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88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40	4	
	굽힘성	KS B 0804	개	18,870	4	
철근이음	가스압접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50,430	4	
	기계적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50,430	4	
	용접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50,430	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57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00	4	
	굽힘성	KS B 0804	개	20,96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70	7	5cm*5cm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70	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270	7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57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0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70	7	5cm*5cm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270	7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8,540	7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57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0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70	7	5cm*5cm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구리 Cu)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크롬 Cr)	KS D 1652	건	21,270	7	
	화학성분 (니켈 Ni)	KS D 1652	건	21,270	7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8,520	7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41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00	4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29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530	4	
	굽힘성	KS B 0804	개	20,92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200	7	
일반구조용 응집경량 H형강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38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53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53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200	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38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53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200	7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38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6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53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200	7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0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14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5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질소 N)	KS D 1652	건	21,340	7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8,590	7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95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50	4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14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6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95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340	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21,340	7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21,340	7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8,590	7	
고내후성 압연강재	인장시험(인장강도, 연신율,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290	4	
	굽힘성	KS B 0804	개	20,81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21,200	7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21,200	7	
조립용형강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97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510	4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52,090	4	
	연신율	KS B 0802	개	24,51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73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4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73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21,52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21,52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520	7	
구조용고장력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78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3,8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4,78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니켈 Ni)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크롬 Cr)	KS D 1652	건	21,540	7	
	화학성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21,540	7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항복강도	KS B 0802	개	24,78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4,780	4	
	연신율	KS B 0802	개	24,780	4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8,95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3,410	4	
	연신율	KS B 0802	개	23,41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철선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870	4	
회주철품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360	4	
구상흑연 주철품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36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8,87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8,87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8,87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8,87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8,870	7	
	화학적분 (마그네슘 Mg)	KS D 1652	건	28,870	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굽힘시험	KS B 0804	개	40,77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48,75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48,750	4	
	연신율	KS B 0802	개	48,750	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인장강도	KS B 0802	개	48,75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48,750	4	
	연신율	KS B 0802	개	48,750	4	
	굽힘시험	KS B 0804	개	40,490	4	
미끄럼방지 포장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7,510	4	
	체가름	KS F 2502	건	47,60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8,980	4	
	두께(수지)	KS F 2367	건	9,790	4	
	코아채취 (시내)	KS F 2350	건	196,220	4	1건 추가시 146,470
	코아채취 (시외)	KS F 2350	건	243,700	4	1건 추가시 146,470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미끄럼저항 시험(시내)	KS F 2375	조	81,030	4	1건 추가시 35,210
	미끄럼저항 시험(시외)	KS F 2376	조	126,690	5	1건 추가시 35,210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크사트리에)	KS L 5110	건	48,630	4	
	분말도	KS L 5106	건	37,00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38,230	4	
	압축강도 (3일)	KS L 5105	건	106,960	9	
	압축강도 (7일)	KS L 5105	건	106,960	14	
	압축강도 (28일)	KS L 5105	건	106,960	32	
	화학적분(강열감량)	KS L 5120	건	32,050	4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결보기밀도	KS M ISO 845	건	12,340	4	시험편제 작후 의뢰
	열전도율	KS L 9016	건	49,730	5	시험편제 작후 의뢰
	굴곡강도	KS M ISO 1209-1	건	21,480	4	시험편제 작후 의뢰
	압축강도	KS M ISO 844	건	17,200	4	시험편제 작후 의뢰
	흡수량	KS M 3809	건	15,060	5	시험편제 작후 의뢰
	연소성	KS M ISO 9772	건	120,740	12	시험편제 작후 의뢰
연강선재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5,56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5,56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5,56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25,560	7	
용접 구조용 주강품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21,680	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성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성분 (크롬 Cr)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성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21,680	7	
	화학성분 (니켈 Ni)	KS D 1652	건	21,680	7	
	탄소당량	KS D 1652	건	38,930	7	
토목용 부직포 섬유	무게	KS K ISO 9864	건	15,230	7	
	두께	KS K ISO 9863-1	건	21,450	7	
	인장강도, 신도	KS K 0743	건	39,700	7	
	투수계수	KS K 2630	건	48,350	7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아스팔트 함유량	KS F 2354	건	184,160	7	
플랜트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건	196,420	7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응결시간	KS L 5103	건	47,860	4	
	안정성	KS F 4925	건	90,920	30	
	압축강도	KS L 5105	건	279,010	31	
	물흡수계수	KS F 2609	건	313,920	24	
	투수비	KS F 4925	건	272,740	24	
	부착강도	KS F 4925	건	228,680	34	
건설용도막 방수제	인장성능(인장강도)	KS F 3211	건	84,220	5	시험편제작시 15일추가 (액상의뢰시)
	인장성능(신장률)	KS F 3211	건	84,220	5	
	인장성능(항장적)	KS F 3211	건	84,220	5	
	인열성능(인열강도)	KS F 3211	건	84,17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온도의존성/신장률(20℃)	KS F 3211	건	97,630	5	
	가열신축성상(신축률)	KS F 3211	건	144,880	12	
	열화후인장성능 가열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64,880	12	
	열화후인장성능 가열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64,880	12	
	열화후인장성능 알칼리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12,820	12	
	열화후인장성능 알칼리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12,820	12	
	열화후인장성능 산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12,820	12	
	열화후인장성능 산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12,820	12	
	신장시의 열화성상(가열처리)	KS F 3211	건	281,770	12	
	신장시의 열화성상(오존처리)	KS F 3211	건	431,430	12	
	고형분(1액형)	KS F 3211	건	15,100	4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인장강도(무처리)	KS F 4911	건	28,330	5	
	인장강도비(가열후)	KS F 4911	건	121,350	12	
	인장강도비(알칼리)	KS F 4911	건	28,330	12	
	신장률(무처리)	KS F 4911	건	28,330	5	
	신장률비(가열후)	KS F 4911	건	121,350	12	
	신장률비(알칼리)	KS F 4911	건	28,330	12	
	인열강도(무처리)	KS F 4911	건	29,730	5	
	가열신축성상	KS F 4911	건	136,090	12	
	신장시 열화성상(가열처리)	KS F 4911	건	134,000	12	
	신장시 열화성상(오존처리)	KS F 4911	건	280,920	12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접합성상(무처리)	KS F 4911	건	27,590	5	
	접합성상(가열후)	KS F 4911	건	180,410	12	
	접합성상(알칼리)	KS F 4911	건	28,960	12	
	치수	KS F 4911	건	9,900	5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인장강도(무처리)	KS F 4917	건	34,700	5	
	신장률(무처리)	KS F 4917	건	36,440	5	
	인장강도(가열후)	KS F 4917	건	179,210	12	
	신장률(가열후)	KS F 4917	건	212,950	12	
	인장강도(알칼리)	KS F 4917	건	34,800	12	
	신장률(알칼리)	KS F 4917	건	36,540	12	
	인열성능	KS F 4917	건	35,550	5	
	접합성능	KS F 4917	건	67,960	12	
	내열성능	KS F 4917	건	22,220	5	
	치수안정성	KS F 4917	건	171,870	16	
	내피로성능	KS F 4917	건	79,640	13	
	내음폭파임성능	KS F 4917	건	19,460	5	
	굴곡성능(무처리)	KS F 4917	건	38,620	5	
	굴곡성능(가열후)	KS F 4917	건	131,270	12	
	치수(두께)	KS F 4917	건	11,710	5	
수평창성벤토나이트 방수시트	단위면적무게	KS M 3736	건	23,140	6	
	벤토나이트 혼합물 부피팽창률	KS M 3736	건	14,630	8	
	낙구충격성	KS M 3736	건	19,370	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인장강도	KS M 3736	건	29,730	6	
	신장률	KS M 3736	건	29,730	6	
	인열강도	KS M 3736	건	29,730	6	
	누수(정수압)	KS M 3736	건	24,770	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부착강도	KS F 4715	건	261,630	34	
	흡수량	KS F 4918	건	318,810	27	
	내잔갈림성	KS F 4918	건	274,850	18	
	압축강도	KS F 4918	건	193,690	18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밀도 (비드법)	KS M 3808	건	14,300	4	시험가능두께 50~180mm
	흡수량 (비드법)	KS M 3808	건	18,480	5	
	연소성	KS M 3808	건	132,020	12	
	압축강도	KS M ISO 844	건	20,570	4	
	초기열전도율	KS L 9016	건	45,650	5	
	굴곡강도	KS M 3808	건	27,100	4	
하수슬러지	발열량	KS E 3707	건	23,470	7	
내화뿔철재	밀도	KS F 2901	건	13,380	3	
	부착강도	KS F 2902	건	95,440	5	
	부착강도(현장시험)	KS F 2902	건	201,180	7	
	부착강도(현장시험 1지점 추가시)	KS F 2902	건	57,090	7	
수성도료	1,2종/생동 안정성	KS M 6010	건	92,150	11	
	1종/적신도막은폐율	KS M 6010	건	55,030	5	
	1,2종/주도	KS M 5000-2122	건	14,450	6	
	1,2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6,39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1,2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5,400	5	
	1,2종/광택	KS M ISO 2813	건	14,480	5	
	1,2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9,430	5	
	1,2종/내세척성	KS M 5000-3351	건	26,910	10	
	1,2종/내알칼리성	KS M 6010	건	25,260	18	
	2종(1급)/저장안정성	KS M 5000-2031	건	210,400	18	
	2종/냄새	KS M 5000-2041	건	8,290	3	
	1,2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8,380	3	
	3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6,200	4	
	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8,380	3	
	3종/내수성	KS M 6010	건	11,580	8	
	3종/내알칼리성	KS M 6010	건	25,260	18	
유성도료	1종/광택	KS M ISO 2813	건	14,480	5	
	1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9,430	5	
	1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6,380	5	
	1종/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	10,740	4	
	1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8,290	5	
	2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6,510	4	
	2종/용기내상태	KS M 6020	건	8,380	3	
	2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9,430	5	
	2종/광택	KS M ISO 2813	건	14,480	5	
	2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6,38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 간 (일)	비고
	3종/내수성	KS M 6020	건	12,020	8	
	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8,380	3	
	3종/광택	KS M ISO 2813	건	14,480	5	
	3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9,430	5	
	3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6,740	4	
	3종/내굴곡성	KS M 6020	건	8,290	5	
	4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7,710	4	
	4종/비휘발 전색제분	KS M 5000-2112	건	17,490	5	
	4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9,430	5	
	4종/광택	KS M ISO 2813	건	14,480	5	
	4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8,380	3	
	4종/재도장	KS M 5000-2511	건	8,350	5	
아스팔트	공용성등급	KS F 2389	건	1,119,290	30	2021년하반기 부터 시험가능

2021 - 45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인정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호 칠장(남대칠)	정병호	남	1939. 5. 26.	남대칠기 제작	성북구 종암동 (이하 생략)
제1호 칠장(황칠)	홍동화	남	1945. 8. 18.	황칠	서대문구 연희동(이하 생략)
제23호 공장	권무석	남	1943. 3. 1.	활제작	중구 종림동(이하 생략)

2. 인정일 : 2021. 1. 18.

3. 인정의 이유 : 보유자 인정 이후 종목의 전승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최근 건강악화에 따른 전수 교육이 불가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보유자 인정은 해제함. 끝.

2021 - 47

3가

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 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 16.8.11.)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20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2.16.)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원	3,924.2	증) 38.8	3,963.0	기반시설 위치지정

※ 향후 측량성곽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24.2	증) 38.8	3,963.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078.7	증) 38.8	1,117.5	28.2	-
	도 로	201.9	증) 4.7	206.6	5.2	-
	공공청사	736.5	-	736.5	18.6	주민센터 (위치이전)
	공 원	140.3	증) 34.1	174.4	4.4	-
획지	소 계	2,845.5	-	2,845.5	71.8	-
	획 지	2,845.5	-	2,845.5	71.8	-

※ 향후 측량성곽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13	집산 도로	177 (42)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 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
기정	소로	1	a	10	집산 도로	90 (12)	을지로2가 88-4	장교동 22-20	일반도로	-	2007.5.17 (서고제132호)	공동분담
기정	소로	1	b	10	집산 도로	307 (6)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도로	-	2005.8.25 (서고제255호)	
기정	소로	3	a	6	특수 도로	42 (-)	을지로3가 65-2	을지로3가 65-19	보행자 전용도로	-	2016.10.6. (서고제310호)	-
변경	"	"	"	"	"	42 (20)	"	"	"	"	"	중복결정 (소로3-b)
신설	소로	3	b	7.4~7.6	특수도 로	20 (20)	을지로3가 335-1 (을지로 3가역)	을지로3가 65-1	지하도로	-	-	중복결정 (소로3-a) 및 입체적 결정

※ ()는 제12지구 내 편입 연장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a	소로3-a	• 소로3-b와 중복결정	• 을지로3가역(2·3호선)과 연계되는 지하도로(소로3-b) 신설에 따른 중복결정
-	소로3-b	• 지하도로 신설 - B=7.4~7.6m, L=20m	• 을지로3가역과 인접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설치를 통해 보행 통행여건 개선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3-b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3가 65-1번지 일원	길 이	-	증) 19.3m	19.3m	-	-
				폭	-	증) 1.6~2.1m	1.6~2.1m		
				높 이 (해수면 기준)	-	증) 16.77~23.58m	16.77~23.58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b	도로 (지하도로)	• 소로3-b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사유지 내 지하도로 부분에 대하여 입체적 결정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2)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원	역사 공원	을지로2가 101-43 일대	1,551.0	-	1,551.0 (174.4)	2016.10.6 (서고 제310호)	공동 분담

※ 주) ()는 제12지구 내 면적임

3)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동주민 센터	을지로3가동 65-10 일대	736.5	-	736.5	60 이하	600 이하	70 이하	2016.10.6 (서고 제310호)	-

라.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 변경

구 분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건축물 환산부지 (공공청사) (㎡)	계획기반 시설 내 기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고
사업시 행지구	12 지구	기정	3,924.2	2,845.5	1,078.7	-	-	505.9	572.8	16.8	-
		변경	3,963.0 (증 38.8)	2,845.5	1,117.5 (증 38.8)	16.1 (증 16.1)	-	510.9 (증 5.0)	622.7 (증 49.9)	18.0 (증 1.2)	

※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신설) 순부담면적 중 “공동분담” 면적은 공원2 부지(공원 및 도로) 내 을지로2가 101-23번지, 101-40번지, 101-46번지 총 213.7㎡로 지정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 및 추가기부채납(건축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 귀속)

기 정				변 경						
구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구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12지 구	계			1,078.7	제12지 구	계			1,117.5	
	을지로3가	65-7	도로 및 공공 청사	183.1		을지로3가	65-7	도로 및 공공 청사	183.1	
		65-8		303.5			65-8		303.5	
		65-9		93.2			65-9		93.2	
		65-6	공공 청사	45.0			65-6	공공 청사	45.0	
		65-10		118.7			65-10		118.7	
		65-11		37.5			65-11		37.5	
		65-12		26.3			65-12		26.3	
		65-24		96.5			65-24		96.5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174.9	을지로2가		공동 분담	101-23	도로 및 공원	33.1	213.7 (증) 38.8)
							101-40	92.6		
							101-46	88.0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신설) 정비기반시설 중 지하도로(소로3-b)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 분	위 치		지 목	면적(㎡)		무상양도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12지구	을지로3가	65-13	기정 대	499.8	499.8	499.8	중구청	
			변경 대	504.8 (증) 5.0)	504.8 (증) 5.0)	504.8 (증) 5.0)	중구청	
		335-1	기정 도	12,183.1	6.1	6.1	국(국토교통부)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제12지구내 동 주민센터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현 건축물 연면적(1,256.4㎡)의 동일한 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과 협의에 따라 연면적이 추가 발생될 시 추가되는 면적만큼은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변경사유 : 을지로3가 65-13번지(499.8㎡)와 65-21번지(5㎡)의 토지합병(2019.4.23.) 사항 반영

(3)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12지구	을지로3가	65-7	기정	대	183.1(5.14/69)	183.1(5.14/69)	국(기획재정부)	전부
		65-21	기정	대	5.0	5.0	중구청	전부
			변경	-	- (감) 5.0)	- (감) 5.0)	-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을지로3가 65-13번지로의 토지합병(2019.4.23) 사항 반영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 구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641.6	제12지 구	2,845.5	을지로3가 65-14 일원	업무 · 숙박 · 주거	60이하 단, 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최대80%) 근현대건축물 보존시 완화 (최대80%)	600/ 800이하 /-	최고 70m이하	-
변경						업무	60이하 (저층부 69이하)	1,004 이하		

※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에 따른 용도로서 “업무·숙박·주거”의 경우 도심부내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용도로 계획 할 수 있음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름

※ 제12지구 외 기재 생략

■ 변경사유 :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저층부 건폐율 완화 및 상한용적률 적용

건축물 건폐율·용 적률 완화 관련 사항 (신설)	건폐율	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저층부 건폐율 완화 : 69% 이하						
		저층부 건폐율 완화 ※ 5층, 20m 이하		산식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60% × [1+622.7㎡ ÷ 3,963㎡] = 69.42%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80% 적용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 등급 준수시 100%	100%	100%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 이상(비주거)							
역사 보전	옛길/물길 복원 및 재현	역사도심 기본계획 관리 지침에 적합하게 조성	정량 부여	50%	50%			
계획 유도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정량 부여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24.8%								
		공공시설등 제공	산식 = 1.3×(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3항에 의거 산정된 용적률)(%) = {1.3×(토지606.6㎡÷2,845.5㎡) + 0.7×(건축물 환산부지16.1㎡ ÷ 2,845.5㎡)} × 800% = {(1.3 × 0.21317) + (0.7 × 0.00565)} × 800% = 224.8%					
※ ① + ② + ③ = 1,004.8% → 1,004%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저층부 건축지정선(건축물 외벽이 2/3이상 접하여 함) : 을지로변(3층)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을지로변 6m ※ (신설) 저층부 건축지정선 : 공개공지, 보행동선(골목길), 옛 물길 흔적 표현구간 등 정비계획 반영에 대한 필요성 인정 시 건축지정 선을 충족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음						
대지내 공지		• 을지로변에 대지내 조정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보행안전구간 최소 2m(권장 3m)를 확보(무장애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에너지 등에 관한 계획		•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70% 이상 LED 적용						
기타	기정	• 시행지구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지하철 출입구, 변압기 등)은 획지 또는 건축물 내로 이전 설치 • 문화재 발굴조사 시 시민들이 발굴조사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람대 설치 및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확보하고, 보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비용 부담 • 구역내 조성되는 도로 내 보도 및 보도형 전면공지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10계명’ 을 준수하여 설치						
	변경	• 시행지구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지하철 출입구, 변압기 등)은 폭원 조정, 외관 개선 등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 및 이미지 제고 • 문화재 발굴조사 시 시민들이 발굴조사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람대 설치 및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확보하고, 보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비용 부담 • 구역내 조성되는 도로 내 보도 및 보도형 전면공지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10계명’ 을 준수하여 설치						

- 변경사유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가이드라인 ('20.8) 반영 등에 따른 저층부 건축지정선 단서조항 신설 및 환기구 관련기관 의견 반영 등에 따른 기타사항 변경

3.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을지로변 저층부 통합기준

가. 제12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 정비계획부문

구 분	내 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780%, 상한용적률 1,004% 이하
건폐율	• 60% 이하 • 저층부(5층 이하, 20m 이하) 69% 이하
층수/높이	• 70m 이하로 계획(저층부: 5층 이하/20m 이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 18.0% 이상 ※ 지구별 공동분담으로 역사공원 1개소 조성
세입자 보호대책 (인센티브×)	• 건축물 내 임대상가 조성, 우선임차권(5년) 제공 및 임대료 감면(준공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 대상 : 건축자재 업종 기존 세입자 중 입주 희망자(구역지정 당시 영업자) • 임시상가 확보(필요시 12지구 공원부지 내 또는 6지구 임시상가 활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저층부 건축지정선(건축물 외벽이 2/3이상 접하여 함) : 을지로변(3층) 3m ※ 공개공지, 보행동선(골목길), 옛 물길 흔적 표현구간 등 정비계획 반영에 대한 필요성 인정 시 건축지정선을 충족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을지로변 6m
공개공지	• 단지 내 주요 보행동선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지역 커뮤니티 강화 도모 ※ 공개공지의 배치 구간은 결정도를 따름
가로활성화용도	• 을지로와 면한 구간 내에는 을지로의 경관 및 가로활성화 등 고려하여 열린가로로 조성
산업시설 배치구간	• 기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산업시설 배치구간을 의무적으로 적용 - 산업시설은 총무로9길변으로 우선 조성
보행동선 (건축물 1층)	• 건축물 내 기존 을지로3가구역 일대의 흔적과 자산을 살린 보행동선(골목길) 조성 ※ 추후 을지로3가구역 일대의 1층의 보행동선(골목길)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옛물길 흔적 표현구간	• 옛 물길(이전동천) 흔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바닥에 패턴(마감재료 또는 조명 등)으로 조성

※ 상기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와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야 함

2) 건축계획부문

구 분	내 용
저층부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로비의 입체화(2층)를 통해 인지성 및 개방감 확보 - 지역의 특색을 담은 소상가 중심의 배치(연속된 보행가로 조성(골목길)) -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산업시설 조성
단지경관에 관한 사항	을지로변 고려한 건축형태 및 배치 필요하며, 공개공지, 가로활성화용도, 공공청사 등과 연계한 가로경관계획 수립
교통 및 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정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 준수 - 건축물 저층부는 가능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보행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유도를 통해 골목길 커뮤니티 조성
공개방형 시설	- 가로활성화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지상1~2층 범위에 설치하며 대지에서 직접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로, 계단 등 설치 - 개방형화장실은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설치
입면계획	- 을지로의 흔적을 담은 차별화된 입면 계획 제시 -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을 부여하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획 제시 - 산업시설 배치구간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은 가로변으로 면하도록 조성
옥상 특화계획	저층부 옥상(기단부)에는 을지로변 조망을 공유할 수 있는 입주자 휴게공간 조성
열린가로변 (을지로13길:동측)	을지로3가역(2호선)~보행자전용도로~노가리골목으로 연결되는 가로로, 연속된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 조성
특화가로변 (충무로9길:북측)	- 기존 산업 활성화 특화거리로 조성, 산업시설 용도 우선 도입 - 임대상가-옛 물길~보행가로(골목길)~공개공지 연계 조성하여 개방감 및 인지성 확보

※ 상기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와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야 함

나. 을지로변 저층부 통합기준

구 분	내 용
도입용도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저층부(1~2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1층 지정용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건축물 배치 및 동선	- 지역 특색을 담은 소규모 상가 중심의 배치 및 연속된 보행가로(골목길) 조성(1층) - 을지로와 이면부 연결 열린가로 1~2개 이상 설치, 인접 건축물 저층부와 보행동선 연계 - 저층부(3층이하) 건축지정선 3m - 건축물 벽면이 건축지정선의 2/3 이상 접합(골목길, 공개공지 등 접한 것으로 인정)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 가능한 출입구 설치
입면	- 을지로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저층부 입면 계획 - 가능한 입체적이고 다층적 공간으로 구성 권장, 을지로 특색 담은 외관디자인 등 - 건축물 재료·색채·높이 등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고려
외부공간 및 지장물	-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전면공지(3m)로 조성 - 보도와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성하고, 1층 바닥높이 단차 최소화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등 열린공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및 휴게공간 확충 - 을지로에 위치한 분전함, 환기구 등은 복원 축소 및 외관 개선 등을 통해 보행 여건 개선 및 가로환경 이미지 제고

4. 기타사항

- 2020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 조건사항 ' 이행

- 대상지는 도심산업 밀집지역인 바,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가이드라인' 상 주요내용(도심산업 보호, 산업시설 배치구간 등)을 적극 반영하여 '연접 가로변으로 산업시설 추가 확보', '기존 세입자 재입주 여부 재확인'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것
- 교통처리계획 관련 획지 및 공공청사의 차량진출입구를 별도로 계획하였으나, 북측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통합계획을 적극 검토할 것
- 향후 건축심의시 을지로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향후 공공청사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안)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칠 것
- ※ 주관부서에서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관련 향후 제13지구 지하공공보행통로계획시 북측 도로(을지로 13길)로 연계되는 출입구가 조성되도록 조치할 것

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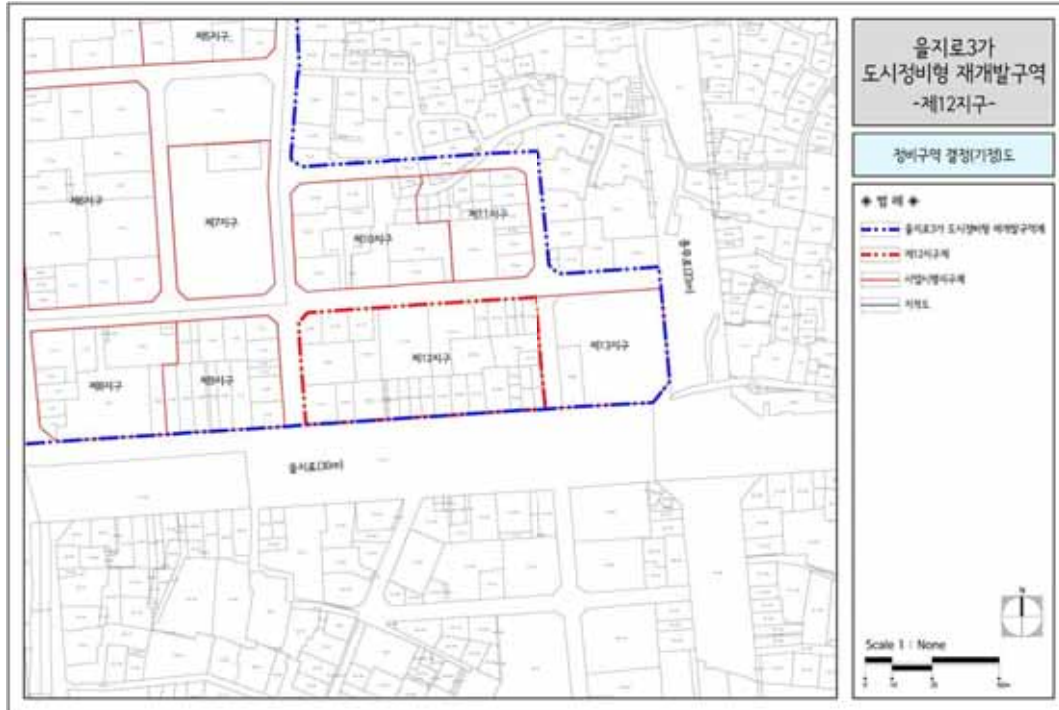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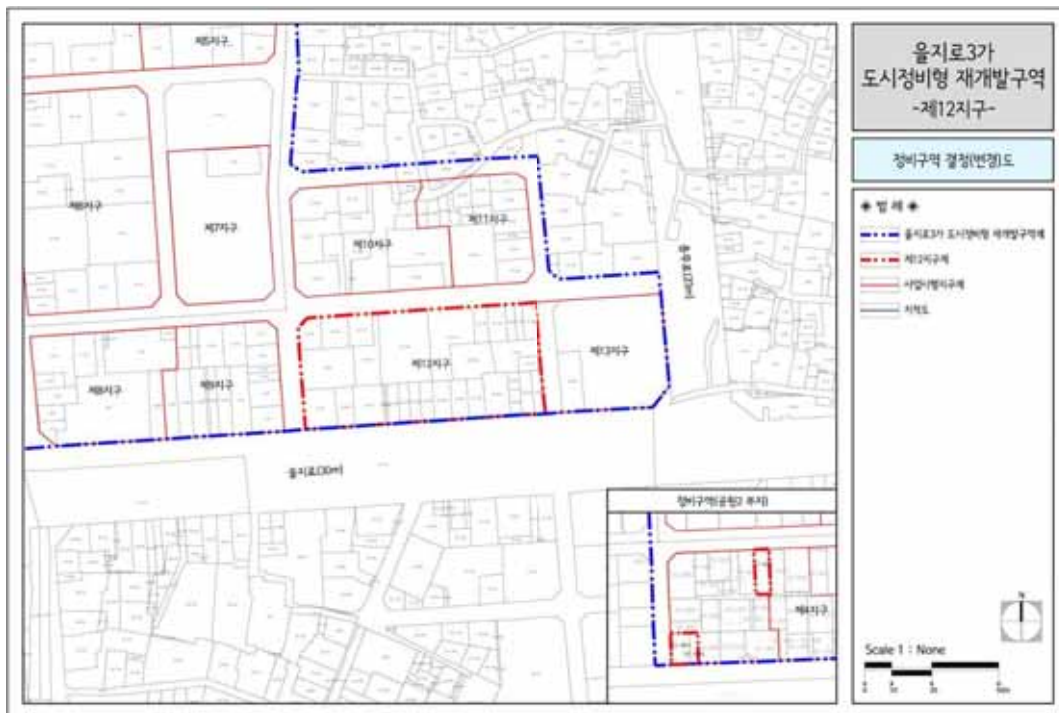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33)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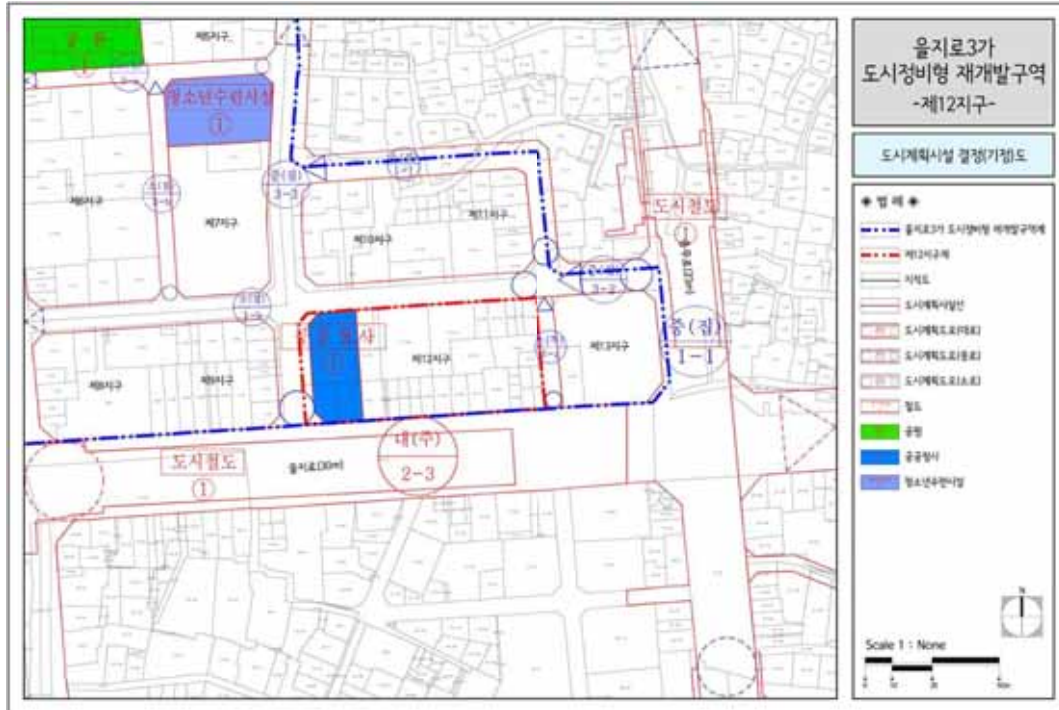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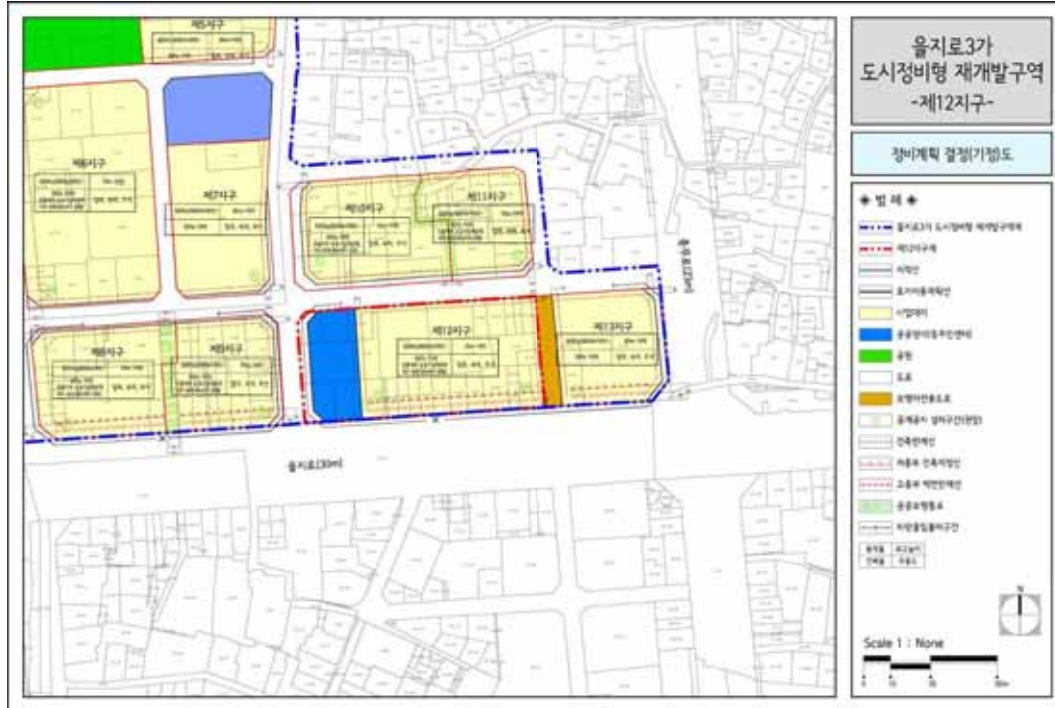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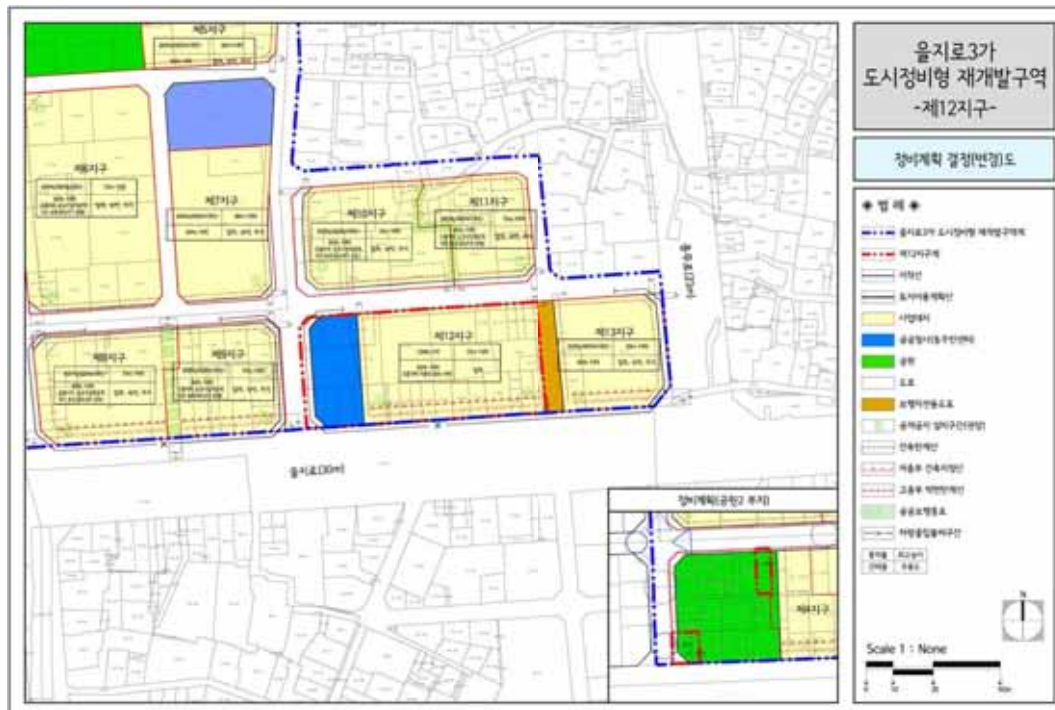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2021 - 4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0.5.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마장역 일대 불합리한 토지이용 정비와 역세권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한전물류센터 이전 및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	-	증) 156,805	156,80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	156,805	• 저층·노후건축물 밀집, 각종기능의 혼재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의 마장역 세권 정비를 통해 한전물류센터 이전부지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춘 마장역 주변 전체적인 공간구조 구상 수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6,805	-	156,805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5,450	-	95,450	60.9	
	제2종일반주거지역	5,213	-	5,213	3.3	
	제3종일반주거지역	56,142	-	56,142	35.8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5	3,582 (3,282)	47,013 (44,013)	1	277	1,848	8	1,682	26,729	6	1,623 (1,323)	18,436 (15,436)
대로	1	450	17,020	-	-	-	1	450	17,020	-	-	-
중로	3	1,381 (1,081)	16,892 (13,892)	1	277	1,848	-	-	-	2	1,104 (804)	15,044 (12,044)
소로	11	1,751	13,101	-	-	-	7	1,232	9,709	4	519	3,392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연장·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43	보조간선도로	450	마장동 807	마장동 삼거리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중로	1	(1)	24	집산 도로	277	마장동 781-15	마장동 779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중로	3	(1)	12~24	국지 도로	458	사근동 293-2	마장동 766-51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59 (346)	마장동 769-1	마장동 521-8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변경	중로	3	(2)	10~12	국지 도로	659 (346)	마장동 769-1	마장동 521-8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10	마장동 773-2	마장동 767-1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510	마장동 773-2	마장동 767-1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가각부 일부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73	마장동 769-5	마장동 767-14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17	마장동 768-12	마장동 769-4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317	마장동 768-12	마장동 769-4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가각부 일부 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0	마장동 772-4	마장동 771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35	마장동 792	마장동 792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9	마장동 791-12	마장동 791-12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8	마장동 780-2	마장동 781-2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0	마장동 772-6	마장동 772-2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9	마장동 791-8	마장동 791-10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52	마장동 783-5	마장동 792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기정	소로	3	(4)	6~8	국지 도로	198	마장동 777-2	마장동 808-1	일반	-	1967.11.04. (서공고 제176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중로3-(2)	• 도로 확폭 - 폭원 = 10m → 10~12m	• 마장역~마장축산물시장 간 보행연결성 강화 및 마장초·중학교 통학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소로2-(1)	소로2-(1)	• 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1-(1) → 중로3-(2) 확폭에 따른 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2-(3)	소로2-(3)	• 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1-(1) → 중로3-(2) 확폭에 따른 가각부 일부 변경

(2)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 철도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79일대	-	47,400 (449)	- (3,368)	1990.10.13. (건고시제695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연장, 면적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마장정거장 (5호선)	성동구 마장동 772번지 일대	4,916.5	-	4,916.5	1990.10.13. (건고시제695호)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자동차 정류장	-	마장동 781-2	1,874	-	1,874	1979.06.30. (서울특별시고시 제278호)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마장동 780-1	1,090.9	-	1,090.9	1977.0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52호)	동마장 공원

(2)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 공지	-	마장동 770-9	340.2	-	340.2	2018.11.15.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호)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최대 개발 규모	간선부	• 2,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기존 필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필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주거 지역
	이면부	• 1,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기존 필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필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③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④ 필지형태 정형화 등을 위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우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공동개발

■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마장동 781-5, 781-17	• 맹지형 필지로서 인접하여 동일소유자 대지가 있는 경우	
	마장동 781-3, 781-8		
	마장동 767-12, 767-52		
공동개발 (특별지정)	마장동 770-1, 770-3, 770-15	• 기반시설(도로)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특별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일반 주거 지역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결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불허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	765-1대	39,567.0	39,567.0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2	770-1대	396.0	4,763.6	공동개발 특별지정 (1,464.4㎡)	자율적 공동개발	-
	770-3대	661.1				
	770-15대	407.3				
	770-10대	200.0				
	770-11대	352.1				
	770-12대	202.3				
	770-13대	251.9				
	770-14대	198.3				
	770-2대	198.4				
	770-4대	231.7				
	770-5대	330.6				
	770-6대	663.1				
	770-8대	330.6				
	770-9대	340.2				
3	771대	189.4	3,098.8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3 특별계획구역	
	771-4대	316.7				
	771-7대	714.7				
	771-5대	288.9				
	771-6주	794.5				
	771-8대	794.6				
4	772-1대	1,257.0	3,520.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772-3대	468.4				
	772-4대	398.9				
	772-5대	256.8				
	772-6대	366.8				
	772-2대	209.6				
	772-7대	186.6				
	772-8대	376.2				
5	773-1대	974.1	3,338.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1 특별계획구역	
	773-2대	771.0				
	773-7대	59.1				
	773-3대	803.1				
	773-5대	400.2				
	773-6대	330.7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	가구면적 (㎡)	계획내용	비고
6	782-1대	429.1	2,168.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1 특별계획가능구역
	782-4대	230.4			
	782-6대	438.0			
	782-2대	535.4			
	782-7대	535.3			
7	791-1대	661.2	2,558.5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2 특별계획가능구역
	791-12대	594.7			
	791-2대	255.5			
	791-3대	193.4			
	791-4대	2.6			
	791-5대	10.2			
	791-6대	64.1			
	791-7대	12.9			
	791-8대	323.3			
	791-10대	123.6			
	791-11대	5.6			
	791-9대	311.4			
8	792대	2,409.6	2,409.6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마장역세권3 특별계획가능구역
9	769-1대	1,838.0	3,606.0	자율적 공동개발	-
	769-4대	181.3			
	769-5대	392.9			
	769-8대	247.7			
	769-9대	205.5			
	769-3대	740.6			
10	767-36대	257.2	1,859.7	자율적 공동개발	-
	767-40대	239.4			
	767-41대	306.1			
	767-42대	272.8			
	767-44대	119.7			
	767-46대	262.5			
	767-48대	129.6			
	767-45대	152.7			
	767-47대	119.7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1	767-12대	264.8	13,080.9	공동개발지정 (455.2㎡)	자율적 공동개발	-
	767-52대	190.4		-		
	767-14대	1,246.3				
	767-15대	396.7				
	767-17대	109.8				
	767-18대	106.4				
	767-19대	106.4				
	767-21대	186.1				
	767-22대	106.4				
	767-23대	106.4				
	767-24대	206.3				
	767-26대	99.8				
	767-27대	99.8				
	767-28대	142.8				
	767-30대	259.2				
	767-31대	142.8				
	767-32대	149.4				
	767-34대	259.2				
	767-35대	132.9				
	767-4대	129.6				
	767-5대	722.3				
	767-55대	95.9				
	767-59대	501.4				
	767-6대	753.7				
	767-7대	429.8				
	767-8대	695.5				
	767-13대	1,117.5				
	767-56대	3,028.0				
	767-62대	612.9				
	767-1대	682.4				
12	781-5대	110.7	5,324.0	공동개발지정 (278.5㎡)	자율적 공동개발	-
	781-17대	167.8		공동개발지정 (886.6㎡)		
	781-3대	718.0				
	781-8대	168.6		-		
	781-1대	525.4				
	781-10대	380.5				
	781-13대	107.8				
	781-14대	78.6				
	781-15대	311.1				
	781-2대	1,881.3				
	781-9대	495.9				
	781-16대	209.7				
	781-7대	168.6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3	777-1대	353.7	4,526.5	자율적 공동개발	-
	777-2대	344.1			
	777-4대	827.8			
	777-6대	313.3			
	777-7대	276.5			
	777-13대	462.2			
	777-3대	395.7			
	777-8대	463.9			
	829대	1,089.3			
14	778-13대	177.2	6,807.9	자율적 공동개발	-
	778-14대	199.7			
	778-16대	266.5			
	778-17대	172.2			
	778-3대	397.7			
	778-7대	395.7			
	779대	676.7			
	808-1대	333.1			
	778-1대	1,034.3			
	778-12대	241.4			
	778-15대	180.4			
	778-18대	313.5			
	778-2대	1,034.1			
	778-4대	445.2			
	778-5대	757.1			
	778-8대	183.1			
15	768-10대	327.3	7,972.7	자율적 공동개발	-
	768-11대	726.9			
	768-16대	412.0			
	768-2창	902.7			
	768-3대	572.6			
	768-5대	514.7			
	768-7대	598.7			
	768-8대	503.5			
	768-12대	551.4			
	768-17대	1,022.2			
	768-18대	165.3			
	768-6대	421.2			
	768-9대	150.4			
	768-1대	1,103.8			
16	780대	973.0	2,560.0	자율적 공동개발	-
	780-1공	1,090.9			
	780-2대	496.1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불허용도		비고
불허1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이면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불허2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이면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불허3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간선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용도완화

■ 용도완화 결정조서

도면표시	내 용		비 고
용도완화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이면도로변, 마장로변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건폐율계획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용적률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상한용적률

$$\text{허용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 α 현금 : 건축물만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text{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text{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cdot \text{환산부지 면적}(m^2)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text{현금 기부채납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m^2)}$$

■ 용도지역 상향 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만큼 허용

구분	산정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특별계획구역 포함)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3)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공동개발 특별지정

－ 공동개발 특별지정 이행 시 용적률 완화

공동개발 필지 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2필지	10% 이하	-
3필지	20% 이하	-

※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함

※ 동일소유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함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

도면표시	최고높이	비 고	
1	• 6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2	• 30m 이하	-	이면부
3	• 40m 이하	-	
4	• 용도지역 · 지구의 건축제한에 따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건축물 배치 · 형태 ·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마장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후퇴	결정도의 결정내용에 따름
	보행우선가로 및 정계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이상 후퇴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1m 이상 후퇴	
	마장동 781-15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이상 후퇴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형태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전체	분절 및 분할 (권장)	•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구분, 창호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청계천변
	발코니/ 난간 디자인 (권장)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 있게 계획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청계천변
1층부	개구부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마장로변
	투시형 벽면/ 셔터 (규제)	•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마장로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디자인 (규제)	• 청계천변에 면한 1층 벽면적 중 개구부 면적이 50% 이하로서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	청계천변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마장로변, 이면도로변, 청계천변
		• 가로에 접하는 건물 및 상업용도 건물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마장로변
지붕부	평지붕 (권장)	• 에너지 절약 측면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전체면적의 40%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권장	마장로변, 이면도로변, 청계천변
	파라펫 차폐 디자인 (권장)	• 건축물 옥상부에 FRP물랭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 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마장로변, 청계천변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재료	통일성 (권장)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마장로변, 이면도로변, 청계천변
	반사성 재료 금지 (권장)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마장로변
	조화로운 천연재료 사용 (권장)	- 외벽은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을 권장 -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콘크리트, 스테코 등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 권장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 고려	청계천변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적용	마장로변, 이면도로변, 청계천변

■ 가로경관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차양설치	수평분할요소 적용 후 어닝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형공간 및 캐노피(어닝 포함) 등의 설치를 권장	청계천변
담장 및 응벽	식재형/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청계천변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美)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통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마장로변, 이면도로변, 청계천변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구역 전체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차도부속형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공개공지	구역 전체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도로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마장로변	•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도면표기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마장로변	•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라 진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	도면표기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환경친화적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2017.12.)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증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04.)' 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권장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마장동 765-1	39,567.0	마장 한전물류센터 (이전예정)
신설	마장역세권1 특별계획구역	마장동 773-1 외 5개 필지	3,338.2	-
신설	마장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마장동 772-1 외 7개 필지	3,520.3	-
신설	마장역세권3 특별계획구역	마장동 771-6 외 5개 필지	3,098.8	-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 39,567.0㎡			
계획목적	•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연계거점으로 도시기능회복 및 경제 활성화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역할 수행 • 주거·판매·업무·공공시설 등을 통한 복합개발을 유도			
용도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따름)			
건축물 용도	불허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4의 용도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권장1의 용도
	지정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용도 완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생활권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세부용도 설정	※ 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지정1의 용도
		• 공동주택 설치 시 전체 세대 수의 40%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설치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높이		• 6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배치 형태	• 마장로35나길 변 보행친화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등)배치 및 공개공지, 주차장(지하) 설치 권장 • 마장로37길 변 연도형 상가 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권장 • 건축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등은 이용자 접근성, 마장축산물시장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주요 결절점과 연계하여 집중 설치										
	전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전면공지를 차도부속형으로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경우,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폭원이 3m 이상이 되어야 함 (필요 시 건축한계선 조정)										
교통 처리계획		• 마장로35나길은 보행연결성 강화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분리 및 적정 보도폭원 확보 • 마장로35나길 변 교차로에 출입구가 형성되지 않도록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0% 이상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공공시설등 제공</th></tr></thead><tbody><tr><td>도로</td><td>• 한전물류센터 남측으로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단축을 위해 8m 확폭</td></tr><tr><td rowspan="2">도로 외</td><td>•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td></tr><tr><td>• 우선순위 : 문화시설 / 공공청사 / 공원 · 주차장 / 체육시설 / 복지시설 등 (복합설치 가능) / 임대주택</td></tr><tr><td></td><td>•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정하는 지역필요시설 포함 가능 (예시 : 축산물 관련 R&D 연구시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센터, 축산물 판매 관련 상업가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td></tr></tbody></table>	공공시설등 제공		도로	• 한전물류센터 남측으로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단축을 위해 8m 확폭	도로 외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 우선순위 : 문화시설 / 공공청사 / 공원 · 주차장 / 체육시설 / 복지시설 등 (복합설치 가능) / 임대주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정하는 지역필요시설 포함 가능 (예시 : 축산물 관련 R&D 연구시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센터, 축산물 판매 관련 상업가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	
공공시설등 제공												
도로	• 한전물류센터 남측으로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단축을 위해 8m 확폭											
도로 외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 우선순위 : 문화시설 / 공공청사 / 공원 · 주차장 / 체육시설 / 복지시설 등 (복합설치 가능) / 임대주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정하는 지역필요시설 포함 가능 (예시 : 축산물 관련 R&D 연구시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센터, 축산물 판매 관련 상업가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											
비고		• 생활권계획 및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 변경 수립가능. 단,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보 및 교통체계개선 방안 필요 • 향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될 시, 협상 결과에 따라 지침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구역

■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1	2	3																			
		3,338.2㎡	3,520.3㎡	3,098.8㎡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에 따라 구역 분할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구 내 미개발 잔여면적이 최소 300㎡ 이상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준주거지역 상향(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적정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통한 준주거지역 상향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따름)																					
공동개발	지정	• 인접하여 동일소유자 대지가 있는 경우 • 교차로 등 차량진출입 설치가 제한될 경우		공동개발 결정조서에 따름																			
	권장	• 공동개발 이후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 • 대지형태 정형화																					
건폐율		• 60%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 시)																					
용적률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 colspan="2">공동개발 권장 이행 시</td><td>250%</td><td>350%</td><td>400%</td></tr><tr><td rowspan="2">공동개발 권장 미이행 시</td><td>[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이상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td><td>250%</td><td>310%</td><td>350%</td></tr><tr><td>[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미만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td><td>250%</td><td>290%</td><td>310%</td></tr></table>				구분		기준	허용	상한	공동개발 권장 이행 시		250%	350%	400%	공동개발 권장 미이행 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이상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	250%	310%	35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미만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	250%	290%
구분		기준	허용	상한																			
공동개발 권장 이행 시		250%	350%	400%																			
공동개발 권장 미이행 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이상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	250%	310%	35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지면적 300㎡ 미만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	250%	290%	310%																			
높이		• 간선부 : 60m 이하 • 이면부 : 50m 이하 ※ 단, 공동개발(권장) 이행 시 80m 이하																					
건축한계선		• 마장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후퇴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마장로변 :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이면도로변 : 이면부 교차로에 출입구가 형성되지 않도록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 마장로변 : 공동개발(권장) 미이행에 따라 마장로에서의 진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차량진출입 허용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지정	저층부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저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 지정2의 용도 - 지정용도 이행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지상층연면적 산정 시 저층부 지정용도 및 공공기여(공공시설등)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제외
	지정	전층 (단, 상한용적률이 310%로 제한된 경우 적용 예외)	- 업무시설 - 공동주택(신혼부부주택) -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36㎡ ~ 60㎡ -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이 전용면적 36㎡~45㎡ - 신혼부부 거주편의를 위한 다음의 시설기준 충족 [의무사항] - 거실과 별도로 구획된 1개 이상의 '침실' 확보 - 침실의 크기는 최소 11.5㎡ 이상 - 가족구성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설치 [권장사항] -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할 것 - 활용 가능한 세탁, 건조공간 마련 - 접이식 보행기 등을 위한 수납공간 마련	주차장, 저층부 지정용도, 공공시설등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건축물 용도	불허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불허5의 용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 기준 :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5%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계획 수립 (가구 내 개발 단위 별 개발의사 고려 / 인접지역 개발계획 고려)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공공시설등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table><tr><th colspan="2">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th><th>집행방안</th></tr><tr><td>1</td><td>도로 확폭</td><td>-계획지침도 참조</td></tr><tr><td>2</td><td>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td><td>-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 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td></tr></table>		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		집행방안	1	도로 확폭	-계획지침도 참조	2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 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	• 도로 확보 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		집행방안																																										
	1	도로 확폭	-계획지침도 참조																																										
	2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 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																																										
용적률 인센티브	• 계획유도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70% 이하 <table><tr><th colspan="2">항목</th><th>산정기준</th><th>비고</th></tr><tr><td colspan="2">공동개발(권장) 준수</td><td>• 기준용적률 X 0.16</td><td></td></tr><tr><td rowspan="2">지정용도 및 건축 한계선 준수</td><td>허용용적률 310% 또는 350%</td><td>• 기준용적률 X 0.12</td><td></td></tr><tr><td>허용용적률 290%</td><td>• 기준용적률 X 0.08</td><td></td></tr></table> • 친환경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30% 이상 <table><tr><th>항목</th><th>구분</th><th>산정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8">친환경 계획 요소</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td><td rowspan="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td></tr><tr><td>에너지효율 등급인증</td><td>•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td></tr><tr><td>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td><td>•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td></tr><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 x 0.04</td><td>•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r><tr><td>빗물이용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 x 0.04</td><td>•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 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이 되도록 설치</td></tr><tr><td>옥상녹화</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td><td>•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td></tr><tr><td>자연지반보존</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td><td>•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td></tr><tr><td>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td><td>• 기준용적률 0.05 이내</td></tr></table>			항목		산정기준	비고	공동개발(권장) 준수		• 기준용적률 X 0.16		지정용도 및 건축 한계선 준수	허용용적률 310% 또는 350%	• 기준용적률 X 0.12		허용용적률 290%	• 기준용적률 X 0.08		항목	구분	산정기준	비고	친환경 계획 요소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 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항목		산정기준	비고																																									
	공동개발(권장) 준수		• 기준용적률 X 0.16																																										
	지정용도 및 건축 한계선 준수	허용용적률 310% 또는 350%	• 기준용적률 X 0.12																																										
		허용용적률 290%	• 기준용적률 X 0.08																																										
	항목	구분	산정기준	비고																																									
	친환경 계획 요소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 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결정조서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	면적(㎡)	계획내용		비고
3	771대	189.4	1,220.8	공동개발권장		마장역세권3 특별계획구역
	771-4대	316.7				
	771-7대	714.7				
	771-5대	288.9	1,878.0	-	공동개발권장	
	771-6주	794.5		공동개발지정		
	771-8대	794.6				
4	772-1대	1,257.0	2,124.3	공동개발권장		마장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772-3대	468.4				
	772-4대	398.9				
	772-5대	256.8	1,396.0	공동개발권장		
	772-6대	366.8				
	772-2대	209.6				
	772-7대	186.6				
	772-8대	376.2				
5	773-1대	974.1	1,804.2	-	공동개발권장	마장역세권1 특별계획구역
	773-2대	771.0		공동개발지정		
	773-7대	59.1				
	773-3대	803.1	1,534.0	공동개발권장		
	773-5대	400.2				
	773-6대	330.7				

※ 단, 773-1번지와 773-7번지가 공동개발할 경우, 773-7와 773-2번지의 공동개발(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봄

3.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마장역세권1 특별계획가능구역	마장동 782-1 외 3개 필지	2,168.2	-
신설	마장역세권2 특별계획가능구역	마장동 791-1 외 11개 필지	2,558.5	-
신설	마장역세권3 특별계획가능구역	마장동 792	2,409.6	-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가능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은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 단,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가.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가능구역

■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1	2	3	
		2,168.2㎡	2,558.5㎡	2,409.6㎡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성에 따라 구역 분리 가능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준주거지역 상향(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적정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통한 준주거지역 상향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따름)			
건폐율		• 60%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 시)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이하, 허용용적률 : 350%이하, 상한용적률 : 400%이하			
높이		• 80m 이하			
건축한계선		• 마장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후퇴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마장로변 :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이면도로변 : 이면부 교차로에 출입구가 형성되지 않도록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지정	저층부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저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 지정2의 용도 - 지정용도 이행 시 허용용 적률 인센티브 제공 - 지상충면적 산정 시 저 층부 지정용도 및 공공기 여(공공시설등)에 해당하 는 바닥면적 제외
		전층	- 업무시설 - 공동주택(신혼부부주택) -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36㎡ ~ 60㎡ -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이 전용면적 36㎡~45㎡ - 신혼부부 거주편의를 위한 다음의 시설기준 충족 [의무사항] ① 거실과 별도로 구획된 1개 이상의 '침실' 확보 ② 침실의 크기는 최소 11.5㎡ 이상 ③ 가족구성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설치 [권장사항] ①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할 것 ② 활용 가능한 세탁, 건조공간 마련 ③ 접이식 보행기 등을 위한 수납공간 마련	주차장, 저층부 지정용도, 공공시설등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지상충 면적의 50% 이상 설치	
건축물 용도	불허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로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불허5의 용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 기준 :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5%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계획 수립 (가구 내 개발 단위 별 개발의사 고려 / 인접지역 개발계획 고려) •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공공시설등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 <table><tr><th colspan="2">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th><th>집행방안</th></tr><tr><td>1</td><td>도로 확폭</td><td>-계획지침도 참조</td></tr><tr><td>2</td><td>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td><td>-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td></tr></table>	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		집행방안	1	도로 확폭	-계획지침도 참조	2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	• 도로 확보 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공공기여(공공시설등) 항목 및 우선순위		집행방안																																									
	1	도로 확폭	-계획지침도 참조																																									
2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이상 (전용면적 기준)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 고려, 집중배치																																										
용적률 인센티브	• 계획유도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70% 이하 <table><tr><th>항목</th><th>산정기준</th><th>비고</th></tr><tr><td>구역 통합개발 또는 분할가능선 준수 시</td><td>• 기준용적률 X 0.16</td><td></td></tr><tr><td>지정용도 및 건축한계선 준수</td><td>• 기준용적률 X 0.12</td><td></td></tr></table> • 친환경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30% 이상 <table><tr><th>항목</th><th>구분</th><th>산정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8">친환경 계획 요소</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 •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 </td><td rowspan="3">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 기준용적률 x 0.4 이내</td><td>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td></tr><tr><td>에너지효율 등급인증</td><td>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td><td rowspan="2"> •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td></tr><tr><td>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td><td>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td></tr><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 x 0.04</td><td></td><td>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td></tr><tr><td>빗물이용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 x 0.04</td><td></td><td>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td></tr><tr><td>옥상녹화</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td><td></td><td>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 </td></tr><tr><td>자연지반보존</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td><td></td><td>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td></tr><tr><td>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td><td>•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td><td></td><td> • 기준용적률 0.05 이내 </td></tr></table>	항목	산정기준	비고	구역 통합개발 또는 분할가능선 준수 시	• 기준용적률 X 0.16		지정용도 및 건축한계선 준수	• 기준용적률 X 0.12		항목	구분	산정기준	비고	친환경 계획 요소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 기준용적률 x 0.4 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항목	산정기준	비고																																									
	구역 통합개발 또는 분할가능선 준수 시	• 기준용적률 X 0.16																																										
	지정용도 및 건축한계선 준수	• 기준용적률 X 0.12																																										
	항목	구분	산정기준	비고																																								
	친환경 계획 요소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기준용적률 x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 기준용적률 x 0.4 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대개발 규모		• 2,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개발	지정	마장동 791-6, 791-7, 791-8	• 맹지형 필지로서 인접하여 동일소유자 대지가 있는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토지소유기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 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불허		
용도	불허 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 3의 용도
	용도 완화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허용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이		• 60m 이하		
건축한계선	마장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후퇴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형태	1층부	개구부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투시형 벽면/ 셔터 (규제)	•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가로에 접하는 건물 및 상업용도 건물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지붕부	평지붕 (권장)	• 에너지 절약 측면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전체면적의 40%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권장	
		파라пет 차폐 디자인 (권장)	• 건축물 옥상부에 FRP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 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재료	통일성 (권장)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반사성 재료 금지 (권장)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적용	
가로 경관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美)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구역 전체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차도부속형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공개 공지	구역 전체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도로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교통 처리 계획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마장로변 :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이면도로변 : 이면부 교차로에 출입구가 형성되지 않도록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구역 및 마장역세권1~3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계획**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 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 계획의 변경
5.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단, 버스정차대 및 환기구 등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기존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연장이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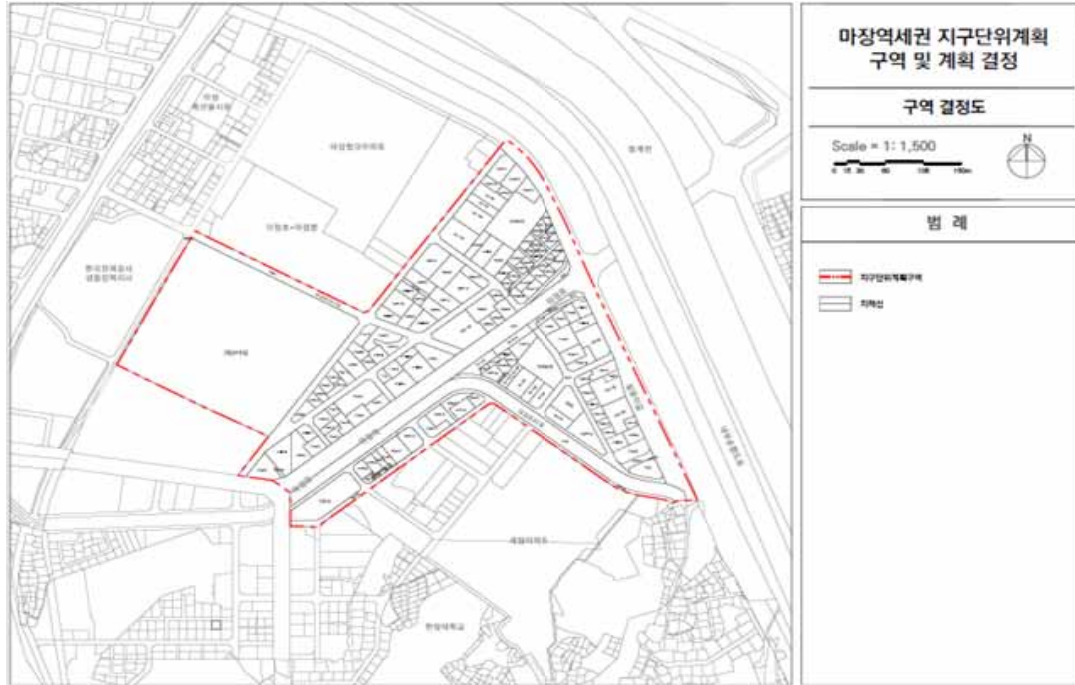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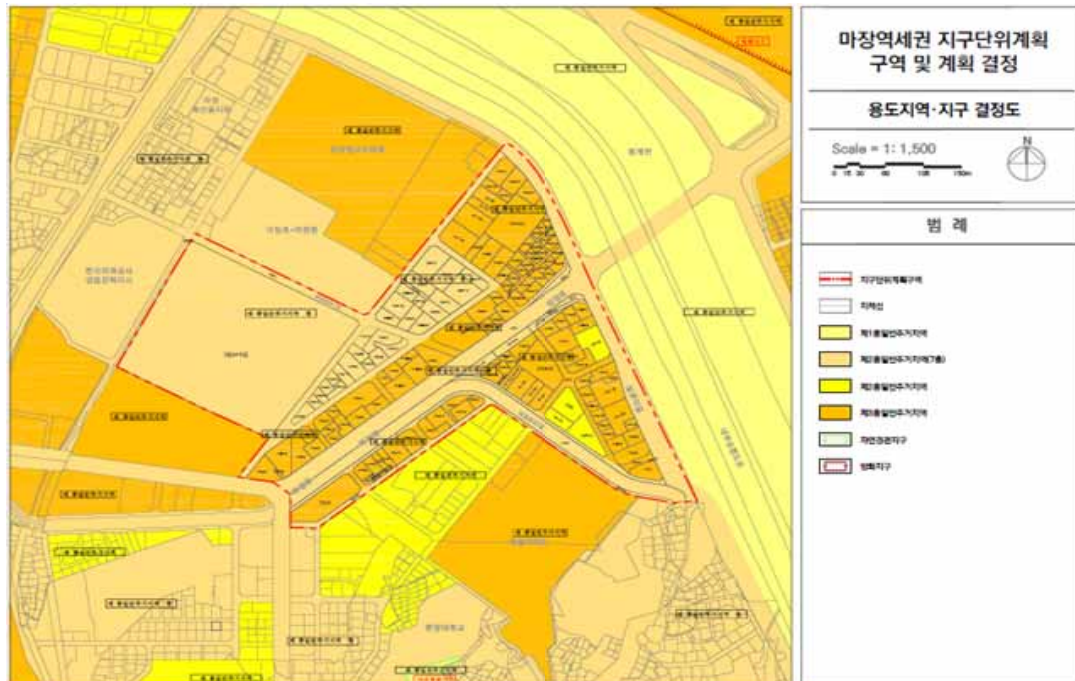
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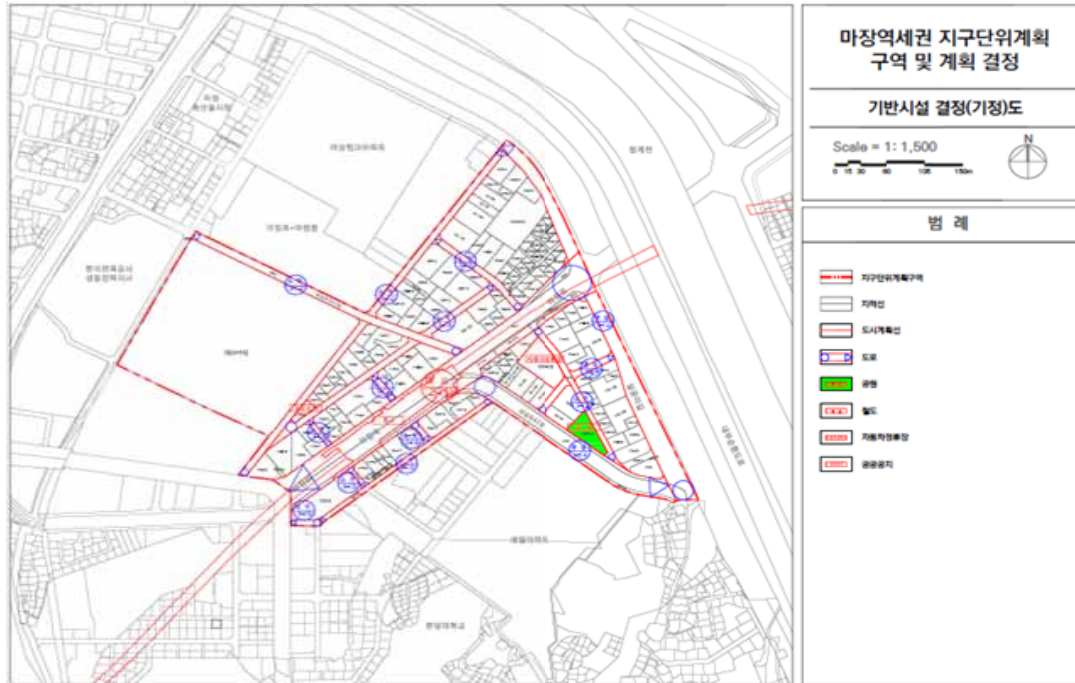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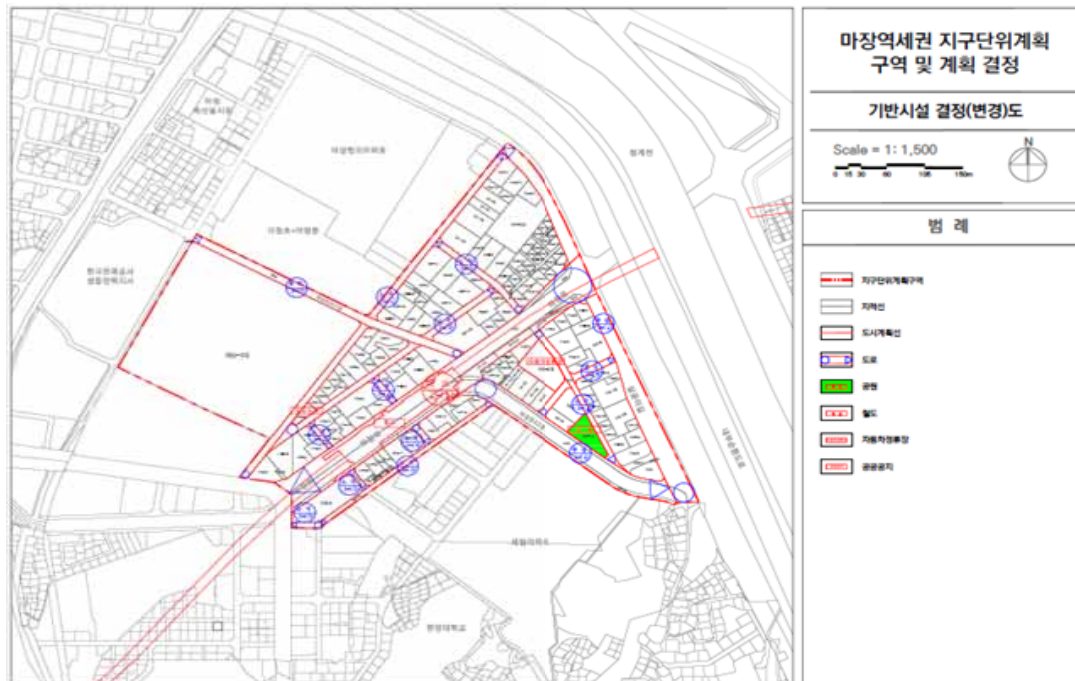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2021 - 49

()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88호(2001.11.3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9호(2011.12.8.)로 결정(변경)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12.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 201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기반시설 및 쇠퇴한 시장에 대한 정비와 기정 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근린상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금호동3가 332,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25,106	-	25,106	1996.10.14. 서고시 제96-275호	지구중심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5,106	-	25,106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011	-	22,011	87.7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3,095	-	3,095	12.3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방화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내 용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금호동3가 343-3호 일대	-	2,942	건고시 제783호(64. 2. 12)	
기정	-	방화지구	금호동4가 548-1호 일대	-	4,840	건고시 제78호(74. 3. 23)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	1,558 (316)	37,570 (6,520)	-	-	-	-	-	-	2	1,558 (316)	37,570 (6,520)
대 로	1	1,450 (208)	36,250 (5,200)	-	-	-	-	-	-	1	1,450 (208)	36,250 (5,200)
중 로	1	108	1,320	-	-	-	-	-	-	1	108	1,320
소 로	-	-	-	-	-	-	-	-	-	-	-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7	25	보조 간선	1,450 (208)	옥수동 (금호동4가 576-1)	금호동 (금호동4가 576-1)	일반 도로		서고시149호 (79. 4. 10)	독서 당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08	금호동4가 535 (대3-117)	금호동4가 547 (지구계남측)	일반 도로		서고시388호 (01. 11. 30)	
폐지	소로	3	2	4	국지 도로	38	금호동3가 282 (대3-117)	금호동3가 286	일반 도로		서고시388호 (01. 11. 30)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

■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2 폐지	•미조성된 소로3-2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도로여건, 토지현황, 주변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을 등 측에서 서측으로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2)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금호동3가 451번지	125	-	125	서고시 388호 (01.11.3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공동개발

■ 기정

구 분	규제사항	권장사항
전구역 (특별계획구역 제외)	• 대지면적 90㎡ 미만의 과소필지 및 그 인접필지 • 기 공동건축된 필지 • 인접된 동일소유자의 필지 •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필지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변경

구분		계획내용
공동개발	지정	• 간선변 동일인 소유 인접필지 • 간선변 필지 중 이면부 선개발시 건축불가필지
	권장	• 대지면적 60㎡ 미만의 과소필지 • 맹지 • 간선변 건축선 후퇴(3m)로 용적률 달성이 불가능한 필지 • 간선변에 입지한 필지로서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가 필요한 필지 • 이면부 동일인 소유 인접필지
맞벽건축(권장)		• A가구 블록 중 이면부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필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 전구역(특별계획구역 제외)

(나) 공동개발 조서

■ 기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A	1,691.5	금호동 3가	1	124.6	451	124.6	-	
			2	145.4	444	67.4	공동개발 지정	
					450	78.0		
			3	185.8	445	86.9	공동개발 지정	
					447	67.5		
					449	31.4		
			4	162.7	440	77.0	공동개발 지정	
					441	28.8		
					443	56.9		
			5	100.2	435	26.4	공동개발 지정	
					436	27.8		
					437	24.8		
					438	21.2		
			6	114.4	431	32.7	공동개발 지정	
					432	37.4		
					433	24.1		
					434	20.2		
			7	124.8	423	124.8	-	
			8	150.7	426	22.1	공동개발 지정	
					427	28.1		
					428	36.7		
					429	37.7		
					430	26.1		
			9	170.6	421	100.5	공동개발 지정	
					422	70.1		
			10	412.3	414	152.1	공동개발 지정	
					420	260.2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B	1,921.4	금호동 3가	1	143.1	394	71.4	공동개발 지정	
					395	71.7		
			2	154.8	393	89.3	공동개발 지정	
					398	65.5		
			3	98.2	399-3	98.2	-	
			4	120.7	390	40.7	공동개발 지정	
					391	80.0		
			5	195.0	399-1	46.9	공동개발 지정	
					399-4	142.5		
					400	5.6		
			6	98.5	396	98.5	-	
			7	103.8	397	103.8	-	
			8	108.4	401	57.9	공동개발 지정	
					402	23.1		
					403	27.4		
			9	229.2	405-1	142.6	공동개발 지정	
					406	86.6		
			10	216.7	404	72.1	공동개발 지정	404-1은 지적분할 가능선 계획
					404-1	18.3		
					409	62.1		
					410-1	31.1		
					410-2	33.1		
			11	184.8	408	184.8	-	
			12	171.6	412	78.7	공동개발 지정	
					413	92.9		
			13	96.6	411-1	12.6	공동개발 지정	
					411-2	12.6		
					411-3	45.6		
					411-4	25.8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m ²)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m ²)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m ²)				
C	2,862.1	금호동 3가	1	2,862.1	323-1	42.6	특별계획구역1 (76필지)	금남시장
					323-2	43.0		
					324	32.7		
					325-1	15.9		
					325-2	23.5		
					326	22.8		
					327	21.5		
					328	44.0		
					329	16.2		
					330	19.5		
					331	13.9		
					332	47.3		
					333-1	18.8		
					333-2	37.7		
					335	44.0		
					336	36.7		
					337	40.0		
					338	37.4		
					339-1	30.7		
					339-2	37.7		
					340	19.8		
					341	16.9		
					342-1	16.2		
					342-2	6.0		
					343-1	99.8		
					343-2	103.5		
					344	26.1		
					344-1	106.8		
					345	13.2		
					346	13.6		
					347	22.1		
					348	29.1		
					349	68.8		
					350-1	10.6		
					350-2	21.2		
					351	26.8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C	2,862.1	금호동 3가	1	2,862.1	352	19.5	특별계획구역1 (76필지)	금남시장
					353	19.8		
					354	15.5		
					355	20.8		
					356	25.1		
					357	23.8		
					358	33.1		
					359	26.1		
					360	23.1		
					361	21.8		
					362	17.9		
					363	19.8		
					363-1	239.0		
					364	24.1		
					365	25.8		
					366	27.1		
					368	99.2		
					369-1	94.2		
					371	42.0		
					372	43.3		
					373-1	39.0		
					373-2	38.7		
					374-1	76.0		
					374-2	19.8		
					375	109.8		
					376	24.5		
					377	36.4		
					378	27.1		
					379	21.8		
					380	24.5		
					381	35.7		
					382	19.5		
					383	26.8		
					384	37.4		
					385	26.8		
					386	33.4		
					387	68.4		
					388	63.8		
					389-1	32.1		
					389-2	13.2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D	1,061.3	금호동 3가	1	277.4	308	199.3	공동개발 권장	
					309-1	13.6	공동개발 지정	
					309-2	37.4		
					309-3	27.1		
			2	141.8	310	68.1	공동개발 지정	
					311	34.4		
					312	39.3		
			3	134.2	306	134.2	-	
			4	305.3	313	33.4	공동개발 지정	
					314	36.0		
					315	42.6		
					316	39.3		
					318	6.9		
					319	53.2		
					320	60.2		
					321	25.8		
					322	7.9		
			5	202.6	303	193.7	공동개발 지정	
					305	8.9		
E	1,281.6	금호동 3가	1	151.7	297	75.7	공동개발 지정	
					298	76.0		
			2	384.6	285	79.9	공동개발 지정	
					286	76.9		
					288	125.3		
					289	102.5		
			3	164.0	296	86.9	공동개발 지정	294번지로 합필
					299-1	4.0		
					299-2	73.1		
			4	307.3	294	98.1	공동개발 지정	
					295	84.0		
					301	125.2		
			5	274.0	281	6.9	공동개발 지정	
					282	51.9		
					283-2	8.4		
					284	61.1		
					290-1	21.7		
					291	22.0		
					292	102.0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F	532.0	금호동 4가	1	136.2	573	75.4	공동개발 지정	
					574	60.8		
			2	230.5	567	59.0	공동개발 지정	
					569	93.5		
					570	78.0		
			3	165.3	571	90.9	공동개발 지정	
					572	74.4		
G	1,547.1	금호동 4가	1	350.5	561-1	27.1	공동개발 지정	
					561-2	144.5		
					561-4	136.2		
					561-5	42.7		
			2	304.8	552	56.2	공동개발 지정	
					559	248.6		
			3	147.8	553	68.1	공동개발 지정	
					557	79.7		
			4	206.2	565-1	125.9	공동개발 지정	
					565-2	16.5		
					564-2	63.8		
			5	120.7	563-2	120.7	-	
			6	207.9	556-1	207.9	-	
			7	209.2	554	138.5	공동개발 지정	
					555	63.1		
					556-2	5.5		
					556-3	2.1		

■ 기 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H	4,870.7	금호동 4가	1	4,870.7	531	129.8	특별계획구역2 (14필지)	
					531-1	9.1		
					532	102.5		
					534-1	96.5		
					534-2	62.1		
					535	23.1		
					535-1	992.3 (142.9편입)		
					536	19.0		
					537	111.3		
					540-1	385.3		
					541	212.3		
					544	192.1		
					547	90.6		
					548-1	3,294.1		

■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m ²)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m ²)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m ²)				
A	1,691.5	금호동 3가	1	412.3	414	152.1	공동개발 권장	
					420	260.2		
			2	170.6	421	100.5	공동개발 지정	
					422	70.1		
			3	124.8	423	124.8	-	
			4	150.7	426	22.1	공동개발 권장	
					427	28.1		
					428	36.7		
					429	37.7		
					430	26.1		
			5	114.4	431	32.7	공동개발 권장	
					432	37.4		
					433	24.1		
					434	20.2		
			6	100.2	435	26.4	공동개발 권장	
					436	27.8		
					437	24.8		
					438	21.2		
			7	162.7	440	77.0	공동개발 권장	
					441	28.8		
					443	56.9		
			8	145.4	444	67.4	공동개발 권장	
					450	78.0		
			9	185.8	445	86.9	공동개발 권장	
					447	67.5		
					449	31.4		
					451	124.6		
B	2,119.3	금호동 3가	1	2,119.3	390	40.7	특별계획가능구역(30필지)	
					391	80.0		
					393	89.3		
					393-1	25.5		
					394	71.4		
					395	71.7		
					396	98.5		
					397	103.8		
					398	65.5		
					399-1	46.9		
					399-3	98.2		
					399-4	142.5		
					400	5.6		
					401	57.9		
					402	23.1		
					403	27.4		

■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B	2,119.3	금호동 3가	1	2,119.3	404	72.1	특별계획가능구역(30필지)	
					404-1	190.7		
					405-1	142.6		
					406	86.6		
					408	184.8		
					409	62.1		
					410-1	31.1		
					410-2	33.1		
					411-1	12.6		
					411-2	12.6		
					411-3	45.6		
					411-4	25.8		
					412	78.7		
					413	92.9		
C	4,209.0	금호동 3가	1	4,217.9	303	193.7	특별계획구역1 (97필지)	
					305	8.9		
					306	134.2		
					308	199.3		
					309-1	13.6		
					309-2	37.4		
					309-3	27.1		
					310	68.1		
					311	34.4		
					312	39.3		
					313	33.4		
					314	36.0		
					315	42.6		
					316	39.3		
					318	6.9		
					319	53.2		
					320	60.2		
					321	25.8		
					322	7.9		
					323-1	42.6		
					323-2	43.0		
					324	32.7		
					325-1	15.9		
					325-2	23.5		
					326	22.8		

■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C	4,209.0	금호동 3가	1	4,217.9	327	21.5	특별계획구역1 (97필지)	
					328	44.0		
					329	16.2		
					330	19.5		
					331	13.9		
					332	47.3		
					333-1	18.8		
					333-2	37.7		
					335	44.0		
					336	36.7		
					337	40.0		
					338	37.4		
					339-1	30.7		
					339-2	37.7		
					340	19.8		
					341	16.9		
					342-1	16.2		
					342-2	6.0		
					343-1	99.8		
					343-2	103.5		
					344	26.1		
					344-1	106.8		
					345	13.2		
					346	13.6		
					347	22.1		
					348	29.1		
					349	68.8		
					350-1	10.6		
					350-2	21.2		
					351	26.8		
					352	19.5		
					353	19.8		
					354	15.5		
					355	20.8		
					356	25.1		
					357	23.8		
					358	33.1		
					359	26.1		
					360	23.1		
					361	21.8		
					362	17.9		
					363	19.8		

■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C	4,209.0	금호동 3가	1	4,217.9	363-1	239.0	특별계획구역1 (97필지)	
					364	24.1		
					365	25.8		
					366	27.1		
					368	99.2		
					369-1	94.2		
					371	42.0		
					372	43.3		
					373-1	39.0		
					373-2	38.7		
					374-1	76.0		
					374-2	19.8		
					375	109.8		
					376	24.5		
					377	36.4		
					378	27.1		
					379	21.8		
					380	24.5		
					381	35.7		
					382	19.5		
					383	26.8		
					384	37.4		
					385	26.8		
					386	33.4		
					387	68.4		
					388	63.8		
					389-1	32.1		
					389-2	13.2		
					420-1	210.6		
					772-1	83.9		
D	1,467.2	금호동 3가	1	355.6	281	29.1	281, 282, 283-2, 284, 290-1, 291, 292 공동개발 지정 283-1 공동개발 권장	
					282	64.4		
					283-1	5.2		
					283-2	8.4		
					284	102.8		
					290-1	21.7		
					291	22.0		
					292	102.0		
			2	488.6	285	111.4	공동개발 권장	
					286	115.7		
					287	33.7		
					288	125.3		
			3	471.3	289	102.5	-	
					294	471.3		
			4	151.7	297	75.7	공동개발 권장	
					298	76.0		

■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E	532.0	금호동 4가	1	230.5	567	59.0	공동개발 지정	
					569	93.5		
					570	78.0		
			2	301.5	571	90.9	572, 573, 574 공동개발 지정, 571 권장	
					572	74.4		
					573	75.4		
					574	60.8		
F	1,547.1	금호동 4가	1	124.3	552	56.2	공동개발 권장	
					553	68.1		
			2	144.0	554	138.5	공동개발 권장	
					556-2	5.5		
			3	65.2	555	63.1	공동개발 권장	
					556-3	2.1		
			4	207.9	556-1	207.9	-	
			5	328.3	557	79.7	공동개발 지정	
					559	248.6		
			6	350.5	561-1	27.1	공동개발 지정	
					561-2	144.5		
					561-4	136.2		
					561-5	42.7		
			7	120.7	563-2	120.7	-	
			8	206.2	564-2	63.8	공동개발 권장	
					565-1	125.9		
					565-2	16.5		
G	4,870.7	금호동 4가	1	4,870.7	531	129.8	특별계획구역2 (14필지)	
					531-1	9.1		
					532	102.5		
					534-1	96.5		
					534-2	62.1		
					535	23.1		
					535-1	142.9		
					536	19.0		
					537	111.3		
					540-1	385.3		
					541	212.3		
					544	192.1		
					547	90.6		
					548-1	3,294.1		

※ 특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등에 의해 부분편입된 필지의 면적은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권장용도

■ 지정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1층전면	전층	
권장 용도	A	이면부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B	간선변 (독서당길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휴게 음식점, 서점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C	특별계획구역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 주) 1. 1층전면 권장용도는 전면이 독서당길변에 위치한 점포에만 적용
 2.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별도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의된 항목 제외)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전층	A	이면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주민체육활동시설 - 노유자시설
	B	간선변 (독서당로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	특별계획 (가능)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별도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의된 항목 제외)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이면부 권장용도 분리	• 가로특성을 반영하여 이면부에 중·소규모의 생활지원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리
•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권장용도 지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권장용도 지정
• 간선변 1층 권장용도 폐지	• 시장논리에 따라 당연히 입지하는 용도 폐지

(나) 불허용도

■ 기정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1층	전층	
불허용도	1 준주거 지역		• 관련법상 불허용도 (일반미관지구-도시계획조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정신병원 • 장례식장 • 동·식물 관련시설	
	2 근린상업지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 작업공간이 필요한 자동차용품 소매점	• 관련법상 불허용도 (일반미관지구-도시계획조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정신병원 • 장례식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위락시설	

주) 1. 1층 불허용도는 점포 전면이 독서당길변에 위치한 점포에만 적용함

2.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별도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의된 항목 제외)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전층	1 준주거 지역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 장례식장 • 자원순환 관련시설	
	2 근린상업지역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 장례식장	
1층	간선변 (독서당로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세탁소, 제조업소, 수리점	

주) 1. 1층 불허용도는 점포 전면이 간선변에 위치한 점포에만 적용함

2.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별도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의된 항목 제외)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불허용도 재조정 및 1층 간선변(독서당로변) 용도계획 변경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불허용도 재조정 - 간선변 가로활성화저해용도 및 이면부 주거환경저해요소를 고려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불허용도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불허용도 지정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구역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구역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일부구간 추가 지정)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건폐율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건폐율계획 수립

(나) 용적률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준	허 용	상한	
-	근린상업지역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변(독서당로변)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200%이하	3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준	허 용	상한	
-	근린상업지역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α 현금 · 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 ·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이면부 용적률 재조정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용적률 적용 - 상위계획상 금호·옥수동 근린상업의 중심지로 육성이 필요하며,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대상지내 생활서비스 지원기능 증대를 위해 과도하게 낮춰진 이면부 용적률 재조정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용적률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용적률계획 수립

(다)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변경)

1)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 건축물 비주거 용도 비율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준주거지역	●건축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주) 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적용가능
2.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

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의무비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 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르되,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구 분	산 식
허용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을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text{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text{주거부문 용적률}(500\sim600\%)* / \text{상업지역 용적률**}) \times \text{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적률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상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근린상업지역내 권장용도 면적 산정 예시]

허용 용적률	주거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추가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주거부분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비주거용적률	권장용도 확보비율
500%	$333\% = (400\%/600\%) \times 500\%$	$416\% = (500\%/600\%) \times 500\%$	$83\% = 416\% - 333\%$	$84\% = 500\% - 416\%$	20%

◦ 권장용도 도입 가능한 비주거 용적률 = $500\% \times 20\% = 100\%$

◦ 권장용도 부족분 = $100\% - 84\% = 16\%$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면적을 권장용도 부족분 16%에 해당하는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건축물 비주거 용도 비율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근린상업지역	●건축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주) 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 용적률의 10%이상 적용가능
2.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	특별계획구역1	-	80m이하	• 「건축법」 제60조제1~2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적용
	준주거지역	간선변	60m이하	
		이면부	35m이하	
	특별계획구역2	-	80m이하	

※ 최고높이 적용에 대한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	특별계획구역1		80m이하	100m이하	• 기준높이 완화항목 - 건축물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설치시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조성시 - 높이 $\times \{1 + [(해당 면적/지상층 연면적(주차장 제외)) \times 2]\}$ ※ 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적용 불가
	준주거지역	간선변	-	60m이하	
		이면부	-	35m이하	
		특별계획구역2, 특별계획가능구역	-	80m이하	

※ 최고높이 적용에 대한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특별계획구역1 기준/최고 높이 체계 도입	• 용도지역별 차등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고려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최고 높이계획 변경
• 특별계획가능구역 높이기준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에 따라 특별계획구역2를 감안하여 높이계획 수립
•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높이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높이계획 수립

(4)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

■ 기정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 6m	가로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편의
	이면도로변	1~3m	도로 확보
벽면한계선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으로 도로를 확보한 지역	1m	보행자편의 (6m이하 부분에 적용)

주)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등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에서 별도로 정함

■ 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변	3, 6m	가로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편의
	이면도로변	1~3m	건축한계선 재조정
벽면한계선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으로 도로를 확보한 지역	-	폐지

주)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등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에서 별도로 정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특별계획가능구역 건축한계선 조정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에 따라 건축한계선 조정
이면부 건축한계선 재조정 및 벽면한계선 폐지	이면부 현황도로여건에 따라 건축한계선 재조정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추가 지정, 과도하게 지정된 벽면한계선 폐지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차량 및 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차도 및 보행공간 확보 위해 건축한계선 및 1층 벽면한계선을 통하여 전면공지 확보 - 건축한계선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 전면인도와 단차를 없애고 보행에 장애되는 시설 설치 금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의 부족한 도로폭 확보를 위해 활용 - 벽면한계선 - 이면도로변 부족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 - 지상부에서부터 6m이하 건축물 부분에 적용 -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은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3~14조 적용	
공개공지	대형 필지로 공개공지 확보가 필요한 대지에 적정위치를 권장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에 장애되는 시설 설치 금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의 부족한 도로폭 확보를 위해 활용 • 벽면한계선 폐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은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0조 적용 - 금호동3가 294, 금호동4가 559, 567, 574의 경우 보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이 접하는 지점내 전면공지 조성방식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0조 제4항 참조	
공개공지	• 대형 필지로 공개공지 확보가 필요한 대지에 적정위치 권장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1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통합개발시 기존 가로와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연결이 가능토록 공공보행통로 2개소 신설(폭 3m 이상)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전면공지 일부구간 변경	•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폐지
•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대지내 공지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대지내 공지계획 수립
• 공공보행통로 신설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통합개발시 동서간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2) 차량동선

■ 지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일방통행도로	• 세가로망에서 간선도로로의 진출입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일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 특별계획구역 인접도로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도로폭원 등의 여건 및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독서당로)변으로 직접차량 진출입 불허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일방통행도로	• 세가로망에서 간선도로로의 진출입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일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 차도폭 4m 이하(건축한계선 포함) 및 교차로와 근접한 일부구간 • 특별계획구역 인접도로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도로폭원 등의 여건 및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독서당로)변에서의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유지 • 일부구간 직접차량 진출입 허용	
주차출입구	• 1개소	
제한적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구역	• 자율적으로 차량출입 불허를 선택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면제구역' 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가능 - 일부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일방통행도로구간 변경	• 이면부 현황도로여건 및 건축한계선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 - 이면부 차도폭 6m이상(건축한계선 포함) : 일방통행 → 양방통행
• 독서당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 공동개발 및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및 주차출입구 신설
• 주차출입구 1개소 신설	
• 일부구간 제한적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구역 신설	• 협소한 도로폭 및 대지규모, 공동개발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일부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에 한하여 비용으로 납부가능토록 제한적 주차장 설치의무면제구역으로 설정
• 간선변 및 이면부 일부 필지 차량동선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필지는 인접필지와 동일하게 차량동선계획 수립

라.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 인센티브 유형 1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구역구분	• A9~10, B12~13, D4~5, E4~5, F1~2, G1~2	
위치특성	• 간선변 (독서당로변)	
기준/허용용적률	• 300% / 360%	
계획목표	• 적정규모개발 유도, 지구중심기능 강화 및 가로환경개선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 기준용적률 $\times 0.5\alpha$		• 2필지 : $\alpha=0.3$ • 3, 4필지 : $\alpha=0.4$ • 5필지이상 : $\alpha=0.5$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1$		•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 부분제외		
유도형	자율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times 0.03$				
	권장용도	1층전면	• 기준용적률 $\times$ (1층 권장용도면적 $\div$ 1층 전면 점포바닥면적) $\times 0.15$		• 1층 전면점포 바닥면적 대비 20% 이상시 인정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2$		• 건축면적 대비 20%이상시 인정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times 0.03$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1$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인정 • 법적 조경 산입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2$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2$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 $\times 0.02$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 기준용적률 $\times 0.02$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times 0.02$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이상	75~85점 이상	기준용적률 $\times 0.01$	

주) 1. 규제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50/100까지만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규제형 항목으로 제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유도형 :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2이내만 적용

3. 의무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100은 의무형 인센티브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 일반계획요소를 준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유형 2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구역구분	• A2~6, 8, B1~2, 4~5, 8~10, D1~2, E1~3, F3, G3~4, 7	
위치특성	• 이면부 (공동개발 지정이 계획된 필지)	
기준/허용용적률	• 200% / 300%	
계획목표	• 적정규모개발 유도, 지구중심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 확보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 기준용적률 $\times 0.5a$		• 2필지 : $a=0.3$ • 3, 4필지 : $a=0.4$ • 5필지이상 : $a=0.5$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1$		• 미관지구내 건축선후부 부분제외		
유도형	자율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times 0.12$				
	권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6$		• 건축면적 대비 20% 이상 준수 시 인정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times 0.12$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인정 • 법적 조경 산입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 $\times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 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 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 기준용적률 $\times 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 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times 0.05$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이상	75~85점 이상	기준용적률 $\times 0.03$

- 주) 1. 규제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50/100까지만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규제형 항목으로 제시된 지구단
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유도형 :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2이내만 적용
3. 의무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100은 의무형 인센티브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 일반계획요소를 준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유형 3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구역구분	• A1,7, B3,6,7,11, D3, G5,6	
위치특성	• 이면부 (공동개발 미지정 획지)	
기준/허용용적률	• 200% / 300%	
계획목표	• 적정규모개발 유도, 지구중심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 확보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				•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 부분제외
유도형	자율공동개발		• 기준용적률×0.12				
	권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0.6				• 건축면적 대비 20% 이상 준수시 인정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0.12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인 정 • 법적 조정 산입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제 외)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 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5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이상	75~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3	

- 주) 1. 규제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50/100까지만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규제형 항목으로 제시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유도형 :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2이내만 적용
3. 의무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100은 의무형 인센티브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 일반계획요소를 준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유형 4 (특별계획구역1)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구역구분	• C전체	
위치특성	• 특별계획구역1	금남시장
기준/허용용적률	• 300% / 500%	
계획목표	• 지구중심기능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가로환경개선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 부분제외		
유도형	권장용도	1층전면	• 기준용적률×(1층 권장용도면적÷1층 전면 점포바닥면적)×0.6		• 1층 바닥면적 대비 20% 이상시 인정		
		전층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0.6		• 건축면적 대비 20%이상시 인정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5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인정 • 법적 조정 산입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3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0.03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0.03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 기준용적률×0.03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5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이상	75~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3	

- 주) 1. 규제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50/100까지만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규제형 항목으로 제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유도형 :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2이내만 적용
3. 의무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100은 의무형 인센티브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 일반계획요소를 준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공개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유형 5 (특별계획구역2)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구역구분	• H전체	
위치특성	• 특별계획구역2	
기준/허용용적률	• 300% / 360%	
계획목표	• 지구중심기능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가로환경개선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4		•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 부분제외	
유도형	권장용도	1층전면	• 기준용적률×(1층 권장용도면적÷1층 전면 점포바닥면적)×0.15		• 1층 전면점포 바닥면적 대비 20% 이상시 인정	
		전층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0.2		• 건축면적 대비 20%이상시 인정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07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인정 • 법적 조정 산업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0.01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0.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 기준용적률×0.01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2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이상	75~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1		

주) 1. 규제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50/100까지만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규제형 항목으로 제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유도형 :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2이내만 적용

3. 의무형 :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20/100은 의무형 인센티브 준수시에만 제공되며, 기타 일반계획요소를 준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공개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공공건축물의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심의)을 득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항목없이 허용용적률 달성이 가능하다.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소규모 건축물(대지면적 300㎡ 미만)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3. 공동개발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공동개발(공부상 관련지번)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개발(지정·권장) 준수시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공동개발계획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 할 수 있다.
4. 맞벽건축이 권장된 대지에 한하여 맞벽건축시 공동개발 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맞벽건축한 필지수를 기준으로 계수를 산정한다.
5. 도로에 접하지 않아 차량출입이 어려운 대지는 공동개발이 어려운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도로 및 주차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개발 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건축협정을 체결한 필지수를 기준으로 계수를 산정한다.
6.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다음의 경우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지상층 연면적(용적률)의 10% 이상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8. 관련 법규 및 규정상 의무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9.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10.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한다.
(친환경 인센티브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 법정의무 인센티브)

항목	세분	원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 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3기준 모두 최고등급(비율) 만족시 기준용적률 x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인센티브 유형 1

구 분	계획내용
위치	특별계획구역1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기준/허용용적률	300% / 500%
계획목표	지구중심기능 강화, 기반시설 및 공공성 확보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α	•20%(10%)이상 : $\alpha=0.12$ •30%(20%)이상 :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α	•개방형 : $\alpha=1.0$ •필로티형 : $\alpha=0.5$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0.5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 대지면적)× α	•개방형 : $\alpha=2.0$ •필로티형 : $\alpha=1.5$
	주차계획	차량출입 권장구간	•기준용적률×0.1	
	임대주택 공급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기준용적률×(지상층제공면적 / 지상층 전체면적)×2.0	
친환경	환경친화		•공동사항 참조	

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권장용도는 ()의 비율 이상으로 설치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인센티브 유형 2

구 분	계획내용
위치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가능구역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계획목표	지구중심기능 강화, 기반시설 및 공공성 확보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α	•20%(10%)이상 : $\alpha=0.04$ •30%(20%)이상 : $\alpha=0.1$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α	•개방형 : $\alpha=0.3$ •필로티형 : $\alpha=0.15$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0.1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 대지면적)× α	•개방형 : $\alpha=1$ •필로티형 : $\alpha=0.5$
	주차계획	차량출입 권장구간	•기준용적률×0.03	
	임대주택 공급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기준용적률×(지상층제공면적 / 지상층 전체면적)×0.7	
친환경	환경친화		•공동사항 참조	

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는 경우 권장용도는 ()의 비율 이상으로 설치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인센티브 유형 3

구 분	계획내용
위치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계획목표	지구중심기능 강화, 기반시설 및 공공성 확보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전면공지
	임대주택 공급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친환경	환경친화	•공통사항 참조

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는 경우 권장용도는 ()의 비율 이상으로 설치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인센티브 유형 4

구 분	계획내용
위치	개별필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계획목표	적정규모개발 유도,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구중심기능 강화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형	획지계획	공동개발1) (맞벽건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경관개선	건축물 형태
친환경	환경친화	•공통사항 참조

주1) 공동개발이라 함은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을 말한다.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는 경우 권장용도는 ()의 비율 이상으로 설치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친환경 요소 중 자연지반 보존면적 산정시 건축한계선 등 인센티브 적용부분 지하부의 자연지반 보존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1 (금남시장)	금호동3가 368번지 일원	2,862.1	증)1,355.8	4,217.9	등록시장구역을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계 확대
기정	특별계획구역 2	금호동4가 548-1번지 일원	4,870.7	-	4,870.7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1	금호동3가 368번지 일원	4,217.9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확대

- 이 하 여 백 -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1) 특별계획구역1 (금남시장) 계획지침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면적		• 2,862.1㎡	• 4,217.9㎡	증)1,355.8㎡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현 용도지역 유지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1층전면)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휴게음식점, 서점	• 폐지	
	불허 용도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위락시설,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동식물 관련시설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의 발매소 및 마권전 화투표소, 관람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동식물 관련시설	
	근린 상업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위락시설,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동식물 관련시설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의 발매소 및 마권전 화투표소, 관람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동식물 관련시설	
	준주거	-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동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불허용도 (1층전면)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 작업공간이 필요한 자동차용품 소매점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간선변 (독서당로변)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기준용적률	• 300%이하	• 300%이하	
	허용용적률	• 500%이하	• 근린상업지역 : 500%이하 • 준주거지역 : 36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 80m이하	
	최고높이	• 80m이하	• 100m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독서당로변 6m • 이면도로변 2m	• 독서당로변 6m • 이면도로변 2m	
형태		• 고층부(6층이상)는 탑상형 권장	• 고층부(6층이상)는 탑상형 권장 •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 이상(권장)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위치권장 (독서당로변)	• 공개공지 위치권장 (독서당로변)	버스정류장과 연계
대지내통로		-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기존 상권과의 연계 및 대상지 외부 동서측 도로와 연계 - 폭 3m 이상	
임대주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설치 권장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기여방안		• 기부채납율은 20%이상	• 근린상업지역 20%이상 • 준주거지역 15%이상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부지, 공공시설 부지내 공공건축물을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건축물을 계획시 연접한 현황도로 및 주차장 부지와 통합하여 조성	연접한 금호21구역의 정비계획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기반 시설계획 수립
기타		• 기존상권과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 내부통로 조성 및 연도형 상가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 조성에 대한 사항은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3조 적용	• 간선가로에서의 차량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량출입관장구간 설정 • 구체적 조성에 대한 사항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 42~43조 적용	

- 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관련법규에 완화가능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완화가능
 2. 기반시설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반시설의 합리적 설치 방안' 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설치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3. 공공건축물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점에 구 관련부서 및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공안심상가, 창업지원시설 등
 - 공공건축물내 주차장 설치시 법정주차대수 외 기존 공영주차장 면수(14면) 이상이 조성되도록 계획
 4. 건축한계선은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된 폭만큼 준수

(2)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면적		• 4,870.7㎡	• 4,870.7㎡	면적 변경없음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없음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권장용도 (1층전면)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휴게 음식점, 서점	• 폐지	
	불허용도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위락시설,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동식물 관련시설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 장례식장, 동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불허용도 (1층전면)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 작업공간이 필요한 자동차용품 소매점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간선변 (독서당로변)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기준용적률	• 300%이하	• 300%이하	
	허용용적률	• 360%이하	• 36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80m이하	• 80m이하	기부채납시 최고높이 완화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독서당로변 6m • 이면도로변 2m	• 독서당로변 6m • 이면도로변 2~4m	
형태		• 고층부(6층이상)는 탑상형 권장	• 고층부(6층이상)는 탑상형 권장 •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이상(권장)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위치권장 (독서당로변) • 지형 고저차로 인하여 대지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옥상은 공공공간으로 조성 권장	• 공개공지 위치권장 (독서당로변) • 지형 고저차로 인하여 대지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옥상은 공공공간으로 조성 권장	횡단보도와 연계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임대주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설치 권장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기여방안	기부채납율은 20%이상 (기 결정된 중로3-1(12m) 도로 포함)	- 기부채납율은 17%이상 - 기 결정된 중로3-1(12m) 도로와 중복하여 기부채납선 지정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기타	-	구체적 조성에 대한 사항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 42~43조 적용	

- 주) 1. 기반시설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반시설의 합리적 설치 방안’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설치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2. 건축물내 공공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점에 구 관련부서 및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안심상가, 창업지원시설 등
3. 건축한계선은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된 폭만큼 준수

- 이 하 여 백 -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금호동3가 390번지 일원	-	증)2,119.3	2,119.3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금호동3가 390번지 일원	2,119.3	• 열악한 기반시설, 개별건축이 불가한 구조 및 개발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1)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신설)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면적		• 2,119.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의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장례식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불허용도(1층전면)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간선변(독서당로변)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이하	
	기준용적률	• 300%이하	
	허용용적률	• 36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건축물높이	최고높이	• 80m이하	기부채납시 최고높이 완화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 독서당로변 6m • 이면도로변 2m	
형태		• 고층부(6층이상)는 탑상형 권장 •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 이상 (권장)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위치권장 (독서당로변)	횡단보도와 연계

구 분	지침내용	비 고
대지내통로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기존 상권과의 연계 및 대상지 외부 동서측 도로와 연계 - 폭 3m 이상	
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설치 권장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기여방안	• 기부채납율 15%이상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기타	• 간선가도에서의 차량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출입권장구간 설정 • 구체적 조성에 대한 사항은 민간부분시행지침 제44~46조 적용	

- 주) 1. 기반시설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반시설의 합리적 설치 방안’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설치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2. 건축물내 공공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점에 구 관련 부서 및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공안심상가, 창업지원시설 등
3. 건축한계선은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된 폭만큼 준수

(2)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신설)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B	1,919.5	금호동 3가	1	71.4	394	71.4	-	
			2	154.8	393	89.3	공동개발 권장	
					398	65.5		
			3	98.2	399-3	98.2	-	
			4	120.7	390	40.7	공동개발 권장	
					391	80.0		
			5	71.7	395	71.7	-	
			6	195	399-1	46.9	공동개발 권장	
					399-4	142.5		
					400	5.6		
			7	98.5	396	98.5	-	
			8	103.8	397	103.8	-	
			9	108.4	401	57.9	공동개발 권장	
					402	23.1		
					403	27.4		
			10	86.6	406	86.6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소재지	대지		지번	필지 면적(㎡)	공동개발	비 고
			번호	면적(㎡)				
			11	142.6	405-1	142.6	-	
			12	72.1	404	72.1	-	
			13	356.4	408	184.8	공동개발 권장	
					412	78.7		
					413	92.9		
			14	239.3	404-1	16.4	공동개발 권장	404-1은 필지분할 가능선 계획, 구적면적
					409	62.1		
					410-1	31.1		
					410-2	33.1		
					411-1	12.6		
					411-2	12.6		
					411-3	45.6		
					411-4	25.8		

※ 이면부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이면부 맞벽건축 권장

(나)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불해 용도	전층	1	준주거 지역	• 관련법상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욕의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욕의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 장례식장 • 자원순환 관련시설	
	1층		간선변 (독서당로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세탁소,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 용도	A		이면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주민체육활동시설 • 노유자시설	
	B		간선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다) 건축물의 개발밀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300% 이하 / 허용 36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4 적용	
최고높이	• 간선변(독서당로변) : 60m 이하 • 이면부 : 35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공지 결정조서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변	3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결정도 참조
	이면도로변	1~2m(보도부속형,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마) 차량동선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독서당로)변에서의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유지	결정도 참조
제한적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구역	• 자율적으로 차량출입 불허를 선택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면제구역' 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가능 - 일부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 경미한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은 다음과 같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음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기준’ 을 준용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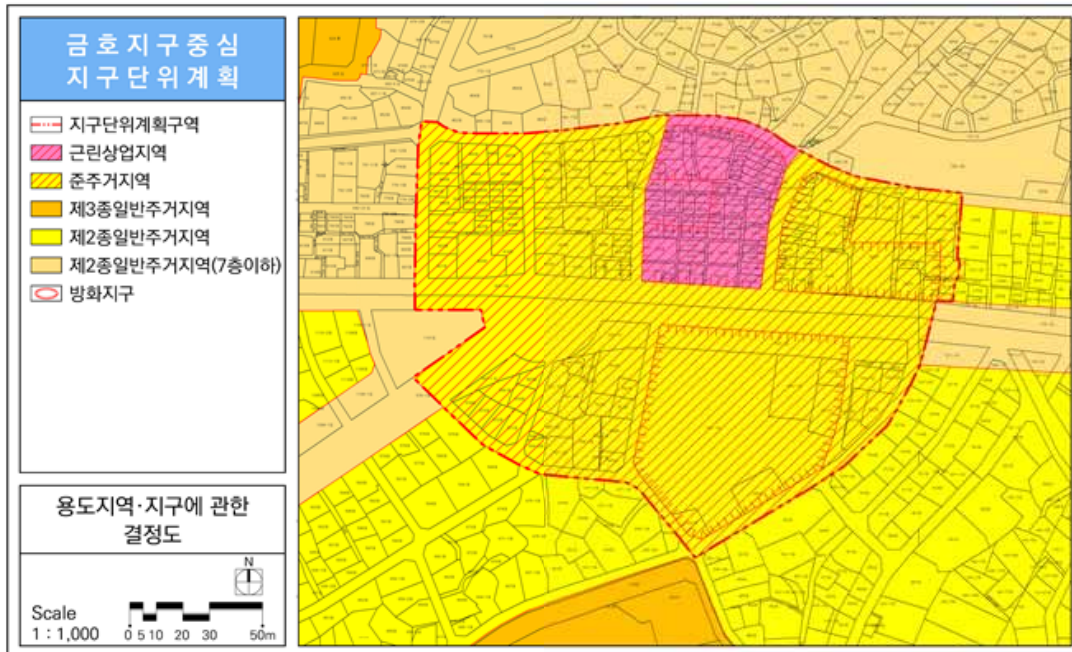
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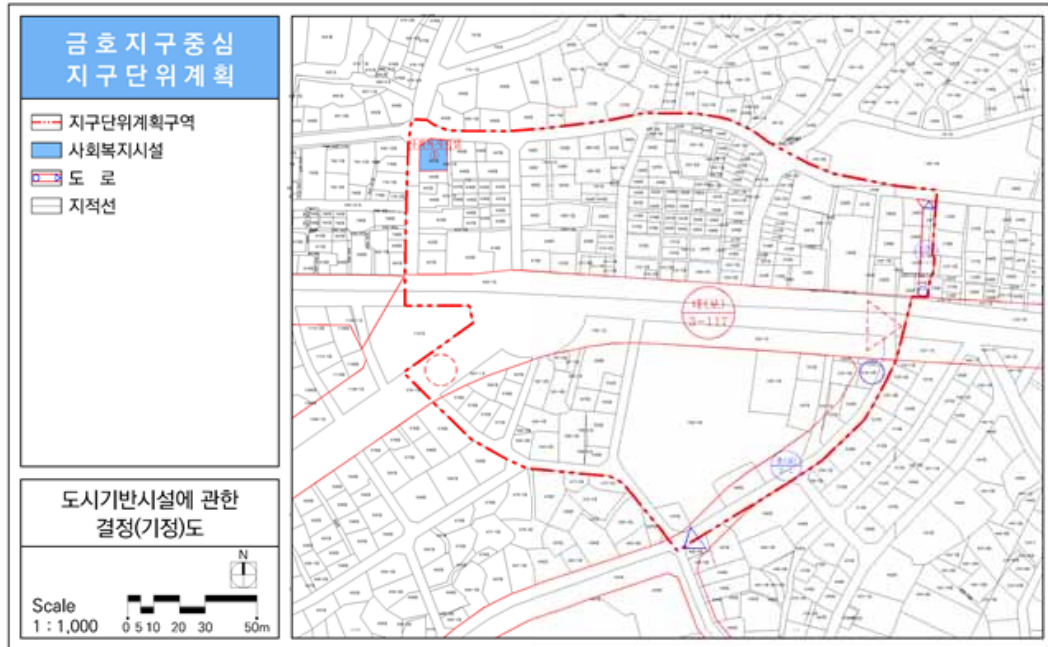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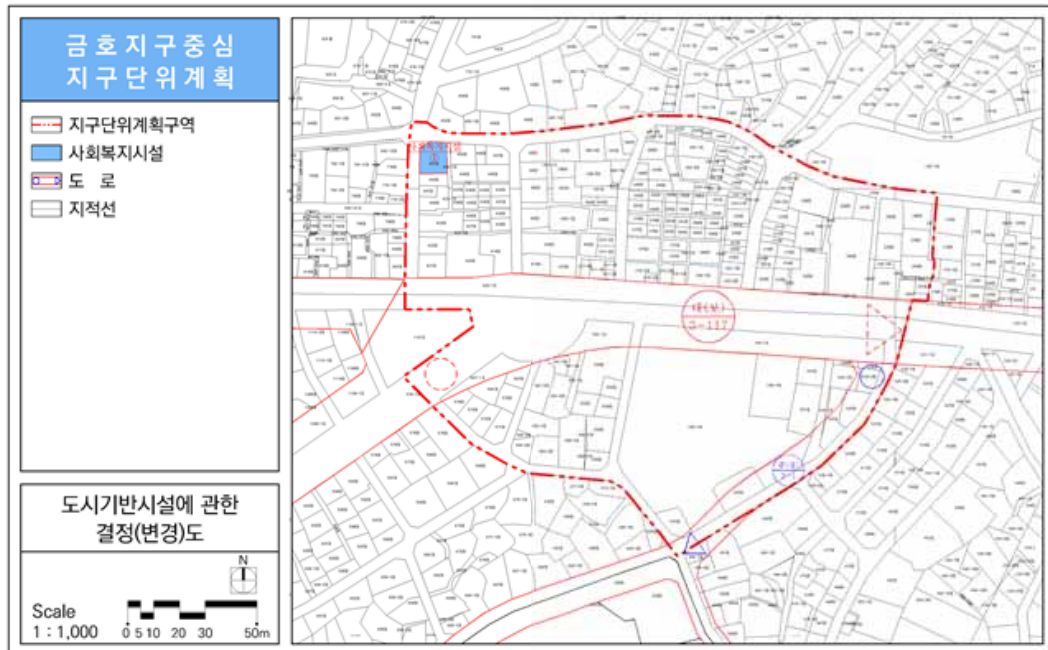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2021 - 50

() ()

- 1673 - 3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20. 12. 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 적 : 382.7㎡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역~강남역	540,698 (382.7)	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 ()는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0,698	-	540,698	100.0	
일반상업지역		267,897 (382.7)	-	267,897.0 (382.7)	49.55	
주거 지역	소계	272,801	-	272,801	50.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80	-	17,380	3.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8,380	-	118,380	2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977	-	15,977	2.95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065	-	121,065	22.39	

※ ()는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다. 공간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기정	GC-11	서초동 1673-1 일대	2,763.0	1673-1	대	518.9	A-3
				1673-2	대	249.9	
				1673-3	대	191.1	
				1673-4	대	191.6	
				1673-5	대	246.7	
				1673-6	대	246.6	
				1673-7	차	864.3	
				1673-10	대	253.9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 설정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일반 상업지역	상향지역 ('99)	가각부	4,500㎡	서초역, 교대역
		간선부	3,500㎡	-
		이면부	2,000㎡	-

■ 대지분할 가능선 (변경없음)

■ 공동개발 (변경)

－ 기정

구 분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A-3	GC-11	서초동	1673-2, -3	441.0	공동개발 권장	
		서초동	1673-4, -5	438.3	공동개발 지정	
		서초동	1673-6, -10	500.5	공동개발 지정	
		서초동	1673-7	864.3	단독개발	주차장
		서초동	1673-1	518.9	단독개발	

－ 변경

구 분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A-3	GC-11	서초동	1673-2	249.9	단독개발	
		서초동	1673-5	246.7	단독개발	
		서초동	1673-3, -4	382.7	공동개발 지정	
		서초동	1673-6, -10	500.5	공동개발 지정	
		서초동	1673-7	864.3	단독개발	주차장
		서초동	1673-1	518.9	단독개발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동개발 권장 해제 : 1673-2, -3 - 공동개발 지정 해제 : 1673-4, -5 - 공동개발 지정 : 1673-3, -4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서초구 서초동 1673-3 외 3필지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공동개발 지정 및 해제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용도	가	-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권장 용도	역세권 지역 2	전 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 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 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 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전 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 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 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 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1 층 또 는 지 하 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외)	1 층 또 는 지 하 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외)	
불허 용도	전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간선부 A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 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 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문 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시설/위락 시설/공장/창고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자원 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묘지 관련 시설/장례시설/야영장 시설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불허용도 추가적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2) '우수숙박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지정기준을 따름

주3)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가능한 지하층을 말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가) - 서초동 1673-3, -4 • 불허용도 변경 (A) - 서초동 1673-3, -4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영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함

■ 용도완화 결정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제한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준 : 300% 이하 • 허용 : 630% 이하	• 기본 : 1,0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 이하		
높이	• 기준 : 70(80)m 이하 • 최고 : 90(100)m 이하	• 77m 이하		

※ () 높이는 대지면적기준에 따른 대지면적 이상의 적용높이임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60% 이하 - 서초동 1673-3, -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 서초동 1673-3, -4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 서초동 1673-3, -4	•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밀도를 변경하고자 함
	• 77m 이하 - 서초동 1673-3, -4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높이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원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주4)} - 53.5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55.18㎡ (14.42%)	기본 용적률 1,000% 이하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10%이상 20%이하^{주5)}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0.39%(390.8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79% : 84.21% (세대수 비율) (12세대) (64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A, 18C, 37A, 41A Type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8A, 18B, 18C, 18D, 20A, 37A, 41A Type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150㎡ 이상 300세대 이상 : 200㎡ 이상	지상 4층 : 160.73㎡ 계획		

주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5)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3층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적용방향	적용대상	적용기준
기정	건축한계선	• 간선부, 가각부	• 도로경계선에서 3m, 5m, 8m
		• 교차로 가각부, 지하철입구 주변의 전면공지확보, 이면도로의 확폭	
	건축지정선	• 가로경계선	• 도로중심선 및 도로 경계선에서 3~10m
		• 가로의 경관적 연속성 확보	
기정	건축지정선	• 30m 이상의 간선도로변(서초로변, 반포로변, 우면로변, 강남대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5m
	벽면한계선	• 저층부 연속된 가로경관조성 및 주차 통로의 확보	• 대지경계선에서 2m, 3m
		•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기여 계획 (신설)

■ 적용기준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일반 상업지역	1,000% 이하	부지면적의 14% 이상 ^{주6)}	

주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 계획내용

구 분	기본용적률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일반 상업지역	1,000% 이하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주7)} - 382.7㎡ x 14% = 53.5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55.18㎡ (14.42%)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신설 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55.18㎡ (14.42%) - 서초동 1673-3, 4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공공기여 계획을 신설함

나. 대지내 공지 (변경없음)

구분		적용방향	적용대상	적용기준
기정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조성지침 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및 역세권부근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지정	• 조성지침 제시
	섬지형공지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권장	• 대지면적 5%이상 조성지침 제시
	침상형공지	•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 및 지하보도와 연계 가능 필지	• 조성지침 제시

다. 교통처리

■ 교통처리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공동주차 출입구	• 서초로변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 서초로변 대지로의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	• 공동개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간선가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설치	

■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공동주차 출입구(신설) - 서초동 1673-2, -5	• 서초동 1673-3, -4 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해제로 인한 1673-2, -5 필지의 차량 출입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로변 공동주차 출입구를 설치함

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없음)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고

V. 관계서류 열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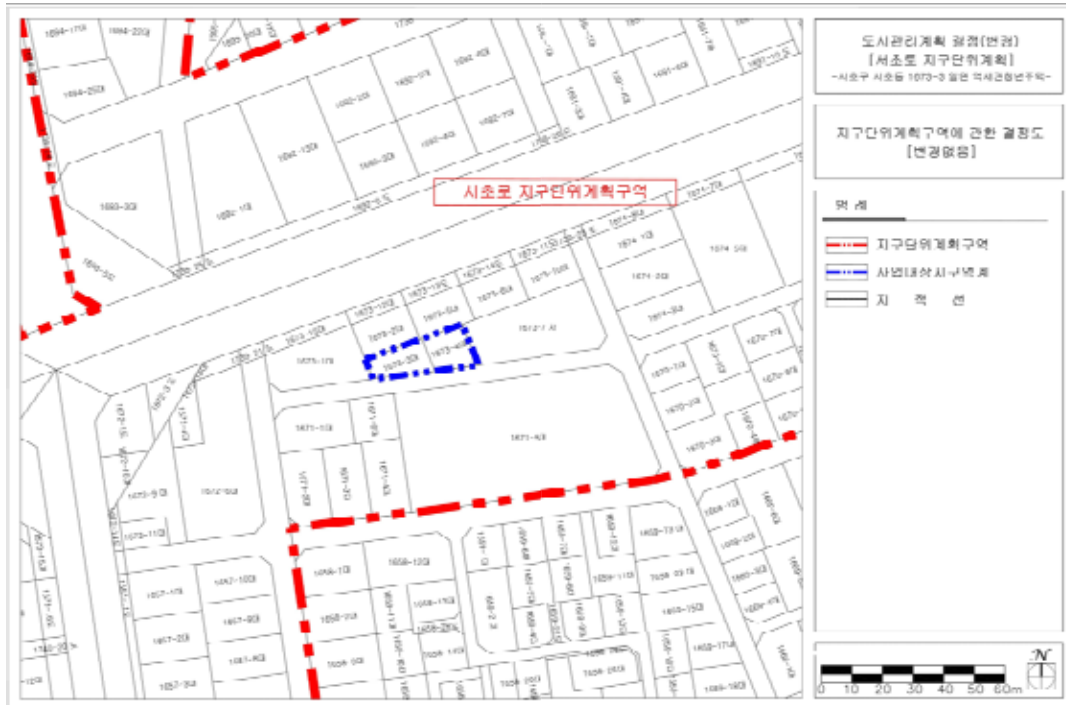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주택공급과(☎02-2133-6295)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 는 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첨부 : 결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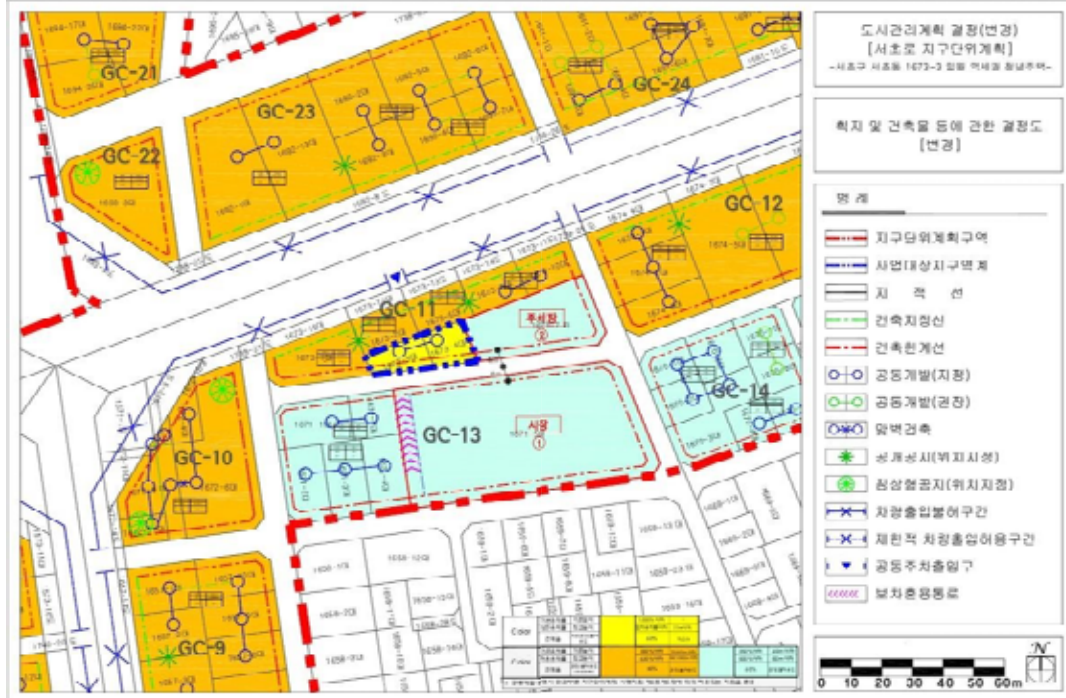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2021 - 153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철도과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1.1.18.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철도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1 - 15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15명 이내

※ 여성위원 4명 이상 우선 선발

나. 모집분야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 지원분야 : 문화재위원(15명)

해당분과	전문분야	모집코드
건축문화재 (3명)	근대건축사	1-1
	한국건축사	1-2
	건축계획	1-3
동산 (3명)	근현대사	2-1
	전적	2-2
	보존처리	2-3
기념물 (6명)	고려시대사	3-1
	고고학	3-2
	전통조경	3-3
	보존과학	3-4
	전통건축	3-5
	조선시대 묘역	3-6
표석 (3명)	독립운동사	4-1
	근현대사	4-2
	조선생활문화	4-3

다.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2021.6.1.~2023.5.31.)

라. 위원회의 주요기능

○ 기능

- 문화재위원 :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지정과 해제

○ 분야(분과) 별 심의내용

- 건축문화재 분과 ▷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 중 건조물에 관한 지정 및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 동산문화재 분과 ▷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중 건조물을 제외한 지정 및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 기념물 분과 ▷ 기념물(문화재자료 포함) 중 건조물 및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지정 및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 표석 분과 ▷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응모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 부적격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3. 응모기간 및 접수

- 가. 기 간 : 2021. 3. 22(월) ~ 3. 26(금) 18:00
-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다.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seoulmuseum@seoul.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별관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우편번호 04515)
- ※ 우편접수 및 이메일(본인 확인)은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 ※ 코로나19로 직접접수는 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주요경력 및 저서(연구 논문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나.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기타사항

- 가.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를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위원회담당 팀장 허대영 (02-2133-2629)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문화재위원 지원서 1부.

모집코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성별		남/여			
	(한자)	해당분과					
직장 또는 자택 주소					우편번호		
소속 (부서, 학과)		직명		전문분야			
연락처	직장전화 : 주택전화 :	휴대폰		이메일			
학력							
경력	교수경력	*부교수 이상 경력만 기재(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문화재 경력 등	*문화재관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주요 저서							
논문·연구실적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3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및 안내,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특별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주택, 근무처), 전화번호(주택, 근무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학력사항 : 최종 학력(학위) 및 전공(세부전공)
 - 기타사항 : 주요경력, 위원회·자문활동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

- 보존기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명부 작성 및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위원 공모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2021 - 163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오니, 경험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선발분야 및 인원(총 4명)

분 야	직급	인 원	근무기간(시간)	근무지
① 사 무 국 장	고급코디	1명	용역업체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가능> (주 5일 근무, 8시간/일)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광진구 자양로18길 31)
② 현장코디네이터 (문화·홍보기획 분야)	중급코디	1명		
③ 현장코디네이터 (공동체·상권 활성화 분야)		2명		

2. 직무내용

가. 분야별 업무

분 야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현장지원센터 업무총괄 및 조정,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사 및 각종 회의 주재, 시·구·협의체 등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 지원 및 실행구조 운영,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
현장코디네이터 (문화·홍보 기획분야)	음식문화거리 홍보 및 축제 등 특화사업 발굴·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디자인, 방송, SNS), 모니터링 등
현장코디네이터 (공동체·상권 활성화분야)	주민(상인)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사업 지원·관리, 주민·상인 공동체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 상권 분석 등

나. 공통 업무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주민공동체 형성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도시재생대학	- 도시재생 기본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 지역현안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도시재생 공모사업	- 주민상안방문객대학생 등 공모사업 발굴추진
도시재생 홍보	- 도시재생 소식지, 영상물 등 제작·홍보
소규모 간담회	-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 소규모 소통프로그램 기획·운영

※ 도시재생관련 근무 경험자 우대, 상기 직무 내용은 선발 이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분야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사무국장 (고급코디)	1. 5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2.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현장코디네이터 (중급코디)	1.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 직무분야 : 인문·사회, 역사·문화, 복지·경제, 건축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 및 유사센터 근무경력

※ (유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목적과 유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고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을 말함

※ 위 자격기준을 갖춘 관련분야 전공 학위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서류심사 시 참고함

○ 경력산정 : 참여연구진·기술자 및 위촉장경력증명서 등 증빙가능한 문서로 산정하며, 필요 시 임기제공무원 경력산정 기준 등 준용

나.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3. 선발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 등을 종합평가
 - ※ (면접시험 기준) 도시재생 분야 전문성, 문제해결 및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인성, 선발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전형일정 ※아래 전형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공고 : ' 21. 1. 22.(금) ~ 1. 31.(일)
- 접수기간 : ' 21. 2. 1.(월) ~ 2. 3.(수)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seandwave@seoul.go.kr)
 - 등기, 이메일 제출 시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도달 여부 확인 요망(☎02-2133-8296)
 - 등기우편 및 이메일은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접수처 : (우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동북권사업과,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담당

- 1차 서류전형 : ' 21. 2. 4.(목) ~ 2. 5(금)
- 1차 선발자 발표 : ' 21. 2. 8.(월)<예정>
 - ※ 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고 및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 등 합격 여부 통보
- 2차 면접시험 : ' 21. 2. 16.(화)~2. 19(금) 기간 중 (서류합격자 공고시 안내)
 - 면접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회의실
- 최종선발자 발표 : ' 21. 2. 23.(화) <예정>
 - ※ 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고 및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 등 합격 여부 통보
- 채용예정일 : 2021. 3월 중
 -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거버넌스 운영사정에 따라 입사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선발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표 1부 : <별지 제1호>
-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선발분야 및 직급 기재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3호>
- 업무수행 계획서(선발분야와 연계한 업무수행 계획) 1부 : <별지 제4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함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해야 함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5.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광진구 자양로18길 13)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8시간/일(탄력근무 가능)

- 다. 근무기간: 용역업체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
 ※ 용역업체 계약연장 및 근무 성과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가능
 라. 보수조건(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별도)
 ○ 사무국장(고급): 3,200,000원 상당
 ○ 현장코디(중급): 2,400,000원 상당

6. 기타사항

- 가. 선발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최종선발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를 반환함
 라.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임
 바.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동부권사업과 지역협력팀(☎2133-8296, 8285)

<별지 제1호> 응시원서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한자			
	생년월일			응시번호	* 지원자 기재 안함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e-mail)		

제출서류
 ①응시원서 1부, ②이력서 1부, ③자기소개서 1부, ④업무수행 계획서 1부,
 ⑤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증빙: 최종학력·경력·자격증, 병역 확인서 등)

본인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선발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시번호	* 지원자 기재 안함	성 명 (생년월일)	(. .)
응시분야		응시직급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접수자 : _____ (서명, 인)

<응시자 준수사항>

1.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응시표 지참

<별지 제2호> 이력서

☐ 개인신상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병역사항	
현소속	기관(기업) : 직위 : 담당업무 :			
현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 학력

구분	내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 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공	학위

☐ 경력

근무기간(년월일)	근무월수(월)	근무처(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증빙자료명

☐ 기술 및 자격(필요시 작성)

구분	내용			
자격증 (예정직무관련)	종 류	등록번호	발급일자	교부기관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유효기간	시행처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종 류	등록번호	발급일자	교부기관
논문, 저술, 발명 등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선발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지원자

(서명)

1. 학력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및 관련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2.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입사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년 2월 15일 → 15개월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6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임기제(4시간)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인정

④ 담당업무는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⑤ 증빙자료란에 첨부한 증빙자료 명을 기재

예시) 경력증명서 등

⑥ 병역사항은 월, 일만 기재

3. 기술 및 자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자격증번호·취득(예정)일·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어학능력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

※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표시란(접수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선발분야		성명	

2021. . . 작성자 : (인)

<별지 제4호> 업무수행 계획서

선발분야		성명	

2021. . . 작성자 : (인)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 수집 · 이용 목적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선발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선발되지 아니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 인재선발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될 예정으로 영구 또는 준영구 보관
 (지원자 요청 시 삭제)
- 선발된 지원자의 개인정보
 - 재직 중 인사관리 및 퇴직 후 복리후생,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영구보관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선발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1 - 165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2.12.(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o2020@seoul.go.kr
 - 팩스: 02-768-8897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0. 2. 13. ~ 2020. 2. 26.(10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

()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주소
1	470327-*****	김*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2020-12-29 16:55	100,000	2021-01-08	2021-01-23	1073439582427	2021-01-12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8-10
2	470327-*****	김*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2020-12-30 20:55	100,000	2021-01-08	2021-01-23	1073439582429	2021-01-12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8-10
3	470327-*****	김*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2020-12-30 16:34	100,000	2021-01-08	2021-01-23	1073439582428	2021-01-12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8-10
4	470327-*****	김*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	2021-01-07 20:30	100,000	2021-01-11	2021-01-26	1073439596704	2021-01-14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8-10
5	470327-*****	김*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2020-12-24 21:35	100,000	2021-01-08	2021-01-23	1073439582425	2021-01-12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48-10
6	640904-*****	김*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2020-12-28 07:35	100,000	2021-01-08	2021-01-23	1073439582426	2021-01-18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길 39-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 - 170

2021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2021. 1. 14.(목) ~ 1. 18.(월)
-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사유: 코로나19)
- 다. 심의대상: 일반안전 총 15건 16작품
- 라. 심의결과: 승인 8작품, 부결 8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1년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동대문구 휘경동 161-37 외 다수 이문 휘경 지엘에스테이트	조각	아르페나& 티노피치남매 (Aarpena& Tinopici siblings)		0	
2	강남구 삼성동 19-1, 19-4 상아아파트2차	조각	Blooming Scene (피어나는 풍경) 1.connectivity 2.Space drawing	0		
3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힐스테이트 녹번역	조각	Tree on the hill		0	
4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	조각	구축과 해체- 영원한 순환	0		
5	동대문구 용두동 39-1 외 25필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주상복합	조각	Smile		0	
6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조각	Family with Park	0		
7-1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DMC센터럴자이	조각	발아(發芽)		0	
7-2		조각	정원놀이		0	

2021 1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1년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8	구로구 신도림동 419-4 외 8필지 관정 신도림 복합건물	조각	Sliced Image 'Angel'		0	
9	광진구 구의동 66-25 외 5필지 구의자이엘라	회화	Mud Flat (Equability 2)	0		
10	성동구 성수동2가 260-1, 261번지 썬아이아이컴바인드 성수동 신사옥	조각	사슴이 있는 풍경	0		
11	망우동 양원지구 공공주택지구 C1BL 힐데스하임 참좋은아파트	조각	아지랑이		0	
12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일대 제기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각	봄바람		0	
13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S-2BL 아파트	조각	색연필 - 꿈을 그리다	0		
14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외 일대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각	세상의 구조 SD-2020	0		
15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외 1필지 여의도동 오피스텔	조각	매듭지어진 가로등 - Knotted street light	0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 17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 23건(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2월 15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성은혜(02-2133-232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396	(주)제크로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겹재로 258-1 (면목동) 제1층	2019-10-08
2	626	케이투익스프레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67 르네상스센타빌딩 207호 (공향동)	2019-06-19
3	1778	(주)코센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다동)	2019-07-20
4	2176	(주)동보그로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3-1, 금융빌딩 409호 (관수동)	2019-07-25
5	2183	정금해운(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16 우성빌딩 704호 (북창동)	2019-06-19
6	2200	(주)해중엘앤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동교동, LG팰리스빌딩) 917호	2019-07-25
7	2780	(주)파워에어엔씨물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공향동, 한국항공화물청사)	2019-09-27
8	2912	삼손해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대치동, 디아이타워) 358호	2019-08-07
9	2956	에버쉬핑(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1805호	2019-08-20
10	2982	(주)이스트웬웨스트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44-5 (송인동, 해광빌딩) 205호	2019-08-14
11	3122	(주)에스엠비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16-6 솔루체빌딩 5층 (청담동)	2019-07-17
12	3532	(주)케네스로지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36 (서교동, 서강빌딩) 401호	2019-10-08
13	3665	(주)에스디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1220호	2019-06-28
14	3837	(주)에이에스쉬핑에이전시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합정동, 합정동월빙센터) 604호	2019-10-31
15	3977	시마항공해운(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1길 42 (방화동) 101호	2019-05-16
16	4000	(주)스마트카고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128 대우미래사랑 에이동 1805호	2019-06-21
17	4114	(주)에이에스브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65 (충무로2가, 신민빌딩) 7층	2019-11-07
18	4387	(주)케이티그린로지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제비동 1415호	2020-01-04
19	4420	(주)지오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동, 쌍림빌딩) 6층 623호	2019-08-24
20	4446	(주)제이제이브릿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삼성동, 송암빌딩3차) 5층	2019-08-09
21	4685	(주)코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뱃골로 244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제12층 1210호	2019-10-19
22	4701	네오로지스틱스(주)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3 (신당동, 하나주유소) 3층	2019-11-22
23	4843	(주)유원항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1 (성산동, 반석빌딩) 1층	2019-11-21

2021 - 177

2021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 및 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지원 사업 분야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최근1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 ◆ 직전년도(2020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전시성,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1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하(1개 단체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예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 2차 심사(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1. 2. 2.(화) 9:00 ~ 2. 18.(목)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 · 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 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다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기 간 : ' 21. 1. 29.(금) ~ 2. 18.(목)
- 방 법 : 코로나19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8.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 ·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2년간 추진 실적 등
- 결과발표 : 2021. 3. 5.(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시 : 2021. 3. 12.(금)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
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 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통장에는 지원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22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하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 김희준, 02-2133-6383, kimheejun@seoul.go.kr)으로 문의바람

2021 - 178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주)케이파 크건설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동 ***호(송림동, 인천산업유통유류통단지)	일시: 2020-10-14 10:40 장소: 아현동 402-1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0. 12.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2. 28.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손경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호 (오천읍)	일시: 2020-09-17 21:12 장소: 강서구 오곡동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48m 초과	처분일: 2020. 10.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2.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1. 2. 28.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2021 - 186

2021 .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 및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3. 사업추진기간 : 2021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법인별 최대 7천만원 이하

- 법인선정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 2차 심사(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법인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전시성, 1회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1. 2. 4.(목) 09:00 ~ 2. 19.(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 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기 간 : ' 21. 1. 29.(금) ~ 2. 19.(금)
- 방 법 : 코로나19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21. 3. 5.(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21. 3. 12.(금)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과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법인으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현장 방문 평가 실시)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 김혜영, 02-2133-6379)으로 문의바랍니다.

2021 - 190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부존재 및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5. 청문기간: 2021. 2. 22.(월) ~ 2. 23.(화)
6. 청문장소: 주거정비과 회의실(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7. 청문주재자: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무관 우종우(2133-7108)
8. 진술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9.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10.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기타 소명자료
11. 청문대상 업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유	적용법규
2018-3	㈜중우엔지니어링	박경중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304호	업무정지 1년	- 서류 미제출 및 사무실 부존재로 등록기준 미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2. 개별기준 나목, 아목
2011-5	㈜우솔디앤씨	위종필	서초구 서초대로 29길 10-8, 4층 (방배동, 영일빌딩)	등록취소	- 서류 미제출 및 사무실 부존재로 등록기준 미달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합산 12개월 초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8호 -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2. 개별기준 나목, 바목 및 아목

1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133-7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 - 19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가 폐문부재 등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2021.1.28.~2021.2.10. (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77	가수원동1188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가수원동1188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윤영모/계 약일자2020년06월20일/계약금액 : 495백만원/ 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1월30일	2020년 11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차	600,000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78	고덕동 188-7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고덕동 188-7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김정희/계약일자2020년05 월27일/계약금액 : 62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 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31일	2020년 10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공사명	대상 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 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7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382-3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382-3 단독 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박경미/계 약일자2020년06월15일/계약금액 :300백만원/ 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차	600,000
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0	관악구 신림동 412-478 단독주택 (다중)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4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관악구 신림동 412-478 단독주택 (다중)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김용근/ 계약일자2020년06월18일/계약금액 :540백만 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2월19일	2020년 12월19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4차	600,000
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1	구의동 257-90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5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구의동 257-90 단독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이일환/계약일자2020년05 월28일/계약금액 :500백만원/도급구분 :원도 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30일	2020년 10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5차	600,000
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2	김포시 운양동 1310-3 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6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김포시 운양동 1310-3 주택 신축공 사/ 발주자(원도급자) : 오명옥/계약일자2020 년05월27일/계약금액 :56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 30일	2020년 10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6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3	나주시 이창동 545 원룸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7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나주시 이창동 545 원룸공사/ 발주자 (원도급자) : 김선영/계약일자2020년05월20일 /계약금액 :23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7차	600,000
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4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 (권태성)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8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 (권태성)/ 발주자(원도급자) : 권태성/계약일자2020년06 월08일/계약금액 :495백만원/도급구분 :원도 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15일	2020년 10월15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8차	600,000
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5	단원구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9호(역 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단원구 단독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원도급자) : 박은주/계약일자2020년06월03일 /계약금액 :53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30일	2020년 10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9차	600,000
1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6	대한예수교장 로회 강릉새로남교 회 증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0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릉새로남교회 증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대한예수교장로 회강릉새로남교회 (신화철)/계약일자2020년 06월01일/계약금액 :660백만원/도급구분 :원 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31 일	2020년 10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0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공사명	대상 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 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7	대흥동 525-2 다중주택, 업무 시설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1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대흥동 525-2 다중주택, 업무시설 신 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이진희/계약일자 2020년06월11일/계약금액 : 460백만원/도급구 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 12월15일	2020년 12월15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1차	600,000
1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8	덕암동 9-10번지 신축빌라 1동 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2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덕암동 9-10번지 신축빌라 1동 공사 / 발주자(원도급자) : 고종덕/계약일자2020년 05월26일/계약금액 : 650백만원/도급구분 : 원 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09월30 일	2020년 09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2차	600,000
1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89	독산동 904-36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3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독산동 904-36 단독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박인숙 외 1인/계약일자 2020년05월20일/계약금액 : 400백만원/도급구 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 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3차	600,000
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0	동, 식물 관련시설 (작물재배)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4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동, 식물 관련시설 (작물재배) 신축공 사/ 발주자(원도급자) : 정재원/계약일자2020 년06월01일/계약금액 : 50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월 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4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1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1	방축리 98-1 외 1필지 우정산업 주식회사 증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5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방축리 98-1 외 1필지 우정산업 주식회사 증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우정산업(주) 김형태/계약일자2020년06월04일/계약금액 :30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월04일	2020년 12월04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5차	600,000
1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2	본오동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6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본오동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최숙영/계약일자2020년06월26일/계약금액 :495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1월30일	2020년 11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6차	600,000
1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3	부곡동 655-13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7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부곡동 655-13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황인복/계약일자2020년05월26일/계약금액 :45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0월26일	2020년 10월26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7차	600,000
1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4	사직리 811 외 3필지 노유자시설 증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8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사직리 811 외 3필지 노유자시설 증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오교철 외 4인/계약일자2020년05월14일/계약금액 :30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07월14일	2020년 07월14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8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1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5	상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19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상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 자) : 강영민 외 1인/계약일자2020년05월24일/ 계약금액 : 495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09월25일	2020년 09월25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19차	600,000
2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6	신림동 상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0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신림동 상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원도급자) : 장삼식/계약일자2020년05월21일 /계약금액 : 347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0차	600,000
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7	신림동713-1 외1필지 근생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1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신림동713-1외1필지 근생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이민숙/계 약일자2020년05월25일/계약금액 : 750백만원/ 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1차	600,000
2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599	쌍문동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 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3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쌍문동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조운성,왕희석/ 계약일자2020년05월25일/계약금액 : 800백만 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3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2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0	용문면 다문리 420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4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용문면 다문리 420 외 1필지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장규식/ 계약일자2020년06월17일/계약금액 :193백만 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0월31일	2020년 10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4차	600,000
2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1	우정읍 호곡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5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우정읍 호곡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송운영/계약일자2020년06 월15일/계약금액 :600백만원/도급구분 :원도 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1월15일	2020년 11월15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5차	600,000
2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2	운곡동 239-9 (주) 엠스코어 공장 증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6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운곡동 239-9 (주) 엠스코어 공장 증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주) 엠스코어 박성철/계약일자2020년05월15일/계약금액 :350백만원/도급구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 (예정)일:2020년08월17일	2020년 08월17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6차	600,000
2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3	의정부시 녹양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7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의정부시 녹양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오수대 외 1인/계약일자 2020년06월01일/계약금액 :180백만원/도급구 분 :원도급/출처 :산재/준공(예정)일:2020년 09월30일	2020년 09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7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공사명	대상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2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4	이창동 710-7 번지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8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이창동 710-7 번지 신축공사/ 발주 자(원도급자) : 김리향 외 1인/계약일자2020년 05월20일/계약금액 : 240백만원/도급구분 : 원 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12월31 일	2020년 12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8차	600,000
2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5	일등로링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29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일등로링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 자) : 일등로링 한기원/계약일자2020년05월20 일/계약금액 : 59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 처 : 산재/준공(예정)일:2020년08월31일	2020년 08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29차	600,000
2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6	장암동 178-8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0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장암동 178-8 외 1필지 근린생활시 설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양승국 외 1 인/계약일자2020년06월11일/계약금액 : 504백 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0월31일	2020년 10월31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0차	600,000
3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7	장호원읍 진암리 33-18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1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장호원읍 진암리 33-18 단독주택 신 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강수경 외 1인/계 약일자2020년06월23일/계약금액 : 385백만원/ 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 일:2020년11월26일	2020년 11월26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1차	600,000

No	통보기관	위반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공사명	대상 업종	도로명주소	공사 내역	준공일	건설공 사대장 통보일	과태료 부과액	산 출 내 역	자진납부금액 (20%감액)
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09	초지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3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초지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원도급자) : 김지혜/계약일자2020년06월15일 /계약금액 : 635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 2020년11월30일	2020년 11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3차	600,000
3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10	합정동 360-23 외 1필지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4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합정동 360-23 외 1필지 근생 및 단 독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김하일, 고영임/계약일자2020년05월19일/계약금액 : 112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 공(예정)일: 2020년11월30일	2020년 11월3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4차	600,000
3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276(202 0.11.3.)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11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근 생 (소매점) 신축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5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근 생 (소매점) 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송윤영 (1)/계약 일자2020년06월15일/계약금액 : 600백만원/도 급구분 : 원도급/출처 : 산재/준공(예정)일: 2020 년11월15일	2020년 11월15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5차	600,000
3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7495(202 0.9.29.)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주)세 호종합 건설	나인석	180111- 1275612	남양읍 남양리 2163-5 단독주택, 제1, 2종근생 (김달승)신축 공사	건축공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2-36호(역삼동, 르메이에르 타운)	공사명 : 남양읍 남양리 2163-5 단독주택, 제 1, 2종근생 (김달승)신축공사/ 발주자(원도급자) : 김달승/계약일자2020년06월03일/계약금액 : 450백만원/도급구분 : 원도급/출처 : 착공/준공 (예정)일: 2020년11월20일	2020년 11월20일	미통보	750,000	○가감기준적용내역:감경사유있음 - 가중: 없음 - 감경: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는 경우(1/4)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36차	600,000

2021 - 201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확정부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 공시송달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와 고지서 공시송달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기간 : 2021. . . ~ 2021. . .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대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반송사유
이○윤	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 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5길 *-*	56****	이사불명

- 처분원인사실 및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무단점유재산 : 용산구 원효로 32-1 -점유기간 : 2019.1.1.~2019.12.23. -점유면적 : 67.5㎡	-2019년분 변상금 확정부과: 24,076,760원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m ²)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시장/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21 - 209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가나아이티 등 770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1. 01. 28 ~ `21. 02. 11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 01. 28 ~ 2021. 02. 11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376저5214	(주)가나아이티	2020-12-28 18:3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	32라1036	(주)논누난다	2020-12-24 2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	235수2371	(주)달생	2020-12-24 18: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	235수2371	(주)달생	2020-12-16 18: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	235수2371	(주)달생	2020-12-28 18: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	62거9422	(주)더리드팜	2020-12-21 19:5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	42나8852	(주)동우인투플랜	2020-12-14 16:10	서울특별시	노량진역~노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	45하2515	(주)디지탈허브	2020-12-09 20: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	04마6532	(주)레이어비	2020-12-22 19:4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	66무7744	(주)렌탈파크	2020-12-28 11:2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	143버9492	(주)본비반트	2020-12-19 07:44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	82더2776	(주)수정씨앤씨	2020-12-18 09:43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	96주2828	(주)신성티엔에스	2020-12-15 07:13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15 02:11	서울특별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5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16 03:33	서울특별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6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22 02:22	서울특별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7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24 03:03	서울특별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8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23 02:13	서울특별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9	83모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0-12-24 02:52	서울특별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0	38허1401	(주)알씨렌트카	2020-12-30 21:47	충청남도 태안군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1	21호7748	(주)암텍	2020-12-14 15:37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위반	50,000
22	67저6414	(주)엑스캔디	2020-12-18 18:57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	84저6719	(주)에스지에드윈	2020-12-15 1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	01라3506	(주)에이앤컴퍼니	2020-11-30 16: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	22저5364	(주)엘앤디엔자임	2020-12-21 18:33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73호9045	(주)엘케이파트너스	2020-12-13 18:12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	173호9045	(주)엘케이파트너스	2020-12-13 18:14	인천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	58다2368	(주)오피스디포코리아	2020-11-30 15: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9	27나3320	(주)우리형	2020-12-16 14:02	서울특별시	논현역교차로~ 신사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0	35수8772	(주)자인텍	2020-12-30 17:2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1부5064	(주)제이앤비글로벌기획	2020-12-17 19:40	경기도 동두천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2	07더5879	(주)제이코섬유	2020-12-18 15:3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	62나8043	(주)주안	2020-12-30 12:10	부산광역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34	62나8043	(주)주안	2020-12-23 12:00	부산광역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35	63호0699	(주)지지엘텍	2020-12-09 20: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	09호0759	(주)케이앤씨산업	2020-12-04 17:5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	30보4449	(주)케이에이치미래환경	2020-12-28 00:52	경상남도 김해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8	91루1428	(주)코코스컴퍼니	2020-12-28 08:2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	81두8671	(주)태양차세대기술	2020-12-15 08:22	부산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	58주2702	(주)티지아이인터네셔널	2020-12-15 17:4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	23마3183	(주)포디자인	2020-12-16 17:15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	43마5602	(주)피에스피	2020-12-23 17:31	경기도 광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3	270로5952	(주)피엠오에스	2020-12-17 08:5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	88마6075	(주)한양기전	2020-12-18 20:1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	60누4391	(주)해청송	2020-12-18 19:58	경기도 광명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	27두0933	(주)해가다움(DA U-M)	2020-12-19 19:5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	인천35머9378	경도건설(주)	2020-12-22 11:05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	51더4990	공간디자인주식회사	2020-11-23 14:18	경기도 하남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	80주3422	그린에드주식회사	2020-12-18 19:43	경기도 부천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	31서6912	금성소방산업(주)	2020-12-27 06:07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1	57루3798	농업회사법인(주)시	2020-12-21 18:02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2	341러845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년누룽지	2020-12-30 19:11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	341러845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년누룽지	2020-12-23 17:38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4	341러845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년누룽지	2020-12-15 13:23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	341러845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년누룽지	2020-12-19 13:35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	341러845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년누룽지	2020-12-30 19:12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7	경기93아8484	대도종합물류(주)	2020-12-18 09:47	경기도 안성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8	27로7873	대웅산업주식회사	2020-12-28 08:5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	19조7004	대현소재산업(주)	2020-12-28 17:54	경기도 광명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0	06버6552	레드코스메틱(주)	2020-11-27 20:24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8소0581	백산부동산개발주식회사	2020-12-15 2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15 18:1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18 20:02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29 14:54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15 18:15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18 20:0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28라3200	서울프라스텍서저리하우스코리아유한회사	2020-12-29 14:56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	경기76자7980	서일관광(주)	2020-12-22 08:56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69	50허0450	선인상사	2020-12-03 19: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04허1433	성민시	2020-11-11 09:58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전용차로위반	50,000
71	25다0591	써모아이주식회사	2020-12-22 18:2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3보9454	일화모직공업(주)	2020-12-18 15:49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	270무2945	제이앤에스에이주식회사	2020-12-17 18:58	경기도 김포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	59호2799	주)경보메디칼	2020-11-26 17:4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	28더8315	주)나우에스제이	2020-12-23 18:0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	39하5680	주)멍이	2020-12-02 07:37	경기도 구리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	122하1192	주)무니토	2020-11-24 18:5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8	167허7076	주)에버텍케어시	2020-11-27 2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	176호2216	주)오리오	2020-11-20 19:12	경기도 용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73호6021	주)우전시	2020-12-05 14:55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	45하3383	주)케이에프에너지	2020-12-11 09:24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	46가0314	주)티앤디코퍼레이션	2020-11-17 11: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	167하4070	주)프린터파트너스	2020-11-23 17:48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4	133하1046	쥬그린카	2020-12-29 18:41	경기도 용인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	64부2215	주식회사공간이엔지	2020-12-23 18:19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	25보8452	주식회사금일광선	2020-12-15 18:5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	48고4233	주식회사대진건업	2020-12-24 18: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	13하1549	주식회사동아렌트카	2020-12-16 21:52	충청남도 공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9	03노2042	주식회사동주그룹	2020-12-21 20:16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90	03노2042	주식회사동주그룹	2020-12-15 17:53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91	11두6030	주식회사라보상사	2020-12-24 18:4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2	68거4858	주식회사메탈링크	2020-12-21 19:33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3	68거4858	주식회사메탈링크	2020-12-21 19:34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	82마9184	주식회사미래무역	2020-12-23 09:47	경기도 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	45하1573	주식회사본투어인터내셔널	2020-12-10 10: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6	08여9931	주식회사부광어패럴	2020-12-28 17: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7	95마3306	주식회사석천피엔씨	2020-12-24 17: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	357무9466	주식회사점표리빙	2020-12-17 17:41	경기도 광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1도3988	주식회사스카이에크놀로지	2020-12-21 08:09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104하2455	주식회사쏘카	2020-12-29 12:52	경기도 김포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9하4167	주식회사쏘카	2020-12-18 09:44	경기도 용인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9하6501	주식회사쏘카	2020-12-21 20:17	경기도 용인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52마0785	주식회사씨제이컨설팅	2020-12-23 13:0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30거3817	주식회사아이덴글로벌	2020-12-16 18:1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52하0843	주식회사아이퍼니아트	2020-12-10 08:49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08누2512	주식회사아티스트컴퍼니	2020-12-17 08:3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11하8953	주식회사이삭센터카	2020-12-24 18:30	강원도 횡성군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23하9392	주식회사이삭센터카	2020-12-21 07:19	강원도 횡성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45저0675	주식회사인카리스	2020-11-27 14:4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68주8678	주식회사지인공방	2020-12-18 17:46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17두1120	주식회사춘광	2020-12-18 18:3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09보1455	주식회사결쳐앤유	2020-12-30 13:04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13	09다3113	지데이트레이딩주식회사	2020-12-21 16: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56라8638	케이비캐피탈(주)	2020-12-18 19:07	부산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89두9668	통일푸드주식회사	2020-12-23 09:24	경기도 구리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89두9668	통일푸드주식회사	2020-12-21 09:45	경기도 구리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89두9668	통일푸드주식회사	2020-12-21 08:47	경기도 구리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57호9618	푸른솔관광주식회사	2020-12-18 18:04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05보1038	A**	2020-12-22 14:35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05보1038	A**	2020-12-22 14:34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34도7727	B**	2020-12-21 13:12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80두0351	C**	2020-12-22 18:4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39마0584	C**	2020-12-25 20:39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35소3886	C**	2020-12-16 17:45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18모5896	D**	2020-12-23 12:5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06나4823	F**	2020-12-24 18:18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40로5365	F**	2020-12-25 16:46	경기도 평택시	상봉동 중량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60노1458	H**	2020-12-30 08:5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46조7872	H**	2020-12-24 17:52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24나4617	H**	2020-12-16 17: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315수4888	J**	2020-12-22 13:48	경기도 안산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276조5180	J**	2020-12-20 12:56	경기도 안산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87주2084	J**	2020-12-23 20:0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92노0614	J**	2020-12-15 10:34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48수6094	J**	2020-12-22 19:1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45마2256	J**	2020-12-21 1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19무6726	K**	2020-12-18 14:21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13누4758	K**	2020-12-18 18: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23조2498	K**	2020-12-17 18:08	인천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69다3498	K**	2020-12-24 20:32	경기도 구리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04보6117	L**	2020-12-24 20:25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24주3380	L**	2020-12-17 18:1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164수9888	L**	2020-12-30 19:45	서울특별시	상봉동 중량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44	66저7857	M**	2020-12-24 15:02	전라북도 정읍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66저7857	M**	2020-12-24 15:04	전라북도 정읍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394라6923	N**	2020-12-21 15:40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43다4307	N**	2020-12-30 19: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53더7566	P**	2020-12-22 07: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35머2223	P**	2020-12-29 10:16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38저9378	P**	2020-12-17 17:40	서울특별시	관악로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19너2058	Q**	2020-12-23 12:49	경기도 의왕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48부8694	S**	2020-12-21 19:43	충청남도 부여군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52노1332	S**	2020-12-18 18:51	충청남도 서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288루3332	S**	2020-12-18 19: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288루3332	S**	2020-12-22 19: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29어3360	W**	2020-12-28 19:3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40로6117	X**	2020-12-26 11:30	충청남도 서산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39저8886	Y**	2020-12-17 08:10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02다1018	Z**	2020-12-21 17:2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20머8641	갈**	2020-12-22 20:1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65하4824	강**	2020-12-09 17:1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01러0109	강**	2020-12-24 15:42	서울특별시	삼성역무역센터~휘문교교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17두5263	강**	2020-12-21 18:5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31저6916	강**	2020-12-24 18:03	대구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90마1241	강**	2020-12-27 13:46	서울특별시	종로4가 신한은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80거0574	강**	2020-12-17 07:27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25부2807	강**	2020-11-26 10:50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25부2807	강**	2020-11-27 10: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25부2807	강**	2020-12-04 10: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18로9267	강**	2020-12-15 08: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81무9305	강**	2020-12-25 13:53	부산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66서5067	강**	2020-12-28 17:4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서울32자2631	고**	2020-12-18 17:2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69가3147	고**	2020-12-22 07:46	경기도 구리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75	05두0236	고**	2020-12-19 13:2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24다7736	고**	2020-12-28 07:40	서울특별시	대방파출소~보라매 교차로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14누2937	고**	2020-12-24 14:42	강원도 정선군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86더4873	공**	2020-12-18 18:51	서울특별시	압구정로. 갤러리아백화점~성수대 교남단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16조5154	공**	2020-12-23 17:47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32우9901	곽**	2020-12-24 19:07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25호3867	곽**	2020-12-02 12:47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45무1106	곽**	2020-12-17 12:19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57무4377	구**	2020-12-22 18:12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31여8001	구**	2020-12-29 09:21	충청북도 청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서울31아2117	구**	2020-12-22 19:5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59나6670	구**	2020-12-24 19:22	인천광역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31루0556	구**	2020-12-28 18:01	서울특별시	천호대로~광장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서울32바8954	국**	2020-12-15 20: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26라5671	권**	2020-12-29 16:09	경기도 고양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49구7589	권**	2020-12-15 09:03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55여0905	권**	2020-12-30 08:2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66구0164	권**	2020-12-24 16:41	서울특별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남태령역구간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89조8658	권**	2020-12-21 17:50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11수4661	권**	2020-12-18 09:21	대전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322부1890	권**	2020-12-26 16:51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93도2134	길**	2020-12-24 17:39	강원도 춘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56마5497	김**	2020-12-30 09:17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서울31사7041	김**	2020-12-16 20:2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67주1332	김**	2020-12-24 18:52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17거1470	김**	2020-12-22 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41너7990	김**	2020-12-24 14:37	경기도 양주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티어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23마1022	김**	2020-12-15 20:36	대구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23마1022	김**	2020-12-15 17:42	대구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서울55거9575	김**	2020-12-18 20:39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서울55거9575	김**	2020-12-18 20:3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06	85아8210	김**	2020-12-28 18:0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57저6981	김**	2020-12-17 18:43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서울32자4156	김**	2020-12-28 09:45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257저6079	김**	2020-12-23 08:25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04머0827	김**	2020-12-15 18: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8모7294	김**	2020-12-15 17:16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41라8856	김**	2020-12-21 16:28	충청북도 청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49저9026	김**	2020-12-29 10:39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서울31사9773	김**	2020-12-16 09:4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서울32아4450	김**	2020-12-21 20:44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서울32아4450	김**	2020-12-21 20:4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63루9961	김**	2020-12-24 17:3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63로5394	김**	2020-12-22 17:3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67다6040	김**	2020-12-29 07: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67다6040	김**	2020-12-21 07: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53머5815	김**	2020-12-22 16:00	서울특별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서울31아7327	김**	2020-12-17 17:41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60나2355	김**	2020-12-25 19:58	경기도 과천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66더0358	김**	2020-12-29 17:08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48루3781	김**	2020-12-22 06:22	경기도 광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서울31사7439	김**	2020-12-24 19:0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서울31아5190	김**	2020-12-15 09: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서울31아2678	김**	2020-12-22 14:26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53머6536	김**	2020-12-21 13:05	울산광역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01고0106	김**	2020-12-21 18:54	경기도 고양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17우5974	김**	2020-12-17 17:00	서울특별시	대림아파트교차로~해군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66누8566	김**	2020-12-16 19:04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125머6650	김**	2020-12-22 16:30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10조5834	김**	2020-12-17 16:4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40무4303	김**	2020-12-23 19:12	경원도 속초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104하6039	김**	2020-12-09 17:30	경기도 용인시	삼성역 무역센터~ 휘문교교차거리 방면(오토웨이타워)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37	16오4083	김**	2020-12-18 18:50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14다9959	김**	2020-12-16 20:0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01구1916	김**	2020-12-29 17:49	인천광역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80고2880	김**	2020-12-18 09:29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서울36바1578	김**	2020-12-16 19:3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30라8789	김**	2020-12-16 18:59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95우8485	김**	2020-12-15 08: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90조8941	김**	2020-12-29 07: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09모632	김**	2020-12-29 18:00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49너6937	김**	2020-12-16 09:22	경상북도 칠곡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66저3615	김**	2020-12-24 19:0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68더2891	김**	2020-12-24 12:42	경기도 시흥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40저1653	김**	2020-12-15 19:13	경기도 시흥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43나7575	김**	2020-12-18 19:00	전라남도 보성군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57여3586	김**	2020-12-23 18:5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65마0528	김**	2020-12-19 12:4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22너6926	김**	2020-12-23 19:0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41오7086	김**	2020-12-17 18:55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89노2876	김**	2020-12-24 13:15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서울31야3777	김**	2020-12-14 20:25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79겨1580	김**	2020-12-14 09:30	인천광역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60,000
258	93고3835	김**	2020-12-22 1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23고7157	김**	2020-12-22 10:2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11호2345	김**	2020-12-03 11:16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서울31자2628	김**	2020-12-24 08:5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서울32바6779	김**	2020-12-23 20:4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33라4697	김**	2020-12-18 18:38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278무4670	김**	2020-12-24 20:48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13라7975	김**	2020-12-15 09:40	서울특별시	여의도파라곤오피스텔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서울32바9551	김**	2020-12-21 08:2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서울32야3588	김**	2020-12-21 08:02	서울특별시	올림픽로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68	30두0120	김**	2020-12-15 17:50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16너9825	김**	2020-12-16 13:00	경기도 안성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36도8528	김**	2020-12-18 07:4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85로1661	김**	2020-12-21 18:57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57도2982	김**	2020-12-28 09:18	경기도 안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01구3603	김**	2020-12-15 11:0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26조2611	김**	2020-12-23 08:45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56가5280	김**	2020-12-18 18:2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15루7511	김**	2020-12-18 1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55거3586	김**	2020-12-16 18:44	전라북도 정읍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59하5867	김**	2020-11-25 13:56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41모6579	김**	2020-12-16 20:13	울산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111서7584	김**	2020-12-24 14:01	경기도 안양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45저8332	김**	2020-12-24 14: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89수0370	김**	2020-12-22 17: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95버4761	김**	2020-12-28 08:40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03가4215	김**	2020-12-23 07:53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111모3997	김**	2020-12-23 12:10	경상북도 구미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서울38아2914	김**	2020-12-29 20: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서울31사8232	김**	2020-12-22 10:42	인천광역시	현충로, 흑석동한강현대아파트앞~흑석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50오3760	김**	2020-12-18 08:30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로, 대릉국제사격장~서울여대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46머9002	김**	2020-12-24 18:5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60더5256	김**	2020-12-21 21:45	경기도 남양주시	중화동 메디렌스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37구4172	김**	2020-12-15 2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175도6508	김**	2020-12-15 17:49	경기도 양주시	공릉동 화랑로 육사삼거리~화랑대사거리구간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39서0338	김**	2020-12-24 09:06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30수4694	김**	2020-12-17 12:57	충청남도 홍성군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서울32사7121	김**	2020-12-19 15:24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31수4905	김**	2020-12-18 18:54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97	33나9289	김**	2020-12-19 19: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04마3536	김**	2020-12-15 20: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69고1778	김**	2020-12-18 16:16	경상북도 영천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35보7091	김**	2020-12-22 17:2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47마3053	김**	2020-12-25 14:31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38수7646	김**	2020-12-23 20: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경기88사3837	김**	2020-12-15 08:23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304	62배8784	김**	2020-12-28 08:2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58노9848	김**	2020-12-22 14:35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69버1699	김**	2020-12-30 10:3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03누6061	김**	2020-12-21 18:13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82모9011	김**	2020-12-21 19:21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19하6754	김**	2020-10-23 19:30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46라6307	김**	2020-12-29 20:0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41루5941	김**	2020-12-28 18:5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37여4160	김**	2020-12-27 18:18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04마7242	김**	2020-12-23 18:2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서울32사7226	김**	2020-12-26 18:20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68수8911	김**	2020-12-30 14:05	경기도 광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59무2271	김**	2020-12-24 19: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56마2161	김**	2020-12-22 18:01	울산광역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47로5679	김**	2020-12-17 18: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26누0415	김**	2020-12-23 02:45	경기도 안양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34호9052	김**	2020-12-04 15:36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34호9052	김**	2020-12-14 17:59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34호9052	김**	2020-11-25 15:57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34호9052	김**	2020-11-20 13:46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22마5764	김**	2020-11-23 10:01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16여7347	김**	2020-12-23 11:34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70모8021	김**	2020-12-28 11: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327	82우8107	김**	2020-12-16 18:41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12려0127	김**	2020-12-18 07:39	경기도 용인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29	24노8232	김**	2020-12-23 09:51	강원도 평창군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서울86자1293	김**	2020-12-28 08: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11조1370	김**	2020-12-22 19:14	전라남도 무안군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11부2174	김**	2020-12-16 18:2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350도9548	나**	2020-12-29 20:29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43하1017	나**	2020-11-28 18:17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31호1019	나**	2020-11-17 18:17	경기도 포천시	양재IC~ 양재시민숲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38다2090	남**	2020-12-18 09:02	경기도 오산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50두6347	남**	2020-12-29 09:3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29호5022	노**	2020-11-16 18: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서울32자1660	노**	2020-12-21 20:0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12호5352	노**	2020-11-25 14:59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12호5352	노**	2020-11-25 14:58	대전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01소0710	도**	2020-12-18 18:44	인천광역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20라8331	도**	2020-12-15 17:24	대전광역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92라7009	마**	2020-12-23 18:57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62누6282	문**	2020-12-17 09:24	경기도 시흥시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86수8057	문**	2020-12-15 17:21	인천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52모1967	문**	2020-12-21 18:0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서울31사4222	문**	2020-12-21 0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서울31사4222	문**	2020-12-22 07: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서울31바3364	민**	2020-12-18 07:35	경기도 시흥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22아5182	민**	2020-12-16 18:2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46라5862	민**	2020-12-24 19:2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86수7861	박**	2020-12-14 0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33하7395	박**	2020-11-24 18:4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34호3500	박**	2020-12-11 14:24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36구3379	박**	2020-12-21 16: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56주8063	박**	2020-12-16 09:48	경기도 양평군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10호7530	박**	2020-11-18 1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18바3039	박**	2020-12-24 18: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54거1833	박**	2020-12-24 19:3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61	63라6270	박**	2020-12-28 09:3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13가8759	박**	2020-12-28 19:52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30나3624	박**	2020-12-17 18:51	서울특별시	압구정로. 갤러리아백화점~성수대교남단교 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54두0251	박**	2020-12-15 20:15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385구6227	박**	2020-12-30 18:37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36루1876	박**	2020-12-28 14:06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48라6400	박**	2020-12-30 18:55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서울31사3063	박**	2020-12-16 07:16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서울31사3063	박**	2020-12-17 07:39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21누3866	박**	2020-12-14 1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128하6461	박**	2020-12-11 16:08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45나9910	박**	2020-12-21 18:1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49더0179	박**	2020-12-21 17:5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26오0196	박**	2020-12-17 17:13	경기도 시흥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서울86자4783	박**	2020-12-16 18: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63배3754	박**	2020-12-18 17:21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35나0420	박**	2020-12-17 14:30	경기도 남양주시	종암삼거리~미야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15버6952	박**	2020-12-24 18:38	서울특별시	논현역교차로~신사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59주5293	박**	2020-12-28 18:45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1여9854	박**	2020-12-21 08:0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서울31사5176	박**	2020-12-21 15:29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159호3142	박**	2020-11-26 09:03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48오0161	박**	2020-12-21 09:00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122호2477	박**	2020-11-24 17:5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49라0370	박**	2020-12-17 17:3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서울31자4614	박**	2020-12-17 07:48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51더6940	박**	2020-12-30 18:4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서울35바7014	박**	2020-12-24 20:4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07두5052	박**	2020-12-27 12:20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13가3594	박**	2020-12-17 16:49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91	07고5785	박**	2020-12-21 17:51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55부4728	박**	2020-12-18 18:5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45가0982	박**	2020-12-21 17:54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서울89자9776	박**	2020-12-22 16: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49라9240	박**	2020-12-18 17:48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16나5505	박**	2020-12-24 07:5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54오5394	박**	2020-12-15 18:0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54오5394	박**	2020-12-24 19: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서울31바5738	박**	2020-12-18 19:46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63나8193	박**	2020-12-18 09:10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41노4633	박**	2020-12-16 18:4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37라8353	박**	2020-12-21 09:31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22로7696	박**	2020-12-30 20:48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53우3781	박**	2020-12-19 13:11	서울특별시	서울 강북구 번동 148-232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309노2621	방**	2020-12-23 15:1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309노2621	방**	2020-12-17 18:5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67투8095	방**	2020-12-23 11:5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02여9777	배**	2020-12-18 15:11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64라9399	배**	2020-12-23 20:3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43수5679	배**	2020-12-18 08:59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68라3859	배**	2020-12-18 17:37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61주2163	백**	2020-12-30 07:39	경기도 안산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50고1609	백**	2020-12-23 07:3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20로3360	백**	2020-12-29 19:28	충청북도 청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01나6477	백**	2020-12-18 18: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서울31사9651	서**	2020-12-27 18:04	인천광역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30무9152	서**	2020-12-18 15:1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57여9411	서**	2020-12-15 12:17	강원도 춘천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57여9411	서**	2020-12-15 15:07	강원도 춘천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167허7887	서**	2020-11-27 19:1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72가3898	서**	2020-12-16 17:18	서울특별시	양화대교 북단교차로~남단교차로 방면	전용차로위반	60,000
422	19보2444	서**	2020-12-17 20:3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423	05수4186	서**	2020-12-30 20:44	광주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경기87바8794	선**	2020-12-28 18:30	경기도 안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45러8657	설**	2020-12-26 10:40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258구2188	성**	2020-12-24 09:18	경기도 성남시	복정역교차로~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27노6529	성**	2020-12-19 20:4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65두0489	손**	2020-12-24 17:26	전라북도 전주시	송파구 올림픽화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40무3457	손**	2020-12-28 20:40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377마1680	손**	2020-12-19 14:56	경기도 고양시	수색동 수색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29버9833	송**	2020-12-21 17: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91러5072	송**	2020-12-17 09:00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02고7556	송**	2020-12-19 21:39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51무5870	송**	2020-12-22 18:3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67버1915	송**	2020-12-15 10:13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93다8757	송**	2020-12-22 17:5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37도7982	송**	2020-12-30 09:31	경기도 수원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26루4015	송**	2020-12-29 18:32	충청남도 공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09하6594	송**	2020-12-08 17:29	광주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09하6594	송**	2020-12-08 15:18	광주광역시	서초IC~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88거5959	수**	2020-12-22 18:33	경기도 부천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43로2148	신**	2020-12-16 18: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244노6787	신**	2020-12-22 12:52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40루9077	신**	2020-12-22 17:5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40루9077	신**	2020-12-29 18: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40루9077	신**	2020-12-17 18:0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40루9077	신**	2020-12-16 17: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03다3278	신**	2020-12-25 16:50	서울특별시	서울 강북구 번동 148-232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24노6996	신**	2020-12-29 20:44	경기도 동두천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24러3642	신**	2020-12-18 14:22	경기도 화성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45구8420	신**	2020-12-16 19: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서울91자3628	신**	2020-12-22 08:57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서울32바6481	신**	2020-12-16 20: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454	03노2940	신**	2020-12-24 18:53	경기도 의정부시	육사야구장~화랑대역 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50다6815	심**	2020-12-22 08:1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39수5377	심**	2020-12-28 07:22	경기도 성남시	현릉로. 내곡IC~ 염곡IC 구간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52저6617	안**	2020-12-28 17:44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56나7935	안**	2020-12-24 20:2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67로7038	안**	2020-12-24 19: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362라2003	안**	2020-12-21 09:1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87모9726	안**	2020-12-23 17:1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34다1981	안**	2020-12-25 13:48	전라남도 순천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97도7728	안**	2020-12-30 18:30	경기도 용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49수2523	안**	2020-12-24 13:06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146호6616	안**	2020-11-24 09:07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146호6616	안**	2020-11-24 13:53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11조0311	안**	2020-12-18 17:3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69저2937	양**	2020-12-17 18:2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60구1112	양**	2020-12-17 1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45소8970	양**	2020-12-21 18:47	전라남도 광양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25여5015	양**	2020-12-28 19:23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25여5015	양**	2020-12-23 19:0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174나6282	양**	2020-12-22 20:08	경기도 오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62마9208	양**	2020-12-29 18:22	전라남도 순천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38두0631	양**	2020-12-16 17:4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서울32바8986	양**	2020-12-28 08:4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67마3762	양**	2020-12-20 17:17	경기도 안양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86저5110	양**	2020-12-29 07:20	인천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29모9638	여**	2020-12-29 14: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60무3731	여**	2020-12-21 07:03	서울특별시	반포역~고속터미널 교차로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13라6028	엄**	2020-12-30 10:1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35로5039	오**	2020-12-28 19:11	경상북도 울진군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04보4141	오**	2020-12-21 20: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484	56버5287	오**	2020-12-30 07:27	경기도 수원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56버5287	오**	2020-12-21 13:01	경기도 수원시	상봉동 종량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89라9059	오**	2020-12-29 07: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09버2937	오**	2020-12-21 18: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35도3609	오**	2020-12-24 20:4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35도3609	오**	2020-12-18 20:2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35도3609	오**	2020-12-17 20:4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17마6849	오**	2020-12-23 20:4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17우2388	오**	2020-12-18 20:0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17우2388	오**	2020-12-18 20: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14여0185	오**	2020-12-17 09:2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06저7950	우**	2020-12-15 17:2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67가5152	우**	2020-12-16 11:03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 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61조2700	원**	2020-12-23 19:3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84버8408	원**	2020-12-15 09:30	강원도 춘천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51무8527	원**	2020-12-30 08:3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80주3598	위**	2020-12-21 17: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10버6974	유**	2020-12-29 09:09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25버3986	유**	2020-12-23 11: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서울31바3887	유**	2020-12-23 20:25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36여9603	유**	2020-12-18 09:1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82로9839	유**	2020-12-22 17:4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32무8234	유**	2020-12-21 20:3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서울32아2109	유**	2020-12-21 14:48	경기도 파주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01하1651	유**	2020-10-16 14:25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서울32아4997	유**	2020-12-11 12:04	인천광역시	논현역 교차로~신사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55다5499	유**	2020-12-21 09:49	경기도 광명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42구0656	유**	2020-12-27 19:56	경기도 안산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267소4039	유**	2020-12-26 14:39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서울48로8015	유**	2020-12-15 09:4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51보9088	유**	2020-12-28 07:11	경기도 평택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15	17206492	윤**	2020-12-24 09:0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47수6027	윤**	2020-12-29 15:01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47수6027	윤**	2020-12-29 14:59	대전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05러1336	윤**	2020-12-21 11:1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40구0336	윤**	2020-12-21 08:05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141서5191	윤**	2020-12-28 07:51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51여8521	윤**	2020-12-28 17:50	경기도 수원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56모7466	윤**	2020-12-30 19: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96구3846	윤**	2020-12-17 08:4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49도5116	윤**	2020-12-23 20:28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149하1397	윤**	2020-11-26 19:4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149하1396	윤**	2020-11-10 08:4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15도5838	윤**	2020-12-24 14:10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392다7392	윤**	2020-12-17 09:01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30소8554	윤**	2020-12-23 18:15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서울31자3266	이**	2020-12-27 15:27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24보9744	이**	2020-12-18 15:0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09마2073	이**	2020-12-21 07:48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86더0263	이**	2020-12-24 07:11	인천광역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36마0143	이**	2020-12-28 18:5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15서3457	이**	2020-12-28 1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15서3457	이**	2020-12-21 1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86다8743	이**	2020-12-28 18:34	충청북도 청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91소0724	이**	2020-12-19 10:31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89고3221	이**	2020-12-24 17: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28고4430	이**	2020-12-17 19:0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57모0492	이**	2020-12-15 17:31	대구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54더0243	이**	2020-12-18 07:1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54더0243	이**	2020-12-17 07:1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서울31사3907	이**	2020-12-21 09:4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66두3389	이**	2020-12-22 20:27	경기도 성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46	52보9038	이**	2020-12-19 15:3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67모2439	이**	2020-12-24 17: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42거8471	이**	2020-12-22 08:2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49	62구4972	이**	2020-12-15 08:15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30터1507	이**	2020-12-21 07:11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28주5179	이**	2020-12-22 17: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2	14버3097	이**	2020-12-21 12:1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69가8686	이**	2020-12-18 20:30	경기도 이천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35두2162	이**	2020-12-21 12:46	경기도 화성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5	289저2321	이**	2020-12-15 05:02	충청남도 천안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41서1822	이**	2020-12-23 07:17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27노6022	이**	2020-12-25 06:27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58	222누5843	이**	2020-12-24 17:42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20라6877	이**	2020-12-21 13:43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0	09주6679	이**	2020-12-24 20:09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서울32자1335	이**	2020-12-14 21:36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33도5281	이**	2020-12-16 17:58	경기도 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34여3971	이**	2020-12-15 17:14	경기도 안산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4	30보6563	이**	2020-12-23 16:4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19고6037	이**	2020-12-30 07:26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54머7205	이**	2020-12-24 18:00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서울31바3161	이**	2020-12-16 20:24	서울특별시	YBM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568	03서4573	이**	2020-12-30 13:06	울산광역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53두4871	이**	2020-12-30 20:37	충청남도 당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43나7739	이**	2020-12-18 18:33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56너3017	이**	2020-12-15 09:10	서울특별시	화랑로 태릉국제사격장~서울여대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103터9617	이**	2020-12-15 16:08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44하1975	이**	2020-11-30 19:4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경기의정부바5801	이**	2020-12-23 15:47	경기도 의정부시	삼성디지털프라자앞	전용차로위반	40,000
575	59호9844	이**	2020-11-30 18:4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서울31자3769	이**	2020-12-18 17:1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77	190머9049	이**	2020-12-18 18:4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8	서울31자4275	이**	2020-12-16 20:0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경기83사6760	이**	2020-12-22 10:29	경기도 부천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30어3604	이**	2020-12-17 07:3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1	14우1072	이**	2020-12-18 11:30	인천광역시	학여울역~대치우성 아파트 교차로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57누6327	이**	2020-12-28 09:07	대전광역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26누5692	이**	2020-12-24 19:54	경기도 하남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28나9833	이**	2020-12-27 16:39	인천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5	164저3785	이**	2020-12-30 17:2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86	25나9086	이**	2020-12-22 17:18	충청남도 당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41루0645	이**	2020-12-15 09:14	경기도 안산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34우3828	이**	2020-12-29 17:3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34부5235	이**	2020-12-24 09:2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90	234나8515	이**	2020-12-15 20:1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서울32사2235	이**	2020-12-22 19:44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16서6253	이**	2020-12-24 18:27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40부2000	이**	2020-12-23 20:23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22머3316	이**	2020-12-28 12:28	충청남도 보령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빌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22수1226	이**	2020-12-19 11:10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18버4194	이**	2020-12-24 19:34	경기도 시흥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49누0150	이**	2020-12-18 18:26	부산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02주7380	이**	2020-12-18 16:45	서울특별시	금천우체국교차로~말미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10머6286	이**	2020-12-16 09:2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50거1780	이**	2020-12-23 17:14	경기도 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96저0556	이**	2020-12-30 17:5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321오2939	이**	2020-12-17 08:1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37저0880	이**	2020-12-30 20:1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서울32사7962	이**	2020-12-24 20:50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47노0843	이**	2020-12-22 20:10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20호5677	이**	2020-09-28 18:18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07	62로0643	이**	2020-12-18 17:10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59오3914	이**	2020-12-21 07:3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41다4365	이**	2020-12-30 18: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162두8773	임**	2020-12-17 11:5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162두8773	임**	2020-12-18 16: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15오2519	임**	2020-12-28 17:44	경기도 포천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서울32바3639	임**	2020-12-28 09:1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20하9031	임**	2020-11-14 10:55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20하9031	임**	2020-11-14 10:54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20하9031	임**	2020-12-15 15:18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26구0403	임**	2020-12-15 17:1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252모5540	임**	2020-12-22 17:23	전라남도 화순군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21다0569	임**	2020-12-18 21:33	광주광역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84여6869	임**	2020-12-21 15:56	경기도 광명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84구3063	임**	2020-12-21 07:13	경기도 하남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355구5486	임**	2020-12-24 09:3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63주3382	임**	2020-12-17 19:0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63주3382	임**	2020-12-30 18:3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06사5490	임**	2020-12-16 11:15	경기도 광명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37우5173	장**	2020-12-29 09:1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02두6386	장**	2020-12-30 09:18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서울31사7032	장**	2020-12-11 13:44	서울특별시	삼성역무역센터~휘문교교차거리 방향(오도웨이타워)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67버7822	장**	2020-12-21 12:5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서울80배3962	장**	2020-12-30 20:4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80우7950	장**	2020-12-17 07:4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05나8304	장**	2020-12-17 18:0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34오1506	장**	2020-12-30 18: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84조6291	장**	2020-12-23 09:34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04리2878	장**	2020-12-29 19:16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서울06다5398	장**	2020-12-18 01:36	인천광역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60,000
637	서울06다5398	장**	2020-12-18 04:56	인천광역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6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38	38오0150	장**	2020-12-18 18:5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34호0319	전**	2020-11-16 16:21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14주7764	전**	2020-12-29 08:3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23누2070	전**	2020-12-26 16:46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56오1949	전**	2020-12-15 19:1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서울31아3808	정**	2020-12-18 18:30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22노6910	정**	2020-12-24 14:27	광주광역시	동대문~종로5가,광장시장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08소1773	정**	2020-12-24 20:50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서울31자3195	정**	2020-12-14 17:37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34서1668	정**	2020-12-30 17:32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28소4133	정**	2020-12-18 07:2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28소4133	정**	2020-12-17 07:2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서울31자1777	정**	2020-12-29 20: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29두0109	정**	2020-12-26 15: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141거8240	정**	2020-12-26 20:20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167오3045	정**	2020-12-24 17:3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01호5685	정**	2020-11-17 12:35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69구2091	정**	2020-12-29 18:5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11마0199	정**	2020-12-16 1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57버6066	정**	2020-12-30 18:1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95노0340	정**	2020-12-23 17:18	경기도 시흥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145너1349	정**	2020-12-24 18:27	경기도 성남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356수4842	정**	2020-12-24 18:36	서울특별시	양화대교 북단교차로~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145저1398	정**	2020-12-22 20:2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36루5070	정**	2020-12-24 18:54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65버7308	정**	2020-12-23 14:3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46나9809	정**	2020-12-16 16:44	경기도 성남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5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51오5387	정**	2020-12-15 17: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39더5862	정**	2020-12-18 18:55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34고3103	정**	2020-12-29 19:30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224더2328	정**	2020-12-16 17:1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69	38호6819	정**	2020-11-13 18:31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14다0731	정**	2020-12-28 11:36	세종특별자치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33하9140	정**	2020-11-26 17:48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14우3951	조**	2020-12-16 17:55	경기도 구리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42호2986	조**	2020-11-16 17:4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서울35바1823	조**	2020-12-18 20:25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36누7100	조**	2020-12-17 18:4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52수0699	조**	2020-12-30 19:1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29라8593	조**	2020-12-21 17:2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40다0227	조**	2020-12-24 14:12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61두1751	조**	2020-12-18 19:34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22우0729	조**	2020-12-24 19:37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12루2496	조**	2020-12-17 19:27	경기도 고양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21누1196	조**	2020-12-21 17: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65보2818	조**	2020-11-18 16:22	경기도 양평군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서울31사6206	조**	2020-12-17 17:2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23수9818	조**	2020-12-21 18:41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23수9818	조**	2020-12-28 18:41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23수9818	조**	2020-12-22 17:33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40조4903	조**	2020-12-30 19:1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49우3587	조**	2020-12-24 12:37	경기도 과천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103소7335	주**	2020-12-15 17:49	경기도 화성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17너6307	주**	2020-12-24 19:39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58도0444	주**	2020-12-18 20:19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57나6435	주**	2020-12-23 11:07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67로9617	주**	2020-12-29 17:14	경기도 용인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297더4849	지**	2020-12-28 17:49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157로1296	지**	2020-12-19 15:34	경기도 광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12버1862	진**	2020-12-17 08:41	경기도 수원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서울35바3304	진**	2020-12-17 09:4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54거0167	진**	2020-12-28 09: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00	63부6784	차**	2020-12-21 20:23	경기도 포천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68여9391	차**	2020-12-23 18:4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33누6597	차**	2020-12-24 19:29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68여0216	차**	2020-12-22 19:58	경상남도 김해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48머3948	차**	2020-12-29 17:1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182누6871	천**	2020-12-18 09:56	경기도 화성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42다6393	최**	2020-12-21 18:2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56라1009	최**	2020-12-18 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32조7437	최**	2020-12-30 19:5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32더4235	최**	2020-12-30 18:55	경기도 안산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93가0723	최**	2020-12-22 17:53	대전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85여1082	최**	2020-12-17 19: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65루1056	최**	2020-12-23 2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16부9686	최**	2020-12-21 12:1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68노0987	최**	2020-12-24 18: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41루5465	최**	2020-12-22 18:11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50라3753	최**	2020-12-24 14:50	경상북도 구미시	논현역교차로~ 신사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05부0373	최**	2020-12-18 19:18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62도1425	최**	2020-12-24 15:28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62도1425	최**	2020-12-24 15:29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64가1464	최**	2020-12-24 17:2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19루8697	최**	2020-12-21 17:22	대구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67라0148	최**	2020-12-30 19:44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66저5357	최**	2020-12-21 18:5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4	82소0824	최**	2020-12-22 18: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34저1955	최**	2020-12-26 14: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62다4934	최**	2020-12-18 20:2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서울31사5839	최**	2020-12-16 19:55	경기도 의정부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80루7968	최**	2020-12-21 09:4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48다0133	최**	2020-12-30 11:51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30	161하4903	최**	2020-09-29 23:22	경상남도 통영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58도8873	최**	2020-12-24 17:5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서울91자2563	최**	2020-12-15 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64다9427	피**	2020-12-28 07:40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서울31아7045	하**	2020-12-24 16:17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112다5945	하**	2020-12-18 17:40	경기도 시흥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05로5593	하**	2020-12-18 18:2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100루5869	한**	2020-12-28 18: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39라8065	한**	2020-12-29 19:15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서울32바2064	한**	2020-12-17 17:15	경기도 안양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서울31자5073	한**	2020-12-17 20:1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48누2377	한**	2020-12-15 18:1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26나0678	한**	2020-12-17 19:2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서울31아5788	한**	2020-12-30 20:2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50주7826	한**	2020-12-21 08:5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333마3100	한**	2020-12-23 17:27	경기도 여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52루7850	한**	2020-12-23 11:00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04누2850	한**	2020-12-22 19:30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53보9045	한**	2020-12-15 19:0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235부6706	한**	2020-12-17 16:4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27구5486	한**	2020-12-23 19: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25누8121	한**	2020-12-22 01:18	인천광역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56소8032	한**	2020-12-29 20:45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08모2779	한**	2020-12-29 17:20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14너2120	한**	2020-12-24 20: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331여1417	함**	2020-12-28 10:57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23부0221	함**	2020-12-14 18:32	서울특별시	천호대로~광장사거리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52누5588	허**	2020-12-15 18:29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113수1709	허**	2020-12-29 15:2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113수1709	허**	2020-12-29 15:2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서울80베1504	홍**	2020-12-17 19:3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154호9831	홍**	2020-11-28 21:45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62	369저4321	홍**	2020-12-22 20: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서울32바3636	홍**	2020-12-22 20:4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서울32아4768	홍**	2020-12-16 08:22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47도7038	홍**	2020-12-28 09:3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05루4102	홍**	2020-12-24 19: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48누3706	황**	2020-12-26 10: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27보2746	황**	2020-12-24 19:5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251노3487	황**	2020-12-16 15:37	경기도 하남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159호5468	황**	2020-12-03 14:13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21 - 213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 우리 시 6대 신산업거점 중 하나인 양재 R&D 혁신지구의 R&D 공간수요 확충을 위해 2015년 4월부터 양재 R&D 정책방향 마련·추진 중에 있음
- 유통업무설비, 대규모 민간부지 등의 효과적 개발 관리를 위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R&D 공간확충 방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변경)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선제적으로 개발가이드라인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하여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 ② 토지의 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IV.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V.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VI.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2133-8324, FAX 2133-0736, e-mail hoon8657@seoul.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 1

202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위	(전)의회의원		성명	허홍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3,389	789	0	14,178	
본인	도로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남양리 240-1번지 1.00㎡	5	1	0	6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남양리 240번지 1,315.00㎡ 중 657.50㎡	11,309	723	0	12,032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한정리 372-1번지 237.00㎡ 중 118.50㎡	1,695	35	0	1,730	가액변동

모	답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25-5번지 66.00㎡	360	29	0	389	가액변동
모	전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372-3번지 8.00㎡	20	1	0	21	가액변동
▶ 건물(소계)			98,580	0	0	98,580	
배우자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타움 건물 84.00㎡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배우자	상가(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대교아파트 상가 1층 건물 46.00㎡	40,000	0	0	40,000	변동없음
모	단독주택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대지 511.00㎡ 건물 86.27㎡	8,580	0	0	8,58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42	0	0	1,642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821	0	0	821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821	0	0	821	변동없음
▶ 예금(소계)			93,361	39,604	47,349	85,616	
본인		광주은행 13, 농협중앙회 519(166 증가), 새마을금고 215(14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5(3 증가), 우리은행 3,058(786 증가)	3,045	976	161	3,860	생활비용
배우자		국민은행 2,029(1,410 증가), 새마을금고 58(40 감소), 수협중앙회 2, 신한은행 2, 우리은행 2,197(935 증가), 우체국 162(10 감소), 중소기업은행 131(760 감소)	3,046	2,511	976	4,581	
모		농협중앙회 38,164(1,416 증가), 삼성생명보험 30,303(1,634 증가), 우체국 3,624	69,041	32,234	29,184	72,091	

장남		농협은행 31(200 감소), 신한은행 4,012(11,777 감소), 우리은행 300(160 증가)	16,160	3,883	15,700	4,343	
차남		국민은행 719(1,328 감소), 신한은행 2, 우리은행 20	2,069	0	1,328	741	
▶ 채무(소계)			104,915	12,100	25,626	91,389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4,030(765 감소), 농협중앙회 14,140(6,000 감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2,617(1,964 감소), 새마을금고 2,500(800 감소), 아주캐피탈 297(625 감소), 우리은행 6,216(767 증가)	39,187	1,700	11,087	29,800	대출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KB국민카드 10,000(10,000 증가), 국민은행 2,349(606 감소), 새마을금고 1,166(666 감소), 우리은행 21,300(400 증가), 중소기업은행 24,640(2,360 감소), 현대캐피탈 2,134(1,007 감소)	55,828	10,400	4,639	61,589	신규대출
장남	금융채무	신한은행 0(9,900 감소)	9,900	0	9,900	0	전액상환
총 계			102,057	28,293	21,723	108,627	증감액: 6,570천원 (가액변동: 789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위	(전)의회의원		성명	이경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0,000	11,250	0	31,250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건물 49.00㎡	20,000	11,250	0	31,25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3,520	0	13,890	9,63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QM3 배기량(1,461cc)	23,520	0	13,890	9,630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
▶ 예금(소계)			10,123	43,516	2,836	50,803	
본인		(주)KEB하나은행 654(652 증가), KB생명보험 522(101 증가), 교보라이프 플레닛생명보험 0(2,220 감소), 농협은행 2(2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150(225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23,644(23,644 증가), 씨티은행 5, 우리은행 6,384(605 증가), 웰컴저축은행 18,261(18,251 증가), 중소기업은행 0(592 감소), 한국카카오은행(주) 6(13 감소)	9,973	43,490	2,835	50,628	소득 및 대출
배우자		국민은행 6, 농협중앙회 2, 우리은행 5, 케이뱅크 2, 한국카카오은행(주) 160(25 증가)	150	26	1	175	
▶ 채무(소계)			0	59,260	0	59,260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42,500(42,500 증가), 우리은행 16,760(16,760 증가)	0	59,260	0	59,26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생계를 달리함
모		고지거부	0	0	0	0	생계를 달리함
총 계			53,643	-4,494	16,726	32,423	증감액: -21,220천원 (가액변동: -13,890천원)

2021 - 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9호(2017.12.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8-123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호(2019.1.10.) 및 광진구고시 제2019-70호(2019.6.20.)로 변경 승인 고시된 구의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광진구청장

1.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구의시장 정비구역 (변경없음)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시장 정비구역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17.8	-	3,217.8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주소 (변경)

- 1) 성명 : 구의시장 주식회사(시장정비사업법인, 대표 박종환) 및 교보자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 조혁중) 산신탁 주식회사(대표 조혁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 호	㈜생보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주)	-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좌 등)	-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	(좌 등)	-
대 표 이 사	김 인 환	조 혁 중	-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변경 없음.

- 2)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 5층(구의동)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2)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변경없음)

2.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 사업시행자 성명(상호 및 대표) 변경의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와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 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1 - 13

() ()

건설부고시 제1991-399호(1991.07.24.)로 결정된 노원구 하계동 270-3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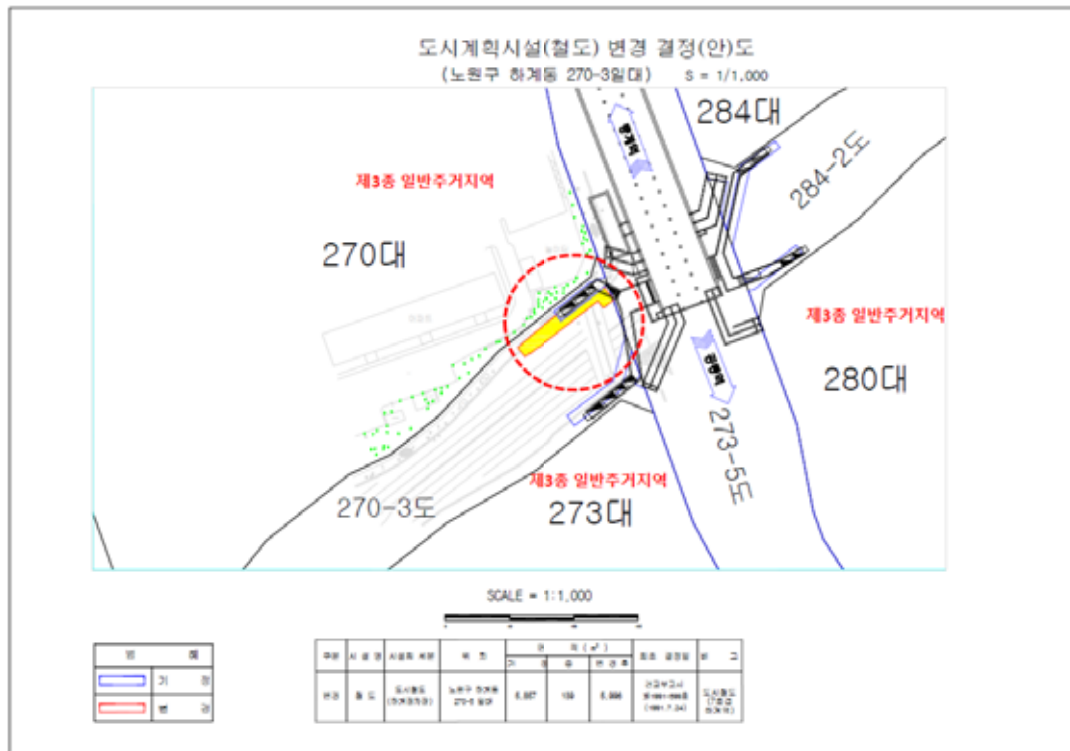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 7호선(하계정차장)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하계정차장)	노원구 하계동 270-3 일대	5,857	증)139	5,996	건교부고시 제1991-399호 (1991.07.24.)	도시철도 (7호선 하계역)

나. 변경사유 : 원활한 지하철 접근을 고려한 지하철 출입구 신설로 이용시민의 도시철도 접근 편의성을 향상에 따른 변경.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 붙임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9

() 가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59호(2013.8.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697호(2019.5.9.)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3호(2019.8.16.)로 최초 고시 및 은평구 고시 제2020-205호(2020.12.24.)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72-2 등 26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21,453㎡(불광동 472-2 등 26필지)

※ 변경사항 : 불광동 472-1, 476-1 물건 제외(추후사업에 반영)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1.12.31.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불광동	472-2	전	1,359	1,185	윤효선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901호(장항동 호수마을)				
2	불광동	산138-5	임야	1,091	916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3	불광동	472	전	532	532	윤효선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901호(장항동 호수마을)				
4	진관동	산56-2	임야	62	62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5	진관동	산56-3	임야	669	669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6	불광동	산137-3	임야	648	612	박상복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05번길 31(삼송동)	이몽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21	근저당권	
7	불광동	472-1	전	1,074	1,046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서울특별 시 (은평구청)		압류	
8	불광동	476-1	대지	417	39	권희철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서울특별 시		압류	
9	불광동	475-1	대지	38	38	전기선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4길 5-11(불광동)				
						김은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4길 5-11(불광동)				
10	불광동	산138-1	임야	11,448	2,573	주식회사 서안주택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1길 6, A동 201호(대조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1	불광동	산149	임야	3,273	1,637	호부전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25길 28, 117동 104호(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이종민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31, 118동 2703호(월계동, 그랑빌아파트)				
						호경수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21길 35, 2층동 201호(신사동)				
12	불광동	산156-2	임야	1,414	823	차인철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길 31, 101동 904호(한신휴플러스아파트)				
13	불광동	산157	임야	397	397	권혁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A동 4302호(갤러리아팰리스)				
14	불광동	44-1	전	152	152	최서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334동 1003호(신반포17차아파트)				
15	불광동	44-3	전	106	106	최서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334동 1003호(신반포17차아파트)				
16	불광동	산19-7	임야	2	2	오수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12(불광동)				
17	불광동	산19-8	임야	19	19	오수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8가길 12(불광동)				
18	불광동	산19-3	임야	99	98	오승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21, 4층 401호(불광동)				
19	불광동	산19-5	임야	627	627	양숙자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천진아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아파트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0	불광동	산18	임야	10,512	1,588	서혜자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103동 202호(화성파크드림 이스트밸리)				
						서정자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46길 43, 106동 503호(보성송정아파트)				
						서경자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25안길 17, 103호(지산동)				
						지병곤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20, 112동 505호(계양아파트)				
						지운석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25안길 17, 103호(지산동)				
						정성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1826호(평촌아이파크아파트)				
						한승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65, 1406호(논현동, 마일스디오빌)				
						오원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합해안로 59-6				
						이정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75-57(마두동)				
21	불광동	산6-1	임야	790	790	이기진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66, 113동 1706호(태영아파트)				
22	불광동	산6-8	임야	750	750	강진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409동 1202호(현대아파트)				
23	불광동	산6-10	임야	7,269	3,170	유재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A동 701호(쌍용남산플래티늄아파트)				
						유재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유혜경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청화아파트)				
						유혜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 (헬리오시티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인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4	불광동	43-2	대지	1,620	159	유지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유웅선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이주형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청화아파트)				
						이주윤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청화아파트)				
						유원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동 302호				
						유준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동 302호				
						최정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헬리오시티아파트)				
						유재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99, 204동 702호(경희궁자이아파트)				
						최정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901호(헬리오시티아파트)				
						유해경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7, 6동 405호(청화아파트)				
						유재운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A동 701호(쌍용남산플레이너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25	불광동	43-1	전	94	94	오흥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13(불광동)				
						오희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22				
						오운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용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204동 106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26	불광동	43-12	임야	9,988	3,369	오흥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13(불광동)				
						오희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22				
						오운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1022동 102호(판교원마을)				
						오용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204동 106호(한라비발리캠퍼스2차)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19-5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1식	양숙자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천진아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동 1306호(금촌동, 서원마을)	

2021 - 20

() 가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75호(2004.9.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758호(2020.5.21.)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09호(2020.6.29.) 고시 및 제2020-210호(2020.12.24.)로 고시(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55-11 등 17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향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3,421㎡(진관동 산55-11 등 17필지)

※ 물건 조서 첨부(불광동 476-1, 컨테이너 등)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1.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진관동	산55-11	임야	9	9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전호동)				
2	진관동	산55-12	임야	79	79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천호동)				
3	진관동	산55-10	임야	6	6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천호동)				
4	진관동	산55-9	임야	65	65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 ****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천호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5	진관동	363-8	전	34	34	장*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동***호(연남동, ****아파트)				
6	진관동	산55	임야	26,047	1,190	홍*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동***호(압구정동, **아파트)				
						홍*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호(한남동, 현대****)				
						홍*표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호(반포동, 반포**아파트)				
						홍*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길 **, ***동****호 (잠원동, **아파트)				
						함*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호(잠실동, *****아파트)				
						함*인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천호동)				
7	진관동	367-9	대	165	165	이*연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가학동)				
8	진관동	367-7	대	264	264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9	진관동	366-3	대	165	165	김*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	은평구	(세무2고)	압류	
						이*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한양아파트 **동****호				
						김*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아파트 **동 1001호				
						김*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				
10	진관동	366-2	대	145	145	이*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				
11	진관동	366-8	대	20	20	황*용	경기도 시흥시 서면 광명리 광명아파트 24동 306호				
12	진관동	산56-4	임야	99	99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13	불광동	산138-5	임야	1,091	175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4	불광동	476-1	대	417	108	권*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샵아파트)				
15	진관동	산54	임야	10,607	743	김*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김*숙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김*환	서울시 중구 다산로32, **동 ***호(신당동, ****아파트)				
						김*환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3길 **, *동 ***호(양재동, ****)				
						김*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9길 **, **동 ***호(역삼동)				
						오*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16	불광동	산155	임야	8,207	121	호*전	서울시 성북구 숲샘로25길 **, ***동 ***호(정릉동, *****아파트)				
						이*미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 ***동 ***호(양평동3가, *****아파트)				
						원*자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불광동)	연신내 새마을 금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	근저당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관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7	불광동	45-1	도로	33	33	김*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차*보					
						차*선					
						차*숙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차*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전*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차*정					
						차*환					
						차*탁					

○사업명 : 향림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불광동 476-1	고물상	컨테이너, 시설물	1식	권희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106호(후평동, 춘천더샵 아파트)	압류

2021 - 9

() 가

1. 서대문구고시 제1998-23호(1998.04.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후, 서대문고시 제 2020-88호(2020.6.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북아현3동 1-584~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에 정정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1-584~봉원동 산3-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북아현3동 1-584~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폭 12m, 연장 668m)

라.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조서 정정)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330-1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북아현3동 1-584 ~ 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북아현동	1-1598 (1-2001)	대지	50	10	유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038				
2	북아현동	1-1599 (1-2002)	대지	35	18	권용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9, 오피스(북아현동)				
						임귀옥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9, 오피스(북아현동)				
						최경애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19				
						송옥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9, 오피스(북아현동)				
3	북아현동	1-1600	대지	5	5	학교법인이화학 당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정정 (추가)
4	북아현동	1-1614	학교용 지	439	19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5	북아현동	1-1780	학교용 지	89	7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6	북아현동	1-1781	학교용 지	12	1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7	북아현동	1-1782	학교용 지	8	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8	북아현동	1-1783	학교용 지	146	146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사업명 : 북아현3동 1-584 ~ 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9	북아현동	1-1797	학교용 지	43	4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0	북아현동	1-1799	학교용 지	2	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1	북아현동	1-1801	학교용 지	29	2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2	북아현동	1-1802	학교용 지	170	17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북아현동	1-1803	학교용 지	54	5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4	북아현동	1-1804	학교용 지	13	1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5	북아현동	1-1805	학교용 지	517	517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6	북아현동	1-1806	학교용 지	49	4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7	북아현동	1-1808	학교용 지	189	18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8	북아현동	1-1810	학교용 지	984	98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사업명 : 북아현3동 1-584 ~ 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9	신촌동	1-263	도로	60	6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0	신촌동	1-264	도로	2	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1	신촌동	1-270	대지	7	7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2	신촌동	1-271	대지	21	21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3	신촌동	1-272	도로	14	1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4	신촌동	1-273	공원	16	16	서울 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25	신촌동	1-274	대지	46	46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6	신촌동	1-275	대지	14	1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7	신촌동	1-276	도로	25	25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8	신촌동	1-277	도로	26	26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사업명 : 북아현3동 1-584 ~ 봉원동 산3-1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29	신촌동	2-222	학교용 지	34	3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0	신촌동	2-220	학교용 지	4	4	학교법인이화학 당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정정 (추가)
31	신촌동	2-231	도로	1,927	1,927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2	북아현동	1-568	대지	8,550	2,30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3	북아현동	1-578	대지	473	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4	북아현동	1-819	대지	66	6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5	북아현동	1-820	대지	56	5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6	북아현동	1-821	대지	43	4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7	북아현동	1-822	대지	36	3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8	북아현동	1-823	대지	40	4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21 - 11

(:) 가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7호('93.03.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7호('19.03.21)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0-62호('20.03.26.)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환기구 덕트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일대 「Y22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철 5호선 환기구 2개소 덕트부 변경 공사」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사업

○ 명 칭: Y22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철 5호선 환기구 2개소 덕트부 변경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352.5㎡(변경없음)

○ 환기구 #5155(MBC앞 교차로): 201.0㎡

○ 환기구 #5156(삼부아파트 입구사거리): 15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 유 필 상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9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21년 02월 07일

－ 변경: 2021년 04월 02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6

()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0-113호(2020. 6. 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사업시행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1. 정정내용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사업시행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 점	종 점			
기정	소로	3	45	6 (3.72)	국지 도로	114	광로2-5 (성내동 13-9)	성내동 12-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4호 (1976. 2. 20.)	423.7㎡
	소로	1	4	8~10 (2.85)	집산 도로	502 (61)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 (1969. 1. 18.)	173.7㎡
정정	소로	3	45	6 (3.72)	국지 도로	114	광로2-5 (성내동 13-9)	성내동 12-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4호 (1976. 2. 20.)	482.0㎡
	소로	1	4	8~10 (2.85)	집산 도로	502 (61)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 (1969. 1. 18.)	167.7㎡

※ 폭원, 연장에서 ()는 사업을 시행하는 평균 폭원과 연장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토 지 지 번	지목	토지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기정	정정						
1	성내동 14-2	도	283	283	283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 신탁자: 주식회사디에이치 프라퍼티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 신탁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 (상일동, 강동타워)	-	-	-	
2	성내동 14-4	대	2,155	147.5	195.5						
3	성내동 14-5	대	762	166.9	171.2						
	계		3,200	597.4	649.7						

2. 정정사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면적 등에 관한 일부 오기 정정

※ 그 외의 사항은 당초 고시 내용과 같음

2021 - 18

() 가

1. 건설부고시 제179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66호(2019.1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8호(2020.12.31.)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동명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29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칭: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지하1층, 공영주차장 226면, 연면적 7,104㎡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따로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공사설계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및 건축과(☎02-3425-6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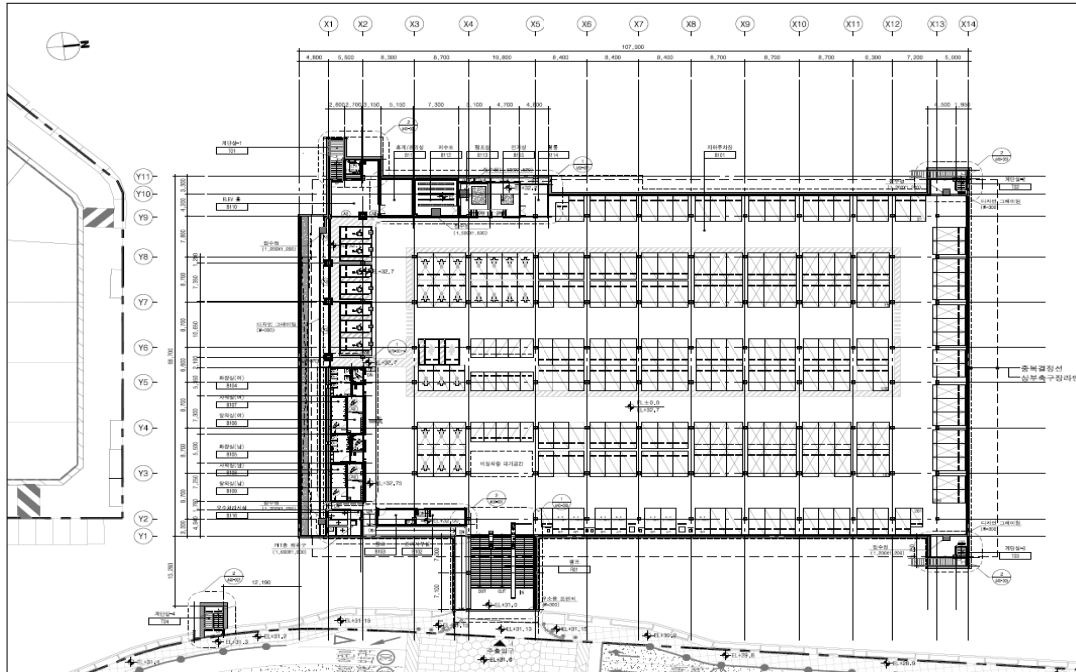
사진설명

사업대상지 위치 원경



사진설명

사업대상지 위치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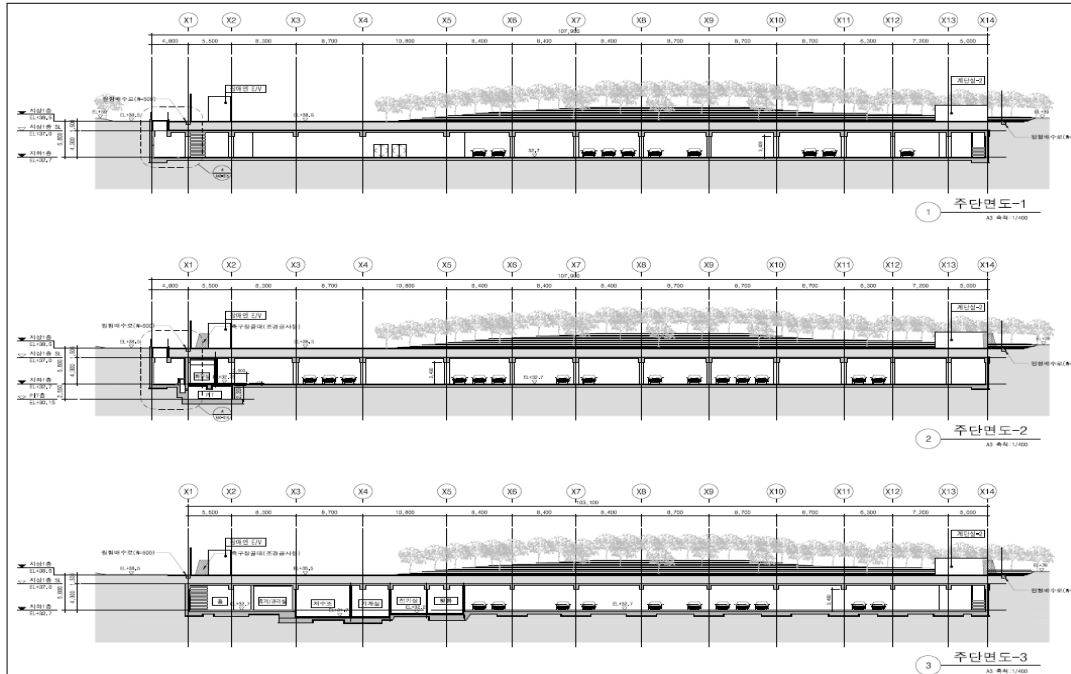
사진설명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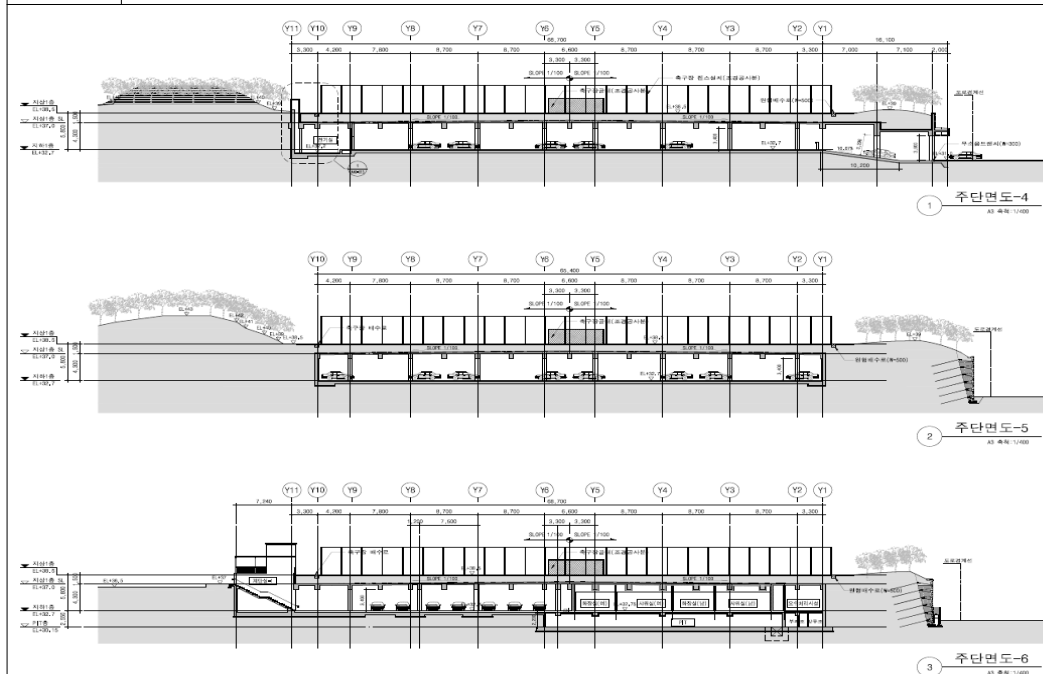
사진설명

지상층 평면도



사진설명

주단면도(1)



사진설명

주단면도(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필지		33,362.4	33,362.4							
1	229	공원	33,362.4	33,36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2021 - 106

()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06.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광진구청장

가. 공 원 명: 용마산근린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76-110일대(4지구), 중곡4동 143-146일대
(5지구), 광장동 369일대(6지구), 구의2동 38일대(7지구)

다. 면 적: 277,196.7㎡

라. 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마.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조성계획(안): 열람장소에 비치

사.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아. 열람장소: 광진구청 공원녹지과(☎450-7776)

()

■ 용마산 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광진구 중곡동 176-110 일대,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107,709.00	188,453.44	41	10,649.74	23,092.12	629	866,067.90	277,880.12	41	10,924.92	22,647.77	616	증 89,426.68㎡
공원 시설 구역	소계	793,051.00	188,383.44	39	10,584.55	23,026.93	629	866,067.90	277,880.12	41	10,924.92	22,647.77	616	
	1지구	286,054.00	85,465.74	14	7,529.00	15,526.00	75	318,449.60	109,556.25	19	7,402.25	15,324.25	107	증 24,090.51㎡ (구보육원&망우 &배발&서일대 지구)
	2지구	81,038.00	13,540.20	3	1,516.00	4,940.00	12	70,709.30	24,289.90	2	1,607.59	5,166.04	44	증 10,749.70㎡ (면목약수터지구)
	3지구	151,322.00	40,485.00	7	749.90	749.90	301	199,712.30	44,664.49	7	749.90	749.90	301	증 4,179.49㎡ (채석장지구)
	4지구	8,195.00	2,606.00	1	10.00	10.00	25	15,284.10	7,566.61	-	-	-	6	증 4,960.61㎡ (중곡지구)
	5지구	35,141.00	3,081.00	4	84.00	84.00	54	39,077.00	13,966.66	2	200.90	200.90	25	증 10,885.66㎡ (긴골지구)
	6지구	182,194.00	27,074.00	10	695.65	1,717.03	110	148,569.50	46,988.92	9	499.95	499.95	85	증 19,914.92㎡ (구의지구)
	7지구	49,107.00	16,131.50	-	-	-	68	74,266.10	30,847.29	2	464.33	706.73	48	증 14,715.79㎡ (아차산배수지지구)
시설지구외		4,314,658.00	70.00	2	65.19	65.19	-	-	-	-	-	-	-	감 70.00㎡
시설율 (법정40%)		188,453.44 / 5,107,709.00 x 100 = 3.70%						277,880.12 / 866,067.90 x 100 = 32.09%						
건폐율 (법정20%)		10,584.55 / 5,107,709.00 x 100 = 0.21%						10,924.92 / 866,067.90 x 100 = 1.26%						

1-1 용마산 근린공원 4지구 총괄표(중곡지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76-110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195.00	2,606.00	1	10.00	10.00	25	15,284.10	7,566.61	-	-	-	6	증 4,960.61㎡
기 반 사 설	소계	1,912.00	1,912.00	-	-	-	-	1,526.02	1,526.02	-	-	-	-	
	광장	759.00	759.00	-	-	-	-	101.42	101.42	-	-	-	-	감 657.58㎡
	램프	101.00	101.00	-	-	-	-	-	-	-	-	-	-	감 101.00㎡
	계단	45.00	45.00	-	-	-	-	-	-	-	-	-	-	감 45.00㎡
	자연석 계단	44.00	44.00	-	-	-	-	-	-	-	-	-	-	감 44.00㎡
	도로	699.00	699.00	-	-	-	-	1,424.60	1,424.60	-	-	-	-	증 725.60㎡
	배수로	264.00	264.00	-	-	-	-	-	-	-	-	-	-	감 264.00㎡
조경시설		14.00	14.00	-	-	-	8	4,484.29	4,484.29	-	-	-	-	증 4,470.29㎡
휴양시설		147.00	147.00	-	-	-	13	558.12	558.12	-	-	-	6	증 411.12㎡
운동시설		13.00	13.00	-	-	-	4	114.42	114.42	-	-	-	-	증 101.42㎡
교양시설		-	-	-	-	-	-	184.93	184.93	-	-	-	-	증 184.93㎡
편익시설		520.00	520.00	1	10.00	10.00	-	698.83	698.83	-	-	-	-	증 178.83㎡
녹지 및 기타		5,589.00	-	-	-	-	-	7,717.19	-	-	-	-	-	증 2,128.19㎡

1-2 용마산 근린공원 4지구 시설조서(중곡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195.00	2,606.00	-	1	10.00	10.00	25			15,284.10	7,566.61	-	-	-	-	6	
기 반 시 설	소 계			1,992.00	1,912.00	-	-	-	-	-			1,526.02	1,526.02	-	-	-	-	-	
	광장	가		759.00	759.00	-	-	-	-	-	가	중곡동 176-119	101.42	101.42	-	-	-	-	-	
		가-1	중곡 산4-18임	(286.00)	(286.00)	-	-	-	-	-			-	-	-	-	-	-	-	폐지
		가-2	중곡 산4-18임	(400.00)	(400.00)	-	-	-	-	-			-	-	-	-	-	-	-	폐지
		가-3	중곡 산4-18임	(73.00)	(73.00)	-	-	-	-	-			-	-	-	-	-	-	-	폐지
	램프	나	중곡 산4-18임	101.00	101.00	-	-	-	-	-			-	-	-	-	-	-	-	폐지
	계단	다	중곡 산4-18임	45.00	45.00	-	-	-	-	-			-	-	-	-	-	-	-	폐지
		다-1	중곡 산4-18임	(7.00)	(7.00)	-	-	-	-	-			-	-	-	-	-	-	-	폐지
		다-2	중곡 산4-18임	(7.00)	(7.00)	-	-	-	-	-			-	-	-	-	-	-	-	폐지
		다-3	중곡 산4-18임	(13.00)	(13.00)	-	-	-	-	-			-	-	-	-	-	-	-	폐지
		다-4	중곡 산4-18임	(12.00)	(12.00)	-	-	-	-	-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다-5	중곡 산4-18임	(6.00)	(6.00)	-	-	-	-	-			-	-	-	-	-	-	-	폐지
	자연석 계단	①	중곡 산4-18임	44.00	44.00	-	-	-	-	-			-	-	-	-	-	-	-	폐지
	도로	라		699.00	699.00	-	-	-	-	-			1,424.60	1,424.60	-	-	-	-	-	
		라-1	중곡 산4-18임	(128.00)	(128.00)	-	-	-	-	-			-	-	-	-	-	-	-	폐지
		라-2	중곡 산4-18임	(32.00)	(32.00)	-	-	-	-	-			-	-	-	-	-	-	-	폐지
		라-3	중곡 산4-18임	(146.00)	(146.00)	-	-	-	-	-			-	-	-	-	-	-	-	폐지
		라-4	중곡 산4-18임	(26.00)	(26.00)	-	-	-	-	-			-	-	-	-	-	-	-	폐지
		라-5	중곡 산4-18임	(38.00)	(38.00)	-	-	-	-	-			-	-	-	-	-	-	-	폐지
		라-6	중곡 산4-18임	(15.00)	(15.00)	-	-	-	-	-			-	-	-	-	-	-	-	폐지
		라-7	중곡 산4-18임	(64.00)	(64.00)	-	-	-	-	-			-	-	-	-	-	-	-	폐지
		라-8	중곡 산4-18임	(34.00)	(34.00)	-	-	-	-	-			-	-	-	-	-	-	-	폐지
		라-9	중곡 산4-18임	(216.00)	(216.00)	-	-	-	-	-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배수로	마	2개소	264.00	264.00	-	-	-	-	-			-	-	-	-	-	-	-		
		마-1	중곡 산4-2임	(195.00)	(195.00)	-	-	-	-	-			-	-	-	-	-	-	-	폐지	
		마-2	중곡 산4-18임	(69.00)	(69.00)	-	-	-	-	-			-	-	-	-	-	-	-	폐지	
조 경 시 설	소 계			14.00	14.00	-	-	-	-	8			4,484.29	4,484.29	-	-	-	-	-		
	수목 보호대	②	2개소	14.00	14.00	-	-	-	-	6			-	-	-	-	-	-	-	폐지	
		②-1	중곡 산4-18임	(7.00)	(7.00)	-	-	-	-	-			-	-	-	-	-	-	-	폐지	
		②-2	중곡 산4-18임	(7.00)	(7.00)	-	-	-	-	-			-	-	-	-	-	-	-	폐지	
	조형 등주	③	2개소	(6.00)	(6.00)	-	-	-	-	2			-	-	-	-	-	-	-	폐지	
		③-1	중곡 산4-18임	(3.00)	(3.00)	-	-	-	-	-			-	-	-	-	-	-	-	폐지	
		③-2	중곡 산4-18임	(3.00)	(3.00)	-	-	-	-	-			-	-	-	-	-	-	-	폐지	
	관상수 식수대			-	-	-	-	-	-	-	나	7개소	4,414.56	4,414.56	-	-	-	-	-	신설	
				-	-	-	-	-	-	-	나-1	중곡동 176-119	(905.23)	(905.23)	-	-	-	-	-	-	신설
				-	-	-	-	-	-	-	나-2	중곡동 176-119 외	(848.38)	(848.38)	-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나-3	중곡동 176-111 외	(187.27)	(187.27)	-	-	-	-	-	신설
				-	-	-	-	-	-	-	나-4	중곡동 176-111 외	(579.63)	(579.63)	-	-	-	-	-	신설
				-	-	-	-	-	-	-	나-5	중곡동 176-112 외	(549.15)	(549.15)	-	-	-	-	-	신설
				-	-	-	-	-	-	-	나-6	중곡동 176-112 외	(953.28)	(953.28)	-	-	-	-	-	신설
				-	-	-	-	-	-	-	나-7	중곡동 176-112	(391.62)	(391.62)	-	-	-	-	-	신설
	폭포			-	-	-	-	-	-	-	다	중곡동 176-119	69.73	69.73	-	-	-	-	-	신설
휴양시설	소 계			147.00	147.00	-	-	-	-	13			558.12	558.12	-	-	-	-	6	
	팔각정자	④	중곡 산4-2입	21.00	21.00	-	-	-	-	1			-	-	-	-	-	-	-	폐지
	파고라	⑤	3개소	65.00	65.00	-	-	-	-	5	①	중곡동 176-112	-	-	-	-	-	-	1	
		⑤-1	중곡 산 4-18입	(26.00)	(26.00)	-	-	-	-	-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㉔-2	중곡 산 4-18임	(26.00)	(26.00)	-	-	-	-	-			-	-	-	-	-	-	-	폐지
		㉔-3	중곡 산 4-18임	(13.00)	(13.00)	-	-	-	-	-			-	-	-	-	-	-	-	폐지
	앞음벽	㉔	3개소	13.00	13.00	-	-	-	-	3			-	-	-	-	-	-	-	
		㉔-1	중곡 산 4-18임	(5.00)	(5.00)	-	-	-	-	-			-	-	-	-	-	-	-	폐지
		㉔-2	중곡 산 4-18임	(6.00)	(6.00)	-	-	-	-	-			-	-	-	-	-	-	-	폐지
		㉔-3	중곡 산 4-18임	(2.00)	(2.00)	-	-	-	-	-			-	-	-	-	-	-	-	폐지
	야외 테이블	㉔	중곡 산 4-18임	8.00	8.00	-	-	-	-	4			-	-	-	-	-	-	-	폐지
	휴게소	바	2개소	40.00	40.00	-	-	-	-	-			-	-	-	-	-	-	-	폐지
		바-1	중곡 산 4-18임	(33.00)	(33.00)	-	-	-	-	-			-	-	-	-	-	-	-	폐지
		바-2	중곡 산 4-18임	(7.00)	(7.00)	-	-	-	-	-			-	-	-	-	-	-	-	폐지
	평의자			-	-	-	-	-	-	-	㉔	중곡동 176-112	-	-	-	-	-	-	3	신설
	등의자			-	-	-	-	-	-	-	㉔	중곡동 176-111	-	-	-	-	-	-	2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쉼터			-	-	-	-	-	-	-	라	중곡동 176-112	558.12	558.12	-	-	-	-	-	신설
노인 시설	소 계			13.00	13.00	-	-	-	-	4			114.42	114.42	-	-	-	-	-	
	생활 체육 시설(1)	㉑	중곡 산 4-18임	(3.00)	(3.00)	-	-	-	-	2			-	-	-	-	-	-	-	폐지
	생활 체육 시설(2)	㉑	중곡 산 4-18임	(10.00)	(10.00)	-	-	-	-	2			-	-	-	-	-	-	-	폐지
	운동 마당			-	-	-	-	-	-	-	마	중곡동 176-111	114.42	114.42	-	-	-	-	-	신설
교 양 시 설	소 계			-	-	-	-	-	-	-			184.93	184.93	-	-	-	-	-	
	유아 동네숲 터			-	-	-	-	-	-	-	바	중곡동 176-122	184.93	184.93	-	-	-	-	-	신설
편 의 시 설	소 계			520.00	520.00	-	1	10	10	-			698.83	698.83	-	-	-	-	-	
	주차장	아	중곡 산4-30임	(510.00)	(510.00)	-	-	-	-	-			-	-	-	-	-	-	-	폐지
				-	-	-	-	-	-	-	-	사	광장동 176-110	698.83	698.83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화장실	1	중곡 산4-30임	(10.00)	(10.00)	-	1	10	10	-			-	-	-	-	-	-	-	폐지
녹 지 및 기 타	소 계			5,589.00	-	-	-	-	-	-			7,717.19	-	-	-	-	-	-	
	녹 지	자		5,589.00	-	-	-	-	-	-			7,717.19	-	-	-	-	-	-	

1-3 용마산 근린공원 4지구 도로조서(중곡지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29.0	699.00				
변 경					910.0	1,424.60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202.0	899.50				
신 설		3류	1	2.0~11.0	59.0	400.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2	5.0	3.0	12.6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신 설		3류	3	4.0~6.0	30.0	128.40	연결로	주차장 다	소로 3-6	
신 설		3류	4	3.0	7.0	25.9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6	
신 설		3류	5	3.0	2.0	4.5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6	
신 설		3류	6	2.0~5.0	78.0	241.80	연결로	소로 3-3	공원경계	
신 설		3류	7	1.5~5.0	23.0	86.3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6	
당 초		계			429.0	699.00				
변 경					708.0	525.10				
폐 지	산책로		라-1	3.0	43.0	128.00	주진입로	가-2광장	가-3광장	
폐 지			라-2	1.2	27.0	32.00	주진입로	중곡 산4-30임	중곡 가-3	
폐 지			라-3	1.5	97.0	146.00	산책로	중곡 산4-30임	산4-18임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라-4	1.5	17.0	26.00	산책로	산책로 3분기점	④ 정자	
폐 지			라-5	1.5	25.0	38.00	산책로	바-1 휴게소	가-2광장	
폐 지			라-6	1.5	10.0	15.00	산책로	산책로5 분기점	산책로3 분기점	
폐 지			라-7	1.5	43.0	64.00	산책로	주차장	9 산책로	
폐 지			라-8	1.5	23.0	34.00	산책로	가-1광장	9 산책로	
폐 지			라-9	1.5	144.0	216.00	산책로	8 산책로	가-3광장	
신 설			1	1.4	19.0	30.70	산책로	공원경계	주차장 다	
신 설			2	1.8	130.0	237.60	산책로	주차장 다	산책로 6	
신 설			3	1.8	22.0	50.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신 설			4	1.5~7.0	43.0	95.30	산책로	산책로 2	쉼터 가	
신 설			5	1.0~1.2	27.0	32.70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6	
신 설			6	2.0	38.0	78.80	산책로	소로 3-6	쉼터 가	

2-1 용마산 근린공원 5지구 총괄표(긴골지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43-146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5,141.00	3,081.00	4	84.00	84.00	54	39,077.00	13,966.66	2	200.90	200.90	25	증 10,885.66㎡
기 반 시 설	소계	1,188.00	1,188.00	-	-	-	-	5,148.28	5,148.28	-	-	-	-	
	도로	1,188.00	1,188.00	-	-	-	-	4,237.20	4,237.20	-	-	-	-	증 3,049.20㎡
	광장	-	-	-	-	-	-	911.08	911.08	-	-	-	-	증 911.08㎡
조경시설		-	-	-	-	-	1	2,463.86	2,463.86	-	-	-	-	증 2,463.86㎡
휴양시설		325.00	325.00	-	-	-	52	139.43	139.43	-	-	-	11	감 185.57㎡
운동시설		1,208.00	1,208.00	-	-	-	-	628.90	628.90	-	-	-	12	감 579.10㎡
교양시설		-	-	-	-	-	-	5,385.29	5,385.29	-	-	-	-	증 5,385.29㎡
편익시설		20.00	20.00	1	32.00	32.00	-	107.70	107.70	1	107.70	107.70	-	증 87.70㎡
관리시설		340.00	340.00	1	52.00	52.00	1	93.20	93.20	1	93.20	93.20	2	감 246.80㎡
녹지 및 기타		32,060.00	-	-	-	-	-	25,110.34	-	-	-	-	-	감 6,949.66㎡

2-2 용마산 근린공원 5지구 시설조서(긴골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5,141.00	3,081.00	-	4	84.00	84.00	54			39,077.00	13,966.66	-	2	200.90	200.90	25	
기 반 시 설	소 계			1,188.00	1,188.00	-	-	-	-	-			5,148.28	5,148.28	-	-	-	-	-	
	도로			1,188.00	1,188.00	-	-	-	-	-			4,237.20	4,237.20	-	-	-	-	-	
	광장			-	-	-	-	-	-	-	가	4개소	911.08	911.08	-	-	-	-	-	
				-	-	-	-	-	-	-	가-1	중곡동 143-146	(19.48)	(19.48)	-	-	-	-	-	신설
				-	-	-	-	-	-	-	가-2	중곡동 143-146	(137.79)	(137.79)	-	-	-	-	-	신설
				-	-	-	-	-	-	-	가-3	중곡동 143-146	(15.26)	(15.26)	-	-	-	-	-	신설
				-	-	-	-	-	-	-	가-4	중곡동 143-146	(738.55)	(738.55)	-	-	-	-	-	신설
조 경 시 설	소 계			-	-	-	-	-	-	1			2,463.86	2,463.86	-	-	-	-	-	
	도로	①	휴게소 나-2내	-	-	-	-	-	-	1			-	-	-	-	-	-	-	폐지
	데크 썬터			-	-	-	-	-	-	-	나	중곡동 143-146	194.23	194.23	-	-	-	-	-	신설
	관상용 식수대			-	-	-	-	-	-	-	다	중곡동 143-146	2,269.63	2,269.63	-	-	-	-	-	신설
휴 양 시 설	소 계			325.00	325.00	-	-	-	-	52			139.43	139.43	-	-	-	-	11	
	휴게소	나	9개소	325.00	325.00	-	-	-	-	-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나-1	중곡동 산3-80	(140.00)	(140.00)	-	-	-	-	-			-	-	-	-	-	-	-	폐지
		나-2	중곡동 3-5	(185.00)	(185.00)	-	-	-	-	-			-	-	-	-	-	-	-	폐지
				-	-	-	-	-	-	-	라	중곡동 143-146	139.43	139.43	-	-	-	-	-	신설
	의자	②	전지역	-	-	-	-	-	-	52			-	-	-	-	-	-	-	폐지
	정자			-	-	-	-	-	-	-	①		-	-	-	-	-	-	1	신설
	파고라			-	-	-	-	-	-	-	②		-	-	-	-	-	-	2	신설
	평의자			-	-	-	-	-	-	-	③		-	-	-	-	-	-	6	신설
	등의자			-	-	-	-	-	-	-	④		-	-	-	-	-	-	2	신설
유니버설 시설	소 계			1,208.00	1,208.00	-	-	-	-	-			628.90	628.90	-	-	-	-	12	
	배드민턴 장	다	구의동4	415.00	415.00	-	-	-	-	-	마	중곡동 143-146	628.90	628.90	-	-	-	-	-	
	체력 단련장	라		793.00	793.00	-	-	-	-	-			-	-	-	-	-	-	-	
		라-1	중곡동 산3-59입	(330.00)	(330.00)	-	-	-	-	-			-	-	-	-	-	-	-	폐지
		라-2	중곡동 산1입	(298.00)	(298.00)	-	-	-	-	-			-	-	-	-	-	-	-	폐지
		라-3	중곡동 산1입	(165.00)	(165.00)	-	-	-	-	-			-	-	-	-	-	-	-	폐지
	체력 단련 시설			-	-	-	-	-	-	-	⑤		-	-	-	-	-	-	12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교 양 시 설	소 계			-	-	-	-	-	-	-			5,385.29	5,385.29	-	-	-	-	-	
	유아숲 체험원			-	-	-	-	-	-	-	바	중곡동 143-146 외	5,385.29	5,385.29	-	-	-	-	-	신설
편 익 시 설	소 계			20.00	20.00	-	1	32.00	32.00	-			107.70	107.70	-	1	107.70	107.70	-	
	화장실	1		(1.00)	(1.00)	-	1	32.00	32.00	-	1		107.70	107.70	-	1	107.70	107.70	-	
	약수터	마	1개소	20.00	20.00	-	-	-	-	-			-	-	-	-	-	-	-	폐지
	음수대	마-1	중곡동 산3-59임	(20.00)	(20.00)	-	-	-	-	-			-	-	-	-	-	-	-	폐지
관 리 시 설	소 계			340.00	340.00		1	52.00	52.00	1			93.20	93.20	-	1	93.20	93.20	2	
	관리 사무소	2	중곡동 산3-59임	340.00	340.00	조적 조	1	52.00	52.00	-			-	-	-	-	-	-	-	폐지
	안내판	㉓	전지역	-	-	-	-	-	-	1	㉔		-	-	-	-	-	-	2	
	녹지 관리 초소			-	-	-	-	-	-	-	2		93.20	93.20	-	1	93.20	93.20	-	신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2,060.00	-	-	-	-	-				25,110.34	-	-	-	-	-	-	
	녹 지			32,060.00	-	-	-	-	-	-			25,110.34	-	-	-	-	-	-	

2-3 용마산 근린공원 5지구 도로조서(긴골지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792.0	1,188.00				
변 경					1,875.21	4,237.20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374.74	2,486.13				
신 설		3류	1-1	8.0-16.0	129.00	1,586.87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가-2	
신 설		3류	3-1	3.0	108.56	356.74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2	
신 설		3류	3-2	2.0	11.49	22.99	진입로	소로3-1	광장,가-2	
신 설		3류	3-3	4.0	125.69	519.53	진입로	광장,가-2	광장,가-4	
당 초		계			792.0	1,188.00				
변 경					1,500.47	1,751.07				
폐 지	산책로		1	1.5	394.0	591.00	연결로	산책로 5	지구계	
폐 지			2	1.5	44.0	66.00	연결로	산책로 1	지구계	
폐 지			3	1.5	76.0	114.00	지구계	지구계	산책로 4	
폐 지			4	1.5	200.0	300.00	등산로	휴게소 1	산책로 1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5	1.5	56.0	84.00	등산로	휴게소 1	지구계	
폐 지			6	1.5	22.0	33.00	연결로	산책로 4	체력단련장 라-1	
신 설			1	1.5	10.95	16.42	진입로	소로3-1	광장,가-1	
신 설			2	2.0	92.73	196.44	진입로	광장,가-2	체력단련장,마	
신 설			3	1.5	6.22	9.84	진입로	산책로4	광장,가-3	
신 설			4	3.0	61.96	185.97	연결로	소로3-3	소로3-3	
신 설			5	3.0	85.31	255.14	산책로	소로3-3	산책로7	
신 설			6	2.0	13.87	27.76	연결로	체력단련장,마	산책로5	
신 설			7	2.0	47.20	94.40	산책로	산책로5	공원경계	
신 설			8	2.0	240.75	482.44	산책로	산책로5	공원경계	
신 설			9	4.0	84.05	335.72	산책로	체력단련장,마	녹지대	
신 설			10	2.0	65.43	146.94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8	

3-1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총괄표(구의지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9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82,194.00	27,074.00	10	695.65	1,717.03	110	148,569.50	46,988.92	9	499.95	499.95	85	증 19,914.92㎡
기 반 시 설	소계	10,760.00	10,760.00	-	-	-	-	8,582.32	8,145.25	-	-	-	-	
	도로	8,128.00	8,128.00	-	-	-	-	6,738.23	6,301.16	-	-	-	-	감 1,826.84㎡
	광장	2,714.00	2,714.00	-	-	-	-	1,844.09	1,844.09	-	-	-	-	감 869.91㎡
조경시설		273.00	273.00	-	-	-	17	9,287.51	9,287.51	-	-	-	-	증 9,014.51㎡
휴양시설		4,107.00	4,107.00	2	303.12	1,324.50	51	3,830.09	3,830.09	1	72.00	72.00	59	감 276.91㎡
유흥시설		240.00	240.00	-	-	-	1	240.00	240.00	-	-	-	-	
운동시설		3,777.00	3,777.00	-	-	-	23	2,752.00	2,752.00	-	-	-	8	감 1,025.00㎡
교양시설		4,402.00	4,402.00	1	70.29	70.29	-	20,527.56	20,527.56	1	70.29	70.29	-	증 16,125.56㎡
편익시설		2,907.00	2,907.00	5	114.34	114.34	4	1,114.74	1,114.74	5	149.76	149.76	4	감 1,792.26㎡
관리시설		799.00	799.00	2	207.90	207.90	14	1,091.77	1,091.77	2	207.90	207.90	14	증 292.77㎡
녹지 및 기타		155,120.00	-	-	-	-	-	101,143.51	-	-	-	-	-	감 53,976.49㎡

3-2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시설조서(구의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82,194.00	27,074.00	-	10	695.65	1,717.03	110			148,569.50	46,988.92	-	9	499.95	499.95	85	
기 반 시 설	소 계			10,760.00	10,760.00	-	-	-	-	-			8,582.32	8,145.25	-	-	-	-	-	
	도 로			8,128.00	8,128.00	-	-	-	-	-			6,738.23	6,301.16	-	-	-	-	-	
	광장	가	2개소	2,714.00	2,714.00	-	-	-	-	-			-	-	-	-	-	-	-	폐지
		가-1	광장동370-3외	(2,200.00)	(2,200.00)	-	-	-	-	-			-	-	-	-	-	-	-	폐지
		가-2	광장동산68-1	(514.00)	(514.00)	-	-	-	-	-			-	-	-	-	-	-	-	폐지
	광장			-	-	-	-	-	-	-	가	4개소	1,844.09	1,844.09	-	-	-	-	-	
	커뮤니티 광장			-	-	-	-	-	-	-	가-1	광장동 5-117외	(480.43)	(480.43)	-	-	-	-	-	신설
	진입 광장			-	-	-	-	-	-	-	가-2	광장동 5-117외	(836.89)	(836.89)	-	-	-	-	-	신설
	진입 광장			-	-	-	-	-	-	-	가-3	광장동 5-117외	(12.77)	(12.77)	-	-	-	-	-	신설
	중앙 광장			-	-	-	-	-	-	-	가-4	광장동 5-117외	(514.00)	(514.00)	-	-	-	-	-	신설
조 경 시 설	소 계			273.00	273.00	-	-	-	-	17			9,287.51	9,287.51	-	-	-	-	-	
	파고라	①	전지역	(273.00)	(273.00)	-	-	-	-	17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류			-	-	-	-	-	-	-	다	구의동 3-11외	221.34	221.34	-	-	-	-	-	신설
	잔디 마당			-	-	-	-	-	-	-	나	광장동 370-3외	1,115.83	1,115.83	-	-	-	-	-	신설
	관상수 식수대			-	-	-	-	-	-	-	라	구의동 3외	4,000.00	4,000.00	-	-	-	-	-	신설
	초화원			-	-	-	-	-	-	-	마	구의동 3외	3,950.34	3,950.34	-	-	-	-	-	신설
휴양 시설	소 계			4,107.00	4,107.00	-	2	303.12	1,324.50	51			3,830.09	3,830.09	-	1	72.00	72.00	59	
	야유 회장	나	2개소	2,722.00	2,722.00	-	-	-	-	-			-	-	-	-	-	-	-	
		나-1	구의동산6-1	(457.00)	(457.00)	-	-	-	-	-			-	-	-	-	-	-	-	폐지
		나-2	구의동산8	(2,265.00)	(2,265.00)	-	-	-	-	-			-	-	-	-	-	-	-	폐지
												바	구의동 3	2,265.00	2,265.00	-	-	-	-	-
	휴게소	다	4개소	779.00	779.00	-	1	72.00	72.00	-			-	-	-	-	-	-	-	
		다-1	구의동산2-1	(307.00)	(307.00)	-	-	-	-	-			-	-	-	-	-	-	-	폐지
		다-2	구의동산2-2	(107.00)	(107.00)	-	-	-	-	-			-	-	-	-	-	-	-	폐지
		다-3	구의동산2-2	(286.00)	(286.00)	-	(1)	(72.00)	(72.00)	-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다-4	광장동369-4외	(79.00)	(79.00)	-	-	-	-	-			-	-	-	-	-	-	-	폐지	
				-	-	-	-	-	-		1		286.00	286.00	-	1	72.00	72.00	-	신설	
	의자	②	전지역	-	-	-	-	-	-	51	②	전지역	-	-	-	-	-	-	-	50	
	영화사 노인 복지회관	1	구의동산6-1	606.00	606.00	-	1	231.12	1,252.50	-			-	-	-	-	-	-	-	폐지	
	쉼터			-	-	-	-	-	-	-	사	5개소	1,279.09	1,279.09	-	-	-	-	-	-	신설
				-	-	-	-	-	-	-	사-1	구의동 3-11	(107.00)	(107.00)	-	-	-	-	-	-	신설
				-	-	-	-	-	-	-	사-2	광장동 369-4	(79.00)	(79.00)	-	-	-	-	-	-	신설
				-	-	-	-	-	-	-	사-3	구의동 4외	(300.00)	(300.00)	-	-	-	-	-	-	신설
				-	-	-	-	-	-	-	사-4	광장동 369-6외	(22.12)	(22.12)	-	-	-	-	-	-	신설
	숲속 쉼터			-	-	-	-	-	-	-	사-5	광장동 369-4외	(770.97)	(770.97)	-	-	-	-	-	-	신설
	파고라			-	-	-	-	-	-	-	①		-	-	-	-	-	-	-	9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유아시설	소계			240.00	240.00	-	-	-	-	1			240.00	240.00	-	-	-	-	-	
	모험놀이시설	라	구의동산8	240.00	240.00	-	-	-	-	1	아	구의동 3외	240.00	240.00	-	-	-	-	-	
유아시설	소계			3,777.00	3,777.00	-	-	-	-	23			2,752.00	2,752.00	-	-	-	-	8	
	게이트볼장	마	구의동4	600.00	600.00	-	-	-	-	-			-	-	-	-	-	-	-	폐지
				-	-	-	-	-	-	-	자	구의동 4	350.00	350.00	-	-	-	-	-	신설
	배드민턴장	바	3개소	1,481.00	1,481.00	-	-	-	-	-	차	3개소	1,181.00	1,181.00	-	-	-	-	-	
		바-1	구의동산8	(613.00)	(613.00)	-	-	-	-	-			-	-	-	-	-	-	-	폐지
				-	-	-	-	-	-	-	차-1	구의동 4	(313.00)	(313.00)	-	-	-	-	-	신설
		바-2	광장동산67-1	(415.00)	(415.00)	-	-	-	-	-	차-2	광장동 5-117	(415.00)	(415.00)	-	-	-	-	-	
		바-3	구의동3	(453.00)	(453.00)	-	-	-	-	-	차-3	구의동 3	(453.00)	(453.00)	-	-	-	-	-	
	다목적운동장	사		190.00	190.00	-	-	-	-	-	카	광장동 5-127외	190.00	190.00	-	-	-	-	-	
	체력단련장	아	2개소	1,506.00	1,506.00	-	-	-	-	23			-	-	-	-	-	-	-	폐지
아-1		구의동4	(681.00)	(681.00)	-	-	-	-	(23)	타	구의동 4	681.00	681.00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아-2	구의동산8	(825.00)	(825.00)	-	-	-	-	-			-	-	-	-	-	-	-	폐지	
	죽구장			-	-	-	-	-	-	-	파	구의동 3-11	350.00	350.00	-	-	-	-	-	신설	
	체력 단련 시설			-	-	-	-	-	-	-	③		-	-	-	-	-	-	8	신설	
교 양 시 설	소 계			4,402.00	4,402.00	-	1	70.29	70.29	-			20,527.56	20,527.56	-	1	70.29	70.29	-		
	습지원	자	광장동 370외	1,104.00	1,104.00	-	-	-	-	-	하	광장동 369외	1,104.00	1,104.00	-	-	-	-	-		
	자생 식물원	차	광장동 369-8외	1,997.00	1,997.00	-	-	-	-	-			-	-	-	-	-	-	-	폐지	
				-	-	-	-	-	-	-	거	광장동 369외	4,022.56	4,022.56	-	-	-	-	-	신설	
	밀원 식물원	카	광장동산68-4외	1,139.00	1,139.00	-	-	-	-	-	너	광장동 369외	1,139.00	1,139.00	-	-	-	-	-		
	향토 자료실	2	광장동산68-1	162.00	162.00		콘크리트 라멘조	1	70.29	70.29	-	2		162.00	162.00	-	1	70.29	70.29	-	
	유아숲체 원			-	-	-	-	-	-	-	더	광장동 5-124외	14,100.00	14,100.00	-	-	-	-	-	신설	
편	소 계			2,907.00	2,907.00	-	5	114.34	114.34	4			1,114.74	1,114.74	-	5	149.76	149.76	4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익 시 설	약수터	타	6개소	1,001.00	1,001.00	-	-	-	-	-	러	4개소	817.00	817.00	-	-	-	-	-	
		타-1	구의동산2-1	(100.00)	(100.00)	-	-	-	-	-			-	-	-	-	-	-	-	폐지
		타-2	구의동산3	(40.00)	(40.00)	-	-	-	-	-			-	-	-	-	-	-	-	폐지
		타-3	광장동산68-2	(134.00)	(134.00)	-	-	-	-	-			-	-	-	-	-	-	-	폐지
		타-4	광장동산34	(84.00)	(84.00)	-	-	-	-	-			-	-	-	-	-	-	-	폐지
		타-5	구의동3	(143.00)	(143.00)	-	-	-	-	-			-	-	-	-	-	-	-	폐지
		타-6	구의동산8	(500.00)	(500.00)	-	-	-	-	-			-	-	-	-	-	-	-	폐지
			-	-	-	-	-	-	-	-	러-1	구의동 3-11외	(40.00)	(40.00)	-	-	-	-	-	신설
			-	-	-	-	-	-	-	-	러-2	광장동 5-117	(134.00)	(134.00)	-	-	-	-	-	신설
			-	-	-	-	-	-	-	-	러-3	광장동 5-117	(143.00)	(143.00)	-	-	-	-	-	신설
			-	-	-	-	-	-	-	-	러-4	구의동 3	(500.00)	(500.00)	-	-	-	-	-	신설
	주차장	파	2개소	1,589.00	1,589.00	-	-	-	-	-			-	-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파-1	구의동6번 지 지목일대	(630.00)	(630.00)	-	-	-	-	-			-	-	-	-	-	-	-	폐지
		파-2	광장동369 -7외	(959.00)	(959.00)	-	-	-	-	-			-	-	-	-	-	-	-	폐지
	매점	3	광장동370 -3외	25.00	25.00	목구조	1	10.80	10.80	-	3		46.22	46.22	-	1	46.22	46.22	-	
	화장실	4	3개소	292.00	292.00	-	4	103.54	103.54	-	4		251.52	251.52	-	4	103.54	103.54	-	
		4-1	구의동산8	(122.00)	(122.00)	연와조 경사 슬라브	(1)	(46.08)	(46.08)	-	4-1		(122.00)	(122.00)	-	1	(46.08)	(46.08)	-	
		4-2	광장동369 -2	(138.00)	(138.00)	철근콘크리트 구조	(1)	(49.46)	(49.46)	-			-	-	-	-	-	-	-	폐지
				-	-	-	-	-	-	-	4-2		(111.52)	(111.52)	-	1	(49.46)	(49.46)		신설
		4-3	광장동산6 3-2	-	-	PC	(2)	(8.00)	(8.00)	-	4-3		(18.00)	(18.00)	-	2	(8.00)	(8.00)	-	
	음수전	③	전지역	-	-	-	-	-	-	1	④		-	-	-	-	-	-	1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중전화	④	구의동산8외	-	-	-	-	-	-	3	⑤		-	-	-	-	-	-	3	
관 리 시 설	소 계			799.00	799.00	-	2	207.90	207.90	14			1,091.77	1,091.77	-	2	207.90	207.90	14	
	관 리 사 무 소	5	2개소	799.00	799.00	-	-	-	-		5	2개소	1,091.77	1,091.77	-	2	207.90	207.90	-	
		5-1	구의동산8	(255.00)	(255.00)	목구조	(1)	(59.40)	(59.40)	-	5-1	구의동 3	(255.00)	(255.00)	-	1	(59.40)	(59.40)	-	
		5-2	광장동산66	(544.00)	(544.00)	판넬	(1)	(148.50)	(148.50)	-			-	-	-	-	-	-	폐지	
				-	-	-	-	-	-	-	5-2	광장동 5-117	(836.77)	(836.77)	-	1	(148.50)	(148.50)	-	신설
	안내판	⑤	전지역	-	-	-	-	-	-	14	⑥	전지역	-	-	-	-	-	-	14	
녹 지 및 기 타	소 계			155,120.00	-	-	-	-	-	-			101,143.51	-	-	-	-	-	-	
	녹 지			155,120.00	-	-	-	-	-	-			101,143.51	-	-	-	-	-	-	

3-3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도로조서(구의지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262.0	8,128.00				
변 경					6,509.89	6,301.16				
당 초	소 로	계			758.0	4,251.00				
변 경					1,477.55	1,678.02				
폐 지		2	1	8.0	379.0	3,114.00	주진입로	구의동6-4	광장동 산74-15	
폐 지		3	1	3.0	299.0	897.00	산책로	광장1	광장동 산68-1	
폐 지		3	2	3.0	80.0	240.00	산책로	광장1	광장동 산68-1	
신 설		2	1	1.5	116.45	166.97	산책로	진입광장 가-2	공원경계	
신 설		3	1	3.0	327.88	1,134.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8	
신 설		3	2	3.0	82.02	376.77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16,18	
당 초		3	3	2.0~4.0	193.20	(437.07)	도시계획도로			
당 초	산책로	계			2,504.0	3,877.00				
변 경					5,032.34	4,623.14				
폐 지			1	2.0	52.0	104.00	연결로	소로 3-1	배드민턴장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2	1.5	10.0	15.00	연결로	배드민턴장1	게이트볼장	
폐 지			3	1.5	24.0	36.00	연결로	소로 3-1	배드민턴장3	
폐 지			4	1.5	15.0	22.00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5	
폐 지			5	1.5	22.0	33.00	연결로	약수터3	화장실	
폐 지			6	1.5	25.0	38.00	연결로	야유회장2	산책로7	
폐 지			7	1.5	62.0	93.00	연결로	야유회장1	소로 3-2	
폐 지			8	1.5	157.0	236.00	등산로	소로 3-2	지구계	
폐 지			9	1.5	360.0	540.00	등산로	광장	산책로 27	
폐 지			10	1.5	38.0	57.00	등산로	산책로 9	산책로 15	
폐 지			11	1.5	22.0	33.00	등산로	산책로 9	약수터 6	
폐 지			12	1.5	90.0	135.00	등산로	산책로 9	야유회장 2	
폐 지			13	1.5	350.0	525.00	산책로	산책로 9	지역계	
폐 지			14	1.5	177.0	265.0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9	
폐 지			15	1.5	58.0	87.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9	
폐 지			16	1.5	218.0	327.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3	
폐 지			17	1.5	30.0	45.00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18	1.5	195.0	292.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6	
폐 지			19	2.5	33.0	82.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폐 지			20	3.0	14.0	42.00	산책로	산책로 21	광장 2	
폐 지			21	1.5	119.0	178.00	산책로	광장 2	진입로	
폐 지			22	1.5	27.0	40.00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8	
폐 지			23	1.5	25.0	38.00	산책로	진입로	배드민턴장2	
폐 지			24	1.5	21.0	31.00	관찰로	밀원식물원	습지원	
폐 지			25	2.0	12.0	24.00	연결로	광장 2	밀원식물원	
폐 지			26	2.0	76.0	152.00	산책로	자생식물원	밀원식물원	
폐 지			27	1.5	231.0	346.00	등산로	지구계	지구계	
폐 지			28	1.5	18.0	27.00	관찰로	습지원	소로 2-1	
폐 지			29	1.5	23.0	34.00	연결로	주차장 2	자생식물원	
신 설			1	2.0	45.41	90.84	산책로	소로 3-1	배드민턴장 차-1	
신 설			2	1.5	10.00	15.00	산책로	체력단련장 타	게이트볼장 자	
신 설			3	1.5	24.00	36.00	산책로	소로 3-1	배드민턴장 차-3	
신 설			4	1.5	15.00	22.00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5	1.5	22.00	33.00	산책로	약수터 러-3	화장실 4-1	
신 설			6	1.5	25.00	38.00	산책로	야유회장 바	산책로 7	
신 설			7	1.5	165.77	24.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 설			8	1.5	144.99	389.58	산책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 설			9	1.5	580.52	1,112.76	산책로	광장 가-1	공원경계	
신 설			10	1.5	38.00	57.00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15	
신 설			11	1.5	22.00	33.00	산책로	산책로 9	약수터 러-4	
신 설			12	1.5	90.00	135.00	산책로	산책로 9	야유회장 바	
신 설			13	2.0	232.87	519.40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 설			14	1.5	177.00	265.0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9	
신 설			15	1.5	58.00	87.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9	
신 설			16	2.0	187.27	350.6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17	1.5	25.74	42.08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 설			18	2.0	220.39	428.39	진입로	산책로 9	공원경계	
신 설			19	2.5	33.00	82.00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신 설			20	3.0	14.00	42.00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8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1	1.5	119.06	200.10	산책로	광장 가-2	공원경계	
신 설			22	1.5	27.00	40.00	산책로	산책로 21	광장 가-2	
신 설			23	1.5	31.42	60.84	산책로	공원경계	배드민턴장 차-2	
신 설			24	1.5	21.00	31.00	산책로	밀원식물원 너	산책로 26	
신 설			25	2.0	12.00	24.00	산책로	산책로 22	자생식물원 거	
신 설			26	2.0	76.00	152.00	산책로	자생식물원 거	밀원식물원 너	
신 설			27	1.5	18.00	27.00	산책로	광장 가-3	습지원 하	
신 설			28	1.5	85.81	271.35	산책로	공원경계	자생식물원 거	
신 설			29	1.5	7.09	14.16	산책로	모험놀이 시설 아	산책로 1	

4-1 용마산 근린공원 7지구 총괄표(아차산배수지지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8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9,107.00	16,131.50	-	-	-	68	74,266.10	30,847.29	2	464.33	706.73	48	증 14,715.79㎡
기 반 시 설	소계	1,643.50	1,643.50	-	-	-	-	8,988.99	8,988.99	-	-	-	-	
	도로	1,405.50	1,405.50	-	-	-	-	7,745.61	7,745.61	-	-	-	-	증 6,340.11㎡
	광장	238.00	238.00	-	-	-	-	1,243.38	1,243.38	-	-	-	-	증 1,005.38㎡
조경시설		-	-	-	-	-	11	5,201.43	5,201.43	-	-	-	2	증 5,201.43㎡
휴양시설		913.00	913.00	-	-	-	27	377.65	377.65	-	-	-	24	감 535.35㎡
유흥시설		-	-	-	-	-	-	152.00	152.00	-	-	-	4	증 152.00㎡
운동시설		13,290.00	13,290.00	-	-	-	23	13,693.42	13,693.42	-	-	-	17	증 403.42㎡
교양시설		285.00	285.00	-	-	-	-	1,592.28	1,592.28	-	-	-	-	증 1,307.28㎡
편익시설		-	-	-	-	-	2	461.97	461.97	1	84.78	84.78	-	증 461.97㎡
관리시설		-	-	-	-	-	5	379.55	379.55	1	379.55	621.95	1	증 379.55㎡
녹지 및 기타		32,975.50	-	-	-	-	-	43,418.81	-	-	-	-	-	증 10,443.31㎡

4-2 용마산 근린공원 7지구 시설조서(아차산배수지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9,107.00	16,131.50	-	-	-	-	68			74,266.10	30,847.29	-	2	464.33	706.73	48	
기 본 시 설	소 계			1,643.50	1,643.50	-	-	-	-	-			8,988.99	8,988.99	-	-	-	-	-	
	도로			1,405.50	1,405.50	-	-	-	-	-			7,745.61	7,745.61	-	-	-	-	-	
	광장	사	구의동 40답	238.00	238.00	-	-	-	-	-			-	-	-	-	-	-	-	폐지
				-	-	-	-	-	-	-	가	5개소	1,243.38	1,243.38	-	-	-	-	-	
				-	-	-	-	-	-	-	가-1	구의동 380-3	(468.29)	(468.29)	-	-	-	-	-	신설
				-	-	-	-	-	-	-	가-2	구의동 38-4	(240.21)	(240.21)	-	-	-	-	-	신설
				-	-	-	-	-	-	-	가-3	구의동 38	(272.25)	(272.25)	-	-	-	-	-	신설
				-	-	-	-	-	-	-	가-4	구의동 38	(61.01)	(61.01)	-	-	-	-	-	신설
				-	-	-	-	-	-	-	가-5	구의동 38	(201.62)	(201.62)	-	-	-	-	-	신설
				-	-	-	-	-	-	-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	11			5,201.43	5,201.43	-	-	-	-	2		
파고라	㉠	전지역	-	-	-	-	-	-	10			-	-	-	-	-	-	-	폐지	
정자	㉡	광장내	-	-	-	-	-	-	1			-	-	-	-	-	-	-	폐지	
	초화원			-	-	-	-	-	-	나	구의동 38-20외	3,602.04	3,602.04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관상용 식수대			-	-	-	-	-	-	-	다	구의동 38-4외	1,599.39	1,599.39	-	-	-	-	-	신설
	목재 데크			-	-	-	-	-	-	-	①		-	-	-	-	-	-	1	신설
	돌담			-	-	-	-	-	-	-	②		-	-	-	-	-	-	1	신설
휴 양 시설	소 계			913.00	913.00	-	-	-	-	27			377.65	377.65	-	-	-	-	24	
	휴게소	가	3개소	913.00	913.00	-	-	-	-	-			-	-	-	-	-	-	-	폐지
		가-1																		
		가-2																		
	장의자	②	전지역	-	-	-	-	-	-	27			-	-	-	-	-	-	-	신설
	휴게소			-	-	-	-	-	-	-	라	5개소	377.65	377.65	-	-	-	-	-	신설
				-	-	-	-	-	-	-	라-1	구의동 38-4	(258.50)	(258.50)	-	-	-	-	-	신설
				-	-	-	-	-	-	-	라-2	구의동 38-4	(16.00)	(16.00)	-	-	-	-	-	신설
				-	-	-	-	-	-	-	라-3	구의동 38-4	(67.50)	(67.50)	-	-	-	-	-	신설
				-	-	-	-	-	-	-	라-4	구의동 38-4	(16.00)	(16.00)	-	-	-	-	-	신설
				-	-	-	-	-	-	-	라-5	구의동 38	(19.65)	(19.65)	-	-	-	-	-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파고라			-	-	-	-	-	-	-	③		-	-	-	-	-	-	3	신설
	평의자			-	-	-	-	-	-	-	④		-	-	-	-	-	-	20	신설
	평상			-	-	-	-	-	-	-	⑤		-	-	-	-	-	-	1	신설
유아시설	소계			-	-	-	-	-	-	-			152.00	152.00	-	-	-	-	4	신설
	어린이 놀이터			-	-	-	-	-	-	-	마	구의동 38	152.00	152.00	-	-	-	-	-	신설
	조합 놀이대			-	-	-	-	-	-	-	⑥		-	-	-	-	-	-	1	신설
	시소			-	-	-	-	-	-	-	⑦		-	-	-	-	-	-	1	신설
	흔들 놀이대			-	-	-	-	-	-	-	⑧		-	-	-	-	-	-	2	신설
야외시설	소계			13,290.00	13,290.00	-	-	-	-	23			13,693.42	13,693.42	-	-	-	-	17	
	배드민턴장	나	구의동산17-2	1,054.00	1,054.00	-	-	-	-	-			-	-	-	-	-	-	-	폐지
	다목적운동장	다	구의동산17-2	826.00	826.00	-	-	-	-	-			-	-	-	-	-	-	-	폐지
				-	-	-	-	-	-	-	바	구의동 38-4	1,099.12	1,099.12	-	-	-	-	-	신설
	체력단련장	라	구의동산17-2외	545.00	545.00	-	-	-	-	-			-	-	-	-	-	-	-	폐지
				-	-	-	-	-	-	-	카	2개소	276.13	276.13	-	-	-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카-1	구의동 38-4	(156.58)	(156.58)	-	-	-	-	-	신설
				-	-	-	-	-	-	-	카-2	구의동 38	(119.55)	(119.55)	-	-	-	-	-	신설
	테니스장	마	구의동산25-1외	3,528.00	3,528.00	-	-	-	-	-			-	-	-	-	-	-	-	폐지
				-	-	-	-	-	-	-	차	구의동 38-4외	3,836.80	3,836.80	-	-	-	-	-	신설
	축구장	바	구의동산17-2외	7,337.00	7,337.00	-	-	-	-	-			-	-	-	-	-	-	-	폐지
				-	-	-	-	-	-	-	자	구의동 38-4	7,308.66	7,308.66	-	-	-	-	-	신설
	농구대	③	전지역	-	-	-	-	-	-	4			-	-	-	-	-	-	-	폐지
	체력 단련 시설	⑧	체력단련장 내	-	-	-	-	-	-	19	⑨		-	-	-	-	-	-	-	17
	풋살 구장			-	-	-	-	-	-	-	사	구의동 38-4	870.69	870.69	-	-	-	-	-	신설
	농구장			-	-	-	-	-	-	-	아	구의동 38-4	302.02	302.02	-	-	-	-	-	신설
교양시설	소계			285.00	285.00	-	-	-	-	-			1,592.28	1,592.28	-	-	-	-	-	
	자연 학습장	아	2개소	285.00	285.00	-	-	-	-	-			-	-	-	-	-	-	-	
		아-1	구의동 40답외	(183.00)	(183.00)	-	-	-	-	-			-	-	-	-	-	-	-	폐지
		아-2	구의동 40답	(102.00)	(102.00)	-	-	-	-	-			-	-	-	-	-	-	-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생태 학습장			-	-	-	-	-	-	-	타	2개소	1,592.28	1,592.28	-	-	-	-	-	
				-	-	-	-	-	-	-	타-1	구의동 38	(1,013.59)	(1,013.59)	-	-	-	-	-	신설
				-	-	-	-	-	-	-	타-2	구의동 38	(578.69)	(578.69)	-	-	-	-	-	신설
편 의 시 설	소 계			-	-	-	-	-	-	2			461.97	461.97	-	1	84.78	84.78	-	신설
	음수전	④	전지역	-	-	-	-	-	-	2			-	-	-	-	-	-	-	폐지
	운영 사무실			-	-	-	-	-	-	-	1		84.78	84.78	-	1	84.78	84.78	-	신설
	주차장			-	-	-	-	-	-	-	파	구의동 380-3	377.19	377.19	-	-	-	-	-	신설
관 리 시 설	소 계			-	-	-	-	-	-	5			379.55	379.55	-	1	379.55	621.95	1	
	관리실 및 창고	⑤	구의동산2 5-1	-	-	-	-	-	-	1			-	-	-	-	-	-	-	폐지
	관리 사무소			-	-	-	-	-	-	-	2		379.55	379.55	-	1	379.55	621.95	-	신설
	안내판	⑥	전지역	-	-	-	-	-	-	4	⑩		-	-	-	-	-	-	1	
녹 지 및 기 타	소 계			32,975.50	-	-	-	-	-	-			43,418.81	-	-	-	-	-	-	
	녹 지			32,975.50	-	-	-	-	-	-			43,418.81	-	-	-	-	-	-	

4-3 용마산 근린공원 7지구 도로조서(아차산배수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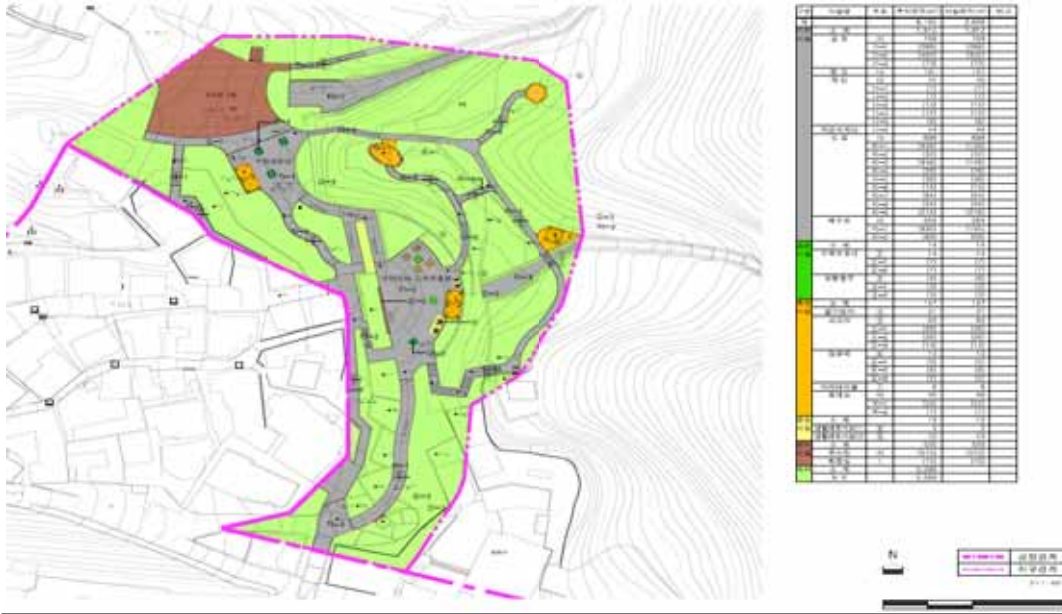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538.0	1,405.50				
변 경					2,549.95	7,745.61				
당 초	소 로	계			-	-				
변 경					1,067.88	5,225.32				
신 설		3류	3-1	5.5-7.5	667.48	3,955.9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대	
신 설		3류	3-2	3.5	232.03	821.81	연결로	소로3-1	소로3-1	
신 설		3류	3-3	3.0	89.53	280.6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4	
신 설		3류	3-4	2.0	66.22	138.66	연결로	광장,가-4	광장,가-5	
신 설		3류	3-5	2.5	12.62	28.33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가-5	
당 초		계			538.0	1,405.50				
변 경					1,482.07	2,520.29				
폐 지	산책로		1	4.0	226.0	904.00	진입로	지구계	지구계	
폐 지			2	3.0	36.0	108.00	진입로	산책로1	지구계	
폐 지			5	2.0	82.0	164.00	연결로	산책로4	지구계	
폐 지			6	2.0	3.0	6.00	연결로	광장	지구계	
폐 지			7	1.5	149.0	223.50	연결로	광장	지구계	
폐 지										
신 설			1	3.0	9.16	27.47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2	2.5	11.61	29.26	진입로	산책로3	운영사무실,1	
신 설			3	2.0-4.0	176.63	581.97	연결로	녹지대	체력단련장,자-1	
신 설			4	2.0	62.34	124.68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5	
신 설			5	2.0	173.50	681.47	연결로	소로3-2	소로3-1	
신 설			6	2.5	32.67	95.52	연결로	산책로5	산책로7	
신 설			7	2.5	44.52	113.90	연결로	산책로9	축구장,사	
신 설			8	2.0	27.78	55.55	연결로	산책로7	산책로3	
신 설			9	1.5	74.56	137.05	연결로	산책로5	녹지대	
신 설			10	2.0	4.62	9.22	진입로	소로3-1	산책로9	
신 설			11	2.5	4.20	10.51	진입로	소로3-1	휴게소,나-1	
신 설			12	2.0	20.04	41.83	진입로	소로3-1	산책로3	
신 설			13	1.5	93.05	139.57	연결로	녹지대	녹지대	
신 설			14	3.0	9.25	27.76	진입로	광장,가-2	산책로13	
신 설			15	1.5	128.65	193.86	산책로	소로3-3	소로3-4	
신 설			16	2.0	11.69	23.37	연결로	소로3-4	체력단련장,자-2	
신 설			17	2.35	18.59	43.6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가-5	
신 설			18	2.5	5.30	13.26	연결로	광장,가-5	체력단련장,자-2	
신 설			19	2.0	77.91	170.35	연결로	체력단련장,자-2	소로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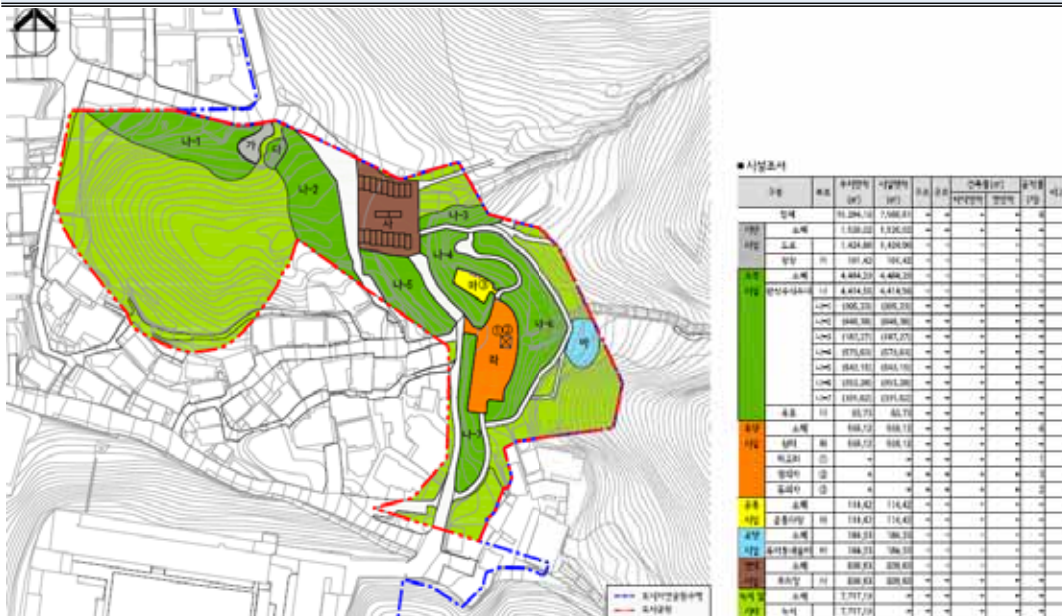
(,)
(: 4~7)

■ 용마산근린공원 4지구

당 초 (용마도시자연공원 중곡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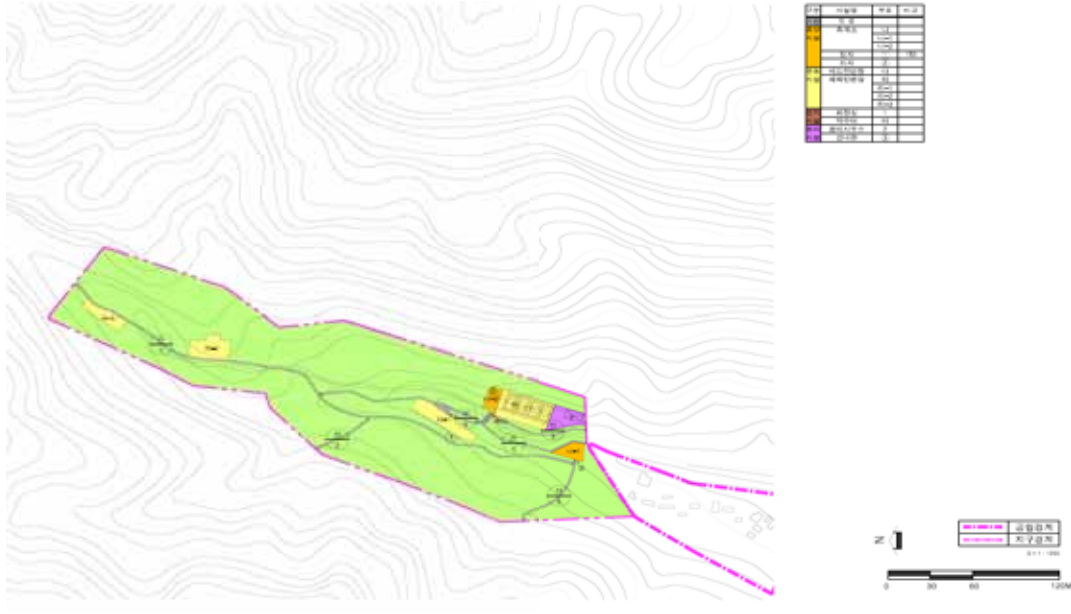


변 경 (용마산근린공원 4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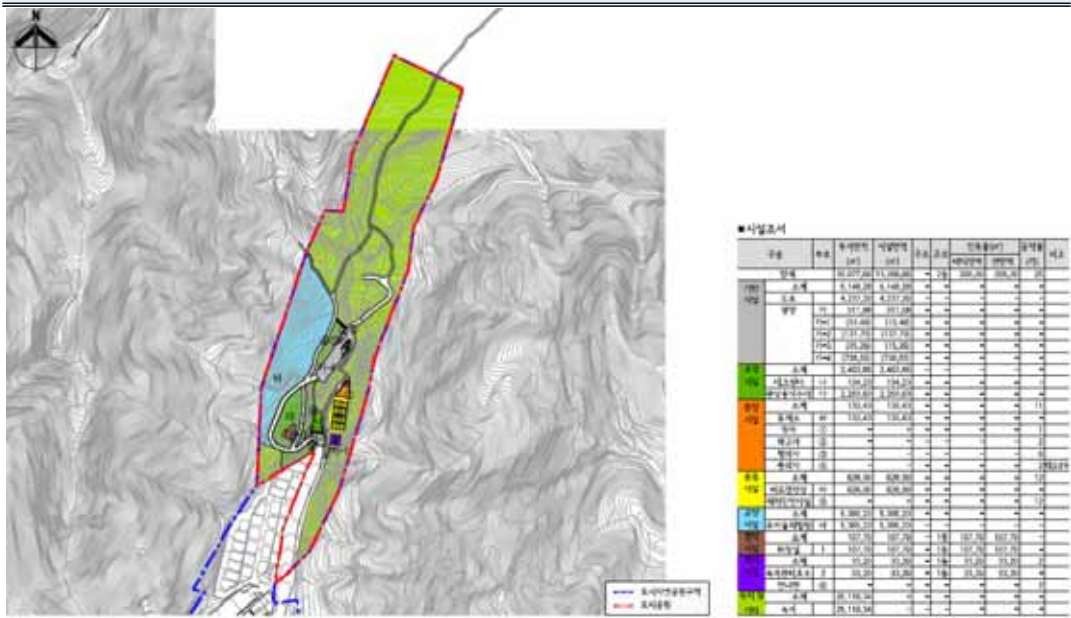


■ 용마산근린공원 5지구

당 초 (용마도시자연공원 긴골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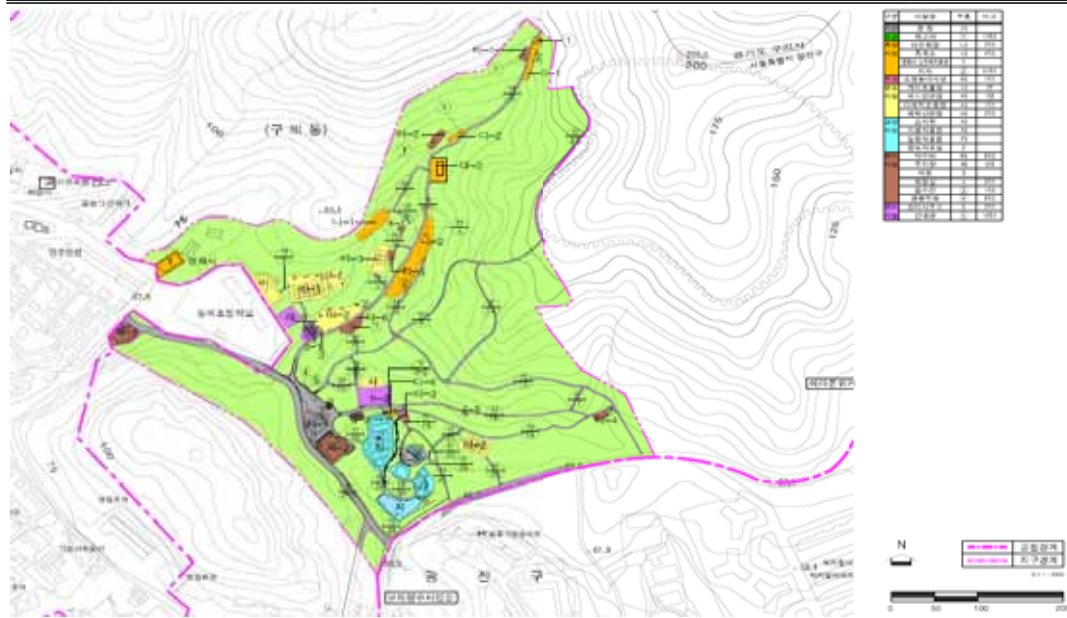


변 경 (용마산근린공원 5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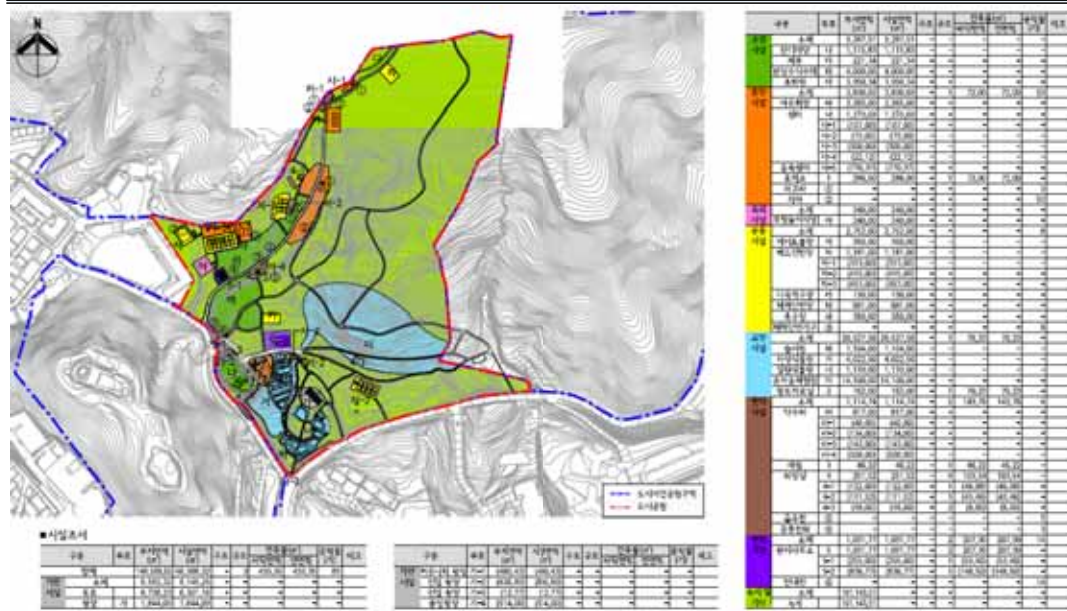


■ 용마산근린공원 6지구

당 초 (용마도시자연공원 구의지구)



변 경 (용마산근린공원 6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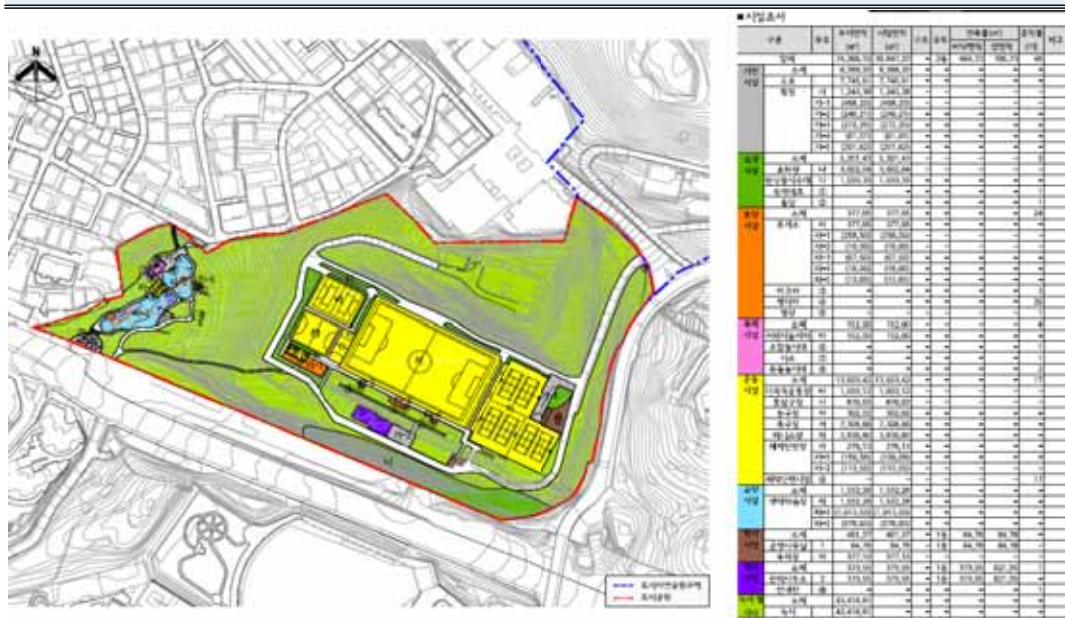


■ 용마산근린공원 7지구

당 초 (용마도시자연공원 아차산배수지지구)



변 경 (용마산근린공원 7지구)



2021 - 114

() ()

1.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 2.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 6. 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491호(1982. 12. 3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중 량 구 청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본동 산69-1 일대(1지구), 면목7동 산46-2 일대(2지구), 면목4동 산1-4 일대(3지구)

나. 공원면적 : 588,871.2㎡

다. 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산69-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107,709.00	188,453.44	41	10,649.74	23,092.12	629	866,067.90	277,880.12	41	10,924.92	22,647.77	616	증 89,426.68㎡
공원 시설 구역	소계	793,051.00	188,383.44	39	10,584.55	23,026.93	629	866,067.90	277,880.12	41	10,924.92	22,647.77	616	
	1지구	286,054.00	85,465.74	14	7,529.00	15,526.00	75	318,449.60	109,556.25	19	7,402.25	15,324.25	107	증 24,090.51㎡ (구보육원&망우 &배발&서일대 지구)
	2지구	81,038.00	13,540.20	3	1,516.00	4,940.00	12	70,709.30	24,289.90	2	1,607.59	5,166.04	44	증 10,749.70㎡ (면목약수터지구)
	3지구	151,322.00	40,485.00	7	749.90	749.90	301	199,712.30	44,664.49	7	749.90	749.90	301	증 4,179.49㎡ (채석장지구)
	4지구	8,195.00	2,606.00	1	10.00	10.00	25	15,284.10	7,566.61	-	-	-	6	증 4,960.61㎡ (중곡지구)
	5지구	35,141.00	3,081.00	4	84.00	84.00	54	39,077.00	13,966.66	2	200.90	200.90	25	증 10,885.66㎡ (긴골지구)
	6지구	182,194.00	27,074.00	10	695.65	1,717.03	110	148,569.50	46,988.92	9	499.95	499.95	85	증 19,914.92㎡ (구의지구)
	7지구	49,107.00	16,131.50	-	-	-	68	74,266.10	30,847.29	2	464.33	706.73	48	증 14,715.79㎡ (아차산배수지지구)
시설지구의		4,314,658.00	70.00	2	65.19	65.19	-	-	-	-	-	-	-	감 70.00㎡
시설율 (법정40%)		188,453.44 / 5,107,709.00 x 100 = 3.70%						277,880.12 / 866,067.90 x 100 = 32.09%						
건폐율 (법정20%)		10,584.55 / 5,107,709.00 x 100 = 0.21%						10,924.92 / 866,067.90 x 100 = 1.26%						

1-1. 용마산 근린공원 1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6,054.00	85,465.74	14	7,529.00	15,526.00	75	318,449.60	109,556.25	19	7,402.25	15,324.25	107	증 24,090.51㎡
기 반 시 설	소계	25,920.46	25,920.46	-	-	-	-	32,523.23	31,458.63	-	-	-	-	
	도로	19,466.42	19,466.42	-	-	-	-	26,833.01	25,768.41	-	-	-	-	증 6,301.99㎡
	광장	6,454.04	6,454.04	-	-	-	-	5,690.22	5,690.22	-	-	-	-	감 763.82㎡
조경시설		10,087.80	10,087.80	-	-	-	8	13,179.28	13,179.28	-	-	-	-	증 3,091.48㎡
휴양시설		13,137.91	13,137.91	1	152.00	152.00	40	10,915.21	10,915.21	1	120.00	120.00	58	감 2,222.70㎡
유희시설		505.18	505.18	-	-	-	10	606.85	606.85	-	-	-	2	증 101.67㎡
운동시설		15,892.62	15,892.62	1	375.00	450.00	9	4,834.90	4,834.90	3	3,969.00	11,358.00	3	감 11,057.72㎡
교양시설		6,225.97	6,225.97	3	3,969.00	11,358.00	-	9,882.01	9,882.01	-	-	-	28	증 3,656.04㎡
편익시설		12,987.30	12,987.30	5	2,286.00	2,448.00	1	12,759.99	12,759.99	7	2,546.75	2,708.75	-	감 227.31㎡
관리시설		818.00	818.00	4	747.00	1,118.00	6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증 19.50㎡
도시농업시설		-	-	-	-	-	-	25,081.88	25,081.88	-	-	-	-	증 25,081.88㎡
녹지 및 기타		200,588.26	-	-	-	-	-	207,828.75	-	-	-	-	-	증 7,240.49㎡

1-2. 용마산 근린공원 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86,054.00	85,465.74	-	14	7,529.00	15,526.00	75			318,449.60	109,556.25	-	19	7,402.25	15,324.25	107	
기 반 시 설	소 계			25,920.46	25,920.46	-	-	-	-	-			32,523.23	31,458.63	-	-	-	-	-	
	도 로			19,466.42	19,466.42	-	-	-	-	-			26,833.01	25,768.41	-	-	-	-	-	
	광장	가		6,454.04	6,454.04	-	-	-	-	-	가		5,690.22	5,690.22	-	-	-	-	-	
		가-1	산69-1임	(777.91)	(777.91)	-	-	-	-	-	가-1	산69-1임	(777.91)	(777.91)	-	-	-	-	-	망우지구
		가-2	산69-1임	(491.18)	(491.18)	-	-	-	-	-	가-2	산69-1임	(491.18)	(491.18)	-	-	-	-	-	망우지구
		가-3	산69-1임	(391.23)	(391.23)	-	-	-	-	-	가-3	산69-1임	(391.23)	(391.23)	-	-	-	-	-	망우지구
		가-4	산69-485임	(641.44)	(641.44)	-	-	-	-	-			-	-	-	-	-	-	-	폐지(망우지구)
				-	-	-	-			-	가-7	산69-1임	(239.05)	(239.05)	-	-	-	-	-	신설
		가-5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가-4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망우지구
		가-6	산69-485임	(59.78)	(59.78)	-	-	-	-	-			-	-	-	-	-	-	-	폐지(망우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가-6	산69-482 임	(532.34)	(532.34)	-	-	-	-	-	신설
		가-7	산69-1임	(82.31)	(82.31)	-	-	-	-	-	가-5	산69-482 임	(82.31)	(82.31)	-	-	-	-	-	망우 지구
		가-8	산69-482 임	(532.34)	(532.34)	-	-	-	-	-			-	-	-	-	-	-	-	폐지(망우 지구)
		가-9	산69-482 임	(239.05)	(239.05)	-	-	-	-	-			-	-	-	-	-	-	-	폐지(망우 지구)
		가	망우산 69-1	(353.00)	(353.00)	-	-	-	-	-			-	-	-	-	-	-	-	폐지(구보 육원 지구)
		가-1	망우동산69-203	(630.00)	(630.0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가-2	망우동산69-206	(88.00)	(88.0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가-3	망우동산69-203	(579.00)	(579.0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가		511.00	511.00	-	-	-	-	-			-	-	-	-	-	-	-	폐지(서일 대지 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가-8	산69-1임	(62.00)	(62.00)	-	-	-	-	-	신설	
				-	-	-	-	-	-	-	가-9	산69-508	(177.00)	(177.00)	-	-	-	-	-	신설	
				-	-	-	-	-	-	-	가-10	산69-508	(13.00)	(13.00)	-	-	-	-	-	신설	
				-	-	-	-	-	-	-	가-11	산69-203	(27.00)	(27.00)	-	-	-	-	-	신설	
				-	-	-	-	-	-	-	가-12	산69-203	(729.00)	(729.00)	-	-	-	-	-	신설	
				-	-	-	-	-	-	-	가-13		(315.00)	(315.00)	-	-	-	-	-	신설	
				-	-	-	-	-	-	-	가-14		(83.00)	(83.00)	-	-	-	-	-	신설	
				-	-	-	-	-	-	-	가-15		(16.00)	(16.00)	-	-	-	-	-	신설	
				-	-	-	-	-	-	-	가-16		(140.23)	(140.23)	-	-	-	-	-	신설	
				-	-	-	-	-	-	-	가-17		(41.33)	(41.33)	-	-	-	-	-	신설	
				-	-	-	-	-	-	-	가-18		(239.61)	(239.61)	-	-	-	-	-	신설	
				-	-	-	-	-	-	-	가-19		(255.23)	(255.23)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조 경 시 설	소 계			10,087.80	10,087.80	-	-	-	-	8			13,179.28	13,179.28	-	-	-	-	-		
	계류원			-	-	-	-	-	-	-	나	3개소	1,080.80	1,080.80	-	-	-	-	-		
		나	산69-1임	815.30	815.30	-	-	-	-	-	나-1	산69-1임	(815.30)	(815.30)	-	-	-	-	-	망우지구	
				-	-	-	-	-	-	-	나-2		(61.00)	(61.00)	-	-	-	-	-	신설	
				-	-	-	-	-	-	-	나-3		(204.50)	(204.50)	-	-	-	-	-	신설	
	캐스케이드	다	산69-1임	2,749.11	2,749.11	-	-	-	-	-	다	산69-1임	2,749.11	2,749.11	-	-	-	-	-	망우지구	
	허브원	라	2개소	4,640.77	4,640.77	-	-	-	-	-	라		7,570.25	7,570.25	-	-	-	-	-		
		라-1	산69-1임	(770.94)	(770.94)	-	-	-	-	-	라-1	산69-1임	(770.94)	(770.94)	-	-	-	-	-	망우지구	
		라-2	산69-1임	(3,869.83)	(3,869.83)	-	-	-	-	-	라-2	산69-1임	(3,869.83)	(3,869.83)	-	-	-	-	-	망우지구	
				-	-	-	-	-	-	-	라-3		(1,353.85)	(1,353.85)	-	-	-	-	-	신설	
				-	-	-	-	-	-	-	라-4		(141.63)	(141.63)	-	-	-	-	-	신설	
				-	-	-	-	-	-	-	라-5		(176.31)	(176.31)	-	-	-	-	-	신설	
				-	-	-	-	-	-	-	라-6		(1,257.69)	(1,257.69)	-	-	-	-	-	신설	
	마당	마	3개소	124.26	124.26	-	-	-	-	-	마	3개소	124.26	124.26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마-1	산69-1입	(45.00)	(45.00)	-	-	-	-	-	마-1	산69-1입	(45.00)	(45.00)	-	-	-	-	-	망우 지구	
		마-2	산69-1입	(30.76)	(30.76)	-	-	-	-	-	마-2	산69-1입	(30.76)	(30.76)	-	-	-	-	-	망우 지구	
		마-3	산69-482 입	(48.50)	(48.50)	-	-	-	-	-	마-3	산69-482 입	(48.50)	(48.50)	-	-	-	-	-	망우 지구	
	돌담	바	산69-1입	79.86	79.86	-	-	-	-	-	바	산69-1입	79.86	79.86	-	-	-	-	-	망우 지구	
	잔디 광장	사	산69-482 입	1,575.00	1,575.00	-	-	-	-	-	사	산69-482 입	1,575.00	1,575.00	-	-	-	-	-	망우 지구	
	원형 파고라	①	2개소	86.00	86.00	-	-	-	-	2	-		-	-	-	-	-	-	-		
		①-1	망우동산69-206	(56.00)	(56.00)	-	-	-	-	(1)	-		-	-	-	-	-	-	-	폐지(배발 지구)	
		①-2	망우동산69-203	(30.00)	(30.00)	-	-	-	-	(1)	-		-	-	-	-	-	-	-	폐지(배발 지구)	
	돌담	②	망우동산69-203	(9.5)	(9.5)	-	-	-	-	3	-		-	-	-	-	-	-	-	폐지(배발 지구)	
	돌담	③	망우동산69-203	(8.0)	(8.0)	-	-	-	-	2			-	-	-	-	-	-	-	폐지(배발 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정자	①	휴게소 나-1내	-	-	-	-	-	-	1			-	-	-	-	-	-	-	폐지(서일 대지구)	
휴 양 시 설	소 계			13,137.91	13,137.91	-	1	152.00	152.00	40			10,915.21	10,915.21	연와 조	1	120.00	120.00	58		
	캠핑장	아	산69-1임	6,477.03	6,477.03	-	-	-	-	-	아	산69-1임	6,477.03	6,477.03	-	-	-	-	-	망우 지구	
	쉼터	자	10개소	1,500.75	1,500.75	-	-	-	-	-	자	28개소	4,270.18	4,270.18	-	-	-	-	-		
		자-1	산69-1임	(73.20)	(73.20)	-	-	-	-	-	자-1	산69-1임	(73.20)	(73.20)	-	-	-	-	-	망우 지구	
		자-2	산69-1임	(82.20)	(82.20)	-	-	-	-	-	자-2	산69-1임	(82.20)	(82.20)	-	-	-	-	-	망우 지구	
		자-3	산69-1임	(150.00)	(150.00)	-	-	-	-	-	자-3	산69-1임	(150.00)	(150.00)	-	-	-	-	-	망우 지구	
		자-4	산69-1임	(127.26)	(127.26)	-	-	-	-	-	자-4	산69-1임	(127.26)	(127.26)	-	-	-	-	-	망우 지구	
		자-5	산69-1임	(203.78)	(203.78)	-	-	-	-	-	자-5	산69-1임	(203.78)	(203.78)	-	-	-	-	-	망우 지구	
		자-6	산69-1임	(12.00)	(12.00)	-	-	-	-	-	자-6	산69-1임	(12.00)	(12.00)	-	-	-	-	-	망우 지구	
		자-7	산69-1임	(12.00)	(12.00)	-	-	-	-	-	자-7	산69-1임	(12.00)	(12.00)	-	-	-	-	-	망우 지구	
		자-8	산69-1임	(22.50)	(22.50)	-	-	-	-	-	자-8	산69-1임	(22.50)	(22.50)	-	-	-	-	-	망우 지구	
		자-9	산69-1임	(730.50)	(730.50)	-	-	-	-	-	자-9	산69-1임	(730.50)	(730.50)	-	-	-	-	-	망우 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자-10	산69-1임	(87.31)	(87.31)	-	-	-	-	-	자-10	산69-1임	(87.31)	(87.31)	-	-	-	-	-	망우지구	
				-	-	-	-	-	-	-	자-11		(94.50)	(94.50)	-	-	-	-	-	신설	
				-	-	-	-	-	-	-	자-12		(188.52)	(188.52)	-	-	-	-	-	신설	
				-	-	-	-	-	-	-	자-13		(63.11)	(63.11)	-	-	-	-	-	신설	
				-	-	-	-	-	-	-	자-14		(843.00)	(843.00)	-	-	-	-	-	신설	
				-	-	-	-	-	-	-	자-15		(132.00)	(132.00)	-	-	-	-	-	신설	
				-	-	-	-	-	-	-	자-16		(74.00)	(74.00)	-	-	-	-	-	신설	
				-	-	-	-	-	-	-	자-17		(356.00)	(356.00)	-	-	-	-	-	신설	
				-	-	-	-	-	-	-	자-18		(21.00)	(21.00)	-	-	-	-	-	신설	
				-	-	-	-	-	-	-	자-19		(14.50)	(14.50)	-	-	-	-	-	신설	
				-	-	-	-	-	-	-	자-20		(40.00)	(40.00)	-	-	-	-	-	신설	
				-	-	-	-	-	-	-	자-21		(14.50)	(14.50)	-	-	-	-	-	신설	
				-	-	-	-	-	-	-	자-22		(43.00)	(43.00)	-	-	-	-	-	신설	
				-	-	-	-	-	-	-	자-23		(271.76)	(271.76)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자-24		(213.23)	(213.23)	-	-	-	-	-	신설	
				-	-	-	-	-	-	-	자-25		(242.34)	(242.34)	-	-	-	-	-	신설	
				-	-	-	-	-	-	-	자-26		(98.80)	(98.80)	-	-	-	-	-	신설	
				-	-	-	-	-	-	-	자-27		(21.00)	(21.00)	-	-	-	-	-	신설	
				-	-	-	-	-	-	-	자-28		(38.17)	(38.17)	-	-	-	-	-	신설	
	노인정	1	망우동산69-1	168.00	168.00	연와조	1	120.00	120.00	-	1	망우동산69-1	168.00	168.00	연와조	1	120.00	120.00	-	망우지구	
	야유회장	나	2개소	2,620.00	2,620.00	-	-	-	-	-			-	-	-	-	-	-	-		
		나-1	망우동산69-1	(1,620.00)	(1,620.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지구)	
		나-2	망우동산69-1	(1,000.00)	(1,000.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지구)	
	쉼터	㉠	3개소	346.13	346.13	-	-	-	-	3			-	-	-	-	-	-	-		
		㉠-1	산69-1임	(94.50)	(94.50)	-	-	-	-	(1)			-	-	-	-	-	-	-	폐지 (망우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①-2	산69-1임	(188.52)	(188.52)	-	-	-	-	(1)			-	-	-	-	-	-	-	폐지(망우 지구)	
		①-3	산69-1임	(63.11)	(63.11)	-	-	-	-	(1)			-	-	-	-	-	-	-	폐지(망우 지구)	
	전망대내			32.00	32.00	-	-	-	-	2			-	-	-	-	-	-	-	폐지 (구보 육원 지구)	
	다목적은 동장내			-	-	-	-	-	-	6			-	-	-	-	-	-	-	폐지 (구보 육원 지구)	
	건강 보도	나	망우동산69-203	330.00	330.0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평상	④	망우동산69-205	4.0	4.0	-	-	-	-	1			-	-	-	-	-	-	-	폐지(배발 지구)	
	휴게소	다	4개소	615.0	615.0	-	-	-	-	-			-	-	-	-	-	-	-		
		다-1	망우동산69-203	(250.0)	(250.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다-2	망우동산69-203	(53.0)	(53.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다-3	망우동산69-205	(42.0)	(42.0)	-	-	-	-	-			-	-	-	-	-	-	-	폐지(배발지구)	
		다-4	망우동산69-203	(270.0)	(270.0)	-	-	-	-	-			-	-	-	-	-	-	-	폐지(배발지구)	
		나	2개소	1,017.0	1,017.0	-	-	-	-	-			-	-	-	-	-	-	-		
		나-1		(298.0)	(298.0)	-	-	-	-	-			-	-	-	-	-	-	-	폐지(서일대지구)	
		나-2		(90.0)	(90.0)	-	-	-	-	-			-	-	-	-	-	-	-	폐지(서일대지구)	
	건강 지압로			64.0	64.0	-	-	-	-	-			-	-	-	-	-	-	-	폐지(서일대지구)	
	파고라	②	광장내	-	-	-	-	-	-	2	①		-	-	-	-	-	-	6	서일대지구	
	평의자	③	휴게소내	-	-	-	-	-	-	8	②		-	-	-	-	-	-	31	서일대지구	
	등의자			-	-	-	-	-	-	-	③		-	-	-	-	-	-	15		
	정자	⑤	2개소	(40.0)	(40.0)	-	-	-	-	2			-	-	-	-	-	-	-	폐지(배발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㉔-1	망우동산69-203	(20.0)	(20.0)	-	-	-	-	(1)			-	-	-	-	-	-	-	폐지(배발지구)	
		㉔-2	망우동산69-205	(20.0)	(20.0)	-	-	-	-	(1)			-	-	-	-	-	-	-	폐지(배발지구)	
	장의자	㉔	전지역	-	-	-	-	-	-	13			-	-	-	-	-	-	-	폐지(배발지구)	
	야외 탁자	㉔	망우동산69-203일대	-	-	-	-	-	-	3	㉔		-	-	-	-	-	-	-	배발지구	
	팔각정			-	-	-	-	-	-	-	㉔		-	-	-	-	-	-	-	신설	
유 희 시 설	소 계			505.18	505.18	-	-	-	-	10			606.85	606.85	-	-	-	-	-	2	
	모험의숲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5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	망우지구	
	어린이놀이터	라	망우동산69-203	229.0	229.0	-	-	-	-	-			-	-	-	-	-	-	-	폐지(배발지구)	
				-	-	-	-	-	-	-	카		330.67	330.67	-	-	-	-	-	신설	
				-	-	-	-	-	-	-	카-1		(137.00)	(137.00)	-	-	-	-	-	신설	
				-	-	-	-	-	-	-	카-2		(193.67)	(193.67)	-	-	-	-	-	신설	
	조합 놀이대			-	-	-	-	-	-	-	㉔		-	-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그네			-	-	-	-	-	-	-	⑧		-	-	-	-	-	-	1	신설	
	미끄럼대	⑧-1	어린이놀이 터 라	(9.0)	(9.0)	-	-	-	-	1			-	-	-	-	-	-	-	폐지(배발 지구)	
	흔들 놀이	⑧-2	어린이놀이 터 라	(2.0)	(2.0)	-	-	-	-	4			-	-	-	-	-	-	-	폐지(배발 지구)	
유아 시설	소 계			15,892.62	15,892.62	-	1	375.00	450.00	9			9,882.01	9,882.01	-	-	-	-	28		
	배드 민턴 장	라	2개소	1,129.00	1,129.00	-	-	-	-	-			-	-	-	-	-	-	-		
		라-1	망우동 산69 -1임	(532.00)	(532.00)	-	-	-	-	-			-	-	-	-	-	-	-	폐지(구보 육원 지구)	
		라-2	망우동 산69 -12임	(597.00)	(597.00)	-	-	-	-	-			-	-	-	-	-	-	-	폐지(구보 육원 지구)	
			-	-	-	-	-	-	-		타		1,205.12	1,205.12	-	-	-	-	-		
			-	-	-	-	-	-	-		타-1		(631.62)	(631.62)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타-2		(573.50)	(573.50)	-	-	-	-	-	신설	
	조깅 트랙	마	망우동산69-12입	609.00	609.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다목적운동장	바	망우동산69-12입	1,456.00	1,456.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골프 연습장	2	산69-1입	6,350.00	6,350.00	철골조	1	375.00	450.00	-			-	-	-	-	-	-	-	폐지(망우 지구)	
				-	-	-	-	-	-	-	파		6,437.00	6,437.00	-	-	-	-	-	신설	
	게이트 볼장			-	-	-	-	-	-	-	하		423.00	423.00	-	-	-	-	-	신설	
	족구장			-	-	-	-	-	-	-	거		1,441.50	1,441.50	-	-	-	-	-	신설	
	체력 단련장	사	7개소	5,459.00	5,459.00	-	-	-	-	-			-	-	-	-	-	-	-		
		사-1	망우동산69-1입	(816.00)	(816.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사-2	망우동산69-1입	(1,710.00)	(1,710.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사-3	망우동산69-1임	(1,361.00)	(1,361.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사-4	망우동산69-1임	(265.00)	(265.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사-5	망우동산69-1임	(606.00)	(606.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사-6	망우동산69-1임	(75.00)	(75.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사-7	망우동산69-1임	(626.00)	(626.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 지구)	
				-	-	-	-	-	-	-	너		375.39	375.39	-	-	-	-	8		
				-	-	-	-	-	-	-	너-1		(85.00)	(85.00)	-	-	-	-	4	신설	
				-	-	-	-	-	-	-	너-2		(5.00)	(5.00)	-	-	-	-	1	신설	
				-	-	-	-	-	-	-	너-3		(48.00)	(48.00)	-	-	-	-	3	신설	
				-	-	-	-	-	-	-	너-4		(53.13)	(53.13)	-	-	-	-	-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너-5		(86.23)	(86.23)	-	-	-	-	-	신설	
				-	-	-	-	-	-	-	너-6		(98.03)	(98.03)	-	-	-	-	-	신설	
		마	2개소	258.0	258.0	-	-	-	-	-			-	-	-	-	-	-	-		
		마-1	망우동산 69-203	(165.0)	(165.0)	-	-	-	-	9			-	-	-	-	-	-	-	폐지(배발 지구)	
		마-2	망우동산69 -205	(93.0)	(93.0)	-	-	-	-	-			-	-	-	-	-	-	-	폐지(배발 지구)	
		복합 주거시설		-	-	-	-	-	-	-	㉑		-	-	-	-	-	-	1	신설	
		배드민턴 장	카 산69-1임	631.62	631.62	-	-	-	-	-			-	-	-	-	-	-	-	폐지(망우 지구)	
		체력 단련 시설		-	-	-	-	-	-	-	㉒		-	-	-	-	-	-	19	신설	
교 양 시 설	소 계			6,225.97	6,225.97	-	3	3,969.00	11,358.00	-			4,834.90	4,834.90	-	3	3,969.00	11,358.00	3		
	디자인전 시관	3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조	1	2,988.00	10,196.00	-	2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	1	2,988.00	10,196.00	-	망우 지구	
	온실	4	산69-1임	812.00	812.00	철골조	1	800.00	800.00	-	3	산69-1임	812.00	812.00	철골	1	800.00	800.00	-	망우 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허브 체험관	5	산69-1임	187.00	187.00	경량철 골조	1	181.00	362.00	-	4	산69-1임	187.00	187.00	-	1	181.00	362.00	-	망우 지구	
	신도비	타	산69-1임	50.97	50.97	-	-	-	-	-	더	산69-1임	50.97	50.97	-	-	-	-	-	망우 지구	
	자연 생태 체험장			-	-	-	-	-	-	-	러		306.00	306.00	-	-	-	-	-	신설	
	자연 학습장	라	2개소	979.0	979.0	-	-	-	-	-			-	-	-	-	-	-	-	폐지(서일 대지 구)	
		라-1		(297.0)	(297.0)	-	-	-	-	-			-	-	-	-	-	-	-	폐지(서일 대지 구)	
		라-2		(682.0)	(682.0)	-	-	-	-	-			-	-	-	-	-	-	-	폐지(서일 대지 구)	
	실외 교구장			-	-	-	-	-	-	-	서		401.93	401.93	-	-	-	-	-	신설	
	교구 시설			-	-	-	-	-	-	-	㉑		-	-	-	-	-	-	3	신설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	망우동산69-203	1,120.0	1,120.0	-	-	-	-	-			-	-	-	-	-	-	-	폐지(배발지구)	
편의 시설	소 계			12,987.30	12,987.30	-	5	2,286.00	2,448.00	1			12,759.99	12,759.99	-	10	2,546.75	2,546.75	-		
	주차장	파	8개소	9,949.40	9,949.40	-	-	-	-	-	머	8개소	9,949.40	9,949.40	-	-	-	-	-		
		파-1	산69-482입	(1,094.02)	(1,094.02)	-	-	-	-	-	머-1	산69-482입	(1,094.02)	(1,094.02)	-	-	-	-	-	망우지구	
		파-2	산69-482입	(1,056.12)	(1,056.12)	-	-	-	-	-	머-2	산69-482입	(1,056.12)	(1,056.12)	-	-	-	-	-	망우지구	
		파-3	산69-1입	(507.31)	(507.31)	-	-	-	-	-	머-3	산69-1입	(507.31)	(507.31)	-	-	-	-	-	망우지구	
		파-4	산69-1입	(1,025.96)	(1,025.96)	-	-	-	-	-	머-4	산69-1입	(1,025.96)	(1,025.96)	-	-	-	-	-	망우지구	
		파-5	산69-1입	(655.05)	(655.05)	-	-	-	-	-	머-5	산69-1입	(655.05)	(655.05)	-	-	-	-	-	망우지구	
		파-6	산69-1입	(3,159.65)	(3,159.65)	-	-	-	-	-	머-6	산69-1입	(3,159.65)	(3,159.65)	-	-	-	-	-	망우지구	
		파-7	산69-486입	(1,101.55)	(1,101.55)	-	-	-	-	-	머-8	산69-486입	(1,101.55)	(1,101.55)	-	-	-	-	-	망우지구	
		파-8	산69-485입	(1,349.74)	(1,349.74)	-	-	-	-	-	머-7	산69-485입	(1,349.74)	(1,349.74)	-	-	-	-	-	망우지구	
	자		망우동산69-12입	293.00	293.00	-	-	-	-	-			-	-	-	-	-	-	-	폐지(구보육원지구)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약수터	차	망우동산69-1임	20.00	20.00	-	-	-	-	-			-	-	-	-	-	-	-	폐지 (구보육원지구)	
	음수장			-	-	-	-	-	-	-	버		56.90	56.90	-	-	-	-	-	신설	
				-	-	-	-	-	-	-	버-1		(8.40)	(8.40)	-	-	-	-	-	신설	
				-	-	-	-	-	-	-	버-2		(48.50)	(48.50)	-	-	-	-	-	신설	
	음수대	㉑	전지역	6.0	6.0	-	-	-	-	1			-	-	-	-	-	-	-	폐지(배발지구)	
	일반 음식점	6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5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6-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5-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망우지구	
		6-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5-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망우지구	
	휴게 음식점	7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6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7-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6-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망우지구	
		7-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6-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망우지구	
	화장실			-	-	-	-	-	-	-	7		317.69	317.69	철골조	5	299.75	299.75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8	산69-482 임	72.90	72.90	철골 조	1	65.00	65.00	-	7-1	산69-482 임	(72.90)	(72.90)	철골 조	(1)	(65.00)	(65.00)	-	망우 지구	
				-	-	-	-	-	-	-	7-2		(28.50)	(28.50)	-	(1)	(28.50)	(28.50)	-	신설	
				-	-	-	-	-	-	-	7-3		(125.50)	(125.50)	-	(1)	(125.50)	(125.50)	-	신설	
				-	-	-	-	-	-	-	7-4		(62.75)	(62.75)	철근 콘	(1)	(62.75)	(62.75)	-	신설	
				-	-	-	-	-	-	-	7-5		(28.04)	(28.04)	철근 콘	(1)	(18.00)	(18.00)	-	신설	
	대피소			-	-	-	-	-	-	-	9		118.00	118.00	철근 콘	1	26.00	26.00	-	신설	
	전망대	카	2개소	328.00	328.00	-	-	-	-	-			-	-	-	-	-	-	-		
		카-1	망우동산6 9-1임	(180.00)	(180.00)	-	-	-	-	-			-	-	-	-	-	-	-	폐지 (구보 육원 지구)	
		카-2	망우동산6 9-1임	(148.00)	(148.00)	-	-	-	-	-			-	-	-	-	-	-	-	폐지 (구보 육원 지구)	
	공중 변소	녹지내		-	-	-	-	-	-	1			-	-	-	-	-	-	-	폐지 (구보 육원 지구)	
관 리	소 계			818.00	818.00	-	4	747.00	1,118.00	6			837.50	837.50	-	4	766.50	1,137.50	16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설	관리 사무소	9	4개소	818.00	818.00	-	4	747.00	1,118.00	-	8	4개소	837.50	837.50	-	4	766.50	1,137.50	-		
		9-1	산69-1임	(131.00)	(131.00)	철골 조	(1)	(120.00)	(120.00)	-	8-1	산69-1임	(131.00)	(131.00)	철골 조	(1)	(120.00)	(120.00)	-	망우 지구	
		9-2	산69-1임	(193.00)	(193.00)	라멘 조	(1)	(140.00)	(280.00)	-	8-2	산69-1임	(193.00)	(193.00)	라멘 조	(1)	(140.00)	(280.00)	-	망우 지구	
		9-3	산69-1임	(316.00)	(316.00)	라멘 조	(1)	(309.00)	(540.00)	-	8-3	산69-1임	(316.00)	(316.00)	라멘 조	(1)	(309.00)	(540.00)	-	망우 지구	
		9-4	산69-1임	(178.00)	(178.00)	연와 조	(1)	(178.00)	(178.00)	-	8-4	산69-1임	(178.00)	(178.00)	연와 조	(1)	(178.00)	(178.00)	-	망우 지구	
				-	-	-	-	-	-	-	8-5		(19.50)	(19.50)	-	(1)	(19.50)	(19.50)	-	신설	
	수목 보호대			-	-	-	-	-	-	-	㉔		-	-	-	-	-	-	16	신설	
	안내판	㉕	전지역	-	-	-	-	-	-	4			-	-	-	-	-	-	-	폐지(배발 지구)	
	휴지통	㉖	전지역	-	-	-	-	-	-	2			-	-	-	-	-	-	-	폐지(배발 지구)	
도시 농업 시설	소 계			-	-	-	-	-	-	-			25,081.88	25,081.88	-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관리 사무소			-	-	-	-	-	-	-	8		25,081.88	25,081.88	-	-	-	-	-	신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200,588.26	-	-	-	-	-	-			207,828.75	-	-	-	-	-	-	
	녹 지			200,588.26	-	-	-	-	-	-			207,828.75	-	-	-	-	-	-	

1-3. 용마산 근린공원 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5,835.61	19,466.42	3,182.61	14,923.92		
변 경					4,039.70	25,768.41				
당 초	소 로	계			2,024.32	12,915.30	2,024.32	12,915.30		
변 경					2,718.50	2,040.66				
폐 지		3	1	7.0	30.17	211.19	진입로	140-4도		망우지구
폐 지		3	2	3.0	34.23	102.69	연결로	소로,3-1	산57-3묘	망우지구
폐 지		3	3	7.0	149.23	1,044.61	연결로	파-2주차장	광장,7-8	망우지구
폐 지		3	4	7.0	149.15	1,044.05	연결로	광장,7-8	주차장,파-5	망우지구
폐 지		3	5	7.0	336.43	2,355.01	연결로	주차장,파-2	소로,3-13	망우지구
폐 지		3	6	6.0	165.75	994.5	연결로	소로,3-5	광장,가-1	망우지구
폐 지		3	7	3.0	28.49	85.47	연결로	휴게쉼터,자-1	소로,3-6	망우지구
폐 지		3	8	3.0	27.59	82.77	연결로	광장,가-1	소로,3-13	망우지구
폐 지		3	9	3.0	24.98	74.94	연결로	광장,가-1	소로,3-13	망우지구
폐 지		3	10	3.0	95.85	287.55	연결로	허브원,라-2	허브원,라-2	망우지구
폐 지		3	11	3.0	41.46	124.38	진입로	소로,3-10	산69-1임	망우지구
폐 지		3	12	3.0	49.51	148.53	연결로	소로,3-13	허브원,라-2	망우지구

구 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폐 지		3	13	7.0	305.2	2,136.40	연결로	광장,가-3	121-1답	망우지구
폐 지		3	14	3.5	33.66	117.81	연결로	허브원,라-2	휴게쉼터,자-3	망우지구
폐 지		3	15	7.0	105.84	740.88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5	망우지구
폐 지		3	16	7.0	40.16	281.12	진입로	577대	광장,가-2	망우지구
폐 지		3	17	4.0	41.13	164.52	연결로	디자인전시관,3	주차장,파-6	망우지구
폐 지		3	18	6.0	93.03	558.18	연결로	광장,가-4	소로,3-17	망우지구
폐 지		3	19	7.0	45.72	320.04	연결로	광장,가-5	121-1답	망우지구
폐 지		2	1	9.0	131.7	1,185.30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2	망우지구
폐 지		2	2	9.0	95.04	855.36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3	망우지구
신 설		2류	2-1	9.0	131.7	1,185.30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2	
신 설		2류	2-2	9.0	95.0	855.36	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3	
신 설		3류	3-1	7.0	30.2	211.19	연결로	소로 3-20	광장 가-7	
신 설		3류	3-2	3.0	34.2	102.6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7	
신 설		3류	3-3	7.0	149.2	1,044.61	연결로	주차장 머-1	광장 가-6	
신 설		3류	3-4	7.0	149.2	1,044.05	연결로	광장 가-6	주차장 머-5	
신 설		3류	3-5	7.0	336.4	2,355.01	연결로	광장 가-7	소로 3-1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3류	3-6	6.0	165.8	994.50	연결로	소로 3-5	광장 가-1	
신 설		3류	3-7	3.0	28.5	85.47	연결로	쉼터 자-1	소로 3-6	
신 설		3류	3-8	3.0	27.6	82.77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신 설		3류	3-9	3.0	25.0	74.94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신 설		3류	3-10	3.0	95.9	287.55	산책로	허브원 라-2	허브원 라-2	
신 설		3류	3-11	3.0	41.5	124.3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0	
신 설		3류	3-12	3.0	49.5	148.53	연결로	소로 3-13	허브원 라-2	
신 설		3류	3-13	7.0	305.2	2,136.40	진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신 설		3류	3-14	3.5	33.7	117.81	연결로	쉼터 자-3	허브원 라-2	
신 설		3류	3-15	7.0	105.8	740.8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4	
신 설		3류	3-16	7.0	40.2	281.1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 설		3류	3-17	4.0	41.1	164.52	연결로	주차장 머-6	디자인 전시관 2	
신 설		3류	3-18	4.0~8.0	242.0	1,641.00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17	
신 설		3류	3-19	7.0	45.7	320.04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신 설		3류	3-20	5.5~8.5	68.5	(440.60)	도시계획도로			
신 설		3류	3-21	5.6	16.50	92.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3류	3-22	5.6	14.00	72.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9	
신 설		3류	3-23	3.0	97.00	313.00	연결로	광장 가-9	쉼터 자-14	
신 설		3류	3-24	6.0	104.0	(624.00)	도시계획도로			
신 설		3류	3-25	1.0~3.0	68.0	115.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신 설		3류	3-26	1.0	14.0	14.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27	3.5	163.1	478.0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3,811.29	6,551.12				
변 경					1,321.20	13,041.93				
폐 지			1	2.0	3.00	6.00	연결로	주차장,파-2	주차장,파-1	망우지구
폐 지			2	2.0	116.84	233.68	연결로	휴게쉼터,자-1	소로,3-6	망우지구
폐 지			3	2.0	40.79	81.58	연결로	캠핑장,아-2	광장,가-1	망우지구
폐 지			4	1.5	19.18	28.77	연결로	소로,3-4	산,5	망우지구
폐 지			5	2.0	128.16	256.32	연결로	휴게쉼터,자-9	주차장,파-5	망우지구
폐 지			6	1.5	3.65	5.48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망우지구
폐 지			7	1.5	2.98	4.47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망우지구
폐 지			8	1.5	2.61	3.92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망우지구

구 분	지점명	구분명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9	1.5	4.50	6.75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망우지구
폐 지			10	1.5	25.38	38.07	연결로	셀터,①-3	소로,3-5	망우지구
폐 지			11	1.5	39.86	59.79	연결로	주차장,파-6	소로,3-12	망우지구
폐 지			12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3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4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5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6	1.2	10.88	13.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7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8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19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망우지구
폐 지			20	2.5	20.81	52.03	연결로	소로,3-18	주차장,파-6	망우지구
폐 지			21	2.0	11.96	23.92	연결로	골프연습장,2	소로,3-18	망우지구
폐 지			22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가-6	골프연습장,2	망우지구
폐 지			23	1.5	71.05	106.58	연결로	마당,마-1	휴게쉼터,자-8	망우지구
폐 지			24	1.5	169.62	254.43	연결로	마당,마-1	마당,마-1	망우지구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25	2.0	236.49	472.98	진입로	산69-508공	허브원,라-2	망우지구
폐 지			26	2.0	59.78	119.56	연결로	광장,가-6	산,25	망우지구
폐 지			1	1.5	92.0	138.0	산책로	산책로12	지구계	구보육원지구
폐 지			2	1.5	120.0	180.0	산책로	망우동산69-1	망우동산69-1	구보육원지구
폐 지			3	1.5	92.0	138.0	산책로	지구계	지구계	구보육원지구
폐 지			4	5.0	22.0	110.0	연결로	지구계	주차장자	구보육원지구
폐 지			5	1.5	48.0	72.0	산책로	전망대카-1	산책로9	구보육원지구
폐 지			6	2.0	19.0	38.0	산책로	조깅트랙마	산책로12	구보육원지구
폐 지			7	1.5	10.0	15.0	산책로	산책로11	전망대카-2	구보육원지구
폐 지			8	1.5	52.0	78.0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1	구보육원지구
폐 지			9	1.5	300.0	450.0	산책로	지구계	지구계	구보육원지구
폐 지			10	1.5	168.0	252.0	연결로	주차장자	산책로11	구보육원지구
폐 지			11	1.5	214.0	321.0	산책로	지구계	산책로1	구보육원지구
폐 지			12	1.5	313.0	469.5	산책로	광장가	산책로11	구보육원지구
폐 지			13	1.5	54.0	81.0	산책로	산책로9	지구계	구보육원지구
폐 지			14	1.5	59.0	88.5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13	구보육원지구

구 분	지 명	구 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15	3.0	7.0	21.0	연결로	체력단련장 사-7	산책로16	구보육원지구
폐 지			16	1.5	43.0	64.5	산책로	산책로9	지구계	구보육원지구
폐 지			17	1.5	30.0	45.0	연결로	산책로9	전망대카-1	구보육원지구
폐 지			18	1.5	26.0	39.0	연결로	조깅트랙마	산책로10	구보육원지구
폐 지			19	5.0	5.0	25.0	연결로	광장가	조깅트랙마	구보육원지구
폐 지			1	2.0	224.50	449.0	순환로	진입광장	휴게소다-4	배발지구
폐 지			2	2.0	29.0	58.0	부진입로	서측부진입	건강보도입구	배발지구
폐 지			3	2.0	37.0	74.0	연결로	건강보도입구	휴게소-2	배발지구
폐 지			4	2.0	17.0	34.0	연결로	휴게광장	산책로-3	배발지구
폐 지			5	1.5	112.0	168.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전망휴게소	배발지구
폐 지			6	2.0	84.0	168.0	순환로	전망휴게소	휴게소다-1	배발지구
폐 지			7	2.0	29.0	58.0	연결로	휴게소다-2	휴게광장	배발지구
폐 지			8	2.0	8.0	16.0	연결로	산책로-6	휴게광장	배발지구
폐 지			9	4.0	7.5	30.0	연결로	산책로-6	휴게광장	배발지구
폐 지			10	2.0	9.0	18.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6	배발지구
폐 지			1	2.0	232.0	464.0	연결로	광장가	산책로1	서일대지구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2	2.0	184.0	184.0	연결로	산책로1	휴게소나-1	서일대지구
폐 지			3	2.0	160.0	160.0	연결로	산책로2	지구계	서일대지구
폐 지			4	2.0	36.0	36.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2	서일대지구
신 설			1	2.0	3.0	6.00	연결로	소로 3-3	주차장 머-2	
신 설			2	2.0	116.8	233.68	산책로	소로 3-7	소로 3-6	
신 설			3	2.0	40.8	81.58	연결로	캠핑장 아	광장 가-1	
신 설			4	1.5	19.2	28.77	연결로	소로 3-4	산책로 5	
신 설			5	2.0	128.2	256.32	연결로	쉼터 자-9	주차장 머-5	
신 설			6	1.5	3.7	5.48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신 설			7	1.5	3.0	4.47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신 설			8	1.5	2.6	3.92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신 설			9	1.5	4.5	6.75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신 설			10	1.5	25.4	38.07	연결로	쉼터 자-13	소로 3-5	
신 설			11	1.5	39.9	59.79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2	
신 설			12	1.2	25.0	30.05	연결로	쉼터 자-3	소로 3-14	
신 설			13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4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신 설			15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신 설			16	1.2	10.9	13.06	연결로	소로 3-14	허브원 라-2	
신 설			17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신 설			18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신 설			19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신 설			20	2.5	20.8	52.03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8	
신 설			21	1.5	71.1	106.58	연결로	쉼터 자-8	마당 마-1	
신 설			22	1.5	169.6	254.43	연결로	마당 마-1	마당 마-1	
신 설			23	2.0	11.96	23.92	연결로	소로 3-18	골프연습장 파	
신 설			24	2.0	302.00	604.00	연결로	허브원 라-2	쉼터 자-14	
신 설			25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 가-8	골프연습장 파	
신 설			26	2.0	7.00	14.00	연결로	광장 가-8	산책로 27	
신 설			27	2.0	72.00	213.00	산책로	소로 3-21	산책로 24	
신 설			28	2.5	78.00	195.00	연결로	쉼터 자-14	소로 3-22	
신 설			29	2.0	107.00	214.00	산책로	쉼터 자-14	쉼터 자-14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30	1.2	8.00	96.00	연결로	족구장 거	산책로 29	
신 설			31	1.2	2.00	2.40	연결로	족구장 거	산책로 29	
신 설			32	2.0~6.0	6.50	20.00	산책로	소로 3-23	산책로 33	
신 설			33	1.8	89.00	160.2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0	
신 설			34	1.5	1.15	1.51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광장 가-10	
신 설			35	1.2~2.5	23.30	28.64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산책로 34	
신 설			36	2.0~3.0	7.70	16.50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신 설			37	0.5~1.0	5.26	3.59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신 설			38	2.0	13.0	26.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1	
신 설			39	2.0	27.0	54.00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0	
신 설			40	1.5	26.5	39.75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4	
신 설			41	1.5	49.0	73.50	산책로	산책로 40	산책로 44	
신 설			42	2.5	34.5	86.25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4	
신 설			43	2.5	8.0	20.00	연결로	쉼터 자-16	산책로 42	
신 설			44	2.5	288.0	720.00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44	
신 설			45	2.0	54.5	109.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46	2.5	30.0	75.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신 설			47	2.5	11.0	27.50	연결로	광장 가-13	산책로 44	
신 설			48	4.0	7.0	28.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신 설			49	2.5	7.0	17.50	산책로	산책로 44	산책로 44	
신 설			50	2.0	27.5	55.00	연결로	산책로 44	쉼터 자-17	
신 설			51	1.5	26.5	41.00	산책로	산책로 50	산책로 67	
신 설			52	4.0	75.0	320.0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7	
신 설			53	1.5	14.0	25.00	연결로	산책로 52	쉼터 자-17	
신 설			54	1.5	14.5	28.00	연결로	산책로 69	쉼터 자-17	
신 설			55	1.2	5.0	6.00	연결로	쉼터 자-17	산책로 69	
신 설			56	2.0	174.5	517.50	연결로	소로 3-24	광장 가-14	
신 설			57	1.2	8.5	10.2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6	
신 설			58	1.2	14.0	16.8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8	
신 설			59	2.0	11.5	23.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신 설			60	1.5	10.0	15.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신 설			61	1.2	51.5	61.80	연결로	산책로 62	광장 가-14	

구 분	구분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78	1.5	227.6	341.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7	
신 설			79	1.5	14.9	29.6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8	
신 설			80	1.5	40.2	62.39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1	
신 설			81	1.5	66.4	103.93	연결로	실외 교구장 서	산책로 77	
신 설			82	1.0	32.0	32.00	연결로	산책로 77	실외 교구장 서	
신 설			83	1.0~1.8	25.6	35.78	연결로	산책로 77	휴게쉼터 자-26	
신 설			84	3.0	34.8	104.40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신 설			85	3.0	33.2	99.6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86	1.5	62.8	108.53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신 설			87	2.0	22.9	58.27	연결로	소로 3-27	휴게쉼터 자-27	
신 설			88	2.0	83.1	166.28	연결로	체력단련장 너-7	휴게쉼터 자-27	
신 설			89	1.5	64.21	96.5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90	
신 설			90	2.0	107.5	217.20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89	
신 설			91	2.0~2.5	171.21	405.82	연결로	산책로 92	체력단련장 너-7	
신 설			92	3.0	169.38	508.1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2021 - 105

259 -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노원구청
2. 사업의 종류 : 노원구 월계동259-1.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
3. 출입할 토지 : 노원구 월계동259-1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비고
1	월계동259-1	철도 용지	9,892	428	

4. 출입 기간 : 2021. 1. 26. ~ 사업종료 시까지
5. 출입 목적 : 토지 및 물건조사 (토지현황 조사, 건물면적 실측, 영업조사, 기타 지장물 물건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관련업무 등)
6. 통지 대상 : 물건 소유주, 토지 점유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
7. 기타 사항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2116-3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164

() ()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17-281호(2017.8.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신사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93-1 일대 등

다. 주요시설 변경내용

- 1) 기반시설 : 5,588.4㎡ → 4,727.8㎡
- 2) 조경시설 : 174㎡ → 132.3㎡
- 3) 휴양시설 : 449㎡ → 1,010.7㎡
- 4) 유희시설 : 243㎡ → 243㎡
- 5) 운동시설 : 556㎡ → 956.3㎡
- 6) 편익시설 : 45㎡ → 95.7㎡
- 7) 교양시설 : 2,189㎡ → 4,455.8㎡
- 8) 녹지및기타 : 102,405.6㎡ → 60,226.5㎡

라.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바.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총 괄 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면 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면 적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11,650.0	9,244.4	1	693.94	1982.58	90	71,848.1	11,621.6	1	693.94	1,982.58	26	증) 2,377.2㎡
기 반 시 설	소계	5,588.4	5,588.4					4,727.8	4,727.8					감) 860.6㎡
	도로	4,437.4	4,437.4					4,245.0	4,245.0					
	광장	1,151.0	1,151.0					482.8	482.8					
조 경 시 설		174.0	174.0				9	132.3	132.3				8	감) 41.7㎡
휴 양 시 설		449.0	449.0				26	1,010.7	1,010.7					증) 561.7㎡
유 희 시 설		243.0	243.0				1	243.0	243.0				1	-
운 동 시 설		556.0	556.0				17	956.3	956.3				17	증) 400.3㎡
편 익 시 설		45.0	45.0					95.7	95.7					증) 50.7㎡

교 양 시 설	2,189.0	2,189.0	1	693.94	1982.58		4,455.8	4,455.8	1	693.94	1,982.58		2,266.8m ² (경)
관 리 시 설						37							
녹지 및 기타	102,405.6						60,226.5						
공원시설율 (법정40%이하)	$(9,244.4 / 111,650) \times 100 = 8.28\%$						$(11,621.6 / 71,848.1) \times 100 = 16.18\%$						
건폐율 (법정10%이하)	$(693.94 / 111,650) \times 100 = 0.62\%$						$(693.94 / 71,848.1) \times 100 = 0.97\%$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1,756.0 / 9,244.4) \times 100 = 19.00\%$						$(2,156.3 / 11,621.6) \times 100 = 18.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11,650.0	9244.4	693.94	1982.58	90			71,848.1	11,621.6	693.94	1,982.58	26		
기 반 시 설	소 계			5,588.4	5,588.4						4,727.8	4,727.8				감) 860.6㎡	
	도 로		전지역	4,437.4	4,437.4					전지역	4,245.0	4,245.0				감) 192.4㎡	
	광장	가	6개소	1,151	1,151					5개소	482.8	482.8				감) 668.2㎡	
		진입 광장	가-1	산 93-1	39	39				신사동 산93-1임	(39.0)	(39.0)					
			가-2	산 93-1	39	39				신사동 산93-1임	(39.0)	(39.0)					
			가-3	98-22	48	48				신사동 98-6잡	(78.3)	(78.3)				증) 30.3㎡	
			가-4	산 80-17	37	37				신사동 산80-16임	(29.7)	(29.7)				감) 7.3㎡	
		어린이 놀이터 광장	가-5	산 80-58 일대	192	192				신사동 산80-63임	(296.8)	(296.8)				증) 104.8㎡	
		다목적 광장	가-6	산 93-19일대	796	796										폐지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소 계			174	174			9			132.3	132.3			8	감) 41.7㎡
	그늘시령	①	7개소	145	145			9		7개소	132.3	132.3			8	감) 12.7㎡
		①-1	98-4	18	18			1		신사동 98-4잡	(16.0)	(16.0)			(1)	감) 2.0㎡
		①-2	98-4	18	18			1		신사동 98-62잡	(13.0)	(13.0)			(1)	감) 5.0㎡
		①-3	산 80-58일대	40	40			2		신사동 산80-63임	(40.0)	(40.0)			(2)	
		①-4	산 93-1	11	11			1		신사동 산93-1임	(11.0)	(11.0)			(1)	
		①-5	98-21	18	18			1		신사동 98-49공	(20.3)	(20.3)			(1)	증) 2.3㎡
		①-6	98-51	20	20			1		신사동 98-30구	(16.0)	(16.0)			(1)	감) 4.0㎡
		①-7	산 80-62	9	9			1			-	-				폐지 (도자구역)
		①-8	98-46일대	11	11			1		신사동 98-46공	(16.0)	(16.0)			(1)	증) 5.0㎡
	데 크	②	산 80-59	29	29											시설변경 (조경→편 익)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449	449			26			1,010.7	1,010.7				증) 561.7㎡
	휴게소	다	6개소	449	449					5개소	1,010.7	1,010.7				증) 561.7㎡	
		휴게소	다-1	산 93-1	31	31					신사동 산93-1임	(26.5)	(26.5)				감) 4.5㎡
			다-2	98-51	194	194					신사동 98-49공	(409.1)	(409.1)				증) 215.1㎡
			다-3	98-20	86	86					신사동 98-30구	(92.2)	(92.2)				증) 6.2㎡
			다-4	산 80-62	14	14						-	-				폐지 (도자구역)
		다목적광 장 휴게소	다-6	산 93-18일대	110	110					신사동 98-62잡	(478.5)	(478.5)				증) 368.5㎡
		전망 휴게소	다-7	산 80-59	14	14					신사동 산80-16임	(4.4)	(4.4)				감) 9.6㎡
	장의자		③	전지역					26								폐지
유치 시설	소 계				243	243			1			243.0	243.0			1	
	어린이놀이터		라	산 80-58 일대	243	243					신사동 산80-58임	243.0	243.0				
	조합놀이대		⑤	산 80-58 일대					1		신사동 산80-58임					1	
운동 시설	소 계				556	556			17			956.3	956.3			17	증) ㎡
	배드민턴장		마	98-4	556	556					신사동 98-4잡	588.2	588.2				증) ㎡
	게이트볼장									자	신사동 98-62잡	368.1	368.1				신규
	체력단련시설		⑥	시설부지내					17		시설부지내					17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 계			45	45						95.7	95.7				증) 400.3㎡
	샘 터	바	98-30	45	45					신사동 98-30구	52.5	52.5				증) 32.2㎡
	데 크								②	신사동 산80-16임	43.2	43.2				신규
교양시설	소 계			2,189	2,189	693.94	1,982.58				4,455.8	4,455.8	693.94	1,982.58		증) 2266.8㎡
	자연학습장	사	98-46일대	989	989					신사동 98-46공	995.1	995.1				증)6.1㎡
	공공도서관	아	산 80-58일대	1,200	1,200	693.94	1,982.58 지하1 929.93 자료실 지상1 736.18 자료실 지상2 316.47 열람실			신사동 산80-66임	1,200.0	1,200.0	693.94	1,982.58 지하1 929.93 자료실 지상1 736.18 자료실 지상2 316.47 열람실		
	유아숲체험원								차	신사동 98-46공	2,260.7	2,260.7				신규
관리시설	소 계							37								폐지
	안 내 판	⑦	전지역					24								
	공 원 등	⑧	전지역					13								
녹지 및 기타	소 계			102,405.6							60,226.5					
	전 지 역	전지역		102,405.6							60,226.5					

다. 도 로 조 서

구분	종류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117	4,437.4				
변경					2,100	4,245				
당초	산 책 로	4	1	3	295	885	진입,산책	진입광장3	자연학습장	
변경		4	1	3	282	841	진입,산책	광장 (가-3)	신사동 98-46공	
당초		4	2	2	424	848	산책,등산	98-56잡	자연학습장	
변경		4	2	2	310	618	산책,등산	도자구역	산책로 4-1	
당초		4	3	2	53	106	산책,연결	자연학습장	98-46잡	
변경		4	3	2	53	106	산책,연결	산책로 4-1	산책로 4-2	
당초		4	4	2	140	280	산책,등산	산80-61임	진입광장4	
변경		4	4	2	46	90	산책,등산	도자구역	광장 (가-4)	
당초		4	5	2	226	452	산책,등산	산80-17임	어린이놀이터	
변경		4	5	1.5	172	256	산책,등산	도자구역	광장 (가-5)	
당초		4	6	2	102	204	산책,등산	산80-60임	산80-9임	
변경		4	6	2	45	91	산책,등산	산책로 4-2	공공도서관 (아)	
당초		4	7	2	135	270	산책,등산	산80-4임	어린이놀이터	
변경		4	7	2	132	264	산책,등산	산책로 4-2	산책로 4-6	
당초		4	8	1.5~3	72	120.4	진입,연결	산80-9임	어린이놀이터	
폐지										
당초		4	9	2	28	56	산책,연결	98-56잡	98-4잡	
변경		4	9	2	14	28	산책,연결	산책로 4-1	도자구역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1 5	"	159.2	159.2					1		진관동 4-3공	(273.7)	(273.7)					(1)	증) 114.5㎡
		마-1 6	"	242.8	242.8							진관동 4-3공	(261.2)	(261.2)						증) 18.4㎡
		마-1 7	"	73.5	73.5							진관동 16-1공	(126.1)	(126.1)						증) 52.6㎡
		마-1 8	"	126.5	126.5							진관동 산100-7임	(174.6)	(174.6)						증) 48.1㎡
	체력단련시설	㉔								69									69	
교양 시설	소 계			5,254.0	5,254.0					15									15	감) 5,254.0㎡
	자연생태 학습장	바	진관동 산93-9일대	5,254.0	5,254.0															폐지
	설명관	㉔								15									15	
편익 시설	소 계			71.3	71.3			71.3	71.3				127.0	127.0			71.3	71.3		증) 55.7㎡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매 점																			
	화장실	사	진관동 393 일대	71.3	71.3	철근 콘크리트 조		71.3	71.3				95.3	95.3						부호변경 (사→사-1)
											사-1	진관동 393대	(71.3)	(71.3)	철근 콘크리트 조		71.3	71.3		
											사-2	진관동 4-3공	(24.0)	(24.0)						신규
	전망데크										자		31.7	31.7						신규
관리 시설	소 계									228									222	
	관리동																			
	공원동	㉔								149									149	
	계단	㉕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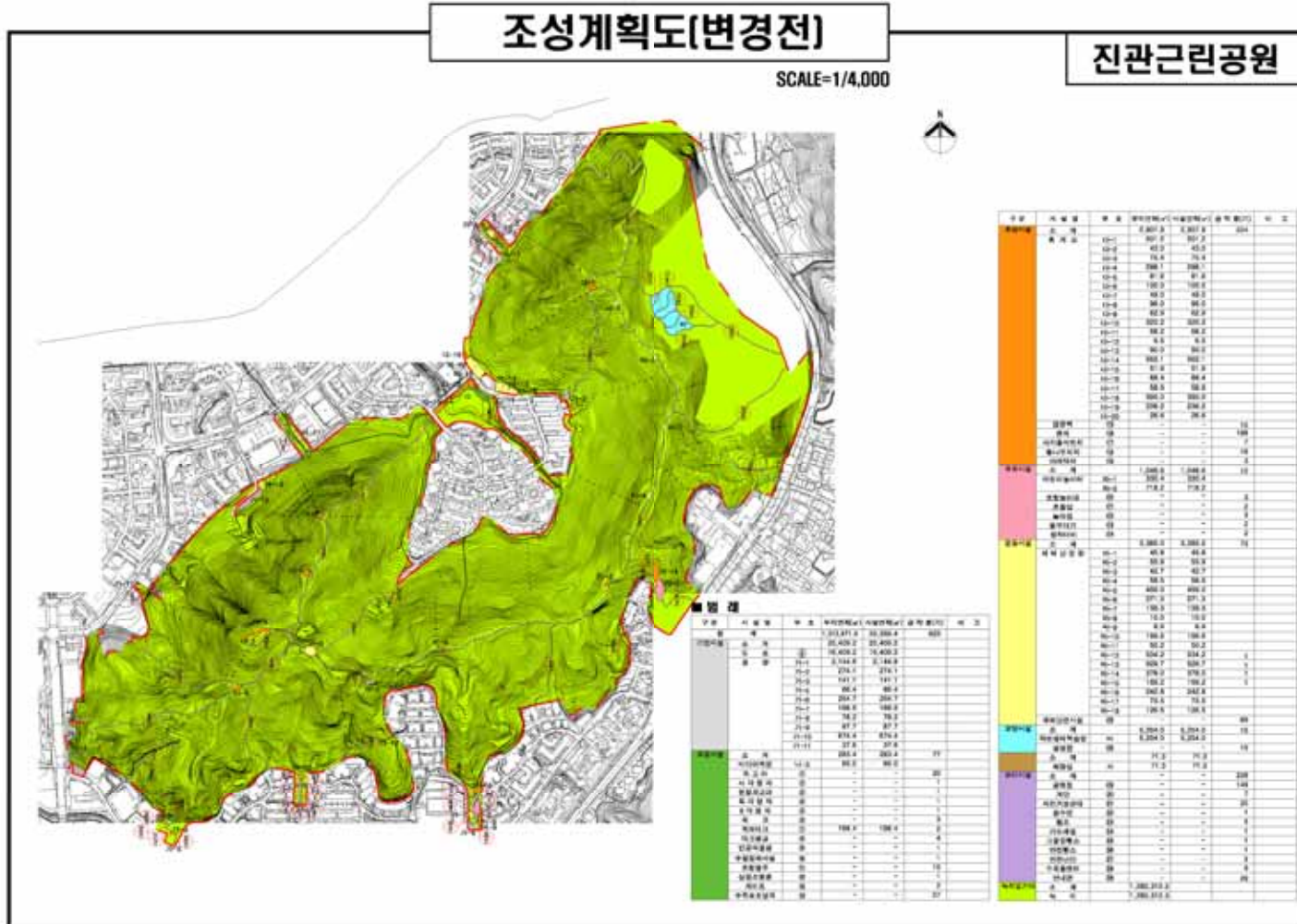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전거보관대	㉑								20										20	
	음수전	㉒								1										1	
	램프	㉓								5										5	
	가드레일	㉔								1										1	
	그늘망웬스	㉕								1										1	
	안전웬스	㉖								1										1	
	안전난간	㉗								2										2	
	수목플랜터	㉘								9										9	
	안내판	㉙								26										26	
	웬스	㉚																			폐지
녹지	소 계			1,280,312.5																	
	녹 지		전지역	1,280,312.5									563,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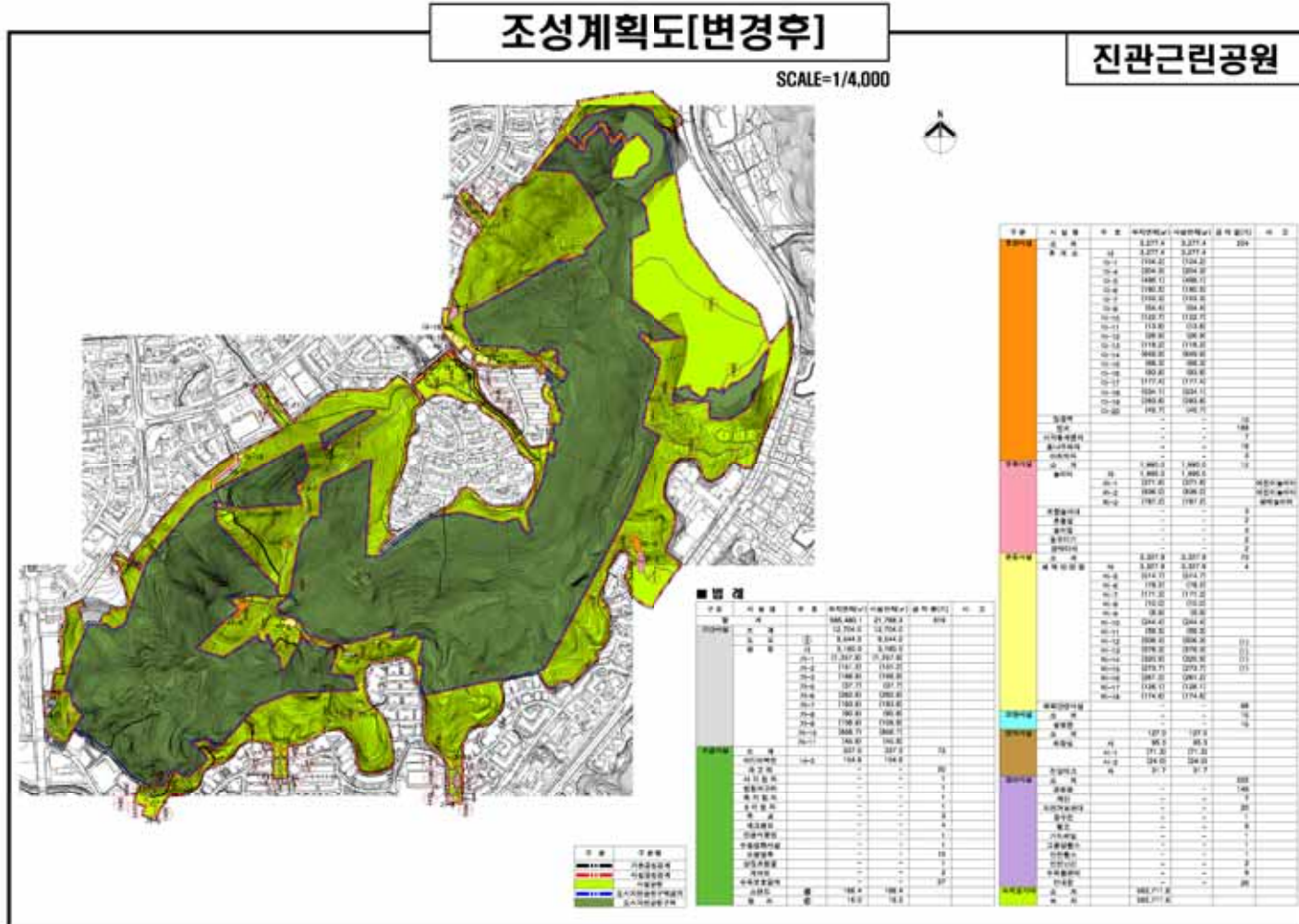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9	2.0	464.2	928.3	산책로	다-8	가-1	
변경			9	2.0	105	209	산책로	도자구역	광장 (가-1)	
당초			10	2.0	171.9	343.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10	2.0	336	672	산책로	진관동 산105-11입	도자구역	
당초			11	2.0	16.9	33.9	산책로	가-11	다-20	
변경			11	1.5	14	20	산책로	광장 (가-11)	휴게소 (다-20)	
당초			12	1.8	22.8	41	산책로	소로 3-2	공원경계	
변경			12	2.0	20	36	산책로	소로 3-2	진관동 87공	
당초			13	1.5	515.7	773.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4	
변경			13	1.5	381	572	산책로	진관동 산93입	도자구역	
당초			14	1.5	544.5	816.8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폐지										
당초			15	1.5	125.2	187.8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3	
폐지										
당초			16	1.5	42.5	63.8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4	
폐지										
당초			17	1.5	76.7	115.1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4	
폐지										
당초			18	1.5	51	76.5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4	
폐지										
당초			19	1.5	50.6	75.9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4	
폐지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20	1.5	362.2	543.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5	
변경			20	1.5	289	329	산책로	진관동 산93입	도자구역	
당초			21	1.5	27.4	41.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폐지 (도자구역)
폐지			21							
당초			22	1.5	248.6	373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5	폐지 (도자구역)
폐지			22							
당초			23	1.5	28.2	42.3	산책로	가-3	산책로 5	
변경			23	1.5	25	40	산책로	광장 (가-3)	도자구역	
당초			24	1.5	68.7	103.1	산책로	산책로 25	공원경계	폐지 (도자구역)
폐지			24							
당초			25	1.5	288.6	432.9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5	
변경			25	1.5	24	3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6	
당초			26	1.5	118.4	177.6	산책로	산책로 6	다-5	
변경			26	1.5	99	149	산책로	산책로 6	도자구역	
당초			27	1.5	297.8	446.7	산책로	다-8	공원경계	폐지 (도자구역)
폐지			27							
당초			28	1.5	234.0	351.0	산책로	공원경계	다-8	
변경			28	1.5	54	81	산책로	진관동 85공	도자구역	
당초			29	1.5	222.6	333.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9	폐지 (도자구역)
폐지										
당초			30	1.5	29.2	43.8	산책로	가-5	다-9	
변경			30	1.5	23	35	산책로	광장 (가-5)	휴게소 (다-9)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1	1.5	21.7	32.6	산책로	다-9	산책로 32	
변경			31	1.5	21	32	산책로	휴게소 (다-9)	산책로 32	
당초			32	1.5	4.6	6.9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3	
변경			32	1.5	6	9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3	
당초			33	1.5	65.5	98.3	산책로	공원 내	공원 내	
변경			33	1.5	65	98	산책로	진관동 85공	도자구역	
당초			34	1.5	22.4	33.7	산책로	산책로 33	마-6	
변경			34	1.5	19	28	산책로	산책로 33	체력단련장 (마-6)	
당초			35	1.5	151.7	227.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5	1.5	149	223	산책로	진관동 산107-16임	진관동 산106-31임	
당초			36	1.5	24.8	37.2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2	
변경			36	1.5	24	36	산책로	진관동 87공	소로 3-2	
당초			37	1.5	11.1	16.6	산책로	소로 3-2	공원경계	
변경			37	1.5	10	15	산책로	소로 3-2	진관동 87공	
당초			38	1.5	5.5	8.3	산책로	산책로 12	다-13	
변경			38	1.5	5	7	산책로	산책로 12	휴게소 (다-13)	
당초			39	1.5	89.4	134.1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 내	
변경			39	2.0	52	105	산책로	진관동 140-31전	도자구역	
당초			40	1.5	64.0	96.0	산책로	공원 내	다-14	
변경			40	2.0	46	92	산책로	도자구역	휴게소 (다-14)	
당초			41	1.5	108.7	163.0	산책로	공원경계	라-2	
변경			41	1.5	107	161	산책로	진관동 산104-13임	어린이놀이터 (라-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42	1.5	296.6	444.9	산책로	다-18	공원경계	
폐지										
당초			43	1.5	100.5	150.8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폐지										
당초			44	1.5	6.7	10.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43	
변경			44	1.5	7	11	산책로	진관동 3-1공	산책로 54	
당초			45	1.0	1.5	1.5	산책로	마-7	소로 3-2	
변경			45	1.5	2	3	산책로	체력단련장 (마-7)	소로 3-2	
당초			46	1.0	1.5	1.5	산책로	마-7	소로 3-2	
변경			46	1.5	2	3	산책로	체력단련장 (마-7)	소로 3-2	
신규			47	2.0	269	529	산책로	휴게소 (다-1)	휴게소 (다-16)	
신규			48	2.0	254	494	산책로	휴게소 (다-18)	진관동 10-1공	
신규			49	2.0	17	34	산책로	산책로 48	진관동 10-1공	
신규			50	2.0	147	300	산책로	휴게소 (다-19)	산책로 51	
신규			51	2.0	80	164	산책로	휴게소 (다-17)	산책로 48	
신규			52	1.5	97	146	산책로	산책로 33	도자구역	
신규			53	1.5	88	132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3	
신규			54	1.5	75	113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신규			55	2.0	21	42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신규			56	1.5	7	11	산책로	전망데크 (자)	산책로 51	





2021 - 177

()

건설부고시 제138(1977.07.1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9(1979.02.26.)호로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5(2014.04.24.)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2020.06.29.)호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천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구로구청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천왕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향동 149번지 일대

다. 면 적 : 61,940.4㎡

2.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목 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농업체험장 등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 및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가. 주요 변경내용 : 천왕근린공원 내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등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나. 변경내역

- 천왕근린공원(2지구)

· 기반시설 : (증) 3,138.36㎡ (4,707.22㎡ → 7,845.58㎡)

· 조경시설 : (증) 1,007.30㎡ (0㎡ → 1,007.30㎡)

· 휴양시설 : (증) 451.70㎡ (2,403.00㎡ → 2,854.70㎡)

· 유희시설 : (증) 89.1㎡ (0㎡ → 89.1㎡)

· 교양시설 : (증) 610.50㎡ (0㎡ → 610.50㎡)

· 편익시설 : (증) 457.30㎡ (177.60㎡ → 634.90㎡)

· 관리시설 : (증) 15.00㎡ (727.20㎡ → 742.20㎡)

· 도시농업시설 : (증) 216.00㎡ (0㎡ → 216.00㎡)

· 녹 지 : (증) 18,497.14㎡ (19,534.98㎡ → 38,032.12㎡)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2321)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천왕동 17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7,860.00	13,861.12	1	335.52	335.52	90	61,940.40	15,585.77	5	1,201.95	1,201.95	70	감 525.919.6㎡
공원·시설 구역	소계	31,711.00	9,600.51	1	335.52	335.52	45	61,940.40	15,585.77	5	1,201.95	1,201.95	70	증 30,229.4㎡
	1지구	4,161.00	1,585.49				14	9,908.00	1,585.49				14	증 5,747.0㎡
	2지구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4,000.28	5	1,201.95	1,201.95	56	증 24,482.4㎡
시설지구 외		556,149.00	4,260.61				45							구역 전환
시설지구율 (법정20%이하)		(31,711.00 / 587,860.00) × 100% = 5.39%								(15,585.77 / 61,940.40) × 100% = 25.16%				
시설률 (법정20%이하)		(13,861.12 / 587,860.00) × 100% = 2.36%						시설률 (법정40%이하)		(1,201.95 / 61,940.40) × 100% = 1.94%				
건폐율 (법정4%이하)		(335.52 / 31,711.00) × 100% = 1.06%						건폐율 (법정15%이하)		(1,201.95 / 61,940.40) × 100% = 1.94%				

(1) ()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천왕동 173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161.00	1,585.49				14	9,908.00	1,585.49				14	증5,747㎡
기 반 시 설	소 계	418.40	418.40					418.40	418.40					
	도 로	418.40	418.40					418.40	418.40					
	광 장													
조 경 시 설		837.97	837.97					837.97	837.97					
휴 양 시 설		38.56	38.56				11	38.56	38.56				11	
교 양 시 설		290.56	290.56				3	290.56	290.56				3	
녹지 및 기타		2,575.51						8,322.51						증5,747㎡

2. 시설조서(1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4,161.00	1,585.49					14			9,908.00	1,585.49					14	
기반 시설	소계			418.40	418.40								418.40	418.40						
	도로			418.40	418.40								418.40	418.40						
조경 시설	소계			837.97	837.97								837.97	837.97						
	체험텃밭-1	가-1	천왕동 173번지 일대	408.87	408.87						가-1	천왕동 173번지 일대	408.87	408.87						
	체험텃밭-2	가-2	천왕동 173번지 일대	429.10	429.10						가-2	천왕동 173번지 일대	429.10	429.10						
휴양 시설	소계			38.56	38.56								38.56	38.56						
	휴게쉼터	나	천왕동 173번지 일대	38.56	38.56						나	천왕동 173번지 일대	38.56	38.56						
	전통정자		시설지구 내			목재				1		시설지구내			목재				1	
	파고라		시설지구 내			목재				1		시설지구내			목재				1	
	평의자		시설지구 내			목재				3		시설지구내			목재				3	파고라 하부
	등의자		시설지구 내			목재				6		시설지구내			목재				6	
교양 시설	소계			290.56	290.56					3			290.56	290.56					3	
	숲속교실	다	천왕동 173번지 일대	290.56	290.56						다	천왕동 173번지 일대	290.56	290.56						
	단상		시설지구 내			화강석				1		시설지구내			화강석				1	
	통석의자		시설지구 내			화강석				2		시설지구내			화강석				2	
녹지 및 기타	소계			2,575.51									8,322.51							
	녹지		전지역	2,575.51								전지역	8,322.51							

(2) ()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향동 14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4,000.28	5	1,201.95	1,201.95	56	증 24,482.40㎡	
기 반 사 설	소 계	4,707.22	4,707.22					7,845.58	7,845.58					증 3,138.36㎡	
	도 로	4,444.42	4,444.42					7,083.78	7,083.78					증 2,639.36㎡	
	광 장	262.80	262.80					761.80	761.80					증 499.00㎡	
조 경 사 설								1,007.30	1,007.30				15	증 1,007.30㎡	
휴 양 사 설		2,403.00	2,403.00				30	2,854.70	2,854.70				38	증 451.70㎡	
유 희 사 설								89.10	89.10				2	증 89.10㎡	
교 양 사 설								610.50	610.50	2	434.43	434.43		증 610.50㎡	
편 익 사 설		177.60	177.60					634.90	634.90	1	216.00	216.00		증 457.30㎡	
관 리 사 설		727.20	727.20	1	335.52	335.52	1	742.20	742.20	1	335.52	335.52	1	증 15.00㎡	
도시농업시설								216.00	216.00	1	216.00	216.00		증 216.00㎡	
녹지 및 기타		19,534.98						38,032.12						증 18,497.14㎡	

2. 시설조서(2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4,000.28		5	1,201.95	1,201.95	56	
기반 시설	소계			4,707.22	4,707.22						소계		7,845.58	7,845.58						
	도로			4,444.42	4,444.42						도로		7,083.78	7,083.78						변경
	광장소계			262.80	262.80						광장소계		761.80	761.80						변경
	회전광장-1	자-1	149-1공	86.10	86.10						자-1	149-1공	86.10	86.10						
	회전광장-2	자-2	149-1공	70.50	70.50						자-2	149-1공	78.60	78.60						변경
	회전광장-3	자-3	149-1공	106.20	106.20						자-3	149-1공	70.80	70.80						변경
	중앙광장										자-4	149잡	152.80	152.80						신설
	진입광장-1										자-5	145-1전외	49.00	49.00						신설
진입광장-2										자-6	145-1전외	324.50	324.50						신설	
조경 시설	소계										소계		1,007.30	1,007.30					15	
	잔디광장										가	149잡	180.40	180.40						신설
	저류습지-1										나-1	147-1전	48.00	48.00						신설
	저류습지-2										나-2	147-1전	110.00	110.00						신설
	저류습지-3										나-3	147-1전	23.60	23.60						신설
	저류습지-4										나-4	147-2전	58.90	58.90						신설
	저류습지-5										나-5	147-2전	86.00	86.00						신설
	저류습지-6										나-6	148전 외	198.20	198.20						신설
	계류										다	148전 외	81.40	81.40						신설
	다랭이논체험 장										사	산43-1	220.80	220.80						신설
	돌무더기										①	시설지구내							4	신설
	그루터기의자										②	시설지구내							6	신설
	통나무의자										③	시설지구내							4	신설
	목교										④	147-2전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2,403.00	2,403.00					30	소계		2,854.70	2,854.70					38	
	야영장(오토)-1	차-1	149-1공	408.50	408.50						차-1	149-1공	415.60	415.60						변경
	야영장(오토)-2	차-2	149-1공	404.10	404.10						차-2	149-1공	404.10	404.10						
	야영장(오토)-3	차-3	149-1공	405.70	405.70						차-3	149-1공	405.70	405.70						
	야영장(일반)-4	차-4	산39-4임	1,184.70	1,184.70						차-4	산39-4임	1,186.30	1,186.30						변경
	쉼터-1										라-1	149잡	113.80	113.80						신설
	쉼터-2										라-2	149잡	245.60	245.60						신설
	쉼터-3										라-3	147-1전	14.00	14.00						신설
	쉼터-4										라-4	산43-1	39.20	39.20						신설
	쉼터-5										라-5	산43-1	10.30	10.30						신설
	쉼터-6										라-6	산43-1	10.30	10.30						신설
	쉼터-7										라-7	산43-1	9.80	9.80						신설
	피크닉 테이블		시설지구내			목재				30	㉔	시설지구내			목재				30	
	데크쉼터-1										㉕	149잡							1	신설
	데크쉼터-2										㉖	149잡							1	신설
	야외테이블										㉗	149잡							3	신설
	앉음벽										㉘	149잡							(6.5m)	신설
	스텐드										㉙	149잡							1	신설
	초정										㉚	147-1전외							2	신설
유희시설	소계										소계		89.10	89.10					2	
	생태놀이대										마	147-1전	89.10	89.10						신설
	숲속놀이대										㉛	147-1전							1	신설
	움집										㉜	147-1전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계										소계		610.50	610.50		2	434.43	434.43		
	책심터									1	149잡	336.60	336.60	중목	1	290.43	290.43		신설	
	다목적교 육장									4	145-1전외	144.00	144.00	철골조	1	144.00	144.00		신설	
	관찰데크 -1									바-1	147-1전	46.40	46.40						신설	
	관찰데크 -2									바-2	147-2전	23.40	23.40						신설	
	관찰데크 -3									바-3	산43-1	30.30	30.30						신설	
	학습마당									타	145-1전외	29.80	29.80						신설	
편의 시설	소계			177.60	177.60					소계		634.90	634.90		1	216.00	216.00			
	주차장-1	카-1	산39-4임	38.20	38.20					카-1	산39-4임	38.20	38.20							
	주차장-2	카-2	산39-4임	63.00	63.00					카-2	산39-4임	67.20	67.20						변경	
	주차장-3	카-3	산39-4임	50.70	50.70					카-3	산39-4임	50.70	50.70							
	주차장-4	카-4	산39-4임	25.70	25.70					카-4	산39-4임	25.70	25.70							
	주차장-5									카-5	149잡외	55.30	55.30						신설	
	주차장-6									카-6	146전	181.80	181.80						신설	
	휴게음식 점									3	145-1전	216.00	216.00	철골조	1	216.00	216.00		신설	
관리 시설	소계			727.20	727.20		1	335.52	335.52	1	소계		742.20	742.20		1	335.52	335.52		
	관리사무 소	아	산39-4임	683.20	683.20						아	산39-4임	690.00	690.00						변경
	관리사무 소	(아)	산39-4임			철골조	1	335.52	335.52		(아)	산39-4임			철골조	1	335.52	335.52		
	분리배출 장	파	산39-4임	44.00	44.00					1	파	산39-4임	52.20	52.20					1	변경
도시 농업 시설	소계									소계		216.00	216.00		1	216.00	216.00			
	온실									2	145-1전	216.00	216.00	철골조	1	216.00	216.0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19,534.98								38,032.12								
	녹지		전지역	19,534.98								전지역	38,032.12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천왕동 산25-1번지 일대)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25,919.6	4,260.61				45	구역전환
기 반 시 설	소 계	3,704.60	3,704.60					
	도 로	3,704.60	3,704.60					
	광 장							
휴 양 시 설		556.01	556.01				25	
편 익 시 설							16	
관 리 시 설							4	
녹지 및 기타		521,658.99						
시설율 (법정40%)		(4,260.61 / 525,919.6) × 100% = 0.81%						
건폐율 (법정10%)								

2.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서

구분	시설명	최 초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525,919.6	4,260.61					45
기반시설	소계			3,704.60	3,704.60					
	도로			3,704.60	3,704.60					
휴양 시설	소계			556.01	556.01					25
	전망쉼터	가	도시자연공원 내	230.38	230.38					
	간이쉼터	나	도시자연공원내	325.63	325.63					
	간이 휴게소									1
	파고라					목재				2
	평상					목재				1
	평의자					목재				21
편익시설	소계									16
	안내판					목재				11
	수목명패					목재				5
관리시설	소계									4
	산불진화방비									3
	산불인화장비수거함									1
녹지 및 기타	소계			521,658.99						
	녹지		전지역	521,658.99						

3-1. 도로조서(1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65.5	418.4				
	소계			109.0	327.0				
당초	3류	3-1	3.0	109.0	327.0	진입로	부지경계	체험텃밭-1	
	소계			56.5	91.4				
당초	산책로	1	1.5	8.0	12.0	산책로	소3-1	숲속교실	
당초	산책로	2	2.0	9.0	18.0	산책로	체험텃밭-1	체험텃밭-2	
당초	산책로	3	2.0	6.0	12.0	산책로	숲속교실	체험텃밭-2	
당초	산책로	4	2.0	11.5	23.0	산책로	체험텃밭-1	체험텃밭-2	
당초	산책로	5	1.5	22.0	26.4	산책로	부지경계	체험텃밭-2	

3-2. 도로조서(2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957.45	4,444.42				
변경					2,480.77	7,083.78				
당초	소로	소계			839.27	4,302.60				
변경					1,077.42	5,227.20				
당초		3류	1	6.0	442.37	2,654.20	연결도로	부지경계	회전광장 자-1	
당초		3류	7	4.0	154.95	619.80	연결도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변경				4.0	156.95	627.80	연결도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당초		3류	8	3.0	92.40	277.2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2	회전광장 자-3	
변경				4.0	87.20	348.8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2	회전광장 자-3	
당초		3류	9	4.0	59.25	237.0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1	회전광장 자-3	
변경				4.0	57.40	229.6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1	회전광장 자-3	
당초		3류	10	6.0	76.60	459.60	연결도로	소로3-1	관리사무소	
변경				6.0	75.60	453.60	연결도로	소로3-1	관리사무소	
당초		3류	11	4.0	13.70	54.80	연결도로	소로3-10	소로3-1	
신설		3류	2	3.5	12.40	43.40	연결도로	소로3-1	중앙광장 자-4	
신설		3류	3	4.0	52.70	210.80	연결도로	소로3-7	야영장(오토)-3	
신설		3류	4	3.0	29.40	88.20	연결도로	소로3-1	온실	
신설		3류	5	4.0	66.90	267.60	연결도로	소로3-1	주차장 카-6	
신설		3류	6	3.0	62.00	186.00	연결도로	소로3-5	진입광장 자-5	
신설		3류	12	3.0	18.40	55.20	연결도로	온실	소로3-6	
신설		3류	13	3.0	2.40	7.20	연결도로	소로3-5	산책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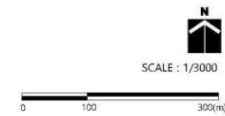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계			118.18	141.82				
변경					1,408.35	1,856.58				
당초	산책로	-	5	1.2	118.18	141.82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3	
변경				1.2	120.50	144.60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3	
신설		-	1	1.2	7.75	9.30	산책로	소로3-1	산책로-2	
신설		-	2	1.2	60.40	72.48	산책로	산책로-3	중앙광장 자-4	
신설		-	3	1.2	51.00	61.20	산책로	산책로-10	중앙광장 자-4	
신설		-	4	1.2	46.00	55.20	산책로	중앙광장 자-4	산책로-7	
신설		-	6	1.2	14.75	17.7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7	
신설		-	7	2.0	31.75	63.50	산책로	산책로-4	중앙광장 자-4	
신설		-	8	1.2	3.50	4.20	산책로	관찰데크 바-1	산책로-10	
신설		-	9	1.2	81.50	97.80	산책로	소로3-1	관찰데크 바-1	
신설		-	10	1.2	66.00	79.20	산책로	산책로-9	소로3-1	
신설		-	11	1.2	112.00	134.40	산책로	향동146전	산책로-9	
신설		-	12	1.2	121.00	145.20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1	
신설		-	13	2.0	35.30	70.60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신설		-	14	1.2	35.00	42.00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2	
신설		-	15	1.2	68.50	82.20	산책로	온실	온실	
신설		-	16	1.5	145.40	218.10	산책로	산책로-17	소로3-6	
신설		-	17	1.5	262.80	394.20	산책로	산책로-12	소로3-5	
신설		-	18	1.5	24.00	36.0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6	
신설		-	19	1.5	25.00	37.50	산책로	산책로-16	진입광장 자-5	
신설		-	20	1.0	23.20	23.2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7	
신설		-	21	1.0	22.60	22.6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7	
신설		-	22	1.0	19.80	19.8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7	
신설		-	23	1.0	25.60	25.6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17	

3. 도로조서(도시자연공원구역)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최초	합계			2,473.0	3,704.6				
최초	소계			2,473.0	3,704.6				
최초	산책로	1	1.5	190.0	285.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쉼터	
최초	산책로	2	1.5	371.0	556.5	산책로	휴게쉼터	부지경계	
최초	산책로	3	1.5	160.0	240.0	산책로	부지경계	산2	
최초	산책로	4	1.5	763.0	1,144.5	산책로	휴게쉼터	부지경계	
최초	산책로	5	1.5	143.0	214.5	산책로	체력단련장	부지경계	
최초	산책로	6	1.5	79.0	118.5	산책로	산4	체력단련장	
최초	산책로	7	1.2	118.0	141.6	산책로	산4	천왕골지구	
최초	산책로	8	1.5	588.0	882.0	산책로	산4	부지경계	
최초	산책로	9	2.0	61.0	122.0	산책로	산8	향골지구	

조성계획도(변경전)

천왕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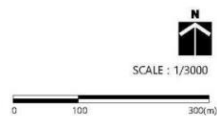


부지 및 시설지구 면적

구 분	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61,940.40	
천왕근린공원 1지구	9,908.00	
천왕근린공원 2지구	52,032.40	

조성계획도(변경후)

천왕근린공원



■ 부지 및 시설지구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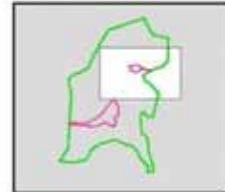
구 분	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61,940.40	
천왕근린공원 1지구	9,908.00	
천왕근린공원 2지구	52,032.40	

조성계획도(변경전)

천왕근린공원(1지구)



KEYMAP



시설검침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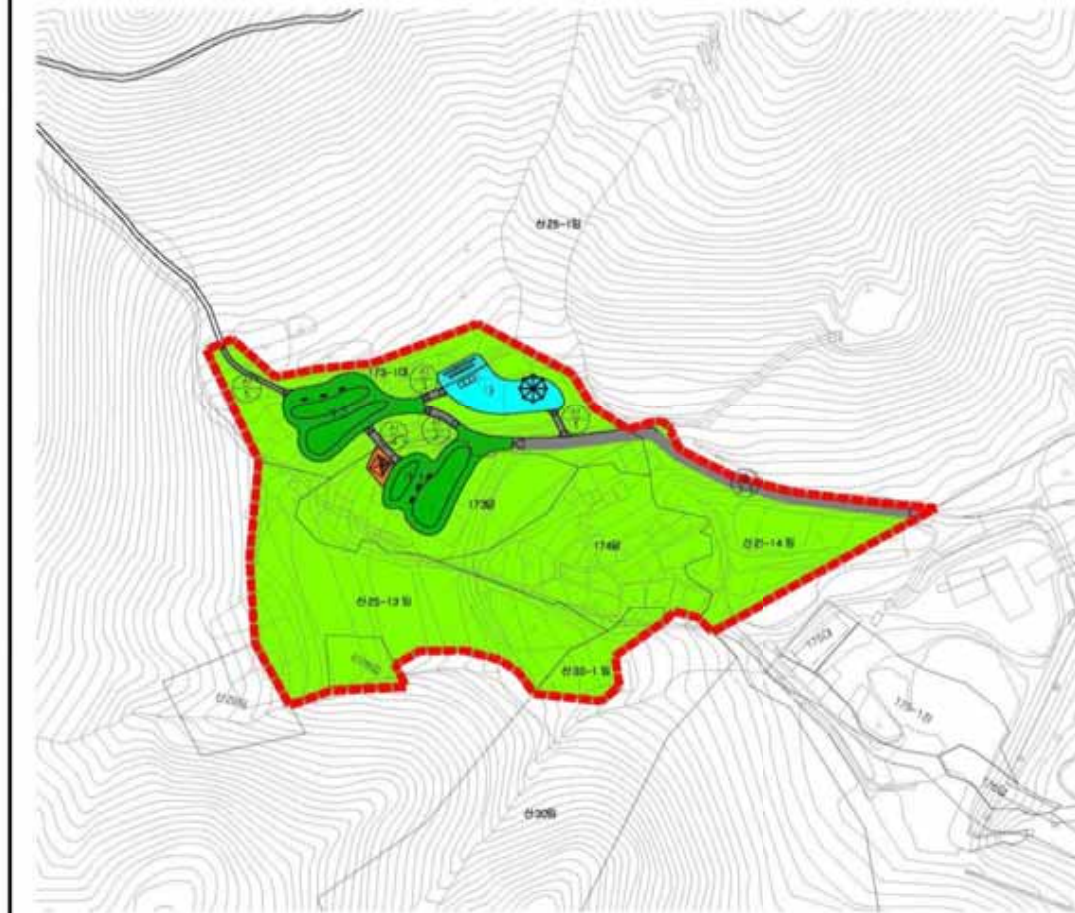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공공시설	공원	천왕근린공원	17,300	공원	서울특별시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시설종류	시설소재지	비고

SCALE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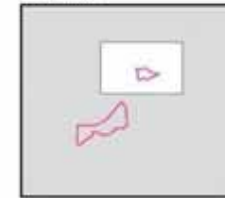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천왕근린공원(1지구)



※ KEYMAP



■ 시설검정표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면적(㎡)	수량	단위면적(㎡)	비고
공원면적	공원면적	공원면적	11,000.00	14		
		공원면적	11,000.00	14		시설물 101.0%
수목면적	수목면적	수목면적	4,700.00			
		수목면적	4,700.00			
기타면적	기타면적	기타면적	4,200.00			
		기타면적	4,200.00			
기타면적	기타면적	기타면적	2,000.00	11		
		기타면적	2,000.00	11		
기타면적	기타면적	기타면적	2,000.00	3		
		기타면적	2,000.00	3		

SCALE : 1/500



2021 - 76

()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및 신설 출입구에 대해 캐노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금천구청 11층 도시계획과

(☎ 02-2627-1553, FAX 02-2251-1715)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취지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및 신설 출입구에 대해 강우-강설 시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캐노피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항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철도	도시철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금천구 가산동 371 일대	7,351.7	-	7,351.7	1993.3.2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	일부 도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변경)

－ 4번 출입구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철도	금천구 가산동 60-15 일대	길이	29.9m	-	29.9m	2019.8.22. (금천구고시 제2019-76호)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4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폭	0.3~1.2m	-	0.3~1.2m		
			높이 (해수면기준)	지상 0.8m~ 지하 12.6m	지상 4.35m~ 지하 12.6m	지상 4.35m~ 지하 12.6m		
			면적	28.8㎡	-	28.8㎡		

－ 신설 출입구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철도	금천구 가산동 371-9 일대	길이	49.5m	-	49.5m	2020.3.5. (금천구고시 제2020-17호)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신설 출입구 캐노피 설치
			폭	3.7~5.4m	-	3.7~5.4m		
			높이 (해수면기준)	지상 0.3m~ 지하 13.7m	지상 3.6m~ 지하 13.7m	지상 3.6m~ 지하 13.7m		
			면적	244.3㎡	-	244.3㎡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2021 - 118

(, ,) ()()

1.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번지 일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1.01.28. ~ 2021.02.1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02-2670-3142), 도시계획과(02-2670-3539)

다. 열람내용 :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라.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k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하천	국가 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	41.51	-	40,749,140	감)1,276	40,747,864	대통령령 6583 (73.3.21.)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	• 면적 : 40,749,140㎡ → 40,747,864㎡ (감1,276㎡)	• 폐천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하천법」의 하천구역 경계선에 맞춰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 조정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외 1필지	-	증) 3,000.0	3,000.0	-	중복결정 • 체육시설 - 지하3층, 지하1층~지상3층 • 주차장 - 지하2층
신설	체육 시설	체육관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외 1필지	-	증) 3,000.0	3,000.0	-	

○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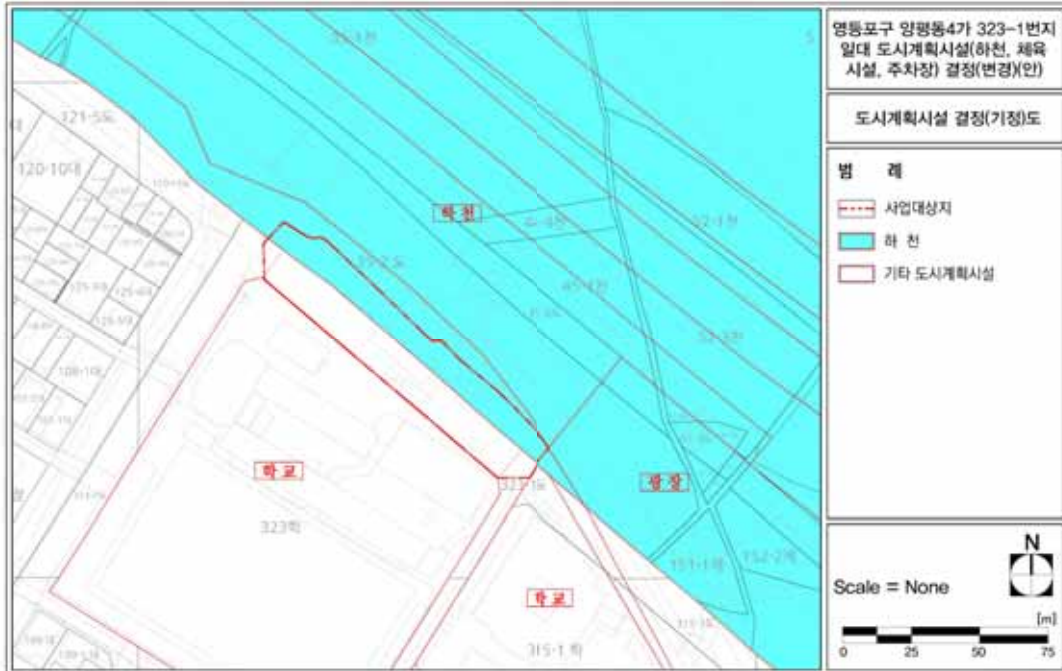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주차장, 체육시설	•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1외 1필지 • 면적 : 3,000.0㎡	• 저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SOC시설(체육시설, 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차난 해소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체육시설)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체육시설	20%	50%	4층	• 자연녹지지역
	60%	200%	4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 관계 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하천,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도



2021 - 9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으로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
- 2.면 적 : 1,281.70㎡
3.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합 계	1,281.70	253.93				44	
기 반 시 설	소 계	205.99					
	도 로	205.99					
	광 장						
조 경 시 설						10	
휴 양 시 설	28.75	28.75				11	
유 회 시 설							
운 동 시 설	19.19	19.19				3	
교 양 시 설							
편 의 시 설							
관 리 시 설						20	
녹지 및 기타	1,027.77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2670-3761)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부. 끝.

()

1. 총괄표(위치:문래동 2가 35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81.70	253.93				44	
공 원 시 설	소 계	205.99	205.99			-	
	기 반 시 설	소계	205.99	205.99		-	
		도로	205.99	205.99		-	
	조경시설	-	-			10	
	휴양시설	28.75	28.75			11	
	운동시설	19.19	19.19			3	
	관리시설	-	-			20	
	녹 지 및 기 타	1,027.77	-			-	
시 설 율 (법정 20%)		$(253.93\text{㎡} \div 1,281.70\text{㎡}) \times 100 =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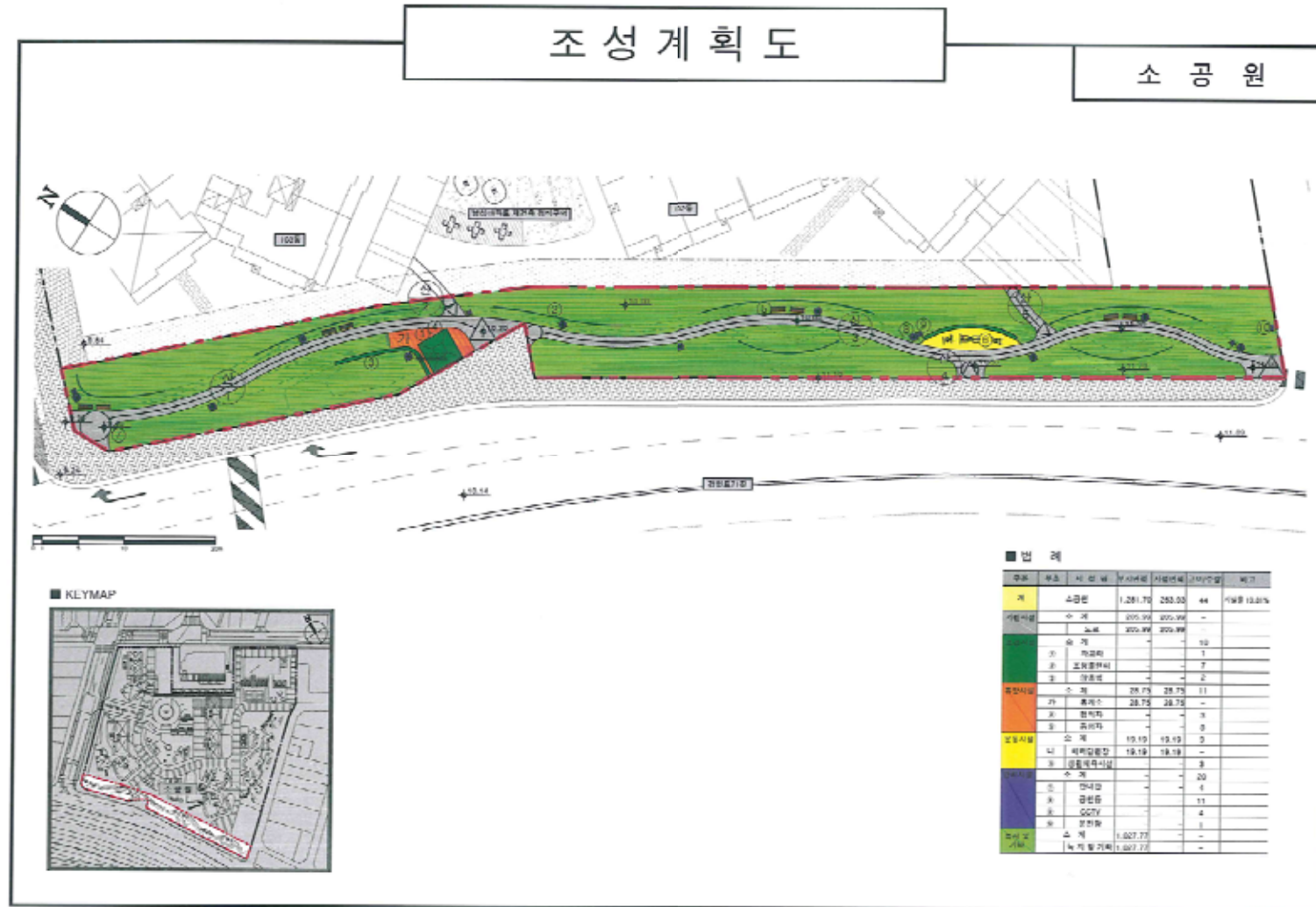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1,281.70	253.93					44	
기 반 시 설	계			205.99	205.99					-	
	도 로		부지내	205.99	205.99					-	
조 경 시 설	계									10	
	파고라	①	부지내	-	-					(1)	
	조형플랜터	②	"	-	-					(7)	
	앉음벽	③	"	-	-					(2)	
휴 양 시 설	계			28.75	28.75					11	
	휴게소	가	부지내	28.75	28.75					-	
	평의자	④	"	-	-					(3)	
	등익자	⑤	"	-	-					(8)	
운 동 시 설	계			19.19	19.19					3	
	체력단련장	나	부지내	19.19	19.19					-	
	생활체육시설	⑥	"	-	-					(3)	
관 리 시 설	계			-	-					20	
	안내판	⑦	부지내	-	-					(4)	
	공원등	⑧	"	-	-					(11)	
	CCTV	⑨	"	-	-					(4)	
	안내판	⑩	"	-	-					(1)	
녹지 및 기타시설				1,027.77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05.99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3	1	1.2	47.8	76.77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남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2	1.2	2.7	4.15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3	3	1.2	85.5	109.56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동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4	3.0	1.8	6.33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3	
신설	산책로	3	5	1.2	7.0	9.18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산책로-3	



2021 - 136

(1342) ()
가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	증) 82,031.0	82,031.0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결정 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서초 특별계획(가능)구역 ①	서초동 1348번지 일대	4,569.7	-
신설	서초 특별계획(가능)구역 ②	서초동 1349번지 일대	7,277.1	-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①	서초동 1357번지 일대	19,075.3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92), 서초2동주민센터(☎2155-7445)

마. 관련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같음)

바. 기타사항: 결정조서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중 변경될 수 있음.

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dudrud20@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 137

()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2005-216호(2005.7.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일대
2. 공원면적
 - 기 정: 350,200m²
 - 변 경: 132,020.3
3. 조성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고시[제2020-254호(2020.6.29.)]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사항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6.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50,200	13,577		1,176	3,005	9	132,020.3	5,488.1		1,132	2,961	5	감) 8,088.9㎡
기 반 시 설	소 계	8,555	8,555					2,160.0	2,160.0					감) 6,395.0㎡
	도 로	8,555	8,555					2,160.0	2,160.0					
조 경 시 설		35	35				2							감) 35.0㎡
유 회 시 설														
휴 양 시 설														
교 양 시 설		1,992	1,992		1,132	2,961		1,992.0	1,992.0		1,132	2,961		
운 동 시 설		2,167	2,167				7	710.0	710.0				5	감) 1,457.0㎡
편 익 시 설		784	784					626.1	626.1					감) 157.9㎡
관 리 시 설		44	44		44	44								감) 44.0㎡
녹지 및 기타		336,623						126,532.2	126,532.2					
시 설 율 (법정 40%)		(13,577㎡ / 350,200㎡) × 100 = 3.88%						(5,488.1㎡ / 132,020.3㎡) × 100 = 4.16%						
건 폐 율 (법정 10%)		(1,176㎡ / 350,200㎡) × 100 = 0.34%						(1,132㎡ / 132,020.3㎡) × 100 = 0.86%						
도시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법정 20%)		(2,167㎡ / 13,577㎡) × 100 = 15.96%						(710㎡ / 5,488.1㎡) × 100 = 12.9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2,167	2,167					7			710.0	710.0					5	합) 1,457.0㎡
	배드민턴장	가	2개소	1,222	1,222					7		1개소	710.0	710.0					5	
		가-1	서초257-2, 258-2, 산21-12, 산21-6	774	774		W21.6xL19.4			5		서초동 산21-6일	710.0	710.0					(5)	
		가-2	양재 산41	448	448					2			-	-						폐지 (도자기구역)
	체력단련장	나	3개소	945	945															시설변경 (체력단련장→점터) (운동→휴양)
		나-1	서초 산23-16	342	342		W26.45xL12.18													
		나-2	양재 산42-6	260	260		W40.22xL10.02						-	-						
			양재 산57-1	119	119								-	-						
		나-3	양재 산55	80	80		W24.99xL9.0						-	-						
			양재 산42-2	145	145								-	-						
편익시설	소 계			784	784								626.1	626.1						합) 157.9㎡
	주차장	다	양재산20-2, 46-5, 105-3	784	784		아스콘포장			30대			626.1	626.1		아스콘포장			30대	
	약수터	㉔	2개소																	폐지
		㉔-1	서초 산23-16																	
		㉔-2	서초 산28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소 계			44	44			44	44											폐지
	약수터 관리실	4-1	서초 산23-16	22	22		W5.5xH4.0xL3.4	22	22											
		4-2	서초 산28	22	22		W5.5xH4.0xL3.4	22	22											
녹지 및 기타	소 계			336,623									126,532.2							
	녹 지			336,623									126,532.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계				4,727	7,302				
변경					1,321	2,160				
당초	소로	계			83	332				
변경					59	267				
당초		3	1	4	83	332	소로	동측경계	전시관주차장	
변경		3	1	3	59	267	소로	양재동 산20-2임	주차장 (다)	
당초	산책로	계			4,644	6,970				
변경					1,262	1,893				
당초		-	1	1.5	244	366	산책로	북측경계	산책로 5	
변경		-	1	1.5	44	66	산책로	북측경계	도자구역	
당초		-	2	2	210	315	산책로	산책로 5	북측경계	
폐지										
당초		-	3	1.5	274	411	산책로	산책로 7	녹지	
변경		-	3	1.5	140	209	산책로	양재동 산57-35임	도자구역	
당초		-	4	1.5	127	19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9	폐지 (도자구역)
폐지		-	4							
당초		-	5	1.5	144	216	산책로	북측경계	체력단련장 1	폐지 (도자구역)
폐지		-	5							
당초		-	6	1.5	142	213	산책로	산책로 2	배드민턴장 2	폐지 (도자구역)
폐지		-	6							
당초		-	7	1.5	148	222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2	폐지 (도자구역)
폐지		-	7							
당초		-	8	1.5	192	288	산책로	북측경계	산책로 9	
변경		-		1.5	91	137	산책로	서초동 산21-6임	도자구역	
당초		-	9	1.5	334	50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6	
폐지										
당초		-	10	1.5	55	83	산책로	배드민턴장 2	체력단련장 1	
폐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11	1.5	128	192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12	폐지 (도자구역)
폐지		-	11							
당초		-	12	1.5	188	282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3	
폐지										
당초		-	13	1.5	520	78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 12	
폐지										
당초		-	14	1.5	254	382	산책로	서측고속도로 방면	산책로 12	
변경		-	14	1.5	69	104	산책로	양재동 산54-3입	도자구역	
당초		-	15	1.5	191	287	산책로	산책로 13	우성아파트 107동	
변경		-	15	1.5	52	78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	16	1.5	222	333	산책로	산책로 13	우성아파트 102동	
변경		-	16	1.5	185	277	산책로	양재동 산20-3공	도자구역	
당초		-	17	1.5	202	303	산책로	산책로 13	우성아파트 112동	
변경		-	17	1.5	50	75	산책로	양재동 산49-23입	도자구역	
당초		-	18	1.5	138	207	산책로	서초구민회관	산책로 9	폐지 (도자구역)
폐지		-	18							
당초		-	19	1.5	323	485	산책로			
변경		-	19	1.5	183	274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14	
당초		-	20	1.5	158	237	산책로	온누리교회	산책로 9	
변경		-	20	1.5	126	188	산책로	양재동 산49-23입	도자구역	
당초		-	21	1.5	53	80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9	
변경		-	21	1.5	124	186	산책로	양재동 산46-3입	도자구역	
당초		-	22	1.5	115	173	산책로	남측경계	산책로 9	
변경		-	22	1.5	26	40	산책로	양재동 산20-3공	도자구역	
당초		-	23	1.5	134	201	산책로	남측경계	산책로 9	
변경		-	23	1.5	127	191	산책로	산책로 19	도자구역	
당초		-	24	1.5	148	222	산책로	동측경계	산책로 9	
변경		-	24	1.5	45	68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2021 - 142

(: ,) ()
- (,) -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지상의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중복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3. 의견서 제출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44)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	증)22,598.7	22,598.7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수도공급설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22,598.7㎡	· 삼성·봉은배수지 상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친화적인 힐링숲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시설 신설(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나.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22,598.5	증)0.2	22,598.7	서고 제239호 (1977.7.21.)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수도공급설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수도공급설비	· 면적 증가 - 면적 : 22,598.5㎡→22,598.7㎡ 증)0.2(공원과 중복결정)	· 기정 편입 토지면적 반영을 위해 수도공급설비 면적을 변경하고 · 상부 녹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시설 중복결정

※ 기타사항 게재 생략 :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021 - 116

()

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2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된 잠실7동 925-1~마천동 60-5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925-1~마천동 60-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명칭: 서울 동남권지역 전기공급설비 전력구공사(동서울#2~강남)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8,178.5㎡
- 연장: 5,099.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장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3.12.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1	잠실7동 925-1	천	47,270.0	906.0	국토해양부	
2	잠실7동 918-2	천	3,751.0	135.5	건설교통부	
3	잠실7동 131	제	7,344.6	197.9	서울특별시	
4	잠실7동 137	도	1,330.0	124.8	서울특별시	
5	잠실7동 139	제	4,813.4	295.9	서울특별시	
6	잠실7동 149	도	3,970.7	267.0	서울특별시	
7	잠실7동 129	도	5,408.8	64.4	서울특별시	
8	잠실본동 342	도	3,630.7	60.5	서울특별시	
9	잠실본동 306	유	66,212.8	104.7	송파구	
10	잠실본동 366	도	2,627.6	104.3	서울특별시	
11	잠실본동 352	도	8,638.6	681.2	서울특별시	
12	잠실본동 353	도	8,526.8	2,064.0	서울특별시	
13	잠실본동 350	도	4,936.9	130.3	서울특별시	
14	잠실본동 349	도	2,848.9	116.8	서울특별시	
15	삼전동 20	도	7,329.5	407.6	서울특별시	
16	삼전동 21	도	6,475.0	245.1	서울특별시	
17	삼전동 74-2	도	4,352.0	772.5	서울특별시	
18	삼전동 85-3	도	1,501.3	256.3	서울특별시	
19	삼전동 85-6	도	2,850.9	516.1	서울특별시	
20	삼전동 87-1	도	4,351.7	772.5	서울특별시	
21	삼전동 89-1	도	389.7	63.2	서울특별시	
22	삼전동 89-3	도	3,962.5	709.3	서울특별시	
23	삼전동 156	도	3,690.4	392.1	서울특별시	
24	석촌동 302	도	2,170.2	157.2	서울특별시	
25	가락1동 508	유	100,510.0	41.8	송파구	
26	가락1동 513-1	천	6,366.0	482.8	건설교통부	
27	가락1동 513	제	15,863.0	1,483.9	서울특별시	
28	가락1동 533	제	3,420.0	170.8	건설교통부	
29	가락1동 532	제	10,636.0	26.2	서울특별시	
30	가락1동 538	도	4,998.0	397.4	서울특별시	
31	가락1동 509-11	도	5,149.0	368.2	서울특별시	
32	가락1동 282	도	42,066.0	2,533.7	서울특별시	
33	가락1동 341-41	도	122.0	10.9	서울특별시	
34	가락1동 600	대	542,860.0	357.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5	가락1동 334-11	도	9,433.0	178.5	서울특별시	
36	가락1동 172-9	도	17,426.0	1,289.9	서울특별시	
37	가락1동 318-13	도	372.0	39.1	서울특별시	
38	가락1동 326-16	구	152.0	7.3	한국농어촌공사	
39	가락1동 324-6	구	17.0	8.2	한국농어촌공사	
40	가락1동 215-5	답	640.0	58.1	한국농어촌공사	
41	가락1동 184-23	도	7,784.0	800.1	서울특별시	
42	문정2동 150-15	공	8,858.8	43.5	송파구	
43	마천동 60-5	도	16,955.0	272.0	서울특별시	
44	마천동 63-8	도	1,065.0	63.5	서울특별시	
계			1,003,076.8	18,178.5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자. 열람기간: 2021. 01. 28. ~ 02. 15.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차.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14)

2021 - 128

() () 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8.2.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132호(2019.11.28.)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388-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 2) 명 칭 :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다.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
-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풍납동 388-1번지)

라. 사업규모

위 치	면 적	변경내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388-1번지)	•부지 : 138,845.3㎡ •건물 연면적 - 기정 : 547,354.77㎡ - 변경 : 631,566.40㎡ (+84,211.63㎡)	•금회 변경사항 - D동(의료시설) 신축 외 5개동 면적 증감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1.3.1.~2023. 6.30.

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열람 장소 비치)

사.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 비치)

아. 열람기간 및 장소

- 1) 열람 기간 : 2021.1.28.~2021.2.1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 2147-3044)



2021 - 35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그린글로벌(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1507호	강서구 개화동 164-2번지 한강	선박13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	2021.01.26.~ 2021.06.30.	2021. 1. 20.

2021 - 36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정엔지니어링(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서울시계 내 한강 (영동대교)	선박 2척	지반조사	2021.01.25.~ 2021.03.31.	2021. 1. 20.

2021 - 37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혜안지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한성1길 32	서울시계 내 한강 (영동대교)	선박 2척	지반조사	2021.01.25.~ 2021.03.31.	2021. 1. 20.

2021 - 41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췁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잠실대교)	선박 4척	중량물 운송	2021.01.27.~ 2021.02.02.	2021. 1. 25.



2021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노 원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서울(노원) 2020-2호 (2020.6.11.)	푸른소방산업 주식회사 (661-86-00454)	김 경 아	서울시 노원구 섬발로 82,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1.1.25. ~2021.4.24.)	02-6498-91 19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6981-68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강 남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 서울(강남)-2021-0001호 (2021. 1. 21.)	가산소방전기 주식회사 (897-87-01651)	김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0, 제10층 제10-비-1028호 (자곡동, 강남유담유폴레스)	02-6949-11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02-6981-7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 -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강 남 소 방 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 : 경고(시정명령)												
당사자	성명 (명칭)	보영기술공영(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33, 4층(논현동, 덕당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영기술공영(주) 대표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기술인력 미달을 사유로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신고일인 2019년 5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라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담당자	이 기 철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29(삼성동)			전화 번호	02)6981-7523						
		전자 우편	gicheol90@seoul.go.kr			팩스 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1년 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리어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 - 21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89-1번지
 - 면 적 : 2m², 일시 2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계측기 설치
 - 내 역 : 계측기 설치(지하수위계 1EA, 지중침하계 1EA, 계측기보호함 1EA)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1. 1. 25. ~ 2024. 1. 24. (허가일로부터 3일간)

2021 - 22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중랑구청장 (청소행정과)
 -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66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82번지
 - 면 적: 61.6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중화장실
 - 내 역: 공중화장실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6.05.17. ~ 2021.05.16.
(연장) 2021.05.17. ~ 2026.06.30.

2021 - 23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기상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7-1번지
 - 면 적: 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강 결빙관측 안내표지판 설치
 - 내 역: 안내표지판(0.6m×0.45m) 1EA
5. 점용기간: (당초) 2013.07.25. ~ 2018.07.24.
(연장) 2018.07.25. ~ 2023.12.3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